

연구보고 2018-12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김아름 외

연구보고 2018-12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 아 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윤 지 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연구보고 2018-12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68-8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 리 / 말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으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대다수의 부모들은 민간 부문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서비스인 아이돌보미의 경우 자격과 운영기준 등을 법정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있지만,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는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급여와 자격, 서비스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돌봄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민간 베이비 시장 질 관리 구축을 세부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민간 베이비시터 질 관리를 위한 교육이수증 발급, 돌봄인력 지원프로그램 및 정보제공서비스 내실화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민간 육아도우미 사례를 검토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육아도우미 서비스 공급 및 이용실태와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육아도우미의 질적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면담 및 조사에 참여해주신 육아도우미 분들과 이용 부모님들, 자문회의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 목 차

<b>요약</b>	<b>1</b>
<hr/>	
<b>I. 서 론</b>	<b>11</b>
<h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2. 연구내용 및 방법 .....	15
3. 연구의 범위 .....	21
<b>II. 연구의 배경</b>	<b>23</b>
<hr/>	
1. 선행연구 검토 .....	25
2. 가정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	32
3.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입법 동향 .....	42
<b>III. 국내외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정책</b>	<b>47</b>
<hr/>	
1. 국내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현황 .....	49
2. 해외사례 .....	78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124
<b>IV.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b>	<b>127</b>
<hr/>	
1. 응답자 특성 .....	129
2. 이용 동기 및 구인과정 .....	131
3. 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	149
4.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	177
5. 소결 .....	194

<b>V. 소개업체 운영·관리와 육아도우미 근로실태 및 요구</b>	<b>197</b>
1. 소개업체 운영 관리 실태 및 요구 .....	199
2. 민간 육아도우미 근로 실태 및 요구 .....	209
3. 소결 .....	217
<b>VI. 결론 및 정책 제언</b>	<b>219</b>
1. 기본 방향 .....	221
2.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방안 .....	223
<b>참고문헌</b>	<b>234</b>
<b>Abstract</b>	<b>245</b>
<b>부 록</b>	<b>247</b>
부록 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249
부록 2. 사례조사 질문지(도우미용) .....	259
부록 3. 사례조사 질문지(부모용) .....	262
부록 4.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질문지 .....	265

## 표 목차

〈표 I-2- 1〉 설문조사 항목	17
〈표 I-2- 2〉 심층면담 대상 일반 특성(육아도우미)	18
〈표 I-2- 3〉 심층면담 대상 일반 특성(육아도우미 이용 부모)	19
〈표 I-2- 4〉 실무자 간담회 개최	20
〈표 I-2- 5〉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
〈표 I-3- 1〉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수행직무	21
〈표 I-3- 2〉 국제내니협회 가정내 육아도우미 종류 및 정의	21
〈표 II-2- 1〉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33
〈표 II-2- 2〉 아이돌봄 활동 결격사유	35
〈표 II-2- 3〉 아이돌봄 양성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37
〈표 II-2- 4〉 아이돌봄 양성교육과정(총 80시간) 시간표	38
〈표 II-3- 1〉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	43
〈표 II-3- 2〉 입법안의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등 특혜	46
〈표 III-1- 1〉 근로조건 명시사항	50
〈표 III-1-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52
〈표 III-1- 3〉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내용	53
〈표 III-1- 4〉 우리나라 자격제도 종류 현황(2017. 11)	55
〈표 III-1- 5〉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 분류	56
〈표 III-1- 6〉 베이비시터 자격관리기관 명단	57
〈표 III-1- 7〉 베이비시터 자격 발급기관, 운영기관, 합격기준	57
〈표 III-1- 8〉 한국자격중앙협회 시험과목 및 직무교육	59
〈표 III-1- 9〉 한국장학진흥원 시험과목	60
〈표 III-1-10〉 한국자격개발원 시험과목	60
〈표 III-1-11〉 행복한평생교육원 자격취득 현황	61
〈표 III-1-12〉 (주)한국자격중앙협회 자격취득 현황	62
〈표 III-1-13〉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자격취득 현황	62
〈표 III-1-14〉 한국모자복지전문인협회 자격취득 현황	63

〈표 III-1-15〉 한국여성교육개발원 자격취득 현황 .....	64
〈표 III-1-16〉 한국자격개발원 자격취득 현황 .....	64
〈표 III-1-17〉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취득 현황 .....	65
〈표 III-1-18〉 2018년도 서울YMCA아가야 가정육아교사 파견 돌봄요금 .....	68
〈표 III-1-19〉 서울YMCA아가야 가정육아교사 양성과정 .....	69
〈표 III-1-20〉 서울YMCA아가야 가정육아교사 양성과정 이론교육 시간표 예시 ..	70
〈표 III-1-21〉 한살림 서울 아이방문돌봄교사 양성과정 시간표 .....	73
〈표 III-1-22〉 아누리 방문교육교사 신입교육 내용 예 .....	76
〈표 III-1-23〉 육아도우미 교육기관 비교표 .....	77
〈표 III-1-24〉 여성 인력개발센터 베이비시터 교육 내용 .....	78
〈표 III-2- 1〉 호주 내니협회(ANA: Australian Nanny Association)에서 정하는 육아도우미 최소 자격 .....	93
〈표 III-2- 2〉 아동관련업무 자격조사(WWCC)의 장점 .....	94
〈표 III-2- 3〉 아동관련업무 자격조사(WWCC)의 한계 .....	95
〈표 III-2- 4〉 노동자로 간주되는 육아도우미의 요건 .....	95
〈표 III-2- 5〉 고용계약 체결에 따른 고용주의 이득 .....	96
〈표 III-2- 6〉 재택 케어 서비스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98
〈표 III-2- 7〉 미국 육아도우미 자격 요건 등 .....	99
〈표 III-2- 8〉 스위스 타게스무터 요금체계 .....	113
〈표 III-2- 9〉 외국인 가사노동자 자격 .....	115
〈표 III-2-10〉 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용주 자격 .....	115
〈표 III-2-11〉 가사노동자 건강검진 항목 .....	117
〈표 III-2-12〉 가사노동자 고용주 요건 .....	122
〈표 III-3- 1〉 육아도우미 제도 국가별 주요 특징 및 비교 .....	126
〈표 IV-1- 1〉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1_인구학적 특성 .....	129
〈표 IV-1- 2〉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2_근로 특성 .....	130
〈표 IV-1- 3〉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자 .....	131
〈표 IV-2- 1〉 민간 육아도우미 2명 이상인 경우 돌봄 아동 수 .....	132
〈표 IV-2- 2〉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아동 수 .....	133
〈표 IV-2- 3〉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아동 연령 .....	133
〈표 IV-2- 4〉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_영유아 자녀 .....	135

〈표 IV-2- 5〉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_초등자녀 .....	136
〈표 IV-2- 6〉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소개비용 .....	139
〈표 IV-2- 7〉 민간 육아도우미의 구인 시 고려사항 .....	142
〈표 IV-2- 8〉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을 위한 면접 횟수 .....	144
〈표 IV-2- 9〉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을 위한 최다 면접 횟수 .....	145
〈표 IV-2-10〉 현재 이용 중인 육아도우미에게 보장하는 복리후생 내용 .....	147
〈표 IV-2-11〉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보장해야 하는 복리후생 내용 .....	149
〈표 IV-3- 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빈도 .....	150
〈표 IV-3- 2〉 민간 육아도우미 평일 출근 횟수 .....	151
〈표 IV-3- 3〉 민간 육아도우미 평일 근무시간 .....	152
〈표 IV-3- 4〉 민간 육아도우미 평일 총 이용시간 .....	153
〈표 IV-3- 5〉 민간 육아도우미 주말 근무 여부 .....	154
〈표 IV-3- 6〉 민간 육아도우미 주말 출근 횟수 .....	155
〈표 IV-3- 7〉 민간 육아도우미 주말 근무시간 .....	156
〈표 IV-3- 8〉 민간 육아도우미 주말 총 이용시간 .....	156
〈표 IV-3- 9〉 민간 육아도우미 월평균 이용비용 .....	157
〈표 IV-3-10〉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의 부담 정도 .....	159
〈표 IV-3-11〉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외 추가비용 지급 여부 .....	160
〈표 IV-3-12〉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이외 추가 지급 비용_	
경조사비/명절보너스/보너스 .....	161
〈표 IV-3-13〉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이외 추가지급 비용과 빈도_교통비 .....	162
〈표 IV-3-14〉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이외 추가지급 비용과 빈도_식비 .....	163
〈표 IV-3-15〉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이외 추가지급 비용과 빈도_휴가비 .....	163
〈표 IV-3-16〉 민간 육아도우미의 근무지 .....	164
〈표 IV-3-17〉 자녀를 육아도우미의 집에서 돌보는 이유 .....	165
〈표 IV-3-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외 서비스 병행 이용 기관 및 인력 .....	167
〈표 IV-3-19〉 민간 육아도우미와 병행 이용 중인 기관의 유형 .....	168
〈표 IV-3-20〉 추가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유 .....	169
〈표 IV-3-21〉 기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의향 .....	170
〈표 IV-3-22〉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	173
〈표 IV-3-2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	174

〈표 IV-3-2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	175
〈표 IV-3-25〉 아이돌봄서비스에 만족했으나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이유 ..	176
〈표 IV-4- 1〉 육아도우미의 보유 자격증 .....	181
〈표 IV-4- 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서비스 이용시간 .....	182
〈표 IV-4- 3〉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서비스 내용 .....	183
〈표 IV-4- 4〉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서비스 이용비용 .....	184
〈표 IV-4- 5〉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서비스의 질 .....	185
〈표 IV-4- 6〉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불만족한 내용 .....	186
〈표 IV-4- 7〉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 .....	187
〈표 IV-4- 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_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188
〈표 IV-4- 9〉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_ 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 .....	189
〈표 IV-4-10〉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_ 육아도우미 교육 실시 .....	190
〈표 IV-4-1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_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세제지원 .....	191
〈표 IV-4-1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의 추가 지원요구 .....	192
〈표 IV-4-13〉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위해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 .....	193
〈표 V-1- 1〉 간담회 대상자 일반적 특성_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	199
〈표 V-2- 1〉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_민간 육아도우미 .....	209
〈표 VI-2- 1〉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전력 확인 의뢰 가능 기관 .....	224
〈표 VI-2- 2〉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228

## 그림 목차

〈그림 III-1-1〉 우리나라 자격제도 .....	54
〈그림 III-1-2〉 민간자격 등록절차 .....	55
〈그림 III-2-1〉 호주 재택 케어(IHC) 프로그램 개요 .....	98
〈그림 III-2-2〉 홍콩 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 양육 담당자 및 비율 ..	121
〈그림 IV-2-1〉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 수 .....	132
〈그림 IV-2-2〉 민간 육아도우미가 돌보는 자녀 연령 .....	134
〈그림 IV-2-3〉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구인 경로 .....	137
〈그림 IV-2-4〉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비용 지불 빈도 .....	139
〈그림 IV-2-5〉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사이트/소개업체 통해 받은 불편 사항 여부 ...	140
〈그림 IV-2-6〉 소개업체의 민원사항 처리 여부 .....	141
〈그림 IV-2-7〉 민간 육아도우미와의 근로계약 내용(중복응답) .....	146
〈그림 IV-2-8〉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 시의 요구서류(중복응답) .....	146
〈그림 IV-3-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기간 .....	150
〈그림 IV-3-2〉 현재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중복응답) .....	166
〈그림 IV-4-1〉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국적 .....	178
〈그림 IV-4-2〉 민간 육아도우미의 연령 .....	178
〈그림 IV-4-3〉 민간 육아도우미의 동일 분야 경력 .....	179
〈그림 IV-4-4〉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아이돌보미 경력 여부 .....	179
〈그림 IV-4-5〉 육아도우미의 아이돌보미 경력 .....	180
〈그림 IV-4-6〉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자격증 보유 여부 .....	180
〈그림 IV-4-7〉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전반 .....	181



## 요 약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 오늘날 맞벌이, 워킹맘 등의 증가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육아도우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위주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하여 실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공공서비스인 아이돌보미의 경우 자격 및 운영기준 등을 법정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있으나,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는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급여, 자격, 서비스 등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나.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를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질적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가정 내 양육 지원방안의 다각화를 통한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공하도록 함.

#### 다. 연구내용

- 민간 육아도우미의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등을 살피고,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독일 등 해외의 민간 육아도우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또한, 우리나라의 민간 육아도우미의 이용 실태 및 수요를 분석하여 민간 육아도우미의 이용 및 공급에 관한 기본 정책 방향과 세부 방안을 도출함.

#### 라. 연구방법

- 먼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육아도우미의 개념, 유형, 직무내용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육아도우미 관련 제도 및 정책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함.

- 우리나라의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의 공급자(교육내용, 근로여건 등의 내용)와 수요자(이용 여부, 만족도 등의 내용)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등록 육아도우미 인력 소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국내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함.

**마.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주 업무로 하며, 아이의 가정 혹은 본인의 가정에서 전일제나 시간제로 아동을 돌보는 민간의 육아도우미를 그 대상으로 하며, 산후도우미는 제외함.

**2. 연구의 배경**

**가. 선행연구 검토**

- 기존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육아도우미의 개념, 현황, 설문조사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서비스의 운영 및 이용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육아도우미 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되었음. 다만, 2013년도 이후에는 연구가 미진하였음.

**나. 가정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 우리나라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소관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부모의 주거지 등에서 보호 및 양육을 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며, 돌봄의 범위, 이용료, 교육 등에 관하여는 동법에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중국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음.

**다.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입법 동향**

-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보고서에서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관리·감독 근거의 미비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던 바, 이후 민간 육아도우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소개업체의 규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법 제정 및 개정이 시도되고 있음.

### 3. 국내외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정책

#### 가. 국내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현황

- 국내 민간 육아도우미의 관리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등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베이비시터 자격증 역시 민간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교육 및 자격증 발급은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임.

#### 나. 해외 사례

- 프랑스는 ‘가정보육모제도’를 통해 국가가 육아도우미의 자격 부여, 교육 등의 요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일 9시간(최대 13시간), 주당 최대 48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는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가 민간 육아도우미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음.
- 영국에는 민간 육아도우미로서 ‘가정보육교사’와 ‘사적도우미’ 제도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정부의 등록여부이며, 아동법 등을 통한 철저한 자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교육 및 관리감독법’에 의해 설립된 Ofsted(교육기준청)에서 주로 담당함.
- 호주는 개별 가정에서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제도는 부족하나 ‘아동관련업무 자격조사(WWCC)’ 등을 통해 개인에 대한 철저한 신원관리 등을 실시함.
- 미국의 육아도우미 내리는 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집안일을 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민간 차원의 자격증과 응급처치술 등의 응급상황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며, 경력 증명에 대한 신뢰성 높은 추천서가 중요하고, 민간육아도우미로 일하며 세금납부 등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와 육아도우미 보험제도 등에 편입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나니, 베이비시터, 타게스무터 등으로 민간 육아도우미가 활용되며, 타게스무터는 유치원 등의 시설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편인데, 이에 관하여는 지역의 아동청이 주로 자격과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스위스는 「양육아동의 수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민간육아도우미 활동에 대한 필수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의 시설에는 관청의 감독의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육, 요금 등의 세부사항은 민간에 맡겨져 있음. 다만 보험제도 등의 가입이 필요한 경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는 주로 육아를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허가, 건강검진 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초기 정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하고 있으며, 별도로 정부차원의 보육센터 또한 운영하고 있음.
- 홍콩은 대다수 맞벌이 가정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데, 정부(이민국)는 고용주와 지원자가 준수해야 하는 ‘채용계약의 표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는 주로 전문 대행사나 구인광고 등을 활용하고,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함.

#### 다. 시사점

- 해외의 경우 민간 영역의 육아도우미라 하더라도 인증제도 등을 통해 최소한의 신원조회 절차는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는 부모와 육아도우미 간에 직접적 고용관계를 맺도록 하여 노동관계법 적용 및 사회보장보험 가입과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마련하고 있음.
-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소규모 가정보육시설 제도를 마련하여 기존의 공적보육시설(키타)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부의 규제가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음. 이에 비용적인 면에서는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차별과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문제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도 도입 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4.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 가. 응답자 특성

-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여성 64.2%, 30대 76.7%, 맞벌이 가구 87.8%이며, 자

녀의 특성은 영아 53.6%, 유아 37%, 초등자녀 9.4%, 자녀수는 평균 1.5명,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654만원이고, 근로특성으로는 상용근로자는 남성 74.3%, 여성 71.9%, 자영업자는 남성 9.9%, 여성 5.3%임.

## 나. 이용 동기 및 구인과정

-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수는 자녀 1명당 민간 육아도우미 1인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76.4%이며, 자녀 2명에 육아도우미 1명을 이용하는 경우는 16.2%이고, 민간 육아도우미는 평균 1.2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음.
- 민간 육아도우미를 활용하는 이유는 주로 ‘아이를 기관에 보내기에 너무 어렵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원하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이며, 그 외에도 다자녀, 건강상 이유, 독박육아의 어려움 등이 있음.
- 초등자녀의 민간 육아도우미 활용 이유는 ‘초등 방과 후 돌봄의 낮은 접근성과 프로그램의 불만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처 수단으로는 학원 등의 틈새보육을 활용함.
- 구인경로는 주로 친인척 소개가 75.6%로 가장 많았고, 산모도우미 소개가 9.4%이며, 소개업체는 불과 1.2%에 그치고 있는데, 부모는 전체적으로 육아도우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개업체를 통한 경우에 자질부족, 신원 불상 등의 불만족 사항도 조사되었음.
- 구인 시에 주된 고려사항은 범죄 경력 등의 신원보장(40.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우미 경력(35.4%)으로 나타났음. 최종 구인까지는 평균 2.59회의 면접을 실시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주로 급여와 주당 근무시간, 서비스 제공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다. 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 민간 육아도우미의 총 이용기간은 6개월-1년 미만(32.4%), 3-6개월(27%), 3-5년 미만(4%)로 조사되었고, 이용 빈도는 1주일에 2-3일(40%), 5일(35.6%), 6-7일(14.6%)이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균 1일 7시간,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긴 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월 평균 이용비용은 약 109만원으로, 150만원 초과도 22.8%이고, 최대는 400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가구 특성에 있어서 초등자녀에 비해 영유아가,

흡별이 가구보다는 맞별이 가구가 높은 이용 경향을 보였고, 대도시는 읍·면 지역보다 약 2배 높은 114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음.

- 서비스 이용 장소는 부모의 자택이 86%로 가장 높고, 초등자녀의 경우 돌보미의 가정인 경우도 27.7%로 조사되었으며, 서비스의 내용은 ‘간식 먹이기(74.8%)’와 ‘등하원 서비스(58.2%)’, ‘학습지도(33.6%)’, ‘가사서비스(31.2%)’ 순으로 조사됨.
- 민간 육아도우미 외에 병행하는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31.7%)과 조부모 및 친인척(28.6%)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는 ‘기관의 운영시간이 짧거나(49.8%)’, ‘기관에 아이를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34.1%)’ 등으로 조사됨.
- 민간 육아도우미의 공백 시의 대응 방법으로는 주로 친정이나 시댁 등 주변 가족에 부탁하거나 부모가 자신의 휴가를 이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국가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다(43.6%)’가 많았고, ‘잘 알고 있다(6.2%)’는 비율보다는 ‘전혀 모른다(11.4%)’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용 경험에 있어서는 58.2%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다만, 월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45.5%가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라.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내용과 관련하여서 5점 만점에 서비스 내용은 3.54점, 서비스 질은 3.52점, 이용 시간은 3.47점으로 조사되었고, 전반적으로 업무 전문성에 관하여는 아쉬움을 드러냈음. 불만 사항으로는 과도한 비용과 신뢰 부족, 전문성 결여 등이 높게 나타남.
- 개선 요구사항은 정부의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가장 높게 원하고 있었으며, 육아도우미의 교육 실시에 대한 요구도 높았음. 그 밖에 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 국가자격증 제도의 도입 순이었음.
-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면, 정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형평성 차원에서 대체서비스를 보장하고, 부모와 신뢰형성 가능한 구인장치의 마련, 육아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적인 세제지원, 육아도우미의 신원보증 방안 마련,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실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5. 소개업체 운영·관리와 육아도우미 근로실태 및 요구

### 가. 소개업체 운영 관리 실태 및 요구

-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개업체들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확장과 저출산 문제 등으로 몇 년 전에 비해 소개 건수가 10건 중 1건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신생 온라인 소개업체들을 중심으로 육아도우미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오프라인 소개업체의 경우 구직자가 대부분 저학력의 고령 여성들이라고 밝힌 반면, 온라인 소개업체의 경우 20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부터 30대 보육교사, 40대부터 60대까지 자녀를 키워본 엄마 등 다양한 연령대의 도우미가 폭넓게 활동하고 있음.
- 소개업체들은 범죄경력조회와 같은 신원확인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안전과 신뢰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원확인이 필수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였음.
- 온라인 소개업체들의 경우 서비스 내용 다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IT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매칭서비스와 사후관리 검증등을 실시하고 있었음.
- 정부의 지원으로는 육아도우미 스크리닝 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과 육아도우미와 아이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희 공간 대여, 육아도우미에 대한 집합교육장소 제공 등을 원하였음.

### 나. 민간 육아도우미 근로 실태 및 요구

- 육아도우미 직업의 선택 배경은 '퇴직 후 소일거리'로 시작하였거나, 가사도우미 일을 하다가 전업한 경우 등 다양하였으며, 주된 애로사항은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이거나 휴일이나 갑자기 쉬게 되는 때에 별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육아도우미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간당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아, 공공 아이돌보미 시급 보다는 높은 수준을 원하였으며, 급여 수준으로 인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하였음.
- 한편, 국가가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국가

가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육아도우미 등록제 시행을 통해 부모-육아도우미 간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음.

## 6. 결론 및 정책 제언

### 가. 기본 방향

- 자격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의 아이돌보미는 약 2만명 정도인 반면, 이러한 관리를 받지 않는 민간 육아도우미는 약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아무런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민간시장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특히,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분, 질적 수준 등에 대한 부모의 고민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인력모집, 양성, 운영관리 등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한편 부모에게는 적절한 세제지원을, 육아도우미에게는 노동자로서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나.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방안

-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민간 육아도우미 DB를 정부차원에서 구축하여, 민간 육아도우미의 정확한 신원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인증 및 소개의 단계까지 필요한 정부의 개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차선책으로는 정부를 대신하여 직업소개업체 인증 제도를 통해 DB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성 확보를 모색할 수 있음.
-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관리에 관하여,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자격증을 요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도우미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시스템 구축은 필요함.
- 또한, 현재 민간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교육지원을 위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문 강사진의 파견과 강의 장소 지원 등을 통해 육아도우미의 질적 향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주와 육아도우미 간의 고용관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간 육아도우미가 적절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측

면에서는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및 4대 보험 지원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직업적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불의의 사고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모와 육아도우미간의 불필요한 책임공방이나 소송 등을 피하게 함으로써, 민간 육아도우미로서 안정적인 직업 활동 영위 및 부모와의 신뢰구축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범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맞벌이 부부, 워킹맘이 증가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봄 공백” 부문에 대한 육아도우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고, 공공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낮은 임금과 외국어 교육효과 등의 이유로 외국인 육아도우미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육아도우미 체류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싱가포르, 홍콩처럼 육아도우미 시장을 개방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한편, 공공서비스인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자격 및 운영기준을 법정화하여 일정 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나,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는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급여와 자격, 서비스 관리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실제 2018. 2월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육아도우미제도 정비를 청원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으며, 대다수는 높은 급여와 자격기준 부재, 소개업체의 폭리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sup>2)</sup>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종일제 돌봄의 월평균 대기 건수는 2015년 521건,

1) 조선일보(2018. 1. 23일자 기사), “한국 임금의 30%…동남아 육아도우미 '수입'하면 어떨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3/201801230030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3/2018012300309.html)(2018. 3. 4. 인출).

2)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육아도우미 제도 정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520>(2018. 2. 28. 인출).

2016년 835건, 2017년에는 474가구로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어 민간에서 이를 채우고 있는 가운데, 육아도우미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2017년 기준 가사 및 육아도우미는 20만1천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sup>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의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육 미표준화로 민간 육아도우미 간 큰 교육수준 편차가 발생하여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3a). 이에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 돌봄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민간베이비 시장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세부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민간베이비시터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 이수증 발급, 외국인 돌봄인력 지원프로그램 및 정보제공서비스 내실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방안은 부모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행 관련 육아지원 전반의 틀 내에서 방향성을 정립하는 등 정확한 실태파악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6년 11월에는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등록제 도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위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행「직업안정법」상 관련 규정이 보다 엄격하다고 검토되어 보류된 바 있으며, 현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근로환경을 보장하려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부문의 육아도우미 서비스 공급 및 이용 실태와 수요 전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에 따른 지원 방안, 관련업체 및 서비스 질 관리, 돌봄 인력의 노동권 보장 방안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전국 직업/성별 취업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2&vw\\_cd=MT\\_ZTITLE&list\\_id=B19\\_EQ13\\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_m\\_id=&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2&vw_cd=MT_ZTITLE&list_id=B19_EQ13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_m_id=&conn_path=MT_ZTITLE)(2018. 4. 9. 인출); 허민숙(2018).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 관리를 위한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p.2에서 재인용.

## 나. 연구의 목적

첫째,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및 「직업안정법」 등과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기관 및 소개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민간 육아도우미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민간에 맡겨져 있는 육아도우미의 교육과정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여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입주 육아도우미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여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가정 내 양육 지원의 다각화를 통한 서비스 형평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 보육, 가사 등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민간 베이비시터의 자격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등·하원 도우미, 학습시터 등 민간 영역의 육아도우미 전반을 다루며, 기관 이용 외의 다양한 인력과 역할 등의 민간 육아지원서비스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지원서비스의 다각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첫째, 민간 육아도우미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육아도우미 개념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여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관계 법률, 지원정책 및 사업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와의 비교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해외 사례를 고찰한다.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독일, 스위스 등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를 포함하여 민간영역의 육아도우미 제도 전반을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고찰한다. 국내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 관계 법률 및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민간 육아도우미 제도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영국, 독일, 스위스를 중심으로,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수요를 분석한다. 설문조사, FGI 등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의 동기, 비용, 애로사항과 내국인 및 외국인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교육기관 등에서의 인력 관리체계, 육아도우미들의 고용실태 및 자격 현황 등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및 공급에 관한 기본 정책 방향 및 세부 방안을 도출한다.

## 나.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첫째, 육아도우미 관련 개념, 유형, 직무내용 등을 분석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을 개정·고시하면서 육아도우미를 포함한 ‘돌봄서비스직’을 신설한 바 있다. 고용직업분류는 취업알선 서비스, 노동력수급 통계작성 등에 사용되며,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는 기초가 되는 바, 이를 분석하여 육아도우미 개념을 법정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국내외 육아도우미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에 관한 기본법은 없지만, 공공서비스 부문을 관할하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도우미를 소개하는 업체에 관한 직업안정법,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다. 이처럼 육아도우미와 관련된 법제도를 고찰하고, 해외사례의 경우도 법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에게 도입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국내외 육아도우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민간 육아도우미에 관한 문헌은 많지 않으나, 그 동안 정부부처에서 발주한 용역연구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 등을 빠짐없이 검토한다.

##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둔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모가 부재한 경우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 가) 조사 대상 및 규모

조사대상은 전문 조사업체가 구축하고 있는 전국 지역의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둔 가구 패널 중에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경험이 있는 5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이때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경험은 조사일자 기준으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3개월 이전까지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이며, 서비스 이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가구에 한정한다.

### 나)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 및 구인 과정, 2) 민간 육아도우미 채용요건 및 근로계약, 3) 기관보육 등 서비스 병행 이용 여부, 3)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빈도 및 이용시간, 4) 서비스 이용비용 및 부담 정도 인식, 5)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6)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및 이용만족도, 7)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요구 등이다.

■ 표 I-2-1 ■ 설문조사 항목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 및 구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도우미가 돌보는 자녀의 수</li> <li>•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li> <li>• 육아도우미 구인 경로 및 알선 비용</li> <li>•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요청 정보 및 서류</li> <li>• 육아도우미 채용 시 불편사항</li> <li>• 육아도우미 채용 시 고려사항</li> <li>• 육아도우미 근로계약 및 포함내용, 요청서류 등</li> <li>• 육아도우미 복리후생 및 보장 내용</li> </ul>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이용기간</li> <li>• 서비스 이용시간(평일/주말 여부)</li> <li>• 서비스 이용비용 및 부담 정도</li> <li>• 서비스 제공 장소 및 그 사유</li> </ul>

조사 영역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병행 이용 여부 및 그 사유</li> <li>• 서비스 세부내용</li> <li>•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및 만족도/불만족 사유</li> </ul>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부문별 만족도/불만족 사유</li> <li>•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애로사항</li> <li>•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의 정부 역할</li> <li>•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정부지원 요구</li> </ul>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 성별, 최종학력, 직업, 취업상태</li> <li>• 취업상태, 주당 평균 노동시간</li> <li>• 총 자녀수</li> <li>• 월 가구소득, 거주지역</li> </ul>

### 3)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즉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근로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유경험자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실태 및 개선요구를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 가) 서비스 공급자 대상: 도우미

현재 활동 중인 국내 육아도우미를 대상으로 총 6인을 개별면담 방식으로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채용 과정 및 교육내용, 근로여건, 서비스 제공내용, 사후관리, 근무 시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전반이다.

▮ 표 I-2-2 ▮ 심층면담 대상 일반 특성(육아도우미)

번호	성별	연령	국적	근로형태	돌봄 아동 수	육아도우미 경력	급여수준
1	여	56세	한국	전일제	3명	6년4개월	월 230만원
2	여	55세	한국	시간제	1명	1년	월 100만원
3	여	47세	한국	전일제	2명	6년6개월	월 220만원
4	여	54세	한국	시간제	2명	10년	월 100만원
5	남	62세	한국	시간제	2명	4년1개월	월 100만원

#### 나) 서비스 수요자 대상: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부모

조사대상은 민간 육아도우미를 3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로서, 이용 동기와 구체적인 비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총 10인을 집단면담 방식으로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서비스 이용동기 및 병행 이용 여부, 이용 실태 및 만족도,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 필요도 및 개선요구 등이다.

표 I-2-3 심층면담 대상 일반 특성(육아도우미 이용 부모)

번호	성별	연령	맞벌이 여부	직업	이용시간	육아도우미 이용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1	여	32세	외벌이	전업주부	시간제	4년5개월	900만원 이상
2	여	46세	맞벌이	교사	전일제	4년6개월	700-900만원 미만
3	여	45세	맞벌이	회사원	입주	10년2개월	900만원 이상
4	여	40세	맞벌이	회사원	전일제	5년3개월	500-700만원 미만
5	여	40세	맞벌이	대학강사	시간제	5년	300-500만원 미만
6	여	34세	맞벌이	변호사	시간제	5개월	900만원 이상
7	여	34세	외벌이	전업주부	입주	2년	900만원 이상
8	여	34세	맞벌이	회사원	전일제	1년2개월	900만원 이상
9	여	30세	맞벌이	회사원	입주	3개월	500-700만원 미만
10	여	38세	맞벌이	회사원	시간제	1년2개월	900만원 이상

#### 4) 실무자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등록 육아도우미 인력 소개업체 중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을 받고, 육아도우미를 알선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에서의 육아도우미 관리 현황과 요구 등을 파악한다. 또한, 최근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부모와 도우미 간 중개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면담하여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기업들의 운영현황과 요구를 파악한다.

논의 내용은 업체 소개 및 운영 현황, 인력모집/양성과정 및 사후관리 현황, 서비스 내용 및 운영관리 사항, 사업운영 시 애로사항 및 지원 요구, 육아도우미 관련 정부지원 연계 등에 관한 민관 협력방안을 도출한다.

표 I-2-4 실무자 간담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간담회	6. 12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대표 3인	•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운영현황 및 요구
간담회	10. 10	시간제 돌보미 온라인 소개업체 직원 1인	• 시간제 돌보미 온라인 소개업체 운영현황 및 요구
간담회	10. 25	육아도우미 온라인 소개업체 대표 1인	•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운영현황 및 요구

#### 5)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책방안과 법적 규율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방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표 I-2-5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자문회의	3. 30	법학 교수 1인	• 현행법상 민간 육아도우미 법적지위에 관한 자문
자문회의	4. 17	법학 교수 2인	• 육아도우미 관련 해외사례에 관한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5. 18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인	• 민간 육아도우미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자문회의	6. 11	법학 박사 2인	• 국회 입법동향 및 돌봄노동자 지위에 관한 자문
자문회의	6. 18	전국고용서비스협회 1인	• 민간육아도우미 고용서비스업체 현황 수집 및 애로점 논의
자문회의	7. 16	사회복지학 교수 1인	• 육아도우미 조사표 자문
자문회의	10. 19	사회단체 돌봄서비스 전문가 1인	• 돌봄서비스 운영관리 현황 및 요구 논의
자문회의	10. 23	사회복지학 교수 2인	• 연구결과 공유 및 정책제언 자문

### 3 연구의 범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육아도우미”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행직무는 부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집 또는 외부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 부모에게 아이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듣고 숙지하는 일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sup>

▣ 표 I-3-1 ▣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수행직무

- 부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집 또는 외부에서 아이들을 돌본다.
- 부모에게 아이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듣고 숙지한다.
- 문제 발생시 연락할 연락처, 부모가 돌아오는 시간 등을 확인 한다.
-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식사, 놀이, 수면, 배변 등 아이의 일상적인 활동을 돕는다.
- 부모에게 아이를 인도하고 업무를 종료한다.

자료: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http://www.work.go.kr/constJobCarpa/srch/jobInfoSrch/work.do?jobNm=11222\(2018. 6. 20. 인출\).](http://www.work.go.kr/constJobCarpa/srch/jobInfoSrch/work.do?jobNm=11222(2018. 6. 20. 인출).)

한편, 국제내니협회는 내니(Nanny)를 개인 가정 내에서 일하는 “보육전문가(child care specialist)”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분되는 개념으로 베이비시터(Babysitters), 오 페어(Au Pairs), 부모도우미(Parents' Helpers), 보모(Nursery Nurses)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표 I-3-2 ▣ 국제내니협회 가정내 육아도우미 종류 및 정의

구분	내용	우리나라와 비교
내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에 고용되어서 동거하거나 또는 출퇴근함</li> <li>• 아동보호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가사에 업무 국한</li> <li>• 일정한 교육은 없으나, 경험이 풍부</li> <li>• 주 40~60시간 정도 일하며, 지도 감독 없음</li> <li>• 일반적인 내니 외에 Newborn Care Specialists, Sleep Trainers, Temporary Nannies, Multiples Specialists, Governesses 등의 전문내니 있음.</li> </ul>	입주도우미 등 육아도우미와 유사
베이비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 대한 감독, 후견 및 보호 업무</li> <li>• 종일제 및 시간제로 비정기적으로 고용됨</li> <li>• 교육 및 자격 기준 없음</li> <li>• 제한된 보육경험</li> </ul>	시간제 시터와 유사

4) 한국직업사전, 한국표준직업분류, 육아도우미, [http://www.work.go.kr/constJobCarpa/srch/jobDic/j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Code=4219&jobSeq=6\(2018. 6. 20. 인출\).](http://www.work.go.kr/constJobCarpa/srch/jobDic/j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Code=4219&jobSeq=6(2018. 6. 20. 인출).)

구분	내용	우리나라와 비교
오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으로 가정에서 아이돌보기 및 가사 일을 도우면서 숙식 및 약간의 수당을 지급 받음</li> <li>• 18-26세 사이의 외국인으로 미 국무부 교육 문화국 오페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최대 24개월 동안 지낼 수 있음</li> <li>• 오페어는 제한된 보육서비스(하루 최대 10시간, 주당 45시간)를 제공하여 호스트 가정생활에 참여함</li> <li>• 3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오페어 이용할 수 없으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200시간 이상의 육아경험이 있는 자만 배치 가능</li> <li>• 보육 경험여부 및 교육 기준은 일정치 않음</li> </ul>	
보모 (nursery nu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가정에 고용되며 입주 또는 출퇴근 가능</li> <li>• 아동보호 관련 교육과 준비, 아동보육 및 교육협회 (Children's Care and Education, CACHE)* 자격증시험에 합격해야 함</li> <li>* 과거명칭은 국가보육교사시험위원회 국가시험 (National Nursery Examination Board Certificate, NNEB)</li> <li>• 업무는 아동보호와 이에 관련된 가사 일에 국한</li> <li>• 주 50~60시간 정도 근무</li> </ul>	
Parents' Help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한 부모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가정에 종일제로 고용되며, 입주 또는 출퇴근 가능</li> <li>• 아동보호 및 가사일 담당. 다만, 부모는 도우미에게 잠시 동안만 자녀를 맡길 수 있음.</li> <li>• 보육경험 제한 없음</li> </ul>	파출부, 가사도우미와 유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3b).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의결서, p. 7; 국제내니협회 홈페이지, A Nanny for Your Family, <http://nanny.org/resources/families/a-nanny-for-your-family/#what>(2018. 6. 20. 인출)참고하여 수정·보완.

본 연구에서는 육아도우미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며, 아이의 가정 혹은 본인의 가정에서 전일이나 시간제로 아동을 돌보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즉, 가사일을 함께 하더라도 아이를 돌보는 비중이 좀 더 많다면 본 연구에 포함한다. 다만, 산후도우미의 경우 특정기간(산후 1~2개월)에 한하여 이용하고, 산모를 케어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용동기와 비용, 관련 자격증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II

## 연구의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2. 가정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3.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입법 동향





## II. 연구의 배경

### 1 선행연구 검토

#### 가.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선행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민간 육아도우미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육아도우미를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연구에서 사용된 유사 용어로는 아동돌봄도우미, 육아돌보미, 베이비시터 등이었다. 각 연구에서 사용한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돌봄도우미의 의미는 “자녀 양육 관련 교육을 받은 자가 육아 지원에 필요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강일규·김기홍·변숙영·김덕기, 2008: 17-18), 육아돌보미는 “가정에서 영유아 돌봄을 주 업무로 하는 육아지원인력을 포괄”하는 자로 보았고(최윤경·장혜진·민정원·배운진·송신영, 2014: 37), 베이비시터는 “아동의 가정에서 그 가정의 아동만을 보육하는 방문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통칭”한다고 보았다(서문희·신나리·이정원·이세원, 2007: 17). 각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는 상이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육아도우미와 유사하다고 보고 ‘육아도우미’라는 틀 안에서 분석하였다.

장혜경·김영란·김필숙(2008)의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협동연구로 수행한 연구로 아동돌봄도우미의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경제적 지원방안, 인력 현황 및 관리방안, 사회적 지원체계 등을 각 세부주제로 다루었다. 세부 연구 중 첫 번째인 아동돌봄도우미의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하루 시간대별 돌봄형태와 유료 가정보육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장혜경·김영란·서문희·김용희, 2008: 83-84).

이 연구에서는 자녀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재가돌봄서비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고 서비스의 비용 다양화 및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장혜경 외, 2008b: 136).

두 번째,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연구는 원종학·전병힐(2008)이 장혜경 외(2008b)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선택 행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설보육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보육형태에 따른 경제적 형평성 차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시설이 확충되기 전 과도기에는 가정에서 돌볼 때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급으로 일부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원종학·전병힐, 2008: 181).

세 번째,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는 1996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신문 및 방송기사를 분석하고 전국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50개, 아동돌봄도우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강일규·김기홍·변숙영·김덕기, 2008: 6). 강일규 외(2008)는 과거 친인척의 지원에서 최근 아동돌봄도우미를 통한 아동돌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정책 및 법규를 정립하여 도우미 자격을 전문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함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강일규 외, 2008: 205-207).

서문희 외(2007)의 연구는 영리 및 비영리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베이비시터 업체 93개소, 베이비시터 358명, 이용자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서문희 외, 2007: 2). 관련 법제도로 「부가가치세법」, 「직업안정법」등을 검토하고(서문희 외, 2007: 30)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베이비시터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가정내 보육서비스에 대해 검토하였다(서문희 외, 2007: 6-7).

김소영·장혜경·김영란·선보영·조윤주(2013)의 연구는 민간 베이비시터 인력 소개업체 123개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자, 베이비시터, 사용자, 교육담당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및 인력과 서비스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 파악 및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김소영 외, 2013: 5-6). 특히 민간 베이비

시터 및 자녀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률과 제도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 「직업안정법」을 살펴보고 국외사례로 영국 교육기준청에 의무로 등록되고 관리를 받는 ‘가정보육모’와 노동법규 적용을 받는 홍콩의 가사도우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관리감독 및 관련 법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김소영 외, 2013: 5). 또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다.

최윤경 외(2014)의 연구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국내 근로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근로조건 개선 및 육아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256명과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해 본 영유아부모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와 영유아부모 각각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최윤경 외, 2014: 요약 1-2).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중국동포 대상 지원 정책이 발전해온 배경으로서 외국인대상 방문취업제 도입을 언급하며(최윤경 외, 2014: 53), 그에 따른 제도변화를 살펴보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최윤경 외, 2014: 82).

## 나.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서비스 운영 및 이용 실태

다음은 민간육아도우미 소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이용 부모를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육아도우미 운영과 이용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민간 육아도우미 운영 실태

강일규 외(2008: 138)연구에서 아동돌봄도우미 소개업체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종일제 상근직은 5~10명 이내가 54%로 많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42%, 유료 직업소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52%로 매우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신규교육은 98%가 진행하고 평균 37시간 교육하며 주로 자체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보수교육은 73.5%가 진행하여 대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시간은 충분하지 못하고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제공 또는 공동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강일규

외, 2008: 140-141, 143). 도우미의 임금은 3시간당 2~3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종일제는 9~12시간 근무에 3~5만원 미만 수준이 50%정도였다(강일규 외, 2008: 141).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64%였고, 도우미는 46%정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험단체 가입은 94%정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강일규 외, 2008: 142). 평균 돌봄 서비스 시간은 59시간, 경력자는 104시간으로 차이가 컸고 서비스 제공 대상은 취업모가 60.3%로 많았다(강일규 외, 2008: 142).

김소영 외(2013: 64) 연구에서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등록된 베이비시터가 10명 미만인 업체가 53.6%로 많았고 소개 건수가 월 1~5건 미만인 경우가 다수였으며, 주된 업무는 아이돌봄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희 외(2007: 60)의 연구에서도 대표자 1명이 운영하는 경우가 73.1%, 2인인 경우가 12.9%로 영세하였으며, 상근직 6명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교육은 평균 14시간이나, 업체에 따라 3~40시간까지 그 편차가 컸으며(서문희 외, 2007: 96), 2013년 연구에서도 신규교육은 61.8%가 진행하나 5시간 미만인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40시간 이상은 29.3%정도였다(김소영 외, 2013: 58-59). 보수교육을 실시한 업체는 41.5%로 연 2~6회 미만 실시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해당 업체에서 교육을 진행하였다(김소영 외 2013: 61-62). 시간당 급여액 평균은 7,833원이었고 아이돌봄과 가사를 병행하는 경우의 평균 급여가 약 2,000원 가까이 더 많았으며,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33.3%로 그 중 상해보험가입이 61.8%로 가장 많고, 4대보험 가입률은 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김소영 외, 2013: 64-65).

## 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장혜경 외(2008b)의 연구에서 유료가정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시설에 보내기에 어린 연령 때문으로 응답하였고, 시설과 유료가정돌봄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근로시간과 맞지 않는 시설이용 시간 때문으로 응답하여 자녀연령과 부모의 근로시간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장혜경 외, 2008b: 111-112). 특히 유료 가정돌봄 중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베이비시터의 이용 시간, 비용, 양육방식 등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 수 이상이나, 업체의 입회비와 교육내용, 베이비시터 전문성과 신원보증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외, 2008b: 12). 유료가정돌봄 월평균 이용비용 중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16만 7천원, 베이비시터 66만 9천원이고 월 최대비용은 아이돌보미 40만원, 베이비시터 100만원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장혜경 외, 2008b: 116). 현재 이용하는 베이비시터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58%로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는 베이비시터의 학력과 연령보다 자격증이 베이비시터를 선택할 때 더 필요한 정보로 응답하였다(장혜경 외, 2008b: 118-119, 125).

강일규 외(2008)의 연구에서 아동돌봄도우미가 48%가 종일제로 활동하여 향후 전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강일규 외 2008: 144), 김소영 외(2013)의 연구에서도 베이비시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53.7%로 높았고 정기 이용의 경우 종일제 이용비용이 높아 장시간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김소영 외 2013: 51). 특히 자녀가 3세 미만(64.5%)의 경우와 취업모(62.6%)인 경우 정기적 이용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7: 120). 1회 평균 5.3시간, 한달 평균 11회, 한달 평균 66.6시간 베이비시터를 이용하였는데, 비영리기관에 비해 영리기관이 한달 총 이용시간이 92시간으로 높았으며, 3세 미만과 취업모가 약 82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7: 120).

최윤경 외(2014)의 연구에서 육아돌보미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한국인 도우미를 이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비용과 가사도우미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외국인 도우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외, 2014: 332-333).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취업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해, 비취업모의 경우 가사분담과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주로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외, 2014: 281).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소개 업체나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하기 어렵거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했고(최윤경 외, 2014: 260),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자녀 양육과 더불어 자녀의 애착형성에도 도움을 주나 언어발달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최윤경 외, 2014: 317). 육아돌보미 첫 고용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5개월 정도 이용하며 12개월 미만인 경우도 많아 영유아시기에 중요한 안정적인 돌봄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최윤경, 2014: 315).

원종학·전병힐(2008)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저연령일수록, 어머니가 고연령일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졌고 가구 내 추가 돌봄 지원인력이 있거나 5세 이하 유아가 더 있을 때는 유료가정돌봄 서비스 이용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종학·전병힐, 2008: 101). 또한 서비스 비용과 이용 확률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시간 당 이용비용이 증가하고 아동 연령이 증가할 때 이용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구소득과 비례하여 유료가정돌봄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층에서 유료가정돌봄 서비스를 약 3.5시간 더 이용하였다(원종학·전병힐, 2008: 101).

이상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민간 육아도우미를 제공하는 업체가 영세하고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용 비용이 공공 서비스보다 높더라도 기관을 이용하기에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부모의 업무 시간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아와 취업모의 경우 긴 시간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믿을만한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육형태에 차등이 발생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민간 육아도우미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 다. 민간 육아도우미 제도 문제 및 개선방안

다음은 민간육아도우미에 대해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살펴본 연구들이다. 장혜경 외(2008a)는 기존의 보육정책이 시설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 가정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함을 지적하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선택권 보장의 측면에서 아동돌봄도 공적지원의 체계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정 내 아동돌봄 지원 제도화를 제안하였다(장혜경 외, 2008a: 187-188). 또한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장 핵심적 요소 이므로 양성과정부터 시작하여 자격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장혜경 외, 2008a: 188). 공적 차원의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

해 나가며 더불어 민간 서비스 역시 질 관리를 위해 민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장혜경 외, 2008a: 189).

현재까지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는 민간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소영 외(2013)는 민간 베이비시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영세한 업체 규모와 표준화된 교육훈련의 부재, 낮은 임금과 불명확한 근로조건 계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김소영 외, 2013: 76).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방안으로 단기에는 양성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확대하며, 중장기에는 공인 자격 요건을 마련하고 점차 민간사업을 공공 아이돌봄사업과 동일한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김소영 외, 2013: 94-95). 서문희 외(2007)의 연구에서도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육도우미 제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와 인증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갱신하고 매월 집단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하였다(서문희 외, 2007: 210-211).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하여 위탁 운영 및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서문희 외, 2007: 213, 216).

최윤경 외(2014)는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육아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고 이 중 중국동포 돌보미를 많이 이용하나(최윤경 외, 2014: 27), 이에 대한 인력 수급 절차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공적영역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최윤경 외, 2014: 370).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해 본 영유아부모 259명중 82.7%가 육아도우미의 고용 제도화를 원하였고 제도화로 인한 역할 및 절차 준수에 대한 책임도 74.5%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최윤경 외, 2014: 282-284). 특히 신원이 불명확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부모의 불안감과 급여,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불만족하는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하였다(최윤경 외, 2014: 333). 따라서 고용의 제도화를 통해 육아돌보미의 신원보증, 교육 및 자격 부여, 채용 및 계약과정의 관리 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최윤경 외, 2014: 376).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입장에서도 급여와 삶의 만족도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체류가 보장될 때 한 가

정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외, 2014: 164).

이상의 연구에서는 양성부터 자격관리, 교육훈련 등을 체계화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공적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고용과 계약이 안정화되면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육아도우미와 부모 쌍방 간에 만족도 향상과 아동돌봄에 대한 공적 관리가 공고해질 것을 기대하였다.

## 2 가정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 가. 아이돌봄지원사업<sup>5)</sup>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sup>6)</sup> 아이돌봄서비스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이었으나,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정 내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비용을 지원받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sup>7)</sup> 도입 시에는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였으나, 2013년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부터의 영아돌봄서비스(보육교사형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하였다.<sup>8)</sup>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써 신청 시 자격요건별 가점제를 통해 취약계층에 우선 제공된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은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이 있는 가정 등 입증가능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게 적용되며, 전업주부와 같이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양육관련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해서 지원이 불가

5) 이하의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2018. 6. 23. 인출)와 여성가족부(2018)의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책자, pp.49-66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6)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8)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능하며, 정부지원시간에 제한을 두어 이 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전액 이용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소개

가) 돌봄 범위

아이돌보미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 내용이 다소 상이하하다(표 II-2-1 참조). 서비스 유형 중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만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유형에서 가사활동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가사의 범위는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로 명시되어 있다. 아이돌보미는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에 대해 매일 이용자 가정에 구두 혹은 수첩이나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표 II-2-1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
시간제 • 만3개월~만12세 대상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정부지원 연600시간 이내	일반형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시간당 7,800원
	종합형	• 일반형 외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 시간당 10,140원
종일제 • 만3개월~만36개월 대상 • 1일 4시간 이상 신청 • 정부지원 연120~200시간 이내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 활동 전반 • 시간당 7,800원(월 156만원/200시간 기준)
	보육 교사형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당 10,140원(월 171만6천원/200시간 기준)

자료: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use/part1.go>, ~/full1.go에서 2018. 6. 23. 인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위의 기본적인 업무 외에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공공복지서비스 종사자로서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용가정의 가족문제에 대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갈등개선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는 경우 읍·면·동과 지자체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나) 이용료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단가와 이용요금이 책정되어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나, 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처리한다. 소득 유형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85%, 120% 이하 가구에 따라 구분된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기본단가 7,800원 중에서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최소 2,340원에서 최대 6,240원까지 정부 지원된다.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월 200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액이 156만원일 때 최소 월54만6천에서 최대 월117만원까지 정부지원금이 적용된다. 동일 시간대에 형제·자매를 돌보는 경우, 아동의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 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복지포([www.bokjiro.or.kr](http://www.bokjiro.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판정이 이루어지고, 정부지원 결정여부가 통지되면 신청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http://idolbom.go.kr))에 등록한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입금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가구, 즉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고,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2) 아이돌보미 활동 및 교육

### 가) 아이돌보미 활동 방식 및 절차

#### (1) 아이돌보미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17년 기준 전국의 222개소 서비스제공기관(주로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20,878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희망자가 거주지역 기관의 수시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가 있다. 활동 신청서에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만 5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업 취약 유형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 (2) 아이돌보미 선발

아이돌보미 신청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에 대해 심사하여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면접위원은 보육정보센터 소장 또는 보육 관련 전문가, 해당 시·군·구 사업 담당자 등 전문가 2인 이상과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로 구성된다. 면접 시에는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을 고려한다. 면접에 통과한 아이돌보미는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가 포함된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은 면접 통과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결격사유를 시·군·구청에 공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다음 <표 II-2-2>와 같은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활동할 수 없다.

■ 표 II-2-2 ■ 아이돌보미 활동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책자, p.49

### (3) 아이돌보미 교육

아이돌보미로 선발되면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수료하고 아이돌보미로 홈페이지 등록,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치면 활동할 수 있다.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여 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20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받는다.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현장실습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습은 총 10시간으로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에 방문하여 진행된다. 이때 현장실습 이수자와 현장실습을 지도한 활동 돌보미에게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기본과정 및 특화과정)을 의무적으로 매년 이수해야 활동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아이돌봄지원법 제7조 근거). 만일 아이돌보미가 폭행, 유기, 절도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자격 중지 및 취소할 수 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 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 제33조). 특히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자격 중지의 원인이 되고, 1년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이용가정과 연계가 중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보수교육은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2-3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대상 구분	교육시간	교육기관
양성 교육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서비스 제공기관 면접 통과자)	80시간	시·도 지정 양성교육기관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제공기관 면접 통과자)	30시간	
	'12년 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과정 중 아이돌보미 필수과목 연계과정	아이돌보미 필수과목 + 기존 직업훈련과정 과목	새로일하기 센터
보수교육	학동기 아동 돌봄교육 이수희망자	20시간	시·도 위탁교육기관
	영아 돌봄 특화교육 이수희망자	20시간	
	개별 보수교육 과정	10시간	서비스 제공기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3b).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의결서, p.4.

### 나) 활동수당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한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2018년 아동 1인 돌봄 기준으로 시간제 일반형 돌봄은 시간당 7,800원, 시간제 종합형 돌봄은 10,140원이다. 월 200시간 기준으로 영아 종일제 돌봄은 월 156만원, 보육교사형 돌봄은 월 171만6천원이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가산하여 지급한다.

활동수당 외에 근속적인 활동에 대해 활동지원비가 있다. 3개월 이상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제공시 활동 3개월부터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1년 이상 시간제 활동자에 대해 월 10만원 한도로 활동수당의 10%를 가산한다. 아이돌보미의 활동기간 산정은 시간제 4개월을 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해 4대 보험을 관련 법령의 가입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준에 따라 돌보미의 최소 활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동에 대한 배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이돌보미 상해 보험은 4대 보험으로 대신하되, 4대 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해 보험이나 별도 보상 대책(아이돌보미 개별 가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도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10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도서·벽지 등 활동기피 지역의 경우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료 기준으로 1일 1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그밖에도 이용자 가정은 최대 2회까지 돌보미 면접이 가능한데, 면접비 1만원을 돌보미에게 지급해야 한다.

### 다)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시·도 지자체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보고·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보수교육 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 활동 상황을 조정하고 전화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돌보미에 대한 적정성과 만족도(친절성, 시간 준수여부, 안전한 돌봄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사후관리를 한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이론 8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시·도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이돌보미 교육 수료증은 기관장 명의로 90% 이상 출석시 발급된다. 다음 표는 2018년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61호)의 주요 내용이다.

표 II-2-4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총 80시간) 시간표

구분	시간	교육내용
기본소양교육	5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해 - 돌보미 역할, 직업윤리, 자세
	6	다양한 형태의 가족 - 다문화, 한부모, 장애아 가족의 이해
	2	성 인지 교육
	8	아동 건강과 안전 관리, 응급처치 방법 및 실습
	2	아동인권과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9	아이돌보미 활동의 실제 - 부모면담 방법, 아동관찰과 돌봄일지
발달 단계별 아이돌봄서비스 교육	16	영아기 발달의 이해, 수유, 베이비마사지, 놀이지도, 일과 계획
	16	유아기 발달의 이해, 기본생활습관 지도, 놀이 및 인성지도
	16	학령기 발달의 이해, 학교생활의 이해, 문화·매체활동 지도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책자, p.132-133의 내용을 요약함.

보수교육은 모든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에 방문하여 기본과정 및 특화과정을 각 8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기본과정 총 8시간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에 관한 2시간의 온라인 동영상 교육이 포함되며, 아동의 안전관리교육도 필수내용이다. 다른 교육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업지침서에서 제시하는 교육내용은 직업윤리교육, 아이돌보미 소진 예방, 아동심리 이해, 부모상담, 놀이지도, 놀이교구 제작 및 활용 등이 있다. 특화과정은 영아기과정, 유아기과정, 학령기과정, 발달에 따른 놀이과정(신체·인지언어·정서사회성 발달놀이) 중 1개 과정을 총 8시간 이수하도록 하였다.

## 나.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sup>9)</sup>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이 육아도우미로서의 직업 전문성과 자질을 함양하여 안정된 취업활동을 도모하게 하고, 영유아 자녀의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육아도우미의 신원과 전문성을 확인함으로써 안심하고 육아를 맡길 수 있도록 외국인 육아도우미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다. 2013년 6월부터 시작된 관련 제도는 크게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과 함께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보 조회 서비스, 비자 발급 지침으로 살펴볼 수 있다.

### 1)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서비스

법무부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를 양성화시켜 육아도우미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민재단에 위탁하여 2013년 6월부터 외국인 육아도우미 전문 교육 과정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동포 포함)에게 적합하게끔 한국의 양육 관련 문화와 육아 실무 지식 등을 교육함으로써 육아도우미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다. 외국인 육아도우미 양성 교육은 현재 47기 육아도우미 수료까지 이루어졌다(2018년 6월 기준).

#### 가) 교육대상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의 대상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동포포함) 중 육아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이다.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거주(F-2), 결혼이민(F-6), 영주(F-5)이 해당된다. 교육자격과 관련해서 필수 확인사항으로는 방문취업(H-2)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고, 취업개시신고 후 2년 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근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수강하려는 외국인은 처음 수업 참여시 외국인 등록증과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하기

9) 이하의 내용은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http://www.kisfbs.com>(2018. 6. 18. 인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위해서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전까지 한국이민재단으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시행되는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신장, 체중, 흉위, 혈압, 시력, 청력, 결핵, 매독, 간염, 정신질환, 마약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로 방문취업(H-2) 자격자 검사 내용에 준한다.

#### 나) 교육방식

교육은 매주 일요일 8시간씩(9~18시) 5주간 이루어지며 총 40시간 교육을 수료한 경우 법무부가 인정한 (재)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비는 본인부담 총 25만원으로 교재비는 별도이다. 교육생은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신청과 전화 및 방문접수로도 가능하다. 강사진은 유아교육학 석·박사 전공자들과 현직 어린이집 원장, 출입국정책 및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교육과정

교육은 총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내용은 영유아 발달, 영유아 놀이지도,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관리, 육아 도우미의 역할과 의무 등이고, 영아 목욕시키기와 놀잇감 만들기 등은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양육 문화, 한국 내 체류, 고용절차, 기초 법질서 등의 맞춤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2)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보 조회

법무부는 서로 신뢰하며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 이용을 위해 구인 희망자 또는 고용주가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수료자에 대한 합법체류,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폭력 전과와 신분 세탁 경력이 있는 중국 동포의 육아도우미 취업사례 적발로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시행되었다.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1) 육아도우미 고용가능 체류자격 소지 여부, 2) 해당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합법체류자 여부, 3) 주요 질병대상자 여부, 4)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여부이다. 정보조회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내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보 조회’를 통해 구인자(부모)가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위해서는 조회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해당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표시된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한 후에 조회가 가능하다.

### 3) 외국국적동포의 비자발급 관련 제도 개정

법무부에서는 국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 6월 외국국적동포의 비자발급 관련 제도를 개정하였다. 방문취업(H-2)자격 외국인이 육아도우미 교육 40시간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고용주 변동 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하는 경우 재외동포(F-4)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취업개시 신고 시 만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에 취업한 상태여야 한다.

중국과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정해진 기한에 단순노무 위주의 38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다. 반면 재외동포(F-4) 비자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취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에게 유인 혜택을 준 것이다. 이용 부모들 역시 비자 만기로 인해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4) 외국인 육아도우미 관련 기타 사항

이외에도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자들의 소개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도우미 구인구직란을 개설하여 취업 연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인자(부모)와 교육을 수료한 구직자가 근무지역, 근무형태(입주형/출퇴근형), 연령대, 고용기간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편리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다.

외국인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체류자격에 따라 별도의 고용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비자일 경우 고용계약

서 작성 외에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방문취업(H-2) 비자일 경우 외국국적 동포 특례고용 절차에 따라야 한다.

먼저 고용주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인신청을 한 후, 내국인 고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외국인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를 신고해야 한다. 퇴직 시에는 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나 출입국사무소에 15일 이내 고용변동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육아도우미 고용절차 관련해서 구인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로, 구직자의 출입국(비자) 관련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서 할 수 있다.

### 3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입법 동향

#### 가. 제·개정 논의의 배경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5월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 육아도우미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가 미비하여 근무태만, 아동학대 등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①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감독 근거 마련, ②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③ 외국인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 제고, ④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마련 등을 여성가족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국민권익위원회, 2013a), 이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관련 법안을 논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중 2018. 2월 기준 현재 이행된 것은 한 건도 없다.

표 II-3-1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관련부처	조치기한
1.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감독 강화	1-1.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감독 근거 마련	법 적용 대상 베이비시터 범위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등	여성가족부	2014. 5.
	1-2.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 質 제고	민간 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 마련	아이돌봄 지원법 등	여성가족부	2014. 5.
	1-3. 외국인 베이비시터 質 제고	외국인 베이비시터의 교육이수의무 부여	출입국관리법 등	법무부, 여성가족부	2014. 5.
2.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소개업체 신고·등록 의무 부여	아이돌봄 지원법 등	여성가족부	2014. 5.
		서비스제공기관 관련 조항이 소개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 정비	아이돌봄 지원법 등	여성가족부	2014. 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3b).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의결서. p. 15.

## 나. 육아도우미 법적 근거 마련

육아도우미는 주로 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으므로 별도의 자격이나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육아도우미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소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특정 제도권 내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또는 기존 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13. 12. 4. 이이재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아이돌보미를 육아도우미로 용어를 변경하고,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은 아이돌보미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sup>10)</sup> 또한, 육아도우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육아도우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여 육아도우미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일부 육아도우미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개

10) 이하의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3. 12. 4, 이이재의원 대표발의)을 요약·정리한 것임.

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육아도우미를 제도권내로 편입시켜 관리함으로써 부모들의 불안·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동 법안은 기존의 아이돌보미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육아도우미를 이용자와 연결시켜주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그에 대한 폐해는 여전히 상존하며, 법무부 관할의 외국인 육아도우미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간 소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동 법안은 폐기·만료되었다.

#### 다.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규제

2016. 8. 9.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연회비 및 소개비 문제,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 업체의 연락 두절 등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므로 「아이돌봄 지원법」의 적용대상에 민간 베이비시터 및 소개업체를 포함시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소개업(일명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하여 법적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발의되었다.<sup>11)</sup> 이에 동 법안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소개업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등록, 취소, 폐업신고, 청문, 벌칙,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시터 인력을 선발해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소개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및 개선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동 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대다수의 소개업체는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 법안의 서비스 소개업자의 결격사유, 거짓정보제공금지, 질문 및 검사 등과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과 비교·분석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특별법적 성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1) 이하의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8. 9. 송희경의원 대표발의)을 요약·정리한 것임.

## 라. 육아도우미 근로조건 개선 등

2016. 12. 23.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결정을 통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노동3권 및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근로기준법」 개정과 가사근로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17. 6. 16. 서형수 의원과 2017. 9. 11. 이정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발의한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sup>12)</sup> 동 법안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일치하는데, 동 법안들은 “가사서비스”를 “청소, 세탁, 주방일 등 일반가사활동, 산후관리, 가정보육, 가족돌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가사 관련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사업으로 진행되는 “산후관리” 부문의 가사근로자의 경우 공공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 법안에서는 이 부문을 제외한 민간직업소개소의 알선 또는 직접거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 영역의 비공식부문만 해당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sup>13)</sup> 입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최소 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가사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가사근로자에게 주되, 구체적 일수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이하의 내용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2017. 6. 16,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2017. 9. 11,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정부발의)을 요약·정리한 것임.

1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443호, p. 16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표 II-3-2 입법안의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등 특혜

구 분	근로기준법 등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반)가사근로자	입주가사근로자
임금	• 근로계약 명시 (최저임금)	• 근로계약 명시 * 이용자 지불요금 중 장관이 고 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 (제 공기관)	〈좌동〉
근로 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근로계약 명시	• 근로계약 명시 *(예외적) 근로시간산정 간 주: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서면으로 계약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
최소근로 시간		• 주 15시간이상 보장 노력의무 (제공기관)	〈좌동〉
휴게 시간	• 30분 이상/4시간 or 1시간 이상/8시간	• 30분 이상/4시간 or 1시간 이상/8시간, * 3자합의 시 예외가능. 단, 평균 10분이상/1시간 (제공기관, 이용자)	• 매일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이용자)
연차유급 휴가	• 연간 80%이상 출근 : 15일 • 연간 80%미만 출근 : 1일/1개월 개근	• 「근로기준법」 적용 (제공기관)	〈좌동〉
기 타		• 근로기회 균등배분 노력의무 (제공기관)	• 근로시간외 근로지시 금지 (이용자) •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제 공 노력의무(이용자)

자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17. 9).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443호, p. 29.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가사근로자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입법에 앞서서는 이용자나 제공기관(소개업체 등)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III

## 국내외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정책

1. 국내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현황
2. 해외사례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Ⅲ. 국내외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정책

이 장에서는 국내외 민간 육아도우미 정부정책 및 민간에서의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며, 다만, 민간에서 활발하게 교육 및 자격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수치는 없는 상황이므로, 민간을 통한 현황 파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해외의 경우에는 프랑스, 호주,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파악하여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1 국내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현황

##### 가. 근거 법률

###### 1) 노동관계법(고용노동부)

현행법상 노동관계 법령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조). 동법은 최저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여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동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동법 제3조),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 등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동법 제17조).

Ⅱ 표 III-1-1 Ⅱ 근로조건 명시사항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유급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7.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8.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9. 퇴직에 관한 사항
10.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3.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1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5.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6.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18.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자료: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1&cciNo=2&cnpClsNo=1>(2018. 10. 1. 인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한편,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50조). 연장근로 역시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동법 제53조 및 제56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있어서 산정기준

이 된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동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과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遺産)·사산(死産)휴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동법은 적용범위를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동법 제11조),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와 같이 개인 가정에서 가사에 종사하는 자는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육아도우미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법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각종 휴가 및 근로수당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법 역시 가사사용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동법 제3조)에서도 가사사용인 내지 가구 내 고용활동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육아도우미는 이에 대한 보장 역시 받지 못하고 있다.

## 2)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동법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사업과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육아도우미를 소개하는 업체는 동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며, 인터넷상 육아도우미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동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한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동법 제19조 제1항),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표 III-1-2】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
6. 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
7. 기타 사업소의 부처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자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2018년 기준으로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이며,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이다. 한편,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

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이에 따라 소개업체를 통해 육아도우미를 소개받은 경우 소개업체에서는 부모에게는 육아도우미 월급의 10~30%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는 회비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요금 부담이 되자, 최근에는 육아도우미를 구하려는 부모와 육아도우미를 인터넷 상에서 연결시켜주는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23조).

■ 표 III-1-3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li> <li>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li> <li>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li> <li>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li> <li>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li> </ol>
---

자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3) 아이돌봄 지원법(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동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데(동법 제2조 제3호), 동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제11조 이하)과 아이돌보미의 자격(제7조)을 제한하고 있어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민간 육아도우미도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법리적으로 동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14) 자세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제2장 제3절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입법 동향 참조.

업체와 직업정보제공업체와의 관계문제, 중간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지인이나 친척 소개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의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나. 민간에서의 육아도우미 자격 관리

### 1) 민간자격 관리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로 구분되며, 민간자격 제도는 민간자격공인제도와, 민간자격등록제도로 나뉘어져 있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민간자격공인제도는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제도”이며, 민간자격등록제도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민간자격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의무 등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8).

▮ 그림 III-1-1 ▮ 우리나라 자격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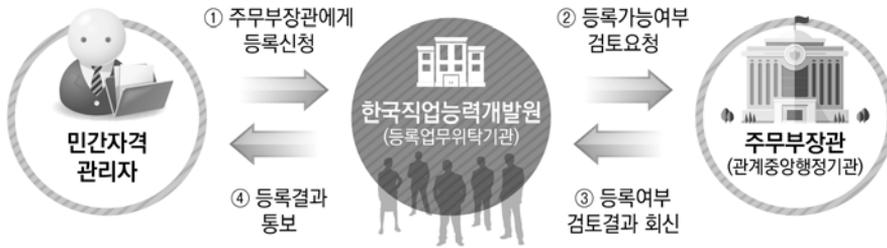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2017년 제2차 민간자격관리자 연수자료, p.8.

민간자격등록제는 민간자격 및 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보제공, 금지분야 및 결격사유가 있는 민간자격기관 양산 예방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sup>15)</sup> 민간자격 등록 절차는 다음 [그림 III-1-2]와 같다. 민간자격 관리

15)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민간자격등록제도, <https://pqi.or.kr/int/intRegSysView.do>(2018. 6. 14.인출).

자가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주무부장관이 등록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등록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다.<sup>16)</sup>

|| 그림 III-1-2 || 민간자격 등록절차



자료: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민간자격등록제도, <https://pqj.or.kr/int/intRegSysView.do>(2018. 6. 14. 인출).

민간자격제도에 해당하는 공인민간자격은 2017년 11월 기준으로 99개 종류가 있으며, 등록민간자격은 28,271개, 사업내 자격은 137종목이 있다. 육아도우미에 해당하는 베이비시터 자격의 경우 등록민간자격에 해당한다.

|| 표 III-1-4 || 우리나라 자격제도 종류 현황(2017. 11)

구분		종목 수	관련법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국가전문자격	527개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전문자격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공인중개사 등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173개 직종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탁시행)	인터넷 정보검색사, TEPS 등
	등록민간자격	99개 (61개 기관) 28,271개 (6,630개 기관)	자격기본법 (부·처·위원회)	베이비시터, 부모교육지도사, 바리스타 등
	사업내 자격	68개 사업체 137종목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INNOVATOR삼성SDS(주) 기관설치사(현대중공업(주))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2017년 제2차 민간자격관리자 연수자료, p.8.

16)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민간자격등록제도, <https://pqj.or.kr/int/intRegSysView.do>(2018. 6. 14.인출).

## 2) 베이비시터 자격증 현황

### 가) 자격 발급

현재 국내에서 발급하는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국가자격이나 공인된 민간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등록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자격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민간자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sup>17)</sup> 베이비시터 자격증 중 ‘등록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고유한 자격증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그 외 별도의 개인·법인·단체 등 민간업체에서 등록하지 않고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등록민간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III-1-5>와 같다. ‘등록민간자격증’과 ‘민간자격증’ 모두 기본과목 이수와 필기시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되는 기관에서 차이가 있다.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지 않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시험을 시행한 후,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절차이다.

■ 표 III-1-5 ■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 분류

발급종류	등록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공통점	베이비시터에게 필요한 기본 과목 이수 후, 1차 필기시험을 치른 뒤, 합격자는 2차 실무교육을 이수함.	
차이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개인·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기관에 등록

주: 표 III-1-6의 각 자격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증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정리하였음.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베이비시터’와 관련하여 등록이 된 기관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III-1-6>과 같다. 2008~2013년도까지 총 12개의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 발급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가 연결되지 않는 2 곳을 제외하고 정리하면 총 10개의 기관이다.

17)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pqi.or.kr>, 민간자격소개-민간자격센터(2018. 6. 14. 인출).

표 III-1-6 베이비시터 자격관리기관 명단

번호	기관명	번호	기관명
1	(주)한국자격중앙협회 (영리법인)	7	한국여성교육개발원 (개인사업체)
2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비영리법인)	8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비영리법인)
3	한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비영리법인)	9	한국모자복지전문인협회 (현)요양보호사복지협회 (미등기 단체)
4	대한자격개발검정원 (영리법인)	10	(주)행복한타임 (현)행복한평생교육원 (영리법인)
5	한국자격개발원 (영리법인)	11	다사랑평생교육센터 (미등기 단체)
6	다솜홈서비스 (개인사업체)	12	사단법인한국유아체육교육협회 (비영리법인)

자료: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민간자격 검색, <https://pqj.or.kr/inf/qul/infQulList.do>(2018. 6. 14. 인출).

### 나) 자격 관리

〈표 III-1-7〉과 같이 등록민간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 모두 각 발급 기관별로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자격 갱신기간 등은 조금씩 상이하다. 자격발급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교육과정과 시험절차 등을 진행하는 여러 공동운영기관이 있는 곳들도 있어 등록된 자격발급기관은 동일하나 교육 절차는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7 베이비시터 자격 발급기관, 운영기관, 합격기준

자격발급기관	공동운영기관	합격기준 및 갱신기간
한국자격중앙협회	한국자격증정보원	1차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실무시험 : 직무교육으로 대체가능. ※ 자격취득일로부터 3년마다 갱신해야함.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한국자격총연합, 한국직업교육원	1차 필기시험 : 두 과목, 60문항,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합격. 2차 실기 : 필기검정 합격자는 실무중심의 2차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 발급.

자격발급기관	공동운영기관	합격기준 및 갱신기간
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	-
대한자격개발검정원	-	-
한국자격개발원	한국인재개발원	1차 필기시험 합격(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후 2차 직무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 ※ 자격취득자는 매 5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야 함(단, 취득 후 최초 유효기간은 3년).
다솜홈서비스	-	교육: 출석률 80%이상 시험: 5과목 100문항, 평균 60점 합격
한국여성교육개발원	한국여성교육개발원, 한국장학진흥원, 한국자격증검정교육원, 한국자격검정평가교육원, 서울여성직업능력개발원, 비전규원격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출석률60%) 온라인 시험(시험성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한국여성인력 개발센터연합	-	필기시험 4과목 40문항 70점 이상 득점시 합격
요양보호사복지협회	-	1차 필기: 2과목, 60문항, 평균 60점 이상 2차 실기: 소정의 실무중심 실기교육 이수 ※ 자격급수 1급, 2급으로 분류
행복한평생교육원	-	필기4과목,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필기 합격 후 2차 직무교육 수료 시 합격

- 자료: 1) 한국자격증정보원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http://koci.co.kr/base/m3/smenu2/menu13.php#regist\(2018. 6. 14. 인출\).](http://koci.co.kr/base/m3/smenu2/menu13.php#regist(2018. 6. 14. 인출).)  
 2) 한국자격총연합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http://www.kqu.or.kr/pc/html/sub3\\_menu\\_1\\_2.php\(2018. 6. 14. 인출\).](http://www.kqu.or.kr/pc/html/sub3_menu_1_2.php(2018. 6. 14. 인출).)  
 3) 한국자격개발원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https://www.kqda.or.kr/CQ/babysitter/regulation.html\(2018. 6. 14. 인출\).](https://www.kqda.or.kr/CQ/babysitter/regulation.html(2018. 6. 14. 인출).)  
 4) 다솜홈서비스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http://www.dasomhappy.com/curri/curri\\_02.php?eq=0\(2018. 6. 14. 인출\).](http://www.dasomhappy.com/curri/curri_02.php?eq=0(2018. 6. 14. 인출).)  
 5)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http://www.vocation.or.kr\(2018. 6. 14. 인출\).](http://www.vocation.or.kr(2018. 6. 14. 인출).)  
 6) 요양보호사복지협회, 베이비시터, [https://motherandbaby.tnaru.com/web/board/board\\_list\\_profilearea\\_d?tbl=product&bcode=6&buff=2\(2018. 6. 14. 인출\).](https://motherandbaby.tnaru.com/web/board/board_list_profilearea_d?tbl=product&bcode=6&buff=2(2018. 6. 14. 인출).)  
 7) 행복한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http://www.happytime.or.kr\(2018. 6. 14. 인출\).](http://www.happytime.or.kr(2018. 6. 14. 인출).)

#### 다) 교육 과목 및 시험

각 자격발급 기관별로 시험과목 및 직무교육의 내용은 상이하였으며, 그중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 한국자격중앙협회와 한국장학진흥원, 한국자격개발원 3개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1-8>, <표 III-1-9>, <표 III-1-10>과 같다. 관련 과목으로는 유아교육, 놀이지도, 심리 및 안전 관련 과목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60점 이상의 점수를 합격선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상황에 따라 교육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표 III-1-8 한국자격중앙협회 시험과목 및 직무교육

기관명	한국자격중앙협회																																		
시험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격기준 과목별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시험과목</th> <th>배점</th> <th>문항수</th> <th>시간</th> <th>출제유형</th> </tr> </thead> <tbody> <tr> <td>영유아교육개론</td> <td>100</td> <td>25</td> <td rowspan="4">1시간 40분</td> <td>객관식</td> </tr> <tr> <td>영유아놀이지도 및 교육</td> <td>100</td> <td>25</td> <td>객관식</td> </tr> <tr> <td>영유아심리</td> <td>100</td> <td>25</td> <td>객관식</td> </tr> <tr> <td>영유아안전관리</td> <td>100</td> <td>25</td> <td>객관식</td> </tr> <tr> <td colspan="4">베이비시터 실무</td> <td>실무</td> </tr> <tr> <td colspan="5">※ 2차 실기 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음.</td> </tr> </tbody> </table>		시험과목	배점	문항수	시간	출제유형	영유아교육개론	100	25	1시간 40분	객관식	영유아놀이지도 및 교육	100	25	객관식	영유아심리	100	25	객관식	영유아안전관리	100	25	객관식	베이비시터 실무				실무	※ 2차 실기 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음.					
	시험과목	배점	문항수	시간	출제유형																														
	영유아교육개론	100	25	1시간 40분	객관식																														
	영유아놀이지도 및 교육	100	25		객관식																														
	영유아심리	100	25		객관식																														
	영유아안전관리	100	25		객관식																														
	베이비시터 실무				실무																														
	※ 2차 실기 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산점 기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가산점 기준(총점)</th> </tr> <tr> <th>5점 가산</th> <th>3점 가산</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1급</li> <li>특수학교 교사</li> <li>유치원 정교사</li> <li>유아교육과 학사이상인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li> <li>영유아 보육시설 근무 경력 5년 이상자</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2급</li> <li>유치원 준교사</li> <li>유아교육과 전문대졸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li> <li>영유아 보육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자</li> </ul> </td> </tr> </tbody> </table>			가산점 기준(총점)		5점 가산	3점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1급</li> <li>특수학교 교사</li> <li>유치원 정교사</li> <li>유아교육과 학사이상인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li> <li>영유아 보육시설 근무 경력 5년 이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2급</li> <li>유치원 준교사</li> <li>유아교육과 전문대졸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li> <li>영유아 보육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자</li> </ul>																											
가산점 기준(총점)																																			
5점 가산	3점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1급</li> <li>특수학교 교사</li> <li>유치원 정교사</li> <li>유아교육과 학사이상인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li> <li>영유아 보육시설 근무 경력 5년 이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2급</li> <li>유치원 준교사</li> <li>유아교육과 전문대졸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li> <li>영유아 보육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 시험이 직무교육 4과목으로 교육 대체 됨.</li> <li>※ 직무교육 이수는 자격증 발급 조건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교육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교육 장소는 각 회차 시험종료일 기준 1주일 전에 공고함.</li> <li>온라인 직무교육 신청 시 희망지역이 명시 됨.</li> </ul> </li> <li>※ 해당 희망 지역의 직무교육신청자가 50인 이하일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인접 시·도로 직무교육장소를 전환하여 실시.</li> <li>직무교육은 합격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직무교육</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과목</th> <th>직무교육내용</th> <th>강의</th> </tr> </thead> <tbody> <tr> <td>베이비시터 실무</td> <td>상담요령, 놀이지도, 유아심리, 신생아돌보기</td> <td>8시간</td> </tr> </tbody> </table>			과목	직무교육내용	강의	베이비시터 실무	상담요령, 놀이지도, 유아심리, 신생아돌보기	8시간																											
과목	직무교육내용	강의																																	
베이비시터 실무	상담요령, 놀이지도, 유아심리, 신생아돌보기	8시간																																	

자료: 한국자격중앙협회 홈페이지, <http://www.kqca.co.kr/edu08/index.php>(2018. 6. 18 인출).

표 III-1-9 한국장학진흥원 시험과목

기관명	한국장학진흥원			
시험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형태: 이론중심, 사례안내</li> <li>■ 수업방식: 온라인 강의(출석률60%)</li> <li>■ 시험방식: 온라인 시험(시험성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li> <li>■ 강의기간: 4주 이내</li> </ul>			
	1	손 유희의 정의 및 지도시 유의점 (인사 손 유희)	16	만2세 영아반 낮잠지도, 유아반 낮잠지도
	2	생활 손 유희	17	영양관리, 건강관리
	3	주의집중 손 유희	18	청결지도, 안전지도(1)
	4	성대모사 손 유희	19	안전지도, 예절지도
	5	웃음 손 유희	20	성교육, 친사회적 행동지도
	6	숫자놀이 손 유희	21	아동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레크레이션 손 유희	22	효과적인 대화법, 나 전달법
	8	이야기 손 유희	23	재미있는 책읽기 어떻게 하나?
	9	막대인형 만들기	24	책읽기의 필요성, 가치
	10	하나의 접기로 다양하게 만들기	25	재미있는 책읽기 전달위한 목소리 연습
	11	표정이 바뀌는 인형 만들기	26	신체부위 발생법
	12	반원으로 움직이는 인형 만들기	27	등장인물에 따른 목소리 연기
	13	입체 동물 만들기	28	아는 만큼 보인다
	14	기본생활, 습관지도 (식사지도, 배변지도)	29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
	15	수면지도, 건강지도	30	책읽기 연습

주: 한국여성교육개발원, 한국장학진흥원, 한국자격증검정교육원, 한국자격검정평가교육원, 서울여성직업능력개발원, 비전규원격평생교육원 모두 동일 과정임.

자료: 한국장학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edu.net/>(2018. 6. 18 인출).

표 III-1-10 한국자격개발원 시험과목

기관명	한국자격개발원				
시험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격기준</li> <li>- 1차 필기시험 합격(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후 2차 직무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li> </ul>				
		구분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1차 필기시험		유아교육개론	20	100분
			유아놀이지도	20	
			신생아돌보기	20	
			유아 교육의 실제	20	
			유아심리	20	
2차 직무교육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원격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합격증 발부				

기관명	한국자격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점 기준</li> </ul>	
	3% 가산	2%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1급</li> <li>- 유아교육과 학사이상(졸업예정자 포함)</li> <li>-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 경력 5년 이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2급</li> <li>- 유아교육과 전문대졸 이상(졸업예정자포함)</li> <li>-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경력 2년 이상자</li> </ul>

자료: 한국자격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qda.or.kr/CQ/babysitter/regulation.html>(2018. 6. 18. 인출).

### 라) 자격취득 현황

#### (1) 행복한평생교육원<sup>18)</sup>

행복한평생교육원의 경우 베이비시터 자격을 2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급의 직무내용은 부모를 도와 가정이나 시설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것이고 1급의 직무내용은 부모를 대신하여 가정이나 시설에서 전문적으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함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자격증을 등록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급 자격증에 응시하거나 취득한 사례는 없으며, 2급에 대한 자격취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11 | 행복한평생교육원 자격취득 현황

검정연도	자격등급	검정횟수	접수자수	응시자수	취득자수	합격률
2017	2급	12	123	121	120	99.17
2016	2급	12	73	72	70	97.22
2015	2급	13	135	135	133	98.52
2014	2급	13	225	222	221	99.55
2013	2급	1	15	14	13	92.86
총계	2급	51	571	564	557	97.46

자료: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행복한타임(2018. 6. 21. 인출).

#### (2) (주)한국자격중앙협회<sup>19)</sup>

(주)한국자격중앙협회의 베이비시터 자격의 직무내용은 맞벌이 증가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부모를 위해 영유아의 보육,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

18)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행복한타임(2018. 6. 21. 인출).

19)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주식회사 한국자격중앙협회(2018. 6. 21. 인출).

으로 아이 돌봄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춰 부모를 돕는 것이다. 자격을 등록한 2013년 이후 자격증 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12 Ⅱ (주)한국자격중앙협회 자격취득 현황

검정연도	자격등급	검정횟수	접수자수	응시자수	취득자수	합격률
2017	등급없음	8	130	123	107	86.99
2016	등급없음	8	166	154	139	90.26
2015	등급없음	8	261	231	197	85.28
2014	등급없음	8	64	53	47	88.68
2013	등급없음	2	19	18	17	94.44
총계	등급없음	34	640	579	507	89.13

자료: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주식회사한국자격중앙협회(2018. 6. 21. 인출).

(3)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sup>20)</sup>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에서의 베이비시터 자격은 신생아기, 영유아기, 학령기와 관련한 지식을 토대로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현장에서 보육과 교육 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자격증 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13 Ⅱ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자격취득 현황

검정연도	자격등급	검정횟수	접수자수	응시자수	취득자수	합격률
2017	등급없음	87	1,429	1,429	1,415	99.02
2016	등급없음	58	1,083	1,082	1,062	98.15
2015	등급없음	51	977	976	963	98.67
2014	등급없음	51	1,019	1,019	1,007	98.82
2013	등급없음	22	499	449	445	99.11
총계	등급없음	269	5,007	4,955	4,892	98.75

자료: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사단법인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2018. 6. 21. 인출).

20)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사단법인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2018. 6. 21. 인출).

(4) 한국모자복지전문인협회<sup>21)</sup>

베이비시터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2급은 영유아의 간식, 이유식 만들기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급은 영유아 보호시설 운영, 출장 베이비시터 업무를 직무내용으로 한다. 자격을 등록한 2012년부터 자격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14 한국모자복지전문인협회 자격취득 현황

검정연도	자격등급	검정횟수	접수자수	응시자수	취득자수	합격률
2017	1급	1	5	4	4	100
2017	2급	3	33	33	30	90.91
2016	1급	0	0	0	0	0
2016	2급	4	307	302	292	96.69
2015	1급	0	0	0	0	0
2015	2급	5	478	477	475	99.58
2014	1급	0	0	0	0	0
2014	2급	3	7	7	7	100
2013	1급	1	3	3	3	100
2013	2급	6	11	11	11	100
2012	2급	1	11	6	4	66.67
총계	-	24	855	843	826	-

자료: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한국모자복지전문인협회(2018. 6. 21. 인출).

(5) 한국여성교육개발원<sup>22)</sup>

한국여성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베이비시터 자격의 직무내용은 부모를 대신하여 가정 혹은 다른 공간에서 영유아를 돌보며 간식 및 이유식 준비, 책 읽어주기, 놀이 및 신체활동 지도 등이다. 자격을 등록한 시기인 2011년부터 자격증 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21)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2018. 6. 21. 인출).

22)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inf>,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한국여성교육개발원(2018. 6. 21. 인출).

표 III-1-15 한국여성교육개발원 자격취득 현황

검정연도	자격등급	검정횟수	접수자수	응시자수	취득자수	합격률
2017	등급없음	49	1,029	974	974	100
2016	등급없음	45	822	822	793	96.47
2015	등급없음	90	1,973	1,973	1,856	95.82
2014	등급없음	86	2,003	1,994	1,912	95.89
2013	등급없음	83	1,963	1,939	1,858	95.82
2012	등급없음	68	1,285	1,267	1,162	91.71
2011	등급없음	70	1,070	1,067	963	90.25
총계	등급없음	491	10,145	10,036	9,518	95.14

자료: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한국여성교육개발원 (2018. 6. 21. 인출).

(6) (주)한국자격개발원<sup>23)</sup>

한국자격개발원에서 발급하는 베이비시터 자격은 영유아의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고려한 돌봄 계획 세우기, 신생아 돌봄, 영양 및 안전 관리, 흥미와 적성에 따른 놀이 및 교육 지도, 영유아 심리 및 정서 관리, 베이비시터 파견업체 운영 등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동 자격에 대한 등록은 2008년에 하였으며, 2011년 이후부터의 자격증 발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16 한국자격개발원 자격취득 현황

검정연도	자격등급	검정횟수	접수자수	응시자수	취득자수	합격률
2017	등급없음	6	538	477	432	90.57
2016	등급없음	6	825	688	533	77.47
2015	등급없음	7	758	659	612	92.87
2014	등급없음	6	1,234	994	888	89.34
2013	등급없음	6	1,005	813	700	86.1
2012	등급없음	4	169	147	116	78.91
2011	등급없음	4	135	119	92	77.31
총계	등급없음	39	4,664	3,897	3,373	84.65

자료: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한국자격개발원 (2018. 6. 21. 인출).

23)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한국자격개발원(2018. 6. 21. 인출).

(7)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sup>24)</sup>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발급하는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부모를 대신하여 가정이나 시설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며, 신생아기, 영유아기, 학령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수준의 직무를 요한다. 2010년에 자격을 등록하였으며, 발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17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취득 현황

검정연도	자격등급	검정횟수	접수자수	응시자수	취득자수	합격률
2016	등급없음	1	1	1	1	100
2015	등급없음	1	1	1	1	100
2014	등급없음	1	9	7	7	100
2013	등급없음	1	17	16	16	100
2012	등급없음	1	52	50	49	98
2011	등급없음	1	28	25	22	88
총계	등급없음	6	108	100	96	97.67

자료: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2018. 6. 21. 인출).

## 다. 민간에서의 육아도우미 파견 및 교육

### 1) YMCA 아가야<sup>25)</sup>

YMCA 아가야는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지원센터로서, 영유아 돌봄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돌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수익금과 후원금에 기반하여 돌봄 관련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자립 운영되고 있다. 2006년 노동부의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인 시간제 열린육아센터로 선정된 이후, 2008년 <아산YMCA아가야>가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 전국 9개(서울, 아산, 원주, 이천, 군포, 수원, 광주, 진주,

24)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2018. 6. 21. 인출).

25) 이하의 내용은 한국YMCA 아가야 홈페이지(<http://www.ymcaagaya.kr>, 2018. 6. 15. 인출)와 서울YMCA 아가야 홈페이지(<http://cafe.daum.net/SeoulAgaya>, 2018. 6. 15. 인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구미) 사회적 기업에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부터 시간제 보육사업의 조정으로 인해 대부분 지역의 아가야센터가 운영 종료된 상태이다 (2018년 6월 기준 지역아가야 홈페이지는 서울, 아산, 구미 3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영유아 돌봄지원 서비스는 공간 돌봄서비스와 파견 돌봄서비스로 구분된다. 먼저 공간 돌봄서비스는 아가야 사업의 초기 모델인 시간제 열린육아센터에 해당되며, 부모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8개월의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8시~오후8시에 운영된다. 생협과 연계한 유기농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며, 다양한 놀이문화체험이 실시되며 방학에는 특별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파견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실업 여성들을 모집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전문 가정육아교사를 양성하고, 교육 후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과 가정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베이비시터를 대신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전문성 지향과 가치존중의 의미로 <가정육아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파견 돌봄서비스는 돌봄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6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가정육아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월1회 이상의 정기모임과 보수교육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안정적인 돌봄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월 고정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제, 즉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1일 돌봄시간이 4시간 이상의 월급제 파견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게만 파견연계가 진행된다. 또한 돌봄복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돌봄서비스 과정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공간 돌봄서비스와 파견 돌봄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이 상이하므로 다음의 상세 내용은 서울YMCA아가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가) 파견업무

### (1) 돌봄 내용(근로범위)

서울지역의 경우 아가야 돌봄의 주 이용대상은 3개월 이후부터 초등학교 저학

년까지 가능하며, 서울지역 내에 거주하는 가정에 파견을 하고 있다. 가정육아교사는 아이의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본업무는 아이의 영양관리(수유, 이유식, 간식, 올바른 식습관 형성), 위생관리(목욕, 젖병 소독, 주변환경 청결), 건강관리(예방접종 및 병원 데려가기, 약 먹이기, 낮잠 재우기, 마사지, 바깥나들이) 및 아이 성장에 따른 정서·교육관리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서·교육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놀이감을 활용하며, 인형, 사진, 그림책 등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기능을 촉진시키고, 신체적 접촉을 통한 애정표현을 자주 해 주는 것이다. 돌봄 내용은 아이의 성격, 연령, 관심도, 부모의 필요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아이와 관련된 아이옷 빨래, 아이방 청소 및 정리 정돈, 이유식/간식 지도 또한 포함되며, 식사는 부모님이 미리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외의 집안청소나 다른 가족 옷 세탁 등의 가사는 하지 않도록 근로범위에 관한 조건사항을 명시하였다. 한편 가정육아교사는 돌봄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부모님들과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육아교사에게는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이 유급휴무이며, 연차휴가는 연 15일 이상 제공해야 한다.

## (2) 이용료

아가야 센터는 매년 1월 1일 최저임금 인상률 및 타 돌봄기관의 돌봄비 등을 참고하여 인상요구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가정육아교사의 파견 돌봄요금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조건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사전면접비는 1만원이며, 이용시간이 30분 초과시 1시간의 돌봄비를 적용한다. 이용시간 내 식사시간이 포함될 경우 가정육아교사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돌봄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은 없다. 12개월 이상의 영아 1명 돌봄을 추가할 때에는 시간당 월 7만원이 추가되고, 12개월 미만의 영아일 때에는 시간당 월 8만원이 추가된다. 부모님 사정으로 인해 돌봄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돌봄비용 변동은 없다.

## (3) 이용절차

파견연계에 있어 센터의 역할은 가정육아교사의 희망지역, 돌봄시간대, 경력, 희망 돌봄연령 등을 고려하여 신청가정과 연계해 주는 것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센터는 파견 가능한 가정육아교사에게 사전확인한 후, 1차적으로 센터가 부모와 전화 면담을 진행하며 이후 가정육아교사는 부모와 면접을 해서 파견이 확정된

다. 다만, 부모가 신청하였을 때 가능한 가정육아교사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가야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함께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봄 서비스 종결을 원할 때에 부모는 센터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파견연계가 된 이후, 해당 월말에는 부모가 이용료를 가정육아교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돌봄시 발생한 문제들은 가정과 가정육아교사 간 해결하며 센터는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부모는 돌봄시간의 조정, 추가 돌봄 등 변경 건에 대하여 센터에 직접 이메일로 전달해야 하며, 교사와 1:1 논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표 III-1-18 2018년도 서울YMCA아가야 가정육아교사 파견 돌봄요금

1일 이용시간	4	5	6	7	8	9	10	11	12	13
월 요금(만원)	90	101	124	146	169	180	200	219	239	259

자료: 서울YMCA아가야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eoulAgaya/Qf2v/11>(2018. 6. 15. 인출)

## 나) 교육 현황

### (1) 교육방식

서울YMCA아가야의 경우 가정육아교사 양성과정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온라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거나 ‘홈플러스e파란재단’에서 진행된 바 있었다. 대상은 고졸이상 학력으로 30~60세의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이며,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에서는 온라인교육과정으로 60시간 수료후 각 지역 YMCA아가야센터에서 40시간의 실습교육을 수료했을 때, 사단법인 한국국공립 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베이비시터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홈플러스e파란재단’과 연계한 양성과정의 경우 교육생은 지원서를 방문하여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수료증은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명의로와 홈플러스e파란재단 및 한국YMCA전국연맹 명의로 발급된다. 두 가지 방식의 양성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19 서울YMCA아가야 가정육아교사 양성과정

		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플러스e파란재단
이론교육	교육방법	온라인교육(전국)	현장교육(서울)
	교육시간	60시간	
	교육기간	20회차(35일간)	10회차(평일 10~17시)
	교육비	53,000원 (교재별도 28,000원)	무료 (5만원 선납후 수료시 환급)
	수료기준	60점 이상 (온라인시험/과제물 1회씩, 진도율로 채점)	80% 이상 출석
실습교육	교육장소	각 지역 YMCA아가야	지역 YMCA아가야 및 기타장소
	교육시간	40시간	12시간
	교육기간	평일 10~18시	2회차(평일 10~17시)
	교육비	55,000원	무료

자료: 서울YMCA아가야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eoulAgaya/MXdY/32>(2018. 6. 15. 인출)와 <http://cafe.daum.net/SeoulAgaya/MXdY/38>(2018. 6. 15. 인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2) 교육과정

YMCA아가야가 ‘방송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온라인교육은 교수진이 강의하는 3시간의 콘텐츠를 수강하는 것이며, 강의주제는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발달심리, 태아기 및 출생과정 이해, 신생아 돌보기(건강관리, 인지정서관리), 영아보육(건강관리, 안전, 인지, 사회, 정서), 보육의 실제(놀이, 언어문학, 미술, 음악, 동작), 방과후 아동 보육(안정 및 건강, 학습관리 및 독서지도, 문화생활 지도), 아동관찰 및 부적응 아동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YMCA아가야가 ‘홈플러스e파란재단’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가정육아교사 교육은 전문강사진에 의해 유기농 먹거리 만들기, 친환경 놀잇감 만들기와 같은 친환경(생태유아교육) 돌봄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10차시 동안 구성된 교육과정 예시이다.

표 III-1-20 서울YMCA아가야 가정육아교사 양성과정 이론교육 시간표 예시

	시간	교육내용
1일차	2	오리엔테이션
	2	MBTI검사를 통한 양육자 성격 이해
	2	가정육아교사 양육스타일과 아동 특성에 따른 지도
2일차	3	아이와 소통하는 베이비사인과 다중지능
	3	베이비마사지
3일차	3	올바른 신생아관리와 목욕법 및 영아 돌보기
	3	유아 몸놀이와 연극놀이
4일차	3	응급처치법
	3	가정육아교사의 역할과 자세1
5일차	2	유아발달의 이해와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활동1
	4	숲놀이 교육
6일차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인권의식교육
	4	영유아 미술심리치료
7일차	2	영유아 놀이지도
	1.5	유아발달의 이해와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활동2
	2.5	인형놀이
8일차	2	다문화가족과 자녀이해
	1	다양한 가족형태 및 자녀성장의 이해
	3	건강한 먹을거리
9일차	2	가정육아교사의 역할과 자세2
	4	가정육아교사의 역할과 자세3
10일차	2	전래놀이와 전래노래
	4	수료식

자료: 서울YMCA아가야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eoulAgaya/MXdY/42>(2018. 6. 15. 인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각 지역 YMCA아가야에서 진행하는 실습교육의 교육내용은 현장실습, 가정육아교사와의 만남, 아가야 활동(돌봄노래 및 놀이, 산책과 나들이 등)으로 이루어진다. 실습교육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이론교육 수료증, 주민등록등본,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필요한 사진 1매, 건강진단서(보건소에서 어린이집 제출용으로 발급)이며, 실습교육의 수료증까지 발급받으면 YMCA가정육아교사 파견교사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한살림<sup>26)</sup>

먹을거리 자립을 위해 활동해오던 한살림은 조합원 욕구조사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지역살림운동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돌봄을 선정하였다. 한살림 돌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서로 돕는 돌봄으로 공동체를 통한 돌봄 관계망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초기에는 육아 중인 이웃들이 만나 돌봄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육아사랑방’ 모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어르신방문돌봄추진단 등이 진행되었다. 아이방문돌봄사업은 2016년 7월 강남구에서 1기 돌봄교사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돌봄이용자와 제공자를 연결해줌으로써 시작되었다. 2016년 한살림 서울의 아이방문돌봄사업은 이용 신청이 162건, 실제 가정돌봄제공은 37건이 이뤄졌으며, 총 22명의 돌봄교사가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7)</sup>

한살림 서울에서 운영하는 가정방문돌봄은 조합원 간의 돌봄으로 한살림에서 양성하고 선발한 가까운 지역의 조합원이 부모 조합원의 집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 조건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살림 조합원 자녀이며, 4개월에서 초등학교까지의 돌봄이 가능하다. 가정방문돌봄자는 아이방문돌봄교육(현장실습 포함 총 50시간)을 수료하고 심사(서류 및 면접)를 통해 선발된 가까운 이웃 조합원이다. 따라서 모든 육아도우미는 한살림에 채용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자이며, 아이방문돌봄교사로서 ‘선생님’으로 호칭한다. 서비스 유형은 총 3가지로 첫째,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 신청할 때에는 장기 가정방문돌봄, 둘째, 7일 이하로 1회성이거나 비정기적인 이용을 신청할 때 단기 가정방문돌봄, 셋째, 공동육아모임이나 회의, 대중강좌 시 부모님의 활동을 위해 아이를 맡기는 경우의 모임지원돌봄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기 가정방문돌봄은 연간 가입비가 있으며, 단기 가정방문돌봄에는 가입비가 없다. 모임지원돌봄은 회당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전화로만 접수 받는다. 또한 부모가 지정한 인근 공간에서 요청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26) 이하의 내용은 한살림 서울 홈페이지([http://seoul.hansalim.or.kr/?page\\_id=48190](http://seoul.hansalim.or.kr/?page_id=48190), 2018. 6. 20. 인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27) 서울 한살림 30주년 기념대회마당 “한살림 돌봄 새롭게 삶의 자립을 꿈꾸다” 발표자료 참조(<http://seoul.hansalim.or.kr/files/2017/08/2.-%ED%95%9C%EC%82%B4%EB%A6%BC-%EB%8F%8C%EB%B4%84.pdf>, 2018. 6. 20. 인출).

## 가) 방문돌봄 업무

### (1) 돌봄 내용(근로범위)

돌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분유, 이유, 간식, 식사도움, 산책과 놀이, 등하원 도움, 병원 동행, 배변과 목욕 도움이다. 이용신청서 안내문에서 방문돌봄에 대해 ‘건강하고 따뜻하게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며 상호작용하는 활동’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안전한 돌봄을 위해 가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2) 이용료

이용요금(2018년 기준)은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1개월 이상의 정기돌봄은 시간당 11,360원, 7일 이내 단기돌봄은 시간당 12,000원이다. 이외에 시간, 즉 평일 6~9시 또는 20~22시에는 추가요금으로 시간당 1,000원씩 계산한다. 공휴일은 평일의 150%의 요금으로 계산한다. 정기돌봄의 경우, 연 가입비 6만원을 부과하는데 이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기돌봄은 돌봄 사전에 상호면담(면접)을 진행하는데 면접요금은 1만원이다. 모임 지원돌봄의 요금은 교사 1인 이용시 평일 기준 시간당 13,000원이며 아이 인원에 따른 돌봄교사 파견 기준이 별도로 있다. 이외에 이용료에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부과한다.

### (3) 이용절차

조합원은 한살림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전화상담한 후 적합한 돌봄교사를 찾게 되면 돌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상호면담, 이른바 면접을 하게 된다. 정기돌봄은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1개월에는 돌봄 관련한 상의와 약정을 맺고 이용료는 선납한다.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돌봄신청서에는 신청하는 돌봄유형, 신청자와 아이와의 관계, 연락처, 아이 돌봄장소, 돌봄요청이유, 양육자(엄마)의 근무형태, 돌봄아동 수, 아이의 생년월일 및 성별, 형제자매 정보, 돌봄희망 요일 및 시간대와 예상 돌봄이용기간, 돌보는 곳의 CCTV 설치 유무, 반려동물 유무, 상호면담 희망시간, 신청경로, 아이 특성과 관련된 사항, 요청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다.

나) 교육내용

한살림 서울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이방문돌봄교사 양성교육을 모집한다. 2018년 기준 10기 모집 중에 있으며, 대상은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자 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62세 이하(56년생 이후 출생자)’로 명시되어 있다.

교육은 실습을 포함하여 50시간으로 수료 이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과해야 아이방문돌봄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8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8시간씩이며, 현장실습과 개별과제는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50시간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21 한살림 서울 아이방문돌봄교사 양성과정 시간표

	시간	교육내용
1일차	3	한살림과 협동조합, 한살림돌봄의 이해
	4	나의 성향 알아보기 및 참가자 교류
2일차	2	영유아 발달 및 기질 이해와 상호작용
	2	양육자의 이해 및 소통방법
	1	한살림 아이방문돌봄의 운영, 근로 안내
	2	월령별 영유아 발달에 따른 놀이
3일차	1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육아용품 살펴보기
	1.5	책을 활용한 돌봄, 독서지도
	2	영유아 건강과 베이비마사지, 건강관리와 셀프마사지
	2	돌봄교사의 역할과 태도(직업윤리)
4일차	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1.5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
	2	상호면접 이해 및 실습, 돌봄일지 작성 실습
5일차	1.5	영유아·아동의 안전과 건강관리, 상황별 대처방법
	2.5	영유아·아동의 식생활 이해(이유식, 간식)
	1	아동의 마음 읽어주기, 심리 및 문제행동 이해, 상황별 대처
	1	모임지원돌봄의 실제
	2	낮잠, 배변, 목욕 등 돌봄실제
6일차	2	현장실습
7일차	4	개별과제
8일차	2.5	교육리뷰
	4	수료자 면접
	1.5	스마트기기활용 실습
	1.5	초등돌봄의 실제
	1.5	수료식

자료: 한살림 홈페이지, <http://seoul.hansalim.or.kr/?p=50434>(2018. 6. 20. 인출).

### 3) 아누리 방문보육 사업과 교육내용<sup>28)</sup>

‘아누리’는 영유아 보육 전문기업으로 2016년부터 가정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집 일환에서 일대일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LF(구 엘지패션)과의 합병을 통해 기업 임직원 육아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 부설연구기관을 통해 방문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보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가) 방문보육 업무

##### (1) 돌봄 내용(근로범위)

아누리는 0~7세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속 돌봄교사를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방문교육 전문가로써 일상적인 신체·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아동 연령별 놀이활동을 제공한다. 돌봄 내용으로 가사는 제외되어 있다. 돌봄교사는 거주지 근방(40분 이내)의 가정으로 배정한다. 또한 교사가 소속된 회사를 통해 매월 아동의 연령별 놀이활동 프로그램과 교구, 교재를 배송하며 이외에도 담당 아동에 대한 상담과 코칭을 제공한다.

##### (2) 이용료

기본급으로 1:1 보육은 시급 1만원, 1:2 보육은 시급 1만5천원이다. 전일제 교사는 처음 3개월은 평가 수습기간을 갖고, 1만원의 시급제이다. 주5일(월~금) 15~19시 일일 4시간씩이며, 월 83만원의 고정 보육료를 지급한다. 성과포상은 별도이며, 희망 시 시간당 1만원씩 오전에 추가 보육이 가능하다. 시간제 교사는 주중 2회 이상의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며, 이용료는 시급 1만원(성과포상 별도)이다. 오전보육은 9~14시, 오후보육은 14~19시로 오전/오후 중 선택가능하며, 오전과 오후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교사의 근무 채우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보육시간 200시간 달성 시 성과포상이 지급되며, 장기근속이나 우수교사, 신입교사를 추천한 경우 포상이 주어진다. 이외의 복지제도로 보육세미나, 교사워크숍의 자기개발 기회를 지원하며, LG

28) 이하의 내용은 아누리 홈페이지, <https://www.anoori.co.kr/>(2018. 6. 20. 인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그룹사 복지몰 사용혜택을 부여한다. 워크숍은 분기별로 1회 운영되며, 강의, 보육사례 발표, 우수교사 포상으로 진행된다.

### (3) 이용절차

아누리 연구원에서는 사전에 아동 발달검사와 부모 면담을 통해 수집한 아동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육 시작 전에 교사에게 1:1 교사 세미나를 제공한 후, 방문보육을 시작한다. 교사 세미나에서는 담당 아동에 대한 보육 일과를 구성하고, 가정 내 보육환경에 대한 정보와 월령에 적절한 발달정보를 제공한다. 아누리에서는 매월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영역별 놀이활동(언어, 표현/탐색, 특별활동, 음률활동, 기본생활습관, 신체 등)으로 구성된 교사용 지침서와 준비물, 부록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방문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 나) 교육과정

### (1) 교육방식

아누리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방문보육교사 신입교육을 진행하고 가정방문보육 전문가를 육성한다. 매주 직종설명회와 현장면접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는 서류지원 후 면접 평가를 통해 신입교사 교육을 실시한다. 방문교육교사로 근무 후 일정기준이 충족되면 ‘아동 홈스쿨 지도사’ 자격증도 발급한다.

필수지원요건은 25세 이상에서 55세미만의 여성으로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인 학력사항을 두고 있으며, 자녀양육, 보육현장, 교육현장 경력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해야 한다. 우대조건은 아동학, 유아교육 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와 보육 및 교육기관 근무 경력자이다. 또한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영아전담 돌봄교사를 구분해서 선발하고 있다. 그 외에 건강검진과 범죄경력조회에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 (2) 교육과정

방문교육교사 신입교육은 10일간 오전 4시간씩 총 40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자세한 교육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그밖에도 교사 역량 개발지원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도움되는 교육특강이 있다. 이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

며, 강좌 주제는 오감놀이 특강, 요리활동 특강, 자연물 놀이, 퍼포먼스 활동 등 강좌당 한 시간씩이다.

표 III-1-22 | 아누리 방문교육교사 신입교육 내용 예

회차	교육내용	회차	교육내용
1일차	CS교육	6일차	상호작용
2일차	방문교육 이해	7일차	감각놀이
3일차	영유아 발달	8일차	그림책 활용
4일차	음율 활동	9일차	프로그램 실제
5일차	기본생활습관	10일차	평가 및 인사교육

자료: 아누리 홈페이지, 신입교사 교육일정, <https://www.anoori.co.kr/parents/helpDesk/noticeList.do>(2018. 6. 20. 인출).

#### 4) 기타 육아도우미 교육기관

민간 육아도우미 채용정보 홈페이지인 시터넷(<https://www.sitternet.co.kr/main/>)에서는 육아도우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베이비시터 교육기관 목록을 수집하고 교육기관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에 교육이 진행된 기관을 위주로 다루었다(표 III-1-23 참조).

교육기관<sup>29)</sup>은 주로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고, 베이비시터 교육 이외에도 ‘산후관리사’, ‘가사도우미’, ‘가정관리사’, ‘동화구연’, ‘정리정돈’ 교육 또는 자격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은 대체로 1년에 1~2회 정도 이루어졌으며, 한 번 교육에 20~30명 정도로 나타났다. 교육신청 대상, 즉 베이비시터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기관은 3곳에 불과하여 30~60대, 55세 이상, 19세 이상으로 제각기 달랐으나, ‘아이를 사랑하고 신체건강한 분’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였다. 대부분의 교육은 교육과정 수수료 후 자격시험 응시에 신청할 경우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었다. 민간자격증의 자격명은 모두 베이비시터 자격증이나 발급 명의를 상이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수수료 이후 취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였다.

29) 이하의 내용은 시터넷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교육기관, <https://www.sitternet.co.kr/main/>(2018. 6. 20. 인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sup>30)</sup>의 경우 베이비시터 파견 전문 홈페이지 〈부모마음〉(<http://www.bumomaum.co.kr>)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부모마음〉은 2001년부터 베이비시터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0여개 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지역 인력개발센터 등과 업무 제휴를 통해 베이비시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I-1-23 | 육아도우미 교육기관 비교표

구분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비	수료 및 자격
전국돌봄연합회	2일 9-13시	8시간	서울 노원구	10만원 (자격증비포함)	미표기
파주YWCA	5일 9-18시	40시간	경기도 파주시	8만원 교재비 포함	수료 후 취업연계
이윤서아카데미	5일 10-16시	30시간	서울 강남구	11만원 교재비 포함	미표기
굿모닝평생교육원	4일 10-17시	28시간	서울 관악구	12만원	미표기
중랑여성인력개발 센터	10일 9:30-13:30	40시간	서울 중랑구	8만원 교재비 1만원, 자격시험검정료 4만원별도	한국여성교육개발 원 명의 자격증 수료 후 파견업체 면접 기회 부여
수원여성인력개발 센터	10일 13:30-17:30	40시간	수원광역시	10만원 재료비 2,500원, 자격시험검정료 5만원 별도	(사)여성인력개발 센터연합 명의 자격증
서초여성인력개발 센터	5일 9:30-13:30	20시간	서울 서초구	6만원 교재비 1만원, 자격시험검정료 5만원별도	교육협력기관 〈부모마음〉 명의 자격증

자료: 시터넷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교육기관, <https://www.sitnet.co.kr/main/>(2018. 6. 20. 인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육아도우미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내용을 공개한 곳은 주로 여성인력개발 센터에 불과하였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개설된 베이비시터 교육 내용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였는데, 영유아 발달 특성과 건강, 안전, 영양 관리방법, 놀이 실제 등을 공통적으로 다루었다(표 III-1-24 참조).

30)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강좌안내, <https://seocho.seoulwomanup.or.kr/seocho/edu/selectPageListEduProgram.do>(2018. 6. 20. 인출).

표 III-1-24 여성 인력개발센터 베이비시터 교육 내용

회차	A기관(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부모마음)	B기관(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1일차	베이비시터와 놀이시터의 역할과 자세 영유아기 발달과정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베이비시터의 역할 및 애착, 기질
2일차	동화구연	영유아 발달단계
3일차	아이용품, 주방, 옷장 등 정리법	영유아 영양관리 및 돌보기의 실제
4일차	위생관리(영유아목욕, 기저귀처리, 수유, 우유병소독) 영양관리 (이유식, 간식 만들기) 안전관리 (집안밖 사고 및 예방)	영유아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5일차	놀이지도(신체·정서발달을 돕는 놀이) 예절, 급여체계, 총정리 베이비시터 자격검증 실시	베이비 마사지
6일차	-	동화구연
7일차		영유아 놀이의 실제 1
8일차		영유아 놀이의 실제 2
9일차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10일차		영아 용품관리, 스케줄 관리 및 일지작성

자료: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강좌안내, <https://seocho.seoulwomanup.or.kr/seocho/edu/selectPageListEduProgram.do>(2018. 6. 20. 인출);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과정, [http://www.vocationplus.com/board/bbs/board.php?bo\\_table=program&wr\\_id=1171&sca=%EC%A4%91%EC%9E%A5%EB%85%84%EA%B5%90%EC%9C%A1](http://www.vocationplus.com/board/bbs/board.php?bo_table=program&wr_id=1171&sca=%EC%A4%91%EC%9E%A5%EB%85%84%EA%B5%90%EC%9C%A1)(2018. 6. 20. 인출).

## 2 해외사례

프랑스의 경우 가정보육모(Assistantes Maternelles) 제도를 통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 역시 유사한 제도를 두고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내니협회(INA)를 중심으로 교육 및 신원확인, 수요와 공급자 간의 조정 역할 등 협의체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외국인 육아도우미 이용 비율이 높는데, 이는 국가가 신원확인 및 비용규제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내 보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각 국가별로 고찰한다.

## 가. 프랑스<sup>31)</sup>

### 1) 제도 개관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는 영유아의 가정 또는 소규모 어린이집 (Les maisons d'assistantes maternelles)에서 6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sup>32)</sup> 2010년부터 승인된 가정보육모는 자신의 자택 밖인 지역별 소규모 어린이집(Maisons d'assistants maternels, Mam)에서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Mam)은 1인의 가정보육모가 최대 4명까지의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살피게 된다.<sup>33)</sup>

### 2) 육아도우미 자격 요건

#### 가) 자격부여 - 지방의회장의 인증

모성 및 아동보건서비스(services de 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는 데파르트망(지자체) 사무(service départemental, 우리식으로는 단체사무)에 해당하여 데파르트망위원회(지자체 전문 위원회)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고 모성과 아동의 보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임신부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상담, 의료활동 등을 조직하며, 어린이집의 승인요청, 교육 수행, 가정보육모의 관리 및 통제 및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PMI 서비스의 임무, 조직 및 운영은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의 L.2111-1조 및 L.2112-2조에 규정되어 있다.<sup>34)</sup>

영유아의 가정에서 보육을 하든, 소규모 어린이집(Mam)에서 업무를 담당하든 간에 가정보육모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성 및 아동보건서비스의 의견을

31) 이하의 주요 내용은 프랑스 육아행정홈페이지(<http://www.mon-enfant.fr/web/guest/modes-garde/assistantes-maternelles>, 2018. 9. 20. 인출); 프랑스 행정정보 홈페이지(<https://www.service-public.fr>, 2018. 9. 20. 인출)를 참고하였음.

32) 프랑스 육아행정홈페이지, <http://www.mon-enfant.fr/web/guest/modes-garde/assistantes-maternelles>(2018. 9. 20. 인출).

33) 프랑스 육아행정홈페이지, <http://www.mon-enfant.fr/web/guest/modes-garde/maisons-assmat> (2018. 9. 20. 인출).

34) 프랑스 사회연대 및 보건부 홈페이지,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etudes-et-statistique/s/open-data/aide-et-action-sociale/la-protection-maternelle-et-infantile-pmi/article/la-protection-maternelle-et-infantile-pmi>(2018. 9. 20. 인출).

수령한 후 데파르트망위원회(conseil départemental)의 장에 의하여 인증(agrément)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인증을 통하여 가정보육모의 업무에 대해 직업적인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

가정보육모 자격의 승인을 갱신(renouvellement de l'agrément)하기 위해서는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인증 갱신을 신청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인증이 끝나기 1년 전에 모성 및 아동보건서비스에서 갱신 신청서와 함께 가정보육모에게 서신을 보내며 인증의 갱신은 초기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만약 모성 및 아동보건서비스에서 인증의 중단이나 가정보육모의 이사, 출산, 신체적 능력의 감소등을 이유로 승인 철회(la suspension ou le retrait de l'agrément de l'assistante maternelle)를 선언하면, 이를 당사자인 가정보육모에게 통지하여 알려야 하며, 이후부터 가정보육모는 보육을 담당할 수 없다.

#### 나) 120시간의 실무교육

가정보육모가 되기 위해서는 상기한 인증을 받은 후, 1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의 아동을 보육하기 이전에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단 공인을 받은 가정보육모는 첫 번째 보육아동을 맡기 전까지 120시간 중 60시간의 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나머지 60 시간의 교육은 첫 번째 보육아동을 받은 후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20시간의 교육을 면제 받는 경우로는 가정보육모가 보육전공 학위(diplôme)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역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유아교육전문자격증(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이다.<sup>35)</sup>

### 3) 육아도우미 운영·관리

#### 가) 계약체결

보수의 지급 방식은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선,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보수를 받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지자체와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보육아동의 부모와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통해 고용된 경우(개인 고용)

35) Décret no 2006-464 du 20 avril 2006 relatif à la formation des assistants maternels.

인데, 이때는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즉, 아동의 부모가 가정보육모를 고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모는 직접 고용주가 되어 고용계약(un contrat de travail)을 맺어야 하며, 월 단위로 보수를 지급하고, 보수의 액수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여 보수지급명세서를 발급하며, 개별고용주와 가정보육모 사이의 계약에 관한 전국적인 단위의 단체협약규율(les dispositions de la loi du 19 janvier 1978 complétée par la convention collective, la loi du 27 juin 2005 et le décret code du travail du 29 mai 2006, 2005년 6월 27일 법률 및 2006년 5월 29일 법령에 의해 보완된 1978년 1월 19일 법의 조항을 존중하는 보수 및 계산 방법)과 노동법전(le code du travail)을 준수해야 한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 가정보육모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는 무기계약으로 체결되고, 부모와 가정보육모가 각각 서명하고 서명한 날짜가 기입된 2부의 사본으로 확정된다. 이후 가정 보육모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sup>36)</sup> 고용 계약서에는 서명자의 이름, 직장(가정)의 위치, 승인의 결정, 업무시간, 유급 휴가를 포함한 휴일 및 고용기간이 포함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회부조 및 가족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D.423-5조, D.773-7조의 적용을 받는다.

#### 나) 요금체계<sup>37)</sup>

고용주(부모)와 가정보육모는 기본적인 시간당 임금을 합의로 계약에 의하여 정하는데, 1인의 아동을 1시간 돌보는 데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임금은 2.78유로이다. 가정보육모가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돌봄 시간이 주 45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른 보수의 인상률이 적용되며, 돌봄 대상 아동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어려움의 중대성에 따라 가정보육모에게 보수의 인상권리가 주어진다. 고용주인 부모는 매달 가정보육모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Pajemploi 센터(보수보장서비스 센터, 우리식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역할을 함)에 가정보육모의 보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36) 프랑스 행정정보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841>(2018. 9. 20. 인출).

37) 프랑스 행정정보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812>(2018. 9. 20. 인출).

#### 다) 근무체계<sup>38)</sup>

매일 해당 아동을 돌보는 경우, 보통 일일 업무시간은 9시간이며, 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에 보육을 시작하고, 자녀가 부모 중 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에 보육 시간이 종료된다. 그러나 고용주와 가정보육모가 동의한 경우, 부모의 업무 또는 건강 상태 때문에 부모가 육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아동의 보육이 가능하다. 그러한 경우에도 가정보육모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주당 48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으며, 고용주 또한 서면 동의 없이 가정보육모가 주당 48시간 이상을 일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최대 48시간의 보육은 평균 4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가정보육모가 동의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동안 1년 총 2,250시간의 한도 내에서 가정보육모가 돌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가정보육모는 적어도 주당 24시간(일요일)의 정기휴일을 보장받는데, 합의에 의하여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정보육모는 매월 2.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기간은 1년 기준으로는 30일(5주)에 해당한다.

#### 라) 고용주의 가정보육모 보수에 관한 신고제도

자신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정보육모를 고용한 자는 보수를 명시해야 하며, 보수를 명시하지 않거나 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보수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3년의 징역 및 45,000 유로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행정부와 사회단체에 대한 허위의 보수 신고는 2년의 징역과 3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마) 가정보육모 고용 계약의 종료<sup>39)</sup>

고용주인 부모와 가정보육모의 계약은 일반적으로는 민사계약(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 CDI), 불특정 기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모는 가정보육모에 대하여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38) 프랑스 행정정보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38>(2018. 9. 20. 인출).

39) 프랑스 행정정보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842>(2018. 9. 20. 인출).

등록된 서한을 통하여 가정보육모에게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가정보육모는 이에 대한 사전 청취 등의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다만 가정보육모의 임신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 해지는 부모의 위법 내지 남용적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가정보육모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담당할 경우에 부모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계약 기간 동안 받은 총 순 임금의 1/120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또한 중대한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 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sup>40)</sup>

#### 바) 가정보육모 자격 승인의 중단 또는 철회<sup>41)</sup>

가정보육모에게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데파트망위원회의 장은 조사 기간 중 최대 4개월 동안 가정보육모 자격 승인을 중지하고 이후 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가정보육모는 지체없이 자격 승인 중단 결정을 통보받으며, 담당 영유아의 부모 또한 승인 중단이 발표되는 대로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가정보육모는 PMI 서비스에서 그 이유와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항변할 수 있고, 이는 데파트망 소속 자문위원회(Departmental Joint Consultative Committee, CCPD)에서 담당한다.

가정보육모의 상황이 영유아의 보육과 영립할 수 없는 경우, 데파트망 의회의 장은 자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데파트망 소속 자문위원회(CCPD)에 의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정보육모는 위원회가 자신의 사건을 검토하기 15일전에 통보 받으며,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자격 승인의 철회가 결정되면 가정보육모 및 부모에게 모두 통보된다. 이 경우 고용계약은 파기되며 담당 영유아의 부모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0) 육아도우미 보수지급관리홈페이지, <https://pajewebinfo/cms/sites/pajewebinfo/accueil/employeur-dassistante-maternelle/je-me-separe-de-mon-assistante-m/les-differents-cas-de-rupture.html>(2018. 9. 20. 인출).

41) Loire Atlantique 데파트망의 공인 육아도우미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s://assmat.loire-atlantique.fr/jcms/assistante-maternelle/l-agrement/la-procedure-de-suspension-ou-de-retrait/la-suspension-et-le-retrait-d-agrement-fr-p1\\_75940](https://assmat.loire-atlantique.fr/jcms/assistante-maternelle/l-agrement/la-procedure-de-suspension-ou-de-retrait/la-suspension-et-le-retrait-d-agrement-fr-p1_75940)(2018. 9. 20. 인출).

### 사) 기타 제도

가정보육모와 부모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 인권위원회의 가정보육모의 주소지에 있는 노사조정법원(conseil des prud'hommes)이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www.mon-enfant.fr](http://www.mon-enfant.fr)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받은 가정보육모의 목록을 찾을 수 있으며, 모성 및 아동보건서비스(services de 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에 연락하여 찾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한편, 가정보육모의 권리는 오늘날 많은 노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보육모를 고용하는 부모가 속한 지역의 모성 조력자 단체 협약(가정보육모 외에 관련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과 관련한 협상에는 4개의 노동조합 조직만이 대표되고 있으며 이 명단은 2021년까지 유효하게 된다.<sup>42)</sup>

## 나. 영국<sup>43)</sup>

### 1) 제도 개관

영국의 가정 내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에는 가정보육교사(childminder)와 사적도우미(Nanny)가 있다.

#### 가) 가정보육교사

영국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거주지에 아이를 데려와 돌보는 가정보육교사(childminder)와 대개는 저녁 시간에 부모가 외출시 해당 영유아의 집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babysitter)<sup>44)</sup>로 구분된다. 가정보육교사의 법적 정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자녀와 함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영국에서는 가정보육교사가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42) 규모와 지지도에 따른 순서로 Le Syndicat professionnel des assistants maternels et assistants familiaux(SPAMAF), Le Syndicat professionnel des assistants maternels et assistants familiaux(CSAFAM), L'Union nationale des syndicats autonomes(UNSA), La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CGT)가 이에 해당한다. 즉, 프랑스에서는 단체협약의 지위를 공인된 노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조는 제한되어 있다.

43) 이하의 주요 내용은 영국 보육정보 홈페이지(<https://www.childcare.co.uk/find/Childminders>, 2018. 9. 20. 인출); 영국 가정보육교사 홈페이지(<https://childmindinguk.com>, 2018. 9. 20. 인출)를 참조하였음.

44) 영국 보육정보 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co.uk/find/Babysitters>(2018. 9. 20. 인출).

Services and Skills, 영국교육기준청)에 등록되어 있다.

가정보육교사(Childminder)는 정부에서 자격 및 업무관리를 담당하는 데에 반하여, 사적도우미(Nanny)는 정부의 관리 없이 관련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가족과 사적도우미 사이의 관계에서 협의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채용되고 돌봄서비스도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사적도우미는 돌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거(집)에 거주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들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나) 사적도우미

사적도우미(Nanny)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 고용된 사람으로서 같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일 자택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Daily/live out nanny), 아동의 부모와 함께 살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Doula/nurse), 자택의 별관이나 별도의 방에 거주하는 사적도우미(Live-in nanny)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로 한 가족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사적도우미를 고용하며, 사적도우미가 되기 위한 공식적인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가 사적도우미를 고용하려고 할 때에는 사적도우미의 전문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정부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사적도우미는 최근 3년 이내에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소아응급처치에 관한 자격(First Aid qualification)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아동 보호에 대한 최신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사적도우미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 Ofsted에 등록될 수 있지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사적도우미가 Ofsted에 등록된 경우, 해당 돌봄 아동의 부모는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적도우미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는 가족과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집안일과 탁아서비스와 같은 추가 서비스가 요구될 수도 있다. 사적도우미는 보통 고용주인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휴가기간에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 다) Ofsted 등록여부

가정보육교사와 사적도우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정부기관에의 등록여부이다. 가정보육교사가 8세 미만의 아동을 하루 2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는 「교육 및 관리감독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에 의거하여 설립된 Ofsted<sup>45)</sup>에 등록해야 한다. 웨일즈의 탁아모는 Care Inspectorate Wales<sup>46)</sup>에, 스코틀랜드에서는 Scottish Care Inspectorate<sup>47)</sup>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 아동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 관리, 감독 기관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는 아동교육 및 돌봄 관련 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일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가정보육교사 본인과 동거가족 중 1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범죄전과조회를 실시한다. 등록된 가정보육교사는 모든 등록 조건을 준수하며, 제공된 정보가 관련 출처와 함께 확인된다. 범죄 기록 확인을 포함하는 검사 절차를 통해 가정보육교사 희망 대상자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등록된 사람이 영유아의 보육과 같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 가정보육교사 검사관은 이 점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등록된 사람 중 가정보육교사가 아동법 1989(9A of the Children Act 1989) 상 9A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자격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아이들을 돌봄 자격의 실격에 관한 명령(Regulations 1991(Disqualification for Caring for Children Regulations 1991)에 따라 범죄 및 법위반사실의 유형, 범죄행위의 중대성 및 이후의 아동활동 참여에 관한 기록 등을 통하여 가정보육교사의 자질이 검토된다.

Ofsted 등록을 위해선 응급처치훈련과정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한다. 8세 이상 혹은 2시간 미만으로 아동을 돌보거나, 아동의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이비시터의 경우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Ofsted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는 신원조회 등을 거친 육아도우미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에게 유리하며, 등록된 육아도우미 역시 급여 연체 및 돌봄아동 가족으로부터의 부당대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허민숙, 2018: 3).

45) 영국 정부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sted>(2018. 9. 20. 인출).

46) 웨일즈 보육서비스 정보 홈페이지, <https://careinspectorate.wales>(2018. 9. 20. 인출).

47) 스코틀랜드 보육서비스 정보 홈페이지, <http://www.careinspectorate.com>(2018. 9. 20. 인출).

## 2) 육아도우미 자격 요건

가정보육교사는 교육이수 및 책임보험(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매년 1회씩 Ofsted로부터 감독을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받는다. 모든 가정보육교사는 돌봄아동의 차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공적책임보험 및 1등급 비즈니스 보험을 소지해야 하고, 돌봄서비스 입문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하며, 3년마다 최신 소아 응급 처치 교육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영국의 모든 가정보육교사는 EYFS 2012<sup>48)</sup> 및 Childcare Register 2012<sup>49)</sup>, 지역 계획, 화재 및 식품 위생법, 보건 및 안전법, 평등법 2010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YFS(Early Year Foundation Stage, 유아조기교육과정)는 출생부터 5세까지의 자녀의 학습, 발달 및 보살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모든 학교와 Ofsted에 등록된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제공자인 가정보육교사, 유치원, 어린이집 및 예비학교반은 EYFS를 따라야한다. EYFS는 영국의 학교 및 초급반에 적용되며,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는 초기 학년 표준이 다르다. 이에 따라 아동들은 대부분 게임과 놀이를 통해 습득하며, 학습영역으로는 의사소통 및 언어, 신체 발달, 개인적,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 문맹 퇴치, 수학, 세계 이해, 표현 예술과 디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sup>50)</sup>

정기적으로 모든 가정보육교사는 Ofsted와 지방자치단체(지역당국, Local authority)에 의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된다. 가정보육교사의 등록과정 및 보육 과정에서 많은 지역당국에서는 사전에 등록된 가정보육교사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Ofsted는 일부 지방 당국의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브리핑을 제공하기도 한다.

육아도우미는 자영업자(self employed)로서, 자체 수수료 및 이용 약관을 설정하고, 최소자격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EYFS(Early Years Register) 제도라고 하여, 아동을 돌보기 위한 보육 과정(Child minding course)을 포함한 최소 자격

48) EYFS(Early years Foundation Stage)는 0세부터 만5세까지 아동을 위해 영국에서 정한 표준교육과정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oundationyears.org.uk/wp-content/uploads/2012/07/Overall-Reforms-to-the-2012-EYFS-Framework.pdf>(2018. 9. 20. 인출) 참조.

49) 가정보육교사 등록에 관한 관련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영국 입법정보 홈페이지,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2/939/made?view=plain>(2018. 9. 20. 인출) 참조.

50) 영국 정부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gov.uk/early-years-foundation-stage>(2018. 9. 20. 인출).

을 갖추어야 하고, EYFS 및 육아등록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와 공유하여야 한다. 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8세 미만의 어린이 최대 6명까지 인정되며 이 법정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정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 3) 육아도우미 운영·관리

#### 가) 업무범위

가정보육교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영국의 가정보육교사 공식홈페이지 (<https://childmindinguk.com>)에서는 10가지 영역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 (1) 광고

가정보육교사는 자신의 사업을 마케팅하고 홍보해야 한다.

##### (2) 경영 관리

출생기록부, 학습 기록, 뉴스, 계좌, 정책 및 절차, 위험관리 등과 같은 진행 중인 기록이 유지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한다.

##### (3) 문서화

가정보육교사는 EYFS 및 육아 등록부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추가의 Ofsted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서류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 (4) 건강과 안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5) 양질의 보육서비스

가정보육교사가 아동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6) 양질의 학습

놀이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법으로 정해진 조기 학습 목표를 향해 발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 영양

아이들은 하루 종일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음식과 음료는 양적으로 필요한 정도에 상응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영양가가 있고 종교상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식사 및 간식에 대하여는 부모와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며 신선한 식수가 항상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정보육교사는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식이요구사항, 선호도 및 알레르기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보호

어린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가정보육교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조건과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호교육 연수에 참석해야 한다.

(9) 훈련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해 가정보육교사는 저녁 또는 주말에 정규 교육에 참석한다.

(10) 다른 사람들과 일하기

가정보육교사들은 서로 고립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부모, 다른 환경의 어린이 및 지역 사회와 긍정적이고 보람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 가정보육교사 등록비용

등록된 가정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보육교사를 희망하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정부는 보육사업보장제도(Childcare Business Grant Scheme)을 도입하여 유망한 가정보육교사가 300 파운드(£)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가정보육교사에게 추가로 200파운드를 제공할 수 있다.<sup>51)</sup> 이 보조금의 수령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3세

51) 영국 정부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gov.uk/business-finance-support/childcare-business-grants-england>(2018. 9. 20. 인출).

어린이를 위하여 30시간의 보육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Ofsted의 등록비는 가입하는 등록기관에 따라 35파운드 또는 103파운드에 해당한다. Ofsted에 응시하기 전에 소아 응급 처치 과정에 관한 교육 내지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략적인 비용은 100파운드에 해당한다. 자녀를 돌보지 않더라도 가정보육교사로 등록하는 즉시 공공손해배상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할 것이 요구된다.

16세 이상인 자의 범죄 기록에 대한 DBS 확인 비용(enhanced DBS check)은 52.50 파운드이고, 가정보육교사는 그들 자신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DBS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돌보는 아동의 사진을 찍는 경우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보 위원회의 장(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비용은 35파운드이다.

건강확인서에는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가 서명해야 하며 GP는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장비, 사업 보험, 필요한 코스(응급 처치 등) 및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 단체와 같은 기타 비용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정보육교사가 속한 지역의 서비스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협의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 자질에 관한 조사절차

##### (1) 가정보육교사 희망자

Ofsted 검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아직 등록 이전의 가정보육교사인 경우, 등록 검사(Ofsted Registered Childminder)는 일반적으로 등록방문(registration visit)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를 통하여 향후 등록을 신청할 가정보육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점검함으로써, 등록신청자의 자택과 가정보육교사 자신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검사관은 응급 처치 교육을 수료하고 초창기 단계를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포함하여 신분과 자격, 가정보육교사의 시설, 장비 및 장난감이 안전하고 어린이에게 적합하다는 것, 위험 평가에 대해 이해하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의 안전과 보안을 고려했는지 여부, 돌봄의 대상이 될 연령대의 여러 어린이를 돌보는 데 있어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한 가정보육교사 희망자의 이해 정도 등을 파악한다.

만약 가정보육교사 희망자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어린이를 가르치고, 응급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의약품 라벨과 같은 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구사능력이 유창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방문이 끝날 때 검사관은 피드백을 주며 가정보육교사 희망자에게 향후 등록하기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음'을 권고할 것인지 알려준다. 가정보육교사 신청이 거부될 것으로 여겨질 시에는 가정보육교사 희망자는 이 단계에서 가정보육교사 희망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다.<sup>52)</sup>

가정보육교사 희망 신청서가 승인되면 등록증명서(certificate)가 발급된다. Ofsted report websites에 해당 가정보육교사의 등록 정보가 게시되는데, 가정보육교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등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가정보육교사 신청서가 거부되면 Ofsted는 당사자에게 거부 통지서(notice of intention)를 보내고 이때부터 당사자는 가정보육교사로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 (2) 기 등록된 가정보육교사

이미 등록된 가정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점검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등급을 결정 받게 된다. 초등학생 정도의 유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아동 교육 및 아동의 개인적 및 정서적 발달과 아이들의 학습 진전에 중점을 두고, 등급 검사의 결과는 Ofsted 공식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등록된 가정보육교사가 모두 일상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Ofsted는 무작위로 10%의 검사를 수행하고, 만약 어린이집에서 가정보육교사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를 Ofsted가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검사결과는 4등급으로 Outstanding(뛰어난), Good(좋은), Requires Improvement(개선 필요), Inadequate(부적절함) 단계로 구별된다. EYFS가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3단계인 개선 필요 또는 4단계인 부적절함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해당일까지 이를 완수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52) 영국 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register-as-a-childminder-quick-guide#check-if-you-need-to-register>(2018. 9. 20. 인출).

## 다. 호주<sup>53)</sup>

### 1) 제도 개관

최근 호주의 각 가정에서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각종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수가 둘 이상일 경우 육아도우미의 채용이 비용 및 시간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sup>54)</sup> 그러나 통상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개별 가정의 입장에서는 육아도우미의 채용이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Garvis, S. 외, 2013: 117). 그러나 약 2년의 시험 운용기간을 거쳐 2018년 7월 2일부터 호주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지원 보육 서비스의 일종으로 재택 케어(In Home Care) 형태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육아도우미 프로그램은 주로 민간의 주도의 개별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일정부분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영역의 육아도우미의 채용에 있어 아동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사전 자격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도우미를 채용한 가정의 계약상의 권리 및 노동자로서 육아도우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

### 2) 육아도우미 자격 요건

#### 가) 자격 기준

호주 정부는 육아도우미의 자격요건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아동관련 직종에 전체에 대한 자격조사(WWCC: Working With Children Check) 제도와 경찰신원조사(NPC: National Police Check) 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민간차원에서 호주 내니협회가 정하고 있는 육아도

---

53) 이하의 주요 내용은 호주 내니협회 홈페이지, Working with Children Check, <http://www.australiannannyassociation.org.au/working-with-children-check>(2018. 9. 9. 인출); 호주 교육훈련부 홈페이지, <https://docs.education.gov.au/documents/home-care-national-guidelines>(2018. 9. 9. 인출); 호주정부 공정노동 음부즈만 홈페이지, <https://www.fairwork.gov.au>(2018. 9. 9. 인출)를 참조하였음.

54) 호주 legalvision 홈페이지, 4 Legal Tips for Hiring a Nanny, <https://legalvision.com.au/4-legal-tips-for-hiring-a-nanny>(2018. 9. 9. 인출).

우미회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 III-2-1 ■ 호주 내니협회(ANA: Australian Nanny Association)에서 정하는 육아도우미 최소 자격

• 만 18세 이상의 연령
•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도 육아도우미로 일할 마음을 가지고 현재 육아도우미로 일하고 있거나 혹은 지난 3년 내에 육아도우미로 일했던 자
• 둘 이상의 연락 가능한 신원보증인
•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정하는 유효한 아동관련업무 자격조사(WWCC: Working With Children Check) 인증서
• 유효한 응급처치자격 레벨2 인증서
• 유효한 심폐소생술자격 인증서
• 기타 추천되는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연방경찰 신원확인서 취득</li> <li>- 개인 손해보험 취득</li> <li>- 호주 아동 교육 및 케어 관리국(ACECQA: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이수 또는 관련 인증서</li> <li>- 육아도우미와 관련된 전문 교육훈련 및 워크숍 참여</li> </ul>

자료: 호주 내니협회 홈페이지, <http://www.australiannannyassociation.org.au/resources/minimum-standards-nanny/>(2018. 9. 13. 인출).

### 나) 아동관련업무 자격조사(WWCC: Working With Children Check)

#### (1) 개념

호주 아동관련업무 자격조사(WWCC: Working With Children Check) 제도는 아동관련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들의 신원을 조회하는 호주 정부의 대표적인 사전고용심사(Pre-employment screening) 제도이다. 이는 통상 범죄경력 여부를 조회하는 경찰신원조사(NPC: National Police Check)와 함께 진행된다.<sup>55)</sup> 호주 정부는 아동관련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WWCC와 NPC를 요구하고 있다. 업무에 종사한다는 의미에는 이를 직업으로 삼고자 함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55) 호주정부 가족연구소 홈페이지, Pre-employment screening: Working With Children Checks and Police Checks, <https://aifs.gov.au/cfca/publications/pre-employment-screening-working-children-checks-and-police-checks/export>(2018. 9. 13. 인출).

(2) 배경 및 연혁

학교, 보육시설, 병원, 종교시설,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클럽 등 아동들이 접촉하게 되는 각종 시설 및 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동 시설 및 단체에게 근무하는 자들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000년 New South Wales 주에서 Working With Children Check(WWCC) 제도를 도입을 계기로 호주에서는 아동 관련 업무를 위한 사전고용 심사의 제도가 시작되었다. 그 후, 호주의 모든 주 및 테리토리(territory)에서는 개별적인 아동관련 직무에 대한 사전고용 심사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별 주 및 테리토리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3) 장점 및 한계

WWCC 제도는 아동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기록을 사용하며, 동 기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동 제도는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진다.

▣ 표 III-2-2 ▣ 아동관련업무 자격조사(WWCC)의 장점

• 표준화 된 근거자료를 토대로 주관적인 의사결정을 최소화 함
• 구조화 된 리스트 평가방식을 통하여 결정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담보함
• 리스트 평가 모델은 명확히 설정될 수 있고 테스트 될 수 있음
• 정보는 투명하게 다루어질 수 있고 관련된 자는 정보를 제안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 구조화 된 리스크 평가 모델의 사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할 수 있음

자료: Child Protection Systems Royal Commission(2016). The life they deserve: Child Protection Systems Royal Commission report. Adelaide: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다만, 호주에서 WWCC 제도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전고용 심사로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는 주로 과거 기록 자체의 신뢰성과 그러한 기록이 앞으로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불확실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기록 자체가 없는 자들에 대한 모호성 역시 문제되고 있다.

▣ 표 III-2-3 ▣ 아동관련업무 자격조사(WWCC)의 한계

• 개별 주 및 테리토리에서 독자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제도의 일관성이 없고 복잡함
• WWCC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 자체에 대한 심사가 미흡함
• 해당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그 자가 안전하다는 증거가 아닌 그 자가 위협적이라는 기록이 없다는 것에 불과함

자료: 호주정부 가족연구소 홈페이지, <https://aifs.gov.au/cfca/publications/pre-employment-screening-work-ing-children-checks-and-police-checks/part-b-state-and>(2018. 10. 20. 인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WWCC 제도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다. 채용 전 사전면담, 신원 및 이력에 대한 철저한 검토,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의심스러운 요소에 대한 견고한 책임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결국 아동관련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는 과거의 객관적인 기록 외에도 현재의 주관적인 평가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회체계 전반의 올바른 구축 및 시민의 참여가 요청된다.

### 3) 육아도우미 운영·관리

#### 가) 육아도우미의 법적지위: 자영업자 또는 노동자(직원) 요건

육아도우미를 고용한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육아도우미에게 시간당 급여만을 지급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는 호주 정부가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각종 연금, 조세 등에 대한 회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육아도우미 스스로가 본인은 호주사업자 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된 사업자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 육아도우미의 법적지위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주 국세청은 노동자(직원)로 간주되는 육아도우미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표 III-2-4 ▣ 노동자로 간주되는 육아도우미의 요건

• 시간당 급여를 받는 경우
• 노동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그들의 직위에 따른 역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
• 계약에 따른 시간당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자료: 호주 legalvision 홈페이지, 4 Legal Tips for Hiring a Nanny, <https://legalvision.com.au/4-legal-tips-for-hiring-a-nanny/>(2018. 10. 20. 인출).

호주 국세청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육아도우미들을 노동자(직원)로 간주하게 된다. 간략히 말하여 각 가정에서 스스로 그들의 자녀를 돌보는 방식을 정하고 싶다면,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육아도우미는 각 가정의 노동자(직원)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의 지위를 갖는 육아도우미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10가지 최소한의 권리(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를 호주정부로부터 보장받는다.<sup>56)</sup>

### 나) 고용계약 체결에 따른 고용주의 이득

육아도우미를 채용함에 있어 호주 정부가 정하는 공정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

▣ 표 III-2-5 ▣ 고용계약 체결에 따른 고용주의 이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하고 소송으로부터의 보호받을 수 있음(육아도우미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고용주는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의 기밀 사항을 유지할 수 있음(고용주는 계약 사항으로 육아도우미가 해당 가정의 기밀사항을 누설하는 일을 금지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종료 전 사전 통지의무를 규정할 수 있음(육아도우미가 갑자기 그만두어 다른 육아도우미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심사를 위한 임시근무 기간설정을 통하여 육아도우미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li> </ul>

자료: 호주 legalvision 홈페이지, 4 Legal Tips for Hiring a Nanny, <https://legalvision.com.au/4-legal-tips-for-hiring-a-nanny/>(2018. 10. 20. 인출).

### 다) 육아도우미 파일럿 프로그램(Nanny Pilot Programme)

육아도우미 파일럿 프로그램은 2016년 호주 정부차원에서 약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적으로 시행했던 정부 차원의 육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주로 다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보육 서비스에 접근이 곤란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sup>57)</sup>

56) 호주 정부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 근로조건 변경 요청권, 육아휴가, 연차휴가, 경조사 휴가, 지역사회 봉사휴가, 장기휴가, 공휴일, 계약종료 통지 및 정리해고,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등이다. 호주정부 공정노동 옴부즈만 홈페이지, <https://www.fairwork.gov.au/employee-entitlements/national-employment-standards>(2018. 9. 9. 인출).

57) 호주 내니협회 홈페이지, <http://www.australiannannyassociation.org.au/nanny-pilot-programme-give-me-a-break>(2018. 9. 10. 인출).

그간 육아도우미의 채용은 주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호주 정부는 육아도우미 서비스 제공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보육 서비스의 한 종류로 포섭하기 위한 실험적 제도로 육아도우미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것이다.

동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정부는 유사한 보육 서비스(예를 들어 Long Day Care 등)와 비교하여 개별 가정으로부터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다. 논의 끝에 2018년 7월 1일부로 시험적으로 진행되었던 동 제도는 중단되고, 정부 차원의 육아도우미 지원 프로그램은 2018년 7월 2일부터 새로운 통합 보육 서비스 제도(New child care package) 내의 재택 케어(IHC: In Home Care) 서비스로 대체되어 시행 중이다.

#### 라) 재택 케어(IHC: In Home Care)

호주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육아도우미 서비스는 재택 케어(In Home Care)라는 명칭으로 시행 중에 있다. 재택 케어 서비스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도입됨을 시작으로 2016년 육아도우미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완되어 2018년 7월 2일부터 호주 정부가 새롭게 시행한 보육서비스 패키지의 한 종류로 포함되었다(Australia Government, 2018a: 6).<sup>58)</sup> 동 서비스는 해당 가정의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비교적 유연한 방식으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육 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함을 특징으로 한다.

재택 케어(IHC)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 서비스 보조금(CCS) 수급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재택 케어 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주요 보육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수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Australia Government, 2018b: 8).<sup>59)</sup>

58) 호주 교육훈련부 홈페이지, In Home Care National Guidelines, <https://docs.education.gov.au/node/47766>(2018. 9. 10. 인출).

59) 호주 교육훈련부 홈페이지, In Home Care Handbook, <https://docs.education.gov.au/documents/home-care-handbook>(2018. 9. 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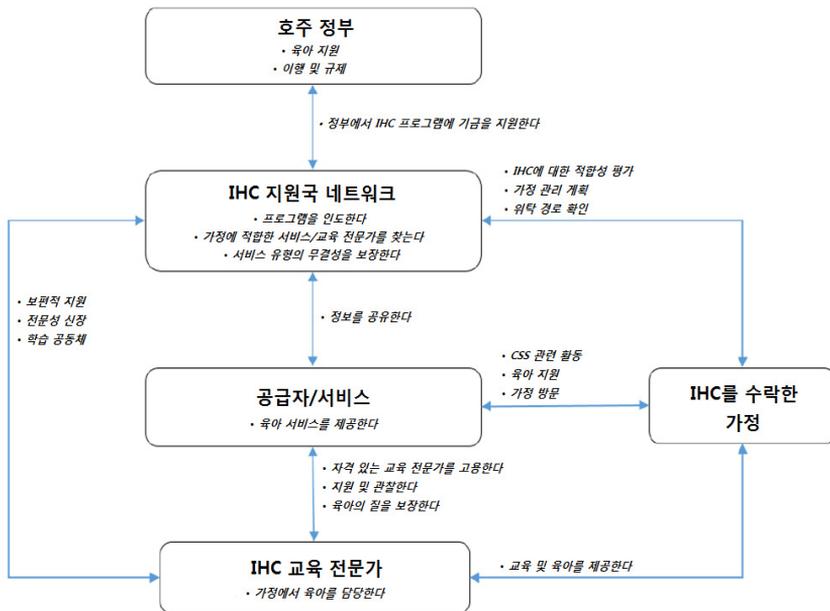
표 III-2-6 재택 케어 서비스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혹은 보호자가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 근무자 등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음으로 인하여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이 특수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가구의 지리적 여건상 일반적인 보육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가구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이 적절치 못한 경우</li> </ul>

자료: 호주 교육훈련부 홈페이지, <https://www.education.gov.au/in-home-care>(2018. 10. 20. 인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재택 케어 프로그램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승인된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업체를 통하여 해당 가정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작동 주체는 크게 호주 정부, 운영/지원기관, 서비스 제공업체, 서비스 제공자 및 개별 가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제공되며 동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담당자는 서비스 제공업체 및 보육 서비스 수급자를 엄격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림 III-2-1 호주 재택 케어(IHC) 프로그램 개요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18a). In Home Care National Guidelines, p.27.

라. 미국<sup>60)</sup>

1) 제도 개관

미국에서 육아도우미(nanny)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청소, 빨래 등 각종 집안일과 아이의 학습 보조를 담당한다. 육아도우미는 아이의 지적, 정서적 성장을 도와주며, 통상적으로 최소 1년의 계약기간을 가진다. 이들은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고용될 수 있으며, 종종 이들을 고용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 육아도우미의 평균 연봉은 2016년 1월 기준 25,692 달러이다.<sup>61)</sup>

2) 육아도우미 자격

가) 자격 요건

육아도우미가 되기 위한 특별한 학위나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인증서나 자격증은 육아도우미로 채용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CPR)이나 응급처치술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며, 이전에 육아도우미로 일했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추천서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표 III-2-7 미국 육아도우미 자격 요건 등

구분	내용
학위	없음.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자격증 선호됨.
인증	CPR이나 응급처치술 인증 필요. 자발적인 관련 인증서 선호됨.
경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름.
추가 요구사항	만 18세 이상. 양호한 건강상태. 최근에 발행된 건강진단서, 약물검사 등.
급여수준	25,692 달러 (2016년 육아도우미급여 평균)

자료: 국제내니협회 홈페이지, <https://nanny.org>; 미국 비즈니스 정보 업체 홈페이지, [Payscale.com](https://www.payscale.com)(2018. 5. 20. 인출).

60) 이하의 주요 내용은 국제내니협회 홈페이지, <https://nanny.org>(2018. 5. 20. 인출); Care.com 홈페이지, <https://www.care.com/homepay>(2018. 5. 20. 인출)를 참조하였음.

61) 미국 비즈니스 정보 업체 홈페이지, [Payscale.com](https://www.payscale.com)(2018. 5. 20. 인출).

## 나) 육아도우미가 되기 위한 단계<sup>62)</sup>

### (1) 1단계 : 육아에 대한 경험 획득

육아도우미는 탁아, 보육, 교육 또는 부모 또는 대가족으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일했던 가정, 센터 또는 학교에서 추천서를 받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뢰성 높은 추천서는 향후 육아도우미로 채용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육아도우미로서 자신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2) 2단계 : 관련 학위 취득

육아도우미가 되는데 학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유아 교육 관련 학위 소지자를 선호할 수 있다. 각종 육아 교실 또는 강좌에 참여하여 육아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인증서를 수집해 두면 육아도우미로 채용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3) 3단계 : 관련 협회 가입

육아도우미 관련 협회에 가입하는 일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내니협회(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 INA)는 지속적인 정보, 멘토링 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63)</sup> 또한 INA는 회원을 대상으로 두 가지 전문 시험을 제공한다. 기초기술시험(basic skills exam)은 응시자의 건강, 안전, 영양 및 전문성 영역에서 보육 지식을 테스트한다. INA자격시험(INA credential exam)은 응시자의 아동지도, 가족과의 의사소통, 다문화 인식 및 관리기술과 관련된 실무적인 보육 지식을 테스트한다. 이와 같은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증명서를 취득하면 육아도우미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2) 이하의 내용은 Study.com 홈페이지, "How to Become a Nanny: Career Guide", [https://study.com/articles/How\\_to\\_Become\\_a\\_Nanny\\_Career\\_Guide.html](https://study.com/articles/How_to_Become_a_Nanny_Career_Guide.html)(2018. 5. 20. 인출)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63) 1985년 Deborah Davis 박사가 창립한 국제내니협회(INA)는 직업으로서 육아도우미를 합법화하고 전문화 하는 일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현재 INA는 육아도우미들을 위한 직업 표준 및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미국 최고의 협회 중 하나이다. <https://nanny.org>(2018. 5. 20. 인출).

(4) 4단계 : 추가적인 자격 증명 획득

전문성승인위원회(Council for Professional Recognition)에서 운영하는 아동개발협회(Child Development Associate: CDA)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다. 이 국가 자격 심사 프로그램은 육아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 CD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안전, 건강, 교육, 의사소통, 창의력, 사회성, 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능해야 한다. CDA 자격 증명은 대부분의 주에서 보육센터 직원 및 유치원 교사가 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기에 이를 획득한 육아도우미들은 대체 직업을 찾는 데 유리할 수 있다.

3) 육아도우미 운영·관리

가) 육아도우미세(Nanny Taxes)<sup>64)</sup>

육아도우미세(Nanny Taxes)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한 가족이 납부해야 하는 연방 및 주 세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① 사회 보장 및 의료 보장(FICA), 근로자로부터 원천 징수된 연방 및 주 소득세와 ② 사회 보장 및 의료 보장, 고용주가 지불한 연방 및 주 실업 보험세가 포함된다.

(1) 적용요건

육아도우미세는 한 가족이 육아도우미(또는 가정용 직원)에게 1년에 2,100 달러 이상(또는 실업 보험세를 위해 분기에 1,000 달러 이상)을 지불할 때 적용된다.<sup>65)</sup>

(2) 육아도우미세 적용에 있어 육아도우미의 법적지위

육아도우미세와 관련된 빈번한 분쟁 중 하나는 육아도우미의 지위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독립계약자, 일반사업자 등)로 볼 것인지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따르면 이를 구분하

64) 이하의 내용은 Care.com 홈페이지, Nanny Taxes 101, <https://www.care.com/homepay/nanny-tax-guide>(2018. 5. 20. 인출)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65) 육아도우미세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모든 주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금을 직원으로부터 원천 징수하거나 고용주가 지불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 거주 지역의 특정 요구사항을 보려면 해당 주의 육아도우미세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는 주요 기준은 서비스의 제공방식 및 업무수행의 세부사항에 대한 고용주의 통제여부에 있다.<sup>66)</sup> 통상적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한 가족은 육아도우미가 자녀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또한 육아도우미의 육아 방식은 대부분 육아도우미를 고용한 가족의 육아 방식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육아도우미는 통상적으로 고용주인 가족의 직원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그 결과 육아도우미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육아도우미를 자영업자(독립계약자)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IRS)에 탈세로 적발될 수 있다.

### (3) 육아도우미세 납부의 혜택

적법한 육아도우미세 납부를 통해 고용주인 가족과 육아도우미 모두 세금 납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부모)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IRS) 또는 주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육아도우미 역시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기 및 장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sup>67)</sup>

- 퇴직 시 사회보장 소득 및 메디 케어(의료보험) 보장
- 육아도우미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실직할 경우 실업 수당 급여
- 자동차 및 주택 담보 대출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검증 가능한 고용기록
-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소위 “Obamacare”라 함)을 통해 제공되는 보조금을 통한 의료비 절감

### 나) 육아도우미 보험(Nanny Insurance)<sup>68)</sup>

미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인 가족이 고려할 수 있는 보험에는 4가지가 있는데,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자동차보험(Car Insurance), 근로자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등이다.

66)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hiring-household-employees>(2018. 5. 20. 인출).

67) 미국 정부는 은퇴자를 위한 일정 수준의 소득과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 육아도우미가 이와 같은 정부의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육아도우미세(nanny tax)의 납부 여부가 그 전제 조건이 된다. <https://www.care.com/homepay/the-top-3-benefits-of-reporting-nanny-taxes-1209170030>(2018. 10. 20. 인출).

68) 이하의 내용은 Care.com 홈페이지, Do You Need Nanny Insurance?, <https://www.care.com/homepay/do-you-need-nanny-insurance-1303180328>(2018. 5. 20. 인출)을 요약·정리함.

(1) 건강보험

육아도우미가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육아도우미가 외국인인 경우 개별 비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조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요청된다. 육아도우미를 고용한 가족이 육아도우미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고용주인 가족은 육아도우미를 위하여 그리고 가정의 사실적인 평화를 위하여 그들의 육아도우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시행된 21세기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과 2017년 시행된 소규모고용주건강상환약정(Qualified Small Employer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 QSEHRA)에 따라 고용주인 가족이 육아도우미의 건강보험 및 기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2)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집안에서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 역시 육아도우미를 고용한 가족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한 가정에서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3) 자동차 보험

육아도우미가 자녀들에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장 범위에 육아도우미를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의무적인 것이 아니지만, 육아도우미의 운전으로 인한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다.

(4) 근로자보상보험

보상 보험은 통상 주 정부가 관리하지만, 모든 주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육아도우미가 업무 중에 상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보상보험이 없다면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보상보험이 요청된다.

## 마. 독일<sup>69)</sup>

### 1) 육아도우미 자격 요건

독일의 경우 육아도우미 범주에 나니, 베이비시터, 타게스무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나니

독일식 발음으로 나니(Nanny)는 일반적으로 유럽을 비롯 다른 나라에서 활용되는 육아도우미 ‘내니’와 같다. 가장 먼저 나니는 아동양육과 함께 가사돌보미 업무를 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나니로서 종사하는 사람은 직업교육을 받은 가정교사 혹은 아동전문간호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니는 가정 내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양육업무와 가사업무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주로 찾는다. 나니는 주로 아이를 등하교시키거나, 점심 준비, 기타 가사업무 등을 담당한다.<sup>70)</sup>

#### 나)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는 주로 일과 중 1-2시간 혹은 주중에 짧은 시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찾게 된다. 부모는 베이비시터를 찾을 때 응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하여 적절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한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지 않은 청소년들이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기도 한다.<sup>71)</sup> 이러한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베이비시터활동을 할 수 있고,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부모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베이비시터 업무는 주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범위 월 450유로 이하를 번다는

69) 이하의 주요 내용은 독일 양육시설 안내 홈페이지, <http://www.kita.de/wissen/private-kinderbetreuung-gesucht/>(2018. 6. 15. 인출); 독일 타게스무터 홈페이지, <https://www.tagesmutter.com/tagesmutter-ratgeber/>(2018. 6. 15. 인출)를 참조하였음.

70) 독일 양육시설 안내 홈페이지, <http://www.kita.de/wissen/private-kinderbetreuung-gesucht/>(2018. 6. 15. 인출).

71) 독일 바덴-뷔템베르크 주 Hallobabysitter 홈페이지, <https://www.hallobabysitter.de/blog/babysitterkurse/baden-wuerttemberg>(2018. 6. 15. 인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청에 달리 개인적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대나 다른 사정에 따라 가격의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시간당 약 9유로 정도이다.<sup>72)</sup>

#### 다) 타게스무터(Tagesmutter)

타게스무터는 독일 내에서 가장 활발하고 전문적으로 민간에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베이비시터와 나니에 비하여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타게스무터는 아이의 양육과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나니’와 비교하였을 때, 나니는 부모의 가정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양육과 돌봄 업무를 수행 하지만 ‘타게스무터’의 경우 타게스무터의 집에서 필요한 양육과 교육활동을 수행한다.<sup>73)</sup> 우리나라의 가정어린이집과 방식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타게스무터의 개인 가정에서 활동한다는 점, 관련법에 따라 5명 이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점<sup>74)</sup>에서 우리나라의 가정어린이집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양육 및 교육환경은 매우 친화적이고 가족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타게스무터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교육학적 자격이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영유아를 위한 응급조치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타게스무터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관청(Jugendamt)에서 타게스무터로서의 활동에 대한 허가 또한 받을 수 없다.<sup>75)</sup>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타게스무터는 매우 큰 편차로 상이하다. 다만 평균적으로 보호자는 시간당 최소 5,50(약 7,200원)유로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는 나니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지만, 일반 Kita(보육시설)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다.

72) 독일 함부르크 민간육아도우미 알림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s://www.erstekinderbetreuung.de/baby-sitter-jobs/Hamburg?affiliateid=&gclid=EAlaIQobChMI3d2M3pip2wIVSAwrCh3jGwkzEAYASAAEgLMOvD\\_BwE](https://www.erstekinderbetreuung.de/baby-sitter-jobs/Hamburg?affiliateid=&gclid=EAlaIQobChMI3d2M3pip2wIVSAwrCh3jGwkzEAYASAAEgLMOvD_BwE)(2018. 6. 15. 인출).

73) 독일 타게스무터 홈페이지, <https://www.tagesmutter.com/tagesmutter-ratgeber/>(2018. 6. 15. 인출).

74) 독일 vexcash 홈페이지, <https://www.vexcash.com/blog/tagesmutter-kosten/>(2018. 6. 15. 인출)

75) 독일 양육시설 안내 홈페이지, <http://www.kita.de/wissen/private-kinderbetreuung-gesucht/>(2018. 6. 15. 인출).

## 2) 육아도우미 운영·관리

### 가) 법률상의 안전장치

독일 내 민간 분야의 육아도우미는 베이비시터와 같이 가벼운 아르바이트 활동부터 타게스무터와 같은 전문적인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부모는 가급적 양육에 관한 중요한 세부사항을 계약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의 육아도우미에게 아동을 위탁한 경우에는 부모의 '감시의무'가 자동적으로 육아도우미에게 이전된다. 이에 따라 위탁시간에 발생하는 책임에 관하여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위임됨을 의미한다. 민간 육아도우미가 아동의 감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손해배상은 사고보험과 손해배상보험을 의미한다. 베이비시터는 대부분 월 450유로 이하의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미니잡(Minijob)으로서 관청이 아닌 미니잡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센터를 통해 베이비시터에 의한 사고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니와 타게스무터 업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가 노동관계에 대하여 세무서 등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러한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노동은 불법적인 노동행위가 된다.<sup>76)</sup>

### 나)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 절차

독일 내에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이에 관한 수요도 적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들 또한 충분하게 전달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 내에서는 주로 지인을 통하거나, 신문광고, 인터넷 등의 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베이비시터, 나니, 타게스무터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76) 독일 양육시설 안내 홈페이지, <http://www.kita.de/wissen/private-kinderbetreuung-gesucht/>(2018. 6. 15. 인출).

## 바. 스위스<sup>77)</sup>

### 1) 제도 개관

스위스에서 민간 육아도우미는 아동보육시설인 키타(Kindertagesstätte; Kita)의 대체 수단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실제 스위스에서 활용되고 소개되고 있는 양육의 형태는 14가지 정도인데, ① 부모-아동 그룹(Eltern-Kind-Gruppen) ② 체라벨 그룹(Chrabelgruppen)<sup>78)</sup> ③ 아파와 아이의 모임(Vater-Kind-Gruppen) ④ 놀이그룹(Spielgruppen) ⑤ 교회를 통한 돌봄-시간제 보육(Chinderhüeti) ⑥ 점심모임(Mittagstische) ⑦ 일일육아도우미를 통한 돌봄(Tagesfamilien)<sup>79)</sup> ⑧ 친족을 통한 돌봄(Verwandte), ⑨ 이웃 혹은 지인에게 부탁하기(Nachbarinnen/Nachbarn und Bekannte) ⑩ 부모간 시간분배를 통한 돌봄(Kinderbetreuung im Tausch), ⑪ 대부 혹은 조부모를 통한 돌봄(Paten-Grosseltern), ⑫ 나니(Nannys -Kinderfrauen) ⑬ 오페어(Au-pairs)를 통한 돌봄 ⑭ 베이비시터(Babysitting)를 통한 돌봄 등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위탁을 위한 관점에서는 타게스무터와 나니, 베이비시터가 비교적 널리 이용되고 있다.

### 2) 육아도우미 자격 요건

#### 가) 나니(Nanny 혹은 Kinderfrau)<sup>80)</sup>

##### (1) 일반적인 나니

나니는 교육자, 아동병원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 등 자신의 직업에서의 전문적 능력을 가진 육아도우미로서 부모의 집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말한다. 나니는 나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양육과 교육을 통해 아동이 학교에서 필요로

77) 이하의 주요 내용은 Stadt Zürich Sozialdepartement(2014). Kinderbetreuung - Alternativen zur Kita. Anleitungen zum Engagement für Eltern und Interessierte. Sozialdepartement der Stadt Zürich, pp. 13-79; 스위스 아동양육 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reut24.ch/seiten/infos.html>(2018. 7. 13. 인출)를 참조하였음.

78) 부모와 자녀간의 만남을 위한 변형된 형태로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습하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형태로 3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영유아가 주 대상이며, 최대 2세까지 참여는 가능함.

79) 타게스무터가 이에 해당함.

80) 이하의 내용은 스위스 아동양육 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reut24.ch/seiten/infos/definition\\_babysitter\\_nanny\\_kinderfrau\\_tagesmutter.html#details](http://www.betreut24.ch/seiten/infos/definition_babysitter_nanny_kinderfrau_tagesmutter.html#details)(2018. 7. 13. 인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하는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나니는 기본적으로 베이비시터와 마찬가지로 돌봄을 희망하는 아동의 가정에서 일한다. 돌봄의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규칙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베이비시터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아동에게 부모의 대체자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나니는 한명의 아이 혹은 다수의 아이를 양육함과 동시에 부모와 약속된 범위에서 가사 일을 함께 담당한다. 나니 업무의 중심은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돌봄 제공과 아동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위한 신뢰감 형성 활동이 주를 이룬다. 교육,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 식사와 간식 챙기기 같은 영양 섭취문제 등과 관련하여 가족과의 협의된 범위에서 나니는 아이와 함께 스스로 구성한 일정에 따라 하루를 생활한다.

## (2) 특수한 형태의 나니 - '나니 셰어링'

나니의 특수한 형태로서 소위 '나니 셰어링'이 있다. 표현 그대로 나니 한명이 한 가정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니를 다수의 가정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니를 필요로 하는 몇몇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과 친분이 있는 가정과 나니를 공동으로 시간을 분배하여 쓰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두 가정이 나니를 종일제 근무자로서 매일 8시부터 18시까지 시간을 분배하여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유시스템을 통해 두 가정은 모두 경제적, 실용적 측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아동은 혼자가 아닌 2-3명의 또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나니 셰어링'은 나니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나니 본인에게도 많은 이득을 보장한다. 매월 양육비용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에 다수의 아동을 양육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나니 셰어링'은 일반적으로 다수 아동의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육아도우미 모델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다.

나) 베이비시터<sup>81)</sup>

베이비시터는 아동을 낮 시간 동안이나 저녁시간에 혹은 밤 시간대 등 부모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말한다. 베이비시터 자신이 별도로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타게스무터와 차이가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부모가 베이비시터의 거주지나 별도의 장소로 아동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장소적 제약은 없다. 또한 베이비시터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이거나 불특정한 수요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에서 베이비시터로 활동하기 위한 연령의 제한이 있는데, 그 나이는 13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또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생후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베이비시터 단독으로 아픈 아이들과 동시에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아이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 돌봄 시간이 5시간 이상 지속되면 안 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베이비시터가 돌봄 장소에서 잠을 잘 수 있어야 한다. 베이비시터는 민간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형화된 요금체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지역의 특성, 가족의 특성 등에 따라 요금은 상이한데, 베이비시터의 나이에서부터, 베이비시터로서의 경험과 교육수료 여부, 베이비시터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임무, 보살핌을 받는 어린이의 수와 연령, 돌봄 시간(낮, 저녁 또는 야간 보육 등) 그리고 베이비시터가 혼자서 돌보는지 아니면 다른 성인이 존재하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이에 대해 스위스 적십자에서는 일반적으로 베이비시터가 13세에서 15세의 연령의 경우 8프랑에서 10프랑 정도의 요금을 권장하고 있으며, 베이비시터의 연령이 16세에서 25세인 경우에 11프랑에서 18프랑 정도의 요금이 적정한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1명당 2프랑 정도의 추가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베이비시터가 돌봄 가정에서 하룻밤을 머무르는 경우에는 최소 25프랑 정도의 추가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베이비시터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이 고려된다. 베이비시터와 부모는 사고보험과 같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보험가입

81) 이하의 내용은 스위스 아동양육 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reut24.ch/seiten/infos/definicion\\_babysitter\\_nanny\\_kinderfrau\\_tagesmutter.html#details](http://www.betreut24.ch/seiten/infos/definicion_babysitter_nanny_kinderfrau_tagesmutter.html#details)(2018. 7. 13. 인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등의 조치를 통해 기본적으로 베이비시터는 불시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이거나 단순한 용돈벌이용 직업으로서의 베이비시터를 위해 사고보험에 가입할 것이 강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연령으로 일년 혹은 한 가정을 기준으로 750프랑 이내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고보험이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25세 이상 연령의 베이비시터는 사고보험 가입이 의무이다.

사회보장보험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가정은 용돈벌이용 베이비시터를 위해 연기금(AHV/IV/EO/ALV)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이미 지불한 비용에 관하여는 계속해서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장보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되는데, 먼저 13세에서 18세까지의 베이비시터는 별도로 사회보장보험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18세에서 25세까지의 베이비시터 역시 일 년 혹은 한 가정을 기준으로 750프랑 이내의 소득까지는 사회보장보험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8세 이상으로 직업적 차원에서 베이비시터를 하며 일 년 혹은 한 가정을 기준으로 750프랑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보험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직업적인 것은 아니나 21세 이상으로 750프랑 이상의 소득을 얻는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보험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 다) 타게스무터(Tagesmutter)<sup>82)</sup>

스위스에서 타게스무터는 1명에서 5명까지의 아동을 부모의 집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이 부모의 가정 내에서 양육이 되는지, 타게스무터에 의해 다른 시설에서 양육되는지 장소적 특성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로서 타게스무터와 베이비시터, 나니 간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타게스무터는 법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2.5일까지 그리고 5명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수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타게스무터로 일하기 위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주당 2.5일 이상 혹은 5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타게스무터의 경우에는 관청에서 요구하는 허가조건을 충족하여 활동을 위한

82) 이하의 내용은 Selbständige Tagesmutter.ch, Tagesmutter ohne Verein 홈페이지, <https://www.selbständige-tagesmutter.ch/definition-tagesmutter>(2018. 7. 15. 인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무관청의 청소년담당자 등을 통해 감독 받게 된다.

### 3) 육아도우미 운영·관리

#### 가) 타게스무터 허가 의무

스위스에서는 타게스무터와 같이 아동 돌봄을 원하는 경우에는 “양육아동의 수용에 관한 규정”(Verordnung über die Aufnahme von Pflegekindern; Pflegekinderverordnung, PAVO)<sup>83)</sup>을 따라야 한다. 스위스에서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기 원한다면, 수, 연령, 시간상 범위, 장소, 친척관계, 성숙도 등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규제들이 존재한다. 양육형태와 일정 판단기준의 충족도에 따라 관청은 이에 관한 등록을 하고 감독의무를 수반하는 허가 의무가 있다. 이는 아동이 부모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양육되어지기 때문이다. 타게스무터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 사항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5명 이상 돌보면서, 최소한 주당 2.5일 이상 돌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관할 관청(주청소년위원회나 지역의 청소년 위원회)에서 타게스무터를 감독한다. 다만, 형제, 자매, 조부모, 오누이 등 가까운 친족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 혹은 동시에 5명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돌봄 관계를 3개월 미만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sup>84)</sup>

한편, 타게스무터 관리·감독을 위해 담당자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타게스무터의 본 가정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성격, 건강 그리고 교육능력에 따른 적합성을 점검하게 된다. 타게스무터 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타게스무터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담당자의 감독 하에 있으며, 직원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할청은 상세한 자료제공과 재교육 등 돌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지원을 해야 한다. 타게스무터 연합회

83) 스위스 “양육아동의 수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770243/201706200000/211.222.338.pdf> 참조(2018. 7. 25. 인출).

84) 이상의 내용은 Selbständige Tagesmutter.ch, Tagesmutter ohne Verein 홈페이지, <https://www.selbständige-tagesmutter.ch/gesetzliche-richtlinien-der-tagesmutter>(2018. 7. 15. 인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에 가입된 타게스무터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궁금증에 관하여 연합회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sup>85)</sup>

#### 나) 타게스무터 교육

기본적으로 스위스에서 타게스무터에 대한 법적인 교육 의무는 없다. 다만, 타게스무터 연합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통상 약 18시간의 기본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교육 중에는 전문가에 의한 6시간의 긴급구조 과정과 타게스무터의 개인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타게스무터 교육프로그램은 아동과 관련되거나,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그리고 교육적인 능력 등과 인간관계 형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게스무터도 자신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전제사항들이 필수조건은 아니다.<sup>86)</sup>

#### 다) 타게스무터 요금

타게스무터의 요금측정 방식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인으로서 타게스무터를 운영하는지 혹은 연합회를 통하여 종사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자영업 타게스무터는 제공프로그램과 수요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타게스무터가 지역의 연합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합회의 고정임금표에 따라 요금을 받게 된다. 타게스무터의 가격은 타게스무터의 개인적인 전문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적, 의학적 교육을 받아 전문능력을 갖고 있는 타게스무터는 단지 경험상의 경력을 가진 타게스무터에 비하여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sup>87)</sup>

85) 이상의 내용은 스위스 아동양육 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reut24.ch/seiten/infos/Gesetzliche\\_Richtlinien\\_\(Melde-\\_und\\_Bewilligungspflicht\)\\_fur\\_den\\_Babysitter,\\_die\\_Nanny\\_und\\_Tagesmutter.html#details](http://www.betreut24.ch/seiten/infos/Gesetzliche_Richtlinien_(Melde-_und_Bewilligungspflicht)_fur_den_Babysitter,_die_Nanny_und_Tagesmutter.html#details)(2018. 7. 15. 인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86) 이상의 내용은 스위스 아동양육 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reut24.ch/seiten/infos/Gesetzliche\\_Bestimmungen\\_zur\\_Ausbildung\\_eines\\_Babysitters,\\_einer\\_Nanny\\_und\\_Tagesmutter.html#details](http://www.betreut24.ch/seiten/infos/Gesetzliche_Bestimmungen_zur_Ausbildung_eines_Babysitters,_einer_Nanny_und_Tagesmutter.html#details)(2018. 7. 13. 인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87) 이상의 내용은 스위스 아동양육 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reut24.ch/seiten/infos/definition\\_babysitter\\_nanny\\_kinderfrau\\_tagesmutter.html#details](http://www.betreut24.ch/seiten/infos/definition_babysitter_nanny_kinderfrau_tagesmutter.html#details)(2018. 7. 13. 인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표 III-2-8 | 스위스 타게스무터 요금체계

요금/교육	아이 당 요금	추가적 활동	아이 당 요금
기본임금	+ 4 프랑	아침식사	+ 3 프랑
체험과 추천	+ 1-2 프랑	중간식사	+ 2 프랑
베이비시터 교육 이수	+ 1 프랑	점심식사	+ 4-7 프랑
응급조치 교육 이수	+ 1 프랑	과일(간식)	+ 2 프랑
타게스무터 교육 이수	+ 2 프랑	저녁식사	+ 3-6 프랑
교육학적 교육 이수	+ 3-4 프랑	저녁 추가시간	+ 12-25 프랑
의학적 교육 이수	+ 2-3 프랑	일요일 추가시간	+ 시간당 2 프랑
최대 추천 요금	교육에 따라 5-20 프랑		

자료: 스위스 아동양육 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reut24.ch/seiten/infos/definition\\_babysitter\\_nanny\\_kinderfrau\\_tagesmutter.html#details](http://www.betreut24.ch/seiten/infos/definition_babysitter_nanny_kinderfrau_tagesmutter.html#details)(2018. 7. 13. 인출).

#### 라) 보험제도<sup>88)</sup>

타게스무터는 타게스무터 연합회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일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타게스무터 연합회가 모든 등록과 지불 등에 관하여 조정하고, 후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주(Kanton)에 따라 그 조건과 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게스무터는 최소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데, 아동의 사고보험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입한다. 배상보험의 경우 타게스무터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영업배상보험은 매년 1000프랑 정도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대부분의 민간배상보험은 타게스무터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합회 등에 가입된 타게스무터의 경우 자동적으로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도 질병으로 인한 타게스무터의 실업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질병수당보험을 권장하고 있다.

88) 이하의 내용은 스위스 아동양육 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reut24.ch/seiten/infos/Versicherungen\\_des\\_Babysitter\\_der\\_Nanny\\_und\\_Tagesmutter.html#details](http://www.betreut24.ch/seiten/infos/Versicherungen_des_Babysitter_der_Nanny_und_Tagesmutter.html#details)(2018. 7. 15. 인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사. 싱가포르<sup>89)</sup>

### 1) 제도 개관<sup>90)</sup>

싱가포르 각 가정에서는 아동들의 육아를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채용함이 일반적이다. 최근 들어 정부 차원의 보육서비스가 크게 늘고 있으나,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채용에 비하여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의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노동허가, 건강검진 및 초기정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채용한 고용주의 자격요건, 보증증권 및 보험 가입 및 정부차원의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싱가포르 정부 차원의 보육서비스는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육센터 등 시설 중심의 보육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육 관련 정부의 보조금은 정부에서 인증한 보육시설에 지급됨이 원칙이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금액은 차이가 있다. 학부모들은 개별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이 공제된 해당 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한다(ECDA, 2017: 60-61). 싱가포르 정부 차원의 보육 프로그램 중에도 가정보육서비스(Family Day Care Services)가 있다.<sup>91)</sup> 가정보육서비스는 전통적인 내니(nanny) 혹은 아기돌보기(baby-sitting) 서비스의 정형화된 버전이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에게 해당 가정의 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개별적인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합할 수 있으며, 부모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방식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동 서비스는 싱가포르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중 다른 주요국의 내니(nanny) 프로그램과 상대적으로 가장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89) 이하의 주요 내용은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eligibility-and-requirements>(2018. 10. 2. 인출); 싱가포르 정부 One-Stop 포털, <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home/services.jsp>(2018. 10. 2. 인출)을 참조하였음.

90) 주요 내용은 싱가포르 유아교육진흥원(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 홈페이지, <https://www.ecda.gov.sg>(2018. 10. 4. 인출) 참조.

91) 싱가포르 정부는 보육관련 웹사이트 포털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Child Care Link를 운영 중에 있다. 가정보육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home/services.jsp>(2018. 10. 4. 인출) 참조.

그러나 현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에 비하여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사실상 육아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FDW: Foreign Domestic Worker)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2) 외국인 가사노동자 및 고용주 자격 요건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FDW)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자격, 보증증권, 보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sup>92)</sup>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성별, 연령, 국적 및 교육수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2-9 외국인 가사노동자 자격

성별	여성
연령	지원 당시 23세 부터 50세 까지 50세가 넘는 외국인 노동자는 60세 까지 노동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
출신국/지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대한민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등 정부가 승인한 출신국 또는 지역
교육	최소 8년의 정규교육 이수 및 이에 대한 증명
추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의 거주지에 채용되어야 함</li> <li>외국인 가사노동자로 처음 채용된 경우 정착 프로그램의 이수</li> <li>고용주와 부적절한 관계가 없어야 함</li> <li>외국인 가사노동자는 노동허가를 받은 후에 싱가포르에 입국할 수 있으며, 해당 고용주는 \$5,000 이하의 보증증권(security bond)을 구입해야 함. 단, 말레이시아 노동자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li> </ul>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eligibility-and-requirements>(2018. 10. 20. 인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채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표 III-2-10 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용주 자격

연령	21세 이상
경제적 상황	파산한 자가 아닐 것
정신적 능력	고용주로서 충분한 이해력과 책임성을 갖출 것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eligibility-and-requirements/employer-requirements>(2018. 10. 20. 인출).

92)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eligibility-and-requirements>(2018. 10. 2. 인출).

만일 고용주가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정부가 마련한 관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 가사노동자의 채용을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능하다. 고용주는 필수적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채용할 만한 재정적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 3) 육아도우미 운영·관리<sup>93)</sup>

#### 가) 채용 전 신체검사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취업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2주 이내에 싱가포르에 등록된 의사에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업 허가증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신체검사 대상은 4가지 유형의 전염성 질병(결핵, HIV, 매독 및 말라리아)이며, 가사노동자로 일하기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고용주가 가사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염려될 경우, 보다 자세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나) 정기적 신체검사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채용기간 중 고용주는 6개월마다 정기적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검사 항목은 임신여부, 전염성 질병(매독, HIV, 결핵) 등이다. 동 신체검사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의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하여야 한다.

---

93)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Work Permit for FDW: eligibility and requirements,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eligibility-and-requirements>(2018. 10. 20. 인출).

표 III-2-11 | 가사노동자 건강검진 항목

검사 항목	시기
임신	매 6개월 마다
매독	매 6개월 마다
HIV	매 2년 마다
결핵	싱가포르에 거주한 2년 동안 1회

자료: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eligibility-and-requirements/six-monthly-medical-examination>(2018. 10. 20. 인출).

#### 다) 고용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고용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고용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3시간짜리 프로그램이다. 고용주는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2일(근무일 기준) 이전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한다.

참석대상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처음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될 수 있음) 또는 최근 12개월 내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3회 이상 변경했고 새로운 가사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이다.

오리엔테이션 비용은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30 ~ \$34.50이고 온라인 수업인 경우 \$46이다. 다만 고용주가 만성적 건강상태 악화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60세 이상으로 육체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경우 등에는 대리참석 가능하다. 또한 임신부이거나 출산 직후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참석할 수 있다.

고용주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1년 이내에게 3회 이상 바꾼 경우, 신규 가사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싱가포르 노동부 담당자와 면담에 참석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참석시킬 수 없다.

#### 라)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착 프로그램(Settling-In Programme)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로서 처음 채용된 사람은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정착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한다. 동 정착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의 안전 예방책 및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편성된 1일 오리엔테이션이다. 주요 내용은 싱가포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고용 조건, 가정 내에서의 안전, 다른 지

역에서의 안전, 관계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이다.

동 프로그램은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3일 이내(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함)에 이수해야 하며,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모국어로 진행된다. 비용은 \$75이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 마) 보험제도

##### (1) 보험증권(security bond)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고용주는 관련된 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정부에 \$5,000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으로 보증증권을 구입해야 한다. 다만, 말레이시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보증증권은 시중의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 구매 가능하다.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에 보증증권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 또한 의료보험 및 개인사고보험 역시 이와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들은 패키지 또는 개별적으로 구입 가능하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취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귀국한 경우 및 보증증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주는 해당 보증증권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가사도우미가 싱가포르를 떠난 후 1주일 이내로 보증증권 금액은 환급된다.

고용주의 보증증권은 본인 또는 피고용인이 취업허가 및 보증채권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취업허가의 만료, 취소 및 누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귀국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권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만일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실종되었을 경우, 수색을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하고 이를 경찰에 보고하였다면 고용주는 보증증권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규정위반(특히 임신과 관련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고지하였을 경우, 그리고 규정위반 행위를 인지한 즉시 당국에 보고했을 경우 고용주는 면책될 수 있다.

(2) 의료보험 및 개인사고보험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에 의료보험 및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sup>94)</sup> 고용주는 이와 같은 보험비용을 가사노동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가사노동자가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동안 입원 치료 및 수술에 대해 매년 최소 \$15,000 이상을 보장범위로 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2017년 10월 1일 이후 가사노동자를 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개인사고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 보험은 매년 합산하여 최소 \$60,000 이상을 보장범위로 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 또는 사망사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적인 배제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개인사고보험은 영구 장애로 고통을 당하거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시금 보상을 제공하여 가사노동자와 그녀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금은 가사노동자 혹은 그녀의 수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아. 홍콩<sup>95)</sup>

1) 제도 개관

홍콩의 대다수 맞벌이 가정에서는 가사도우미(domestic helper)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필리핀 또는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 출신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며, 해당 가정과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채용된다. 홍콩 정부는 가사도우미 고용주와 지원자가 준수해야 하는 채용계약의 표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 제도를 운영하여 이들의 입국, 체류, 출국 및 추방 등을 관리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청소, 빨래, 음식, 운전, 보육 등 거의 모든 집안일을 담당하기 때

94)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eligibility-and-requirements/insurance-requirements>(2018. 10. 3. 인출).

95) 이하의 주요 내용은 홍콩정부 홈페이지, Hiring Local Domestic Helpers, <https://www.gov.hk/en/residents/employment/recruitment/localdomestichelper.htm>(2018. 9. 24. 인출); 홍콩 이민국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발급 홈페이지, [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foreign\\_domestic\\_helpers.html](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foreign_domestic_helpers.html)(2018. 9. 24. 인출)를 참조하였음.

문에 홍콩의 가정에서 아동 보육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내니(nanny)를 따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일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정부 차원의 내니 지원 서비스 혹은 민간 차원의 내니 시장은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 정부 차원의 보육 서비스는 주로 보육센터 및 유치원 등의 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일손부족 및 성 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보육서비스 체계는 대체로 미흡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의 보육 시설은 비용 및 접근가능성 등 때문에 일반 홍콩 가정에서 이용하기 쉽지 않다.<sup>96)</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 가정에서 채용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홍콩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여 우수 인력을 보강하고 노동력 부족현상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착취, 폭력, 인권유린 등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공공 보육서비스 문제가 복합된 다양한 사회문제<sup>97)</sup>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해당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sup>98)</sup>

한편, 홍콩의 가사도우미는 크게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홍콩 시민인 내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납세를 위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등 홍콩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다(김소영 외, 2013: 35).<sup>99)</sup>

그러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는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 근로계약의 내용에 적용되는 규칙 등이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와 큰 차이가 있다. 대다수의 홍콩의 가사도우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FDH: Foreign Domestic Helper)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

96) South China Morning Post, "Hong Kong 'should learn from Singapore' on childcare, minister says", 2018. 3. 18일자, <https://www.scmp.com/news/hong-kong/community/article/2137725/hong-kong-should-learn-singapore-childcare-minister-says>(2018. 10. 1. 인출).

97) CNN, "Hong Kong's maids are often treated like slaves", 2016. 3. 15일자, <https://money.cnn.com/2016/03/15/news/hong-kong-forced-labor-maids/index.html>(2018. 9. 15. 인출).

98) 최근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A Campaign for Hong Kong's Domestic Workers 홈페이지, <http://hkhelperscampaign.com/en>(2018. 9. 9. 인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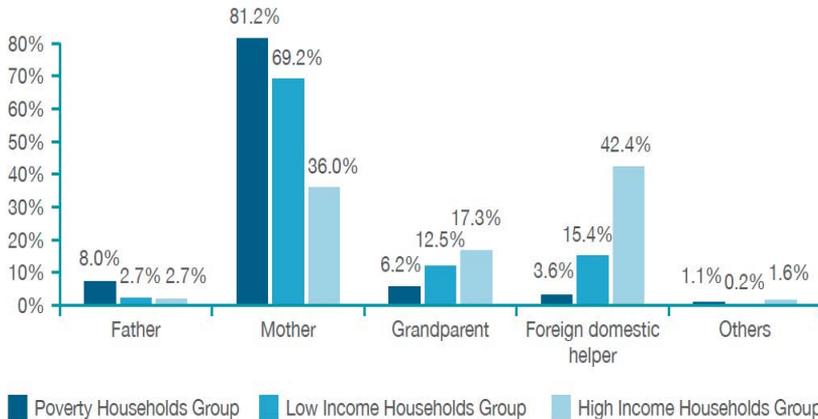
99) 홍콩의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콩정부(GovHK) 홈페이지, Hiring Local Domestic Helpers, <https://www.gov.hk/en/residents/employment/recruitment/localdomestichelper.htm>(2018. 9. 24. 인출) 참조.

## 2) 외국인 가사노동자 및 고용주 자격 요건

홍콩의 가사 노동자 중 약 80%를 차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온 이주 노동자이다.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2년이며, 이민국에서 정한 표준 고용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가정(고용주)과 가사도우미 지원자 간의 고용계약이 체결된다. 동 계약은 홍콩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 신청의 전제가 되며, 정부는 비자의 발급 및 연장, 가사도우미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가사 도우미의 업무 범위는 요리, 노인돌보기, 아이돌보기 등 대부분의 가사 업무를 망라한다. 따라서 홍콩에서는 대부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뿐 별도로 내니를 고용하지는 않는 편이다.

최근까지 수십 년에 걸쳐 운영된 가사도우미 제도 특히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속한 증가는 홍콩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고소득층 가정들의 경우에는 중·저소득 가정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foreign domestic helper)를 채용하여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하게 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Mariana, Chan & Suelin, Hung, 2015: 43-47).

■ 그림 III-2-2 ■ 홍콩 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 양육 담당자 및 비율



자료: Mariana, Chan & Suelin, Hung(2015). Report of Study on Child Care Services for Low Income Families in Hong Kong, the 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 p.44.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채용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점은 고용주 및 채용 지원자 모두 불법적인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은 정부에서 정한 표준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용주와 가사도우미의 합의에 따른다. 이를 전제로 정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발급 행정의 뒤따르게 된다. 이민국 담당자는 채용가이드북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채용 지원자들의 자격을 심사하며 부적격자들에게는 재검토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2017: 3-6).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자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II-2-12>와 같다.

표 III-2-12 가사노동자 고용주 요건

• 고용주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월 평균 15,000 홍콩 달러 이상의 가계소득이나 이와 동등한 액수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 고용주와 가사도우미는 이민국에서 정한 표준고용계약(ID 407)을 체결해야 한다.
• 가사도우미는 표준고용계약(ID 407)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가사도우미는 홍콩에 체류하는 동안 그리고 표준고용계약(ID 407)의 2항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내에 겸직을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없다.
• 고용주는 가사도우미에게 홍콩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가사도우미는 표준고용계약(ID 407)의 3항에서 명시한 고용주의 거주지에서 일하고 거주해야 한다.
• 가사도우미는 적절한 편의 시설과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아야 한다.
• 고용주와 가사도우미의 채용계약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 고용주는 홍콩의 선량한 거주자여야 한다.
• 가사도우미는 고용주와의 합의를 위하여 홍콩에 입국할 수 없다.
• 가사도우미는 부양가족을 데리고 홍콩에 입국할 수 없다.

자료: 홍콩 이민국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발급 홈페이지, [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foreign\\_n\\_domestic\\_helpers.html](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foreign_n_domestic_helpers.html)(2018. 9. 9. 인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 3) 육아도우미 운영·관리<sup>100)</sup>

#### 가) 채용방법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은 관련 전문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개인적인 구인광고를 통하여 채용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홍콩 정부에서 정한 표준고용계약서 작성지침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100) 홍콩 노동국 홈페이지, Foreign Domestic Helpers, [https://www.fdh.labour.gov.hk/en/general\\_policy.html](https://www.fdh.labour.gov.hk/en/general_policy.html)(2018. 9. 9. 인출); 홍콩 이민국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발급 홈페이지, Foreign Domestic Helpers, [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foreign\\_n\\_domestic\\_helpers.html](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foreign_n_domestic_helpers.html)(2018. 9. 9. 인출).

## 나) 급여 및 복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한 가정은 홍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MAW: Minimum Allowable Wage)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2018년 9월 기준 월 최저임금은 HK\$4,520(대한민국 원화: 640,870)로 책정되어 있다. 표준고용계약에 따라 고용주는 가사도우미에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무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식사 제공이 어려울 경우 월 HK\$1,075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사도우미 채용계약에 따라 본국에서 홍콩으로의 교통비와 계약 해지로 인하여 홍콩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월 최저임금 및 적절한 숙식 및 교통비 등 제공은 2018년 9월 29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모두 적용된다.

고용주는 보상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업무상 상해에 관한 법령 및 표준고용계약에 따라 채용기간 중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용주에게는 관련 통합 보험상품의 가입이 추천된다.

## 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의무사항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오직 자신을 채용한 가정의 일에 전념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고용주의 가정에서 거주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른 가사도우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2주 이내로 반드시 홍콩을 떠나야 한다.<sup>101)</sup>

101) A Campaign for Hong Kong's Domestic Workers 홈페이지, <http://hkhelppercampaign.com/en/>(2018. 10. 20. 인출). 이와 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의무사항은 이들을 현대판 노예계약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CNN Money, "Hong Kong's maids are often treated like slaves", 2015. 3. 15일자; 국제노동기구 홈페이지, "Hong Kong's Hidden Shame", <http://apmigration.ilo.org/news/hong-kongs-hidden-shame>(2018. 10. 20. 인출). 자신을 채용한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개인적인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적절히 보장되기 어렵다. South China Morning Post, "Why foreign domestic helpers in Hong Kong must live in their employers' home", 2018. 2. 14일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다른 추가적인 일자리에 지원을 금하는 조치는 홍콩 자국민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방어책이다. 또한, 가사도우미 채용계약이 연장되지 않거나, 다른 가사도우미 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 이들은 2주 내에 홍콩에서 추방되는데, 홍콩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홍콩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비하여 다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차별

###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경우 가정보육모 제도를 통해 영유아 가정 내에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가정보육모의 교육과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가정보육모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성 및 아동보건서비스국(PMI)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을 통해 가정보육업무에 대한 직업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 가정보육모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 외에도 120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프랑스는 아동의 부모와 가정보육모가 직접 근로 계약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별고용주와 가정보육모 사이의 계약에 관한 전국적 단위의 단체협약 규율”과 노동법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약관계는 사회부조 및 가족법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용주인 부모와 가정보육모 모두 업무시간, 휴가, 비용 등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역시 베이비시터와 같은 민간 육아도우미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육아도우미가 원하는 경우 정부의 가정보육교사처럼 영국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fsted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범죄기록 확인을 포함한 여러 검사 절차를 통해 육아도우미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을 결정 받게 된다. 민간 육아도우미는 Ofsted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이 가능한데, 고용주인 부모 입장에서는 신원조회 등을 거친 육아도우미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점과 민간 육아도우미가 Ofsted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등록된 도우미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등록된 도우미 입장에서는 급여 연체 및 돌봄아동 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Ofsted에 등록된 육아도우미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민간 육아도우미의 자격을 특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은 없지만, 육아도우미로 일하려는 자는 아동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사전 자격심사 제도 및 경찰 신원조회 등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한편, 호주 역시 고용주인 부모와 민간 육아도우미 간에 정부가 정하는 공정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육아도우미를 고용한 가정은 계약상의 권리를, 육아도우미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육아도우미가 되기 위한 국가 공인 자격이나 인증은 없지만, 고용주인 부모와 육아도우미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 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설정된다. 즉, 정부가 직접적으로 육아도우미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용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용주인 가족에게는 육아도우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육아도우미 고용과 관련된 보험,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해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선 두 국가 모두 민간 육아도우미 영역을 타게스무터, 나니, 베이비시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같은 키타(Kita)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타게스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데, 엄격한 시설기준과 최대 5명의 제한된 아동 수, 연령 제한 등에 대해 지역 아동청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응급처치 등과 같은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세부적인 관리방식과 허용범위 등에 대해 독일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 영역인 타게스무터와 나니, 베이비시터 등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어느 연령부터 활동이 가능한지, 맡는 아이는 어느 정도 연령이 되어야 하는지, 세금이나 보험 등은 납부의 대상인지 등을 정하여 개인적 친분을 통한 양육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차원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육아도우미가 일정 규모 소득 이상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보험, 사고보험, 사회보장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직업적 차원에서의 육아도우미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아동의 보육을 위해 전통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채용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국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채용 및 관련제도 운영에 있어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보험증권 및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각종 교육과 면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홍콩의 경우 가사도우미의 관리를 위해 표준고용계약의 내용을 규율하고 특별 비자를 발급하여 거주지 및 다른 일자리를 제한하는 등 일반적인 노동자와 다른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에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차별, 인권유린 등의 사회적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된 바 있는데, 최근 홍콩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인권보장 및 평등한 대우를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와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표 III-3-1 육아도우미 제도 국가별 주요 특징 및 비교

국가	대표제도 및 주요특징	우리나라와의 비교점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보육모 제도</li> <li>PMI 인증</li> <li>120시간 실무교육</li> <li>부모와 가정보육모 간의 직접적 고용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의 인증제도 없음</li> <li>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근로자 지위 인정 X</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보육교사(childminder) 제도</li> <li>Ofsted에 의무 등록(신원조회, 범죄기록 확인)</li> <li>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Ofsted에 등록 가능(선택사항)</li> <li>이용료 세금공제(단, Ofsted에 도우미가 등록된 경우)</li> <li>책임보험 가입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의 인증 및 등록제도 없음</li> <li>세금 및 보험제도 없음</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도우미로 일하려는 자는 아동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사전 자격심사 및 경찰 신원조회 거쳐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원조회 등 정부차원의 제도 없으며,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조회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음</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도우미세 부과</li> <li>가정에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도우미의 경우 별도 세금 내고 있지 않으며, 가정에서도 4대 보험 가입 의무 없음</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게스무터: 시설기준, 연령 등에 대해 지역 아동청이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 가정보육제도 없음</li> </ul>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게스무터</li> <li>육아도우미에게 책임보험, 사고보험, 사회보장보험 가입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의 보험제도 없음</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제도</li> <li>고용주에게 보험증권 및 보험 가입 강제</li> <li>고용주에 대한 교육 및 면담 프로그램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있으나 교육과 인증제도만 존재하며 별도의 보험이나 관리제도는 없음</li> </ul>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제도</li> <li>표준고용계약 강제</li> <li>특별 비자 발급 및 거주지, 일자리 제한</li> </ul>	

주: 앞서 해외사례 분석한 내용 토대로 연구진이 구성함.

# IV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1. 응답자 특성
2. 이용 동기 및 구인과정
3. 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4.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5. 소결





## IV.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이 장에서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분석 결과를 다루었다.

### 1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는 여성 64.2%, 30대 76.7%, 맞벌이 가구가 87.8%를 차지하며, 자녀 특성으로는 영아 53.6%, 유아 37.0%, 초등자녀가 9.4%이고 자녀수는 평균 1.5명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654만원이다(표 IV-1-1 참조).

근로 특성으로 상용근로자는 남성 74.3%, 여성이 71.9%이며, 자영업자는 남성 9.9%, 여성이 5.3%를 차지한다(표 IV-1-2 참조).

표 IV-1-1 |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1\_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명, 만원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지역규모		월가구소득	
대도시	85.0(425)	300만원 이하	7.0( 35)
중소도시	14.0( 70)	500만원 이하	38.0(190)
읍·면지역	1.0( 5)	700만원 이하	29.4(147)
		900만원 이하	15.6( 78)
		900만원 초과	10.0( 50)
		평균(만원)	653.70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응답자 성별		자녀연령	
남성	35.8(179)	영아	53.6(268)
여성	64.2(321)	유아	37.0(185)
연령		초등자녀이상	9.4( 47)
20-29세	5.8( 29)	자녀수	
30-34세	26.2(131)	1명	55.2(276)
35-39세	50.0(250)	2명	40.0(200)
40세 이상	18.0( 90)	3명	4.6( 23)
최종학력		5명	0.2( 1)
고졸 이하	2.2( 11)	평균(명)	1.50
전문(3년제)대학 졸	9.4( 47)	맞벌이여부	
4년제 대학 이상	72.4(362)	맞벌이가구	87.8(439)
대학원 이상	16.0( 80)	홀벌이가구	12.2( 61)
계(수)		계(수)	100.0(50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표 IV-1-2 ▮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2\_근로 특성

단위 : %(명), 시간

구분	아버지	어머니	구분	아버지	어머니
취업 상태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자영업자	9.9( 48)	5.3( 24)	평균(시간)	39.19	35.64
고용주	9.3( 45)	7.5( 34)	시간제(40시간 미만)	23.0(111)	30.5(139)
상용근로자	74.3(359)	71.9(328)	전일제(40시간 이상)	77.0(372)	69.5(317)
임시근로자	2.1( 10)	9.4( 43)			
일용근로자	1.9( 9)	1.8( 8)			
무급가족종사자	2.5( 12)	3.9( 18)			
기타	-	0.2( 1)			
계(수)	100.0(483)	100.0(456)	계(수)	100.0(500)	100.0(50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심층면담 조사대상은 맞벌이 여부, 자녀 연령,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빈도에 따라 다양하며, 첫째 자녀의 연령은 0세부터 10세이고,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나타난다.

표 IV-1-3 |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자

번호	맞벌이 여부	소개 경로	이용시간	이용 빈도	이용 자녀연령/ 중복 이용 여부	월 이용금액
1	외벌이	인터넷 (단디헬퍼)	12시30분~ 17시30분	월26회	첫째 2~55개월 유치원 둘째 1~23개월 어린이집	150만원
2	맞벌이	소개업체	7시30분~ 17시30분	주5회	첫째 4~8세 어린이집 둘째 2~6세 어린이집	180만원
3	맞벌이	지인소개	입주	주5회	첫째 1~10세 (5세부터)어린이집/유치원 둘째 0~6세 (4세부터)어린이집/유치원	150만원
4	맞벌이	지인소개	8시~19시	주5회	첫째 0~5세 유치원 둘째 0~3세 어린이집	80만원
5	맞벌이	지인소개	16시~20시	주3회	첫째 0~5세 유치원 둘째 0~3세 어린이집	50~60만원
6	맞벌이	인터넷 (시터넷)	12시~17시	주5회	첫째 1세	130만원
7	외벌이	인터넷 (단디헬퍼)	입주	주5회	첫째 4~6세 유치원 둘째 0~2세	200만원 (중국동포)
8	맞벌이	인터넷 (단디헬퍼)	8시30분~ 19시30분	주5회	첫째 0~1세 (만21개월부터)어린이집	200만원
9	맞벌이	소개업체	입주	매일	첫째 0세	300만원
10	맞벌이 (육아휴직)	소개업체	10시~13시	주5회	첫째 3세~5세 유치원 둘째 0세~2세 어린이집	45만원

## 2 이용 동기 및 구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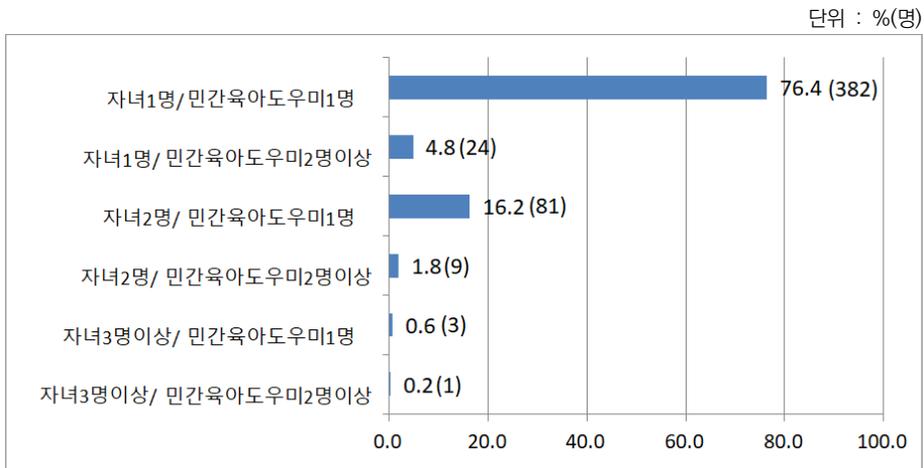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가구의 특성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동기 등을 조사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 시의 어려움과 고려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 가. 이용자 특성 및 이용 동기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수를 살펴보면, 자녀 1명당 민간 육아도우미 1인을 이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76.4%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자녀 2명에 민간 육아도우미 1명을 이용하는 가구가 16.2%를 차지하였다. 또한 민간 육아도우미 2인 이상 이용가구에 한하여 자녀수에 따른 민간 육아도우미 수를 질문한

결과, 자녀 1명인 경우는 평균 2.33명, 자녀 2명인 경우는 2.11명, 자녀 3명인 경우는 평균 3명으로 조사되었다.

■ 그림 IV-2-1 ■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 수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표 IV-2-1 ■ 민간 육아도우미 2명 이상인 경우 돌봄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자녀수 1명일 때	자녀수 2명일 때	자녀수 3명일 때	계
육아도우미가 2명이상인 응답자 수	24	9	1	34
평균	2.33	2.11	3.00	-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가 돌보는 자녀수는 평균 1.2명이며, 1명이 81.2%, 2명이 18%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들이 돌보는 아동은 첫째 자녀의 경우 12개월 미만인 3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둘째 자녀는 6세 이상이 44.7%로 나타난다(표 IV-2-2 참조).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가 돌보는 자녀의 연령은 영유아가 90.6%로 주를 이룬다(그림 IV-2-2 참조).

▣ 표 IV-2-2 ▣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아동 수

단위 : %(명), 명

구분	1명	2명	3명	계(수)	평균(명)
전체	81.2	18.0	0.8	100.0(500)	1.20
자녀연령					
영아	83.2	15.3	1.5	100.0(268)	1.18
유아	76.8	23.2	0.0	100.0(185)	1.23
초등자녀 이상	87.2	12.8	0.0	100.0( 47)	1.13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80.4	18.7	0.9	100.0(439)	1.21
홀벌이가구	86.9	13.1	0.0	100.0( 61)	1.13
지역규모					
대도시	80.2	18.8	0.9	100.0(425)	1.21
중소도시	87.1	12.9	0.0	100.0( 70)	1.13
읍·면지역	80.0	20.0	0.0	100.0( 5)	1.20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88.6	8.6	2.9	100.0( 35)	1.14
500만원 이하	90.5	8.9	0.5	100.0(190)	1.10
700만원 이하	71.4	28.6	0.0	100.0(147)	1.29
900만원 이하	75.6	24.4	0.0	100.0( 78)	1.24
900만원 초과	78.0	18.0	4.0	100.0( 50)	1.26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표 IV-2-3 ▣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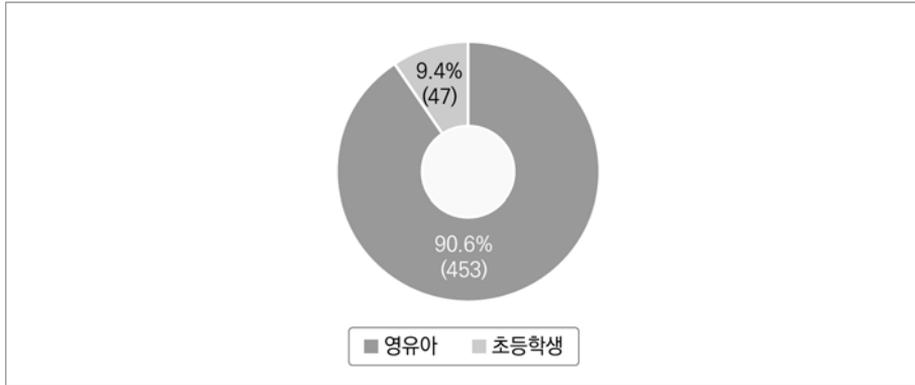
단위 : %(명), 세

구분	12개월 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계(수)	평균(세)
첫째 자녀	30.4	5.8	17.4	13.4	9.8	13.8	9.4	100.0(500)	2.88
둘째 자녀	3.2	-	4.3	6.4	18.1	23.4	44.7	100.0( 94)	5.64
셋째 자녀	25.0	-	-	25.0	25.0	-	25.0	100.0( 4)	3.69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그림 IV-2-2 ■ 민간 육아도우미가 돌보는 자녀 연령

단위 : %(명)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현재 영유아 자녀의 돌보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게 된 동기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기에는 너무 어려서'라는 이유가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한 비율이 각각 41.9%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원하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어서'가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하여 각각 14.3%, 35.8%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하원 시에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아이가 기관에 적응을 못해서가 주된 동기로 지적되었다.

이처럼 영유아 자녀의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의 이용은 기관보육의 낮은 실효성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기관 적응에의 우려, 둘째 자녀 출산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건강상의 이유, 독박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들 이용 동기 중 특히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양육방식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주목할 지점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영아 기관보육에 대한 전(全)계층 비용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너무 어려서 기관을 기피한다거나, 기관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표 IV-2-4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_영유아 자녀

구분	단위 : %(명)	
	1순위	1+2순위
아이를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너무 어려서	41.9	48.8
원하는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갈 수 없어서	14.3	35.8
기관 하원 시에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7.9	18.1
아이가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적응하지 못해서	6.6	13.9
추가자녀의 출산으로 돌보기 힘들어서	6.6	13.9
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더 선호해서	6.6	23.2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하지 못해서	5.7	16.8
기관 등원 시에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5.3	10.4
(공공)아이돌보미를 신청하였으나, 대기가 너무 길어서	4.9	19.0
기타	-	0.2
계(수)	100.0(453)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일을 해야 하니깐요. 어린이집도 단점이 많잖아요.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는 애들도 많고, 어린이집 가도 적당한 애들도 있고 가면 적응을 못하는 애기가 있는데. 먹는 거 생각하니깐 적응을 잘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애기가 안 먹고 뱉어내는 애기인데, 우리 애가 잘 안 먹고 뱉어내세요. 제대로 먹이지도 않겠다 싶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애가 입맛에 안 맞으니까 맛없으니까 뱉거든요. 엄마는 그거를 알아서 다른거 주고 몇 번 끈기 있게 먹이면 먹는데, 선생님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애들이 많으니까요.” (부모 6)

“제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제가 둘째 낳고서는 전업이기는 했지만 허리가 많이 안좋아서 첫째 때 디스크가 생긴게 둘째 때도 계속 그래서 치료 받는 것 때문에 돌봐주실 분이 필요했어요.” (부모 7)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볼 수 있었지만 둘째 100일 이후부터는 혼자 보는 것이 어려워 시간제로 도우미를 구하게 되었어요.” (부모 10)

“정부지원서비스를 알아보았지만 대기가 1년 이상 걸린다고 해서 육아도우미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 9)

“우선 육아를 혼자서 하기에 너무 벅찬 게 있어서.. 첫째여서 잘 모르기도 하고, 전문가한테 도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잠깐이라도 1~2시간이라도 밖에 나갔다 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갓난 아기가 보면.. 그래서 구하게 되었어요.” (부모 1)

다음으로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게 된 동기로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낮은 접근성과 프로그램 불만족이 지목된다. 즉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하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각각 38.3%, 27.7%, 12.8% 순이었다.

또한 부모 2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민간 육아도우미의 필요도가 낮아졌으나, 사교육(학원) 등에 따른 틈새 돌봄의 공백으로 지속적인 이용이 불가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유사하게 부모 3의 경우에도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학원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틈새보육을 맡기게 되었다고 한다.

▣ 표 IV-2-5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_초등자녀

구분	단위 : %(명)	
	1순위	1+2순위
초등 방과후 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등)에 들어갈 수 없어서	38.3	46.8
하교 시에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27.7	44.7
초등 방과후 돌봄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2.8	38.3
(공공)아이돌보미를 신청하였으나, 대기가 너무 길어서	8.5	21.3
등교 시에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8.5	25.5
추가자녀의 출산으로 돌보기 힘들어서	4.3	19.1
기타	-	4.3
계(수)	100.0(47)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저는 이제 애가 초등학생이라 굳이 안써도 되는데, 사교육시장,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돌봄을 하니깐 돌봄에 쪽 있다가 오면 되는데, 중간에 학원도 가야하고, 수영도 보내야하고, 그걸 내가 못해주니까 결국은 육아도우미에게 맡기죠.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학교 돌봄에 맡기면 굳이 필요 없겠지만, 남들 다른 전업맘들처럼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 직장맘으로서 육아도우미가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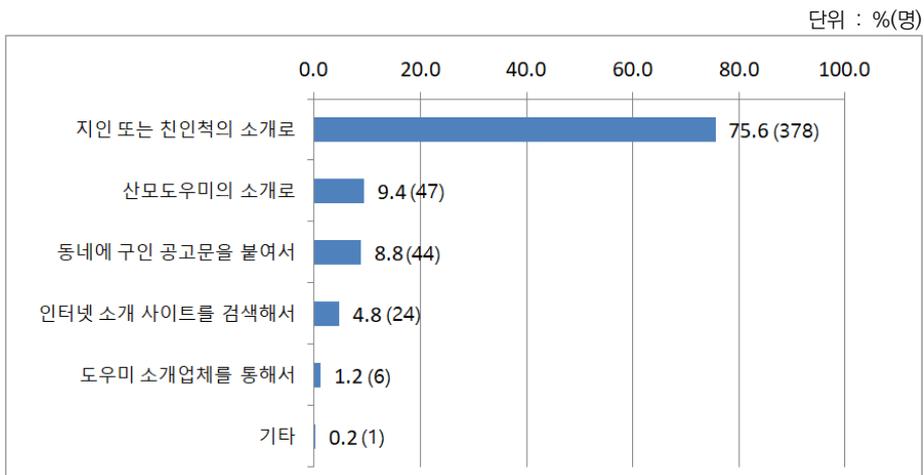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도 학교가 끝나고 나서 중간에 비었다가 수업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달아서 바로 시작이 되게 아니죠. 저학년 수업이 끝나고 고학년이랑 같이 하는 수업이면 이게 끝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가 비게 되죠. 그래서 학원에 보내게 되는거 같아요. 돌봄에 쪽 있으면 그냥 제가 퇴근해서 데리고 오면 되는데..” (부모 3)

## 나. 구인 경로 및 비용

### 1) 구인 경로 및 비용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를 구하게 된 경로는 지인 또는 친인척의 소개가 75.6%로 주를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는 산모도우미 9.4%, 동네에 구인 광고문을 붙여서 8.8%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개업체를 통한 구인은 소수에 불과하여 인터넷 소개 사이트는 4.8%, 도우미 소개업체는 1.2%에 그쳤다.

■ 그림 IV-2-3 ■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구인 경로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민간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과정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대부분 가구들에서 앞서 제시된 구인 방법들을 동시에 시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부모 7은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기도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하기도 하였으며, 부모 3은 직업소개소에 문의하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부모 6과 같이 소개업체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부모들 간에 공유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모 1은 희망하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요건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일할 의향이 있는 육아도우미가 직접 연락을 취해 매칭하는 방식이 보다 유용하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분도 있었고,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한 분도 있었어요. 시터넷하고 단디헬퍼요.” (부모 7)

“처음에는 외국인분들이나 국내분들 소개시켜주는 직업소개소에 문의를 해서 3~4명 정도 만났는데, 그러다가 신랑 회사 직원분 어머니가 저희집 근처에 사시더라구요. 그래서 신랑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더니 인연이 돼서 봐주시게 되었어요.” (부모 3)

“처음에는 친정에서 일하러 오시던 분이 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쪽 계시다가 그분 남편이 아프셔가지고 인터넷 구직사이트 통해서 다른 분을 구하게 되었어요. 한 3명 정도 면접을 보긴 했는데 와주신다는 분은 이 분 밖에 없었어요.” (부모 2)

“육아도우미 업체 분을 보였었고 이거는 단디헬퍼라고 이모를 직거래로 구할수 있다는 걸 듣고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어떤 분이면 좋겠는지부터 상세하게 써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연락들이 그분들한테 직접 오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보내는 메시지나 목소리를 듣고서 직접 들으면서 하니깐 훨씬 알수 있어가지고.” (부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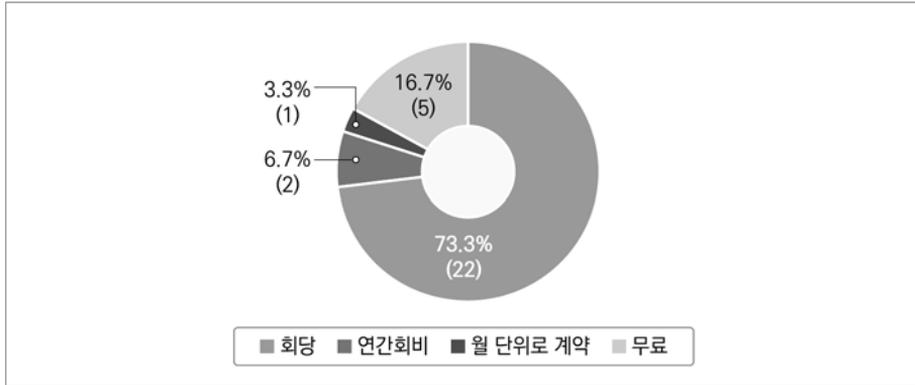
“인터넷 사이트 단디헬퍼랑 시터넷. 이모넷도 있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제일 많이 하는데가 단디헬퍼랑 시터넷이에요.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얘기엄마들이 말해줘서 알았고 시터넷 가입했더니 시터넷에서 보고 단디헬퍼에 있는 사람이 문자 왔어요.” (부모 6)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를 인터넷 소개 사이트 또는 도우미 소개업체를 통해 구한 경우, 해당 알선 및 중개비용은 회당, 즉 중개 시마다 지급하는 경우가 7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료가 16.7%였으며, 연간회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6.7%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당 이용료는 구체적으로 평균 약 13만원이며, 5만원 이하 36.7%, 10만원 이하가 26.7%, 무료 20.0% 순이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6.7%로 조사되었다.

부모 7에 의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는 별도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나 소개업체를 통한 구인 시에는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부모 6은 인터넷 소개업체를 이용할 시에 광고비를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구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방식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지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IV-2-4 ■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비용 지불 빈도

단위 : %(명)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표 IV-2-6 ■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소개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무료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계(수)	평균 (만원)
전체	20.0	36.7	26.7	16.7	100.0(30)	12.63
돌봄 자녀수						
1명	23.8	33.3	28.6	14.3	100.0(21)	11.05
2명	12.5	50.0	12.5	25.0	100.0( 8)	17.13
3명이상	0.0	0.0	100.0	0.0	100.0( 1)	10.0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이용요금은 별도로 없고 공고를 올리는데 광고비를 받아요. 광고비를 받는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다른데, 아무튼 비용을 내야지 높은데 상위에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연락처도 돈을 내야지 공개가 되요. 공개를 안하고 돈을 안내면 상대방이 알기가 힘들죠. 한 번 올릴 때마다 5만원 정도.” (부모 6)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는 안내는 걸로 했었어요. 소개소 통해서 했을 때는 월급의 15%를 수수료로 냈어요.” (부모 7)

## 2) 구인 과정의 만족도 및 사후관리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를 소개사이트(정보제공) 또는 소개업체를 통해 구인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불만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수준에 달하였다. 구체적인 불만사항으로는 자질이 부족한 도우미를 증대하였거나, 신원조회가 안되거나 상세정보가 누락된 경우, 그리고 비용 문제 즉 비싼 이용비용, 공시가격과 요구하는 비용이 다른 경우 등이 지적되었다. 그 밖에도 육아도우미가 여러 번 바뀐 경우와 명확한 근로계약 내용이 없어 육아도우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 그리고 소개업체의 불친절한 응대 등도 불만족한 내용으로 언급되었다.

■ 그림 IV-2-5 ■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사이트/소개업체 통해 받은 불편 사항 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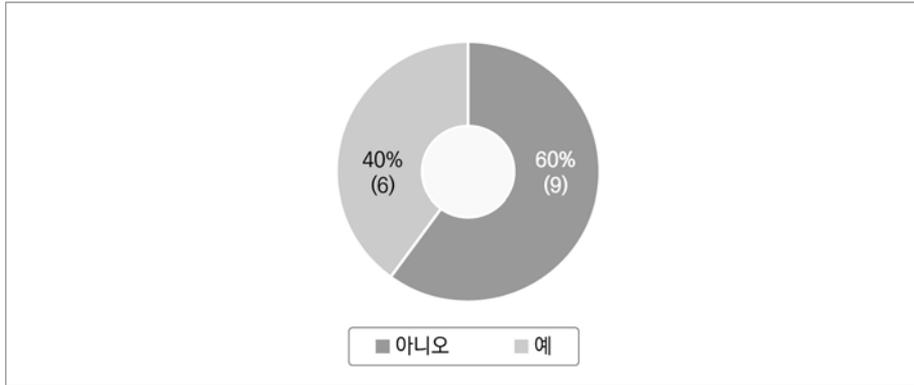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사이트나 소개업체의 사후관리, 즉 불만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준 경우는 40%에 불과하였으며, 해당 조치로는 주로 도우미를 교체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 그림 IV-2-6 ■ 소개업체의 민원사항 처리 여부

단위 : %(명)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소개업체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보다 이 다양하게 제기된다. 부모 7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 특성이나 경력 등 육아도우미 희망 요건을 제시하여도 각 업체의 인력풀이 제한적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매칭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 8과 같이 소개받은 육아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육아도우미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부모 1), 별도의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고 단지 매칭 서비스만 제공된다는 불만도 제기되었다(부모 6).

“소개소는 소개만 할 뿐이지, 제 프로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아이를 돌보는 거 기본적인 교육이나 예를 들어 청소방법 이런 걸 교육해 주길 바라지만, 사실은 내가 구인을 할 때 그 업체에 와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신생아를 본 경험이 있으면 좋겠고, 아이 있는 집에서 3년 이상 경력 있으면 좋겠고, 이유식 만들어본 분이었으면 좋겠고’ 얘기를 해도 오시는 분들은 그거랑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부모 7)

“실제로 그분이 들어왔을 때, 일을 시작하셨을 때 경력사항이나 이런거를 좀 속이시거나 이런게 있는 경우, 그리고 저하고 맞지 않는 경우 결국 대체인력을 구해준다는 것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곳은 구해주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인력 풀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컴플레인 제기했을 때요.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소개비를 처음에 근무하시고 한달 후에 지급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자마자 무조건 지급을 하라고 업체에서 재촉 연락이 오거든요. 미리 그거를 협의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났는데, 그 도우미 분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았다 해서 그만 두게 되면 그 다음에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당연히 구해줘야 하는데 소개비만 받고 다른 사람 더 구해주지 않아요.” (부모 8)

“항의도 제가 제대로 안했던거 같아요. 약간 그 도우미 분 교육 이런거 관리가 잘못됐다고 나중에 느꼈던게. 저한테 설문지 이런걸 회사로 가져다 줘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 받았었거든요. “이런거는 거의 안해요 뭐 좋게 다 써주시더라고요.” 하고 옆에서 관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 또 이분이 다른데 가서 일하셔야 하는데, 저도 굳이 업체한테 안좋은 소리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대로 얘기 못했던거 같아요.” (부모 1)

“시터넷, 단디헬퍼 이런 곳의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 이런 건 없어요. 역할이 있다면 홈페이지 구축 정도? 거기에 올리면 많은 나머지 업체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사설업체들이요. 자잘하게 하는데서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부모 6)

## 다. 구인 시 고려사항 및 근로계약

### 1) 구인 시 고려사항 및 면접 횟수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구인 시에 중요하게 고려한 요건으로는 신원보증(범죄 경력 등)이 1순위 기준으로 40.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육아도우미 경력이 35.4%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1, 2순위를 합하면, 학력 수준, 건강 상태, 연령, 서비스 이용시간 등도 중요시되었으며, 공인 자격증 보유를 중요하게 고려한 비율은 15.6%로 조사되었다.

▮ 표 IV-2-7 ▮ 민간 육아도우미의 구인 시 고려사항

구분	단위 : %(명)	
	1순위	1+2순위
신원 보증(범죄 경력 등)	40.8	52.8
육아도우미 경력	35.4	64.8
학력 수준	6.8	15.0
건강 상태(질병 여부 등)	5.2	19.8
서비스 이용시간	3.6	10.0
연령	3.4	13.8
공인 자격증(교사, 아이돌보미 등) 여부	3.2	15.6
서비스 제공 내용(학습지도 여부 등)	1.2	7.2
기타	0.4	1.0
계(수)	100.0(500)	

주: 기타는 '인생' 4명, '이전 사용자의 평가' 1명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육아도우미의 신원 보장 문제는 일차적으로 중요시되고, 인성이나 기질도 고려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60대 이상을 기피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신원확인 문제 때문에 중국분들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직거래로 구하는 것도 어렵겠다 위험하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저희 주민분이시고 그래가지고..” (부모 1)

“아기 좋아해야죠. 그게 1번이고.. 체력 되어야 하고.. 50대 정도가 좋아요.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이 침침해서 책을 못읽어 주세요. 60세 넘으신 분들은요.” (부모 6)

“인성이 가장 크죠.” (부모 2)

“자격 부분까지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구요. 어쨌든 아이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인성 같은 것을 많이 보려고 했는데, 성품 많이 봤죠. 온화하신 분인지, 다혈질이신 분인지.” (부모 7)

다음으로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를 채용하기까지의 면접 횟수는 평균 2.59회이고, 2회가 3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8%로 조사되었다(표 IV-2-8 참조). 해당 횟수는 영아에서 평균보다 높은 2.64회를 나타냈으며,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면접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금까지 이용해 본 민간 육아도우미 중 면접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평균 3.1회이며, 최대 18회로 조사되었다(표 IV-2-9 참조). 이는 자녀 연령에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고, 도시지역과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 7에 의하면, 민간 육아도우미의 최대 면접 횟수는 20번 이상, 부모 6은 30~40번에 이르는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개인양육서비스의 특성상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뢰가 보다 중요시된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표 IV-2-8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을 위한 면접 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평균(회)
전체	23.4	32.4	27.4	16.8	100.0(500)	2.59
자녀연령						
영아	22.0	32.8	27.6	17.5	100.0(268)	2.64
유아	25.4	29.7	28.6	16.2	100.0(185)	2.53
초등자녀 이상	23.4	40.4	21.3	14.9	100.0( 47)	2.51
<i>F</i>						0.342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23.2	31.4	28.2	17.1	100.0(439)	2.58
홀벌이가구	24.6	39.3	21.3	14.8	100.0( 61)	2.66
<i>t</i>						-0.360
지역규모						
대도시	22.8	30.8	28.2	18.1	100.0(425)	2.65
중소도시	27.1	40.0	22.9	10.0	100.0( 70)	2.26
읍·면지역	20.0	60.0	20.0	0.0	100.0( 5)	2.00
<i>F</i>						2.250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4.3	34.3	25.7	5.7	100.0( 35)	2.17
500만원 이하	26.8	37.4	22.6	13.2	100.0(190)	2.33
700만원 이하	16.3	27.9	33.3	22.4	100.0(147)	2.90
900만원 이하	25.6	26.9	30.8	16.7	100.0( 78)	2.60
900만원 초과	20.0	34.0	24.0	22.0	100.0( 50)	2.92
<i>F</i>						4.108**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

“많이 봤죠. 면접은 한 20명 정도 본거 같아요. 총 기간 동안. 한 3명 정도 보고 나면 그 중에 한명 고르고 했던거 같아요.” (부모 7)

“3~4명 정도. 주변에서 듣는 말이 많아서 좀 불안하기도 했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좀 걱정스럽기도 했었고 (느낌이) 일단은 안정이 되어야 하니까 믿음만한 분이어야 해서 그것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모 2)

“면접은 많이 봤어요. 면대면으로 직접 30~40명 본 것 같아요.” (부모 6)

표 IV-2-9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을 위한 최다 면접 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평균(회)	최대값
전체	18.0	25.0	27.4	29.6	100.0(500)	3.10	18.0
자녀연령							
영아	16.8	25.7	27.6	29.9	100.0(268)	3.18	18.0
유아	18.9	24.3	27.0	29.7	100.0(185)	3.04	10.0
초등자녀 이상	21.3	23.4	27.7	27.7	100.0( 47)	2.89	8.0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17.1	24.4	28.7	29.8	100.0(439)	3.11	18.0
홀벌이가구	24.6	29.5	18.0	27.9	100.0( 61)	3.03	15.0
지역규모							
대도시	17.6	23.5	27.1	31.8	100.0(425)	3.18	18.0
중소도시	21.4	31.4	28.6	18.6	100.0( 70)	2.69	8.0
읍·면지역	0.0	60.0	40.0	0.0	100.0( 5)	2.40	3.0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8.6	28.6	28.6	14.3	100.0( 35)	2.54	8.0
500만원 이하	20.0	31.6	21.6	26.8	100.0(190)	2.87	10.0
700만원 이하	13.6	20.4	29.9	36.1	100.0(147)	3.41	18.0
900만원 이하	19.2	20.5	33.3	26.9	100.0( 78)	2.97	10.0
900만원 초과	14.0	18.0	32.0	36.0	100.0( 50)	3.66	15.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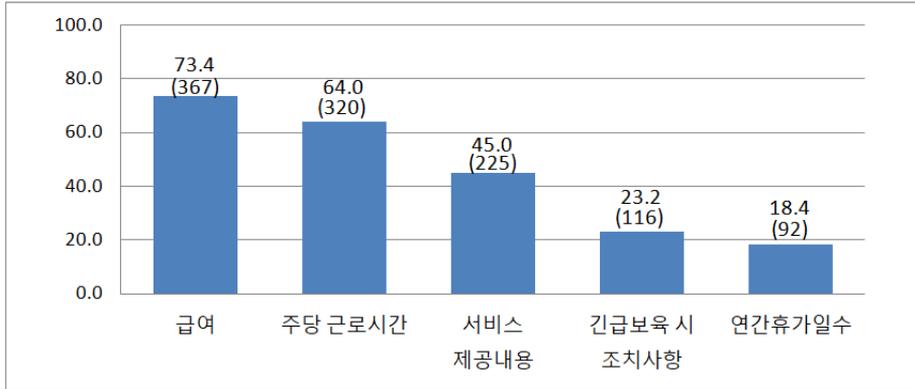
## 2) 근로계약 및 처우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와의 근로계약에 명시한 내용으로는 급여와 주당 근무시간이 73.4%와 64.0%로 주를 이루며,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내용이 45.0%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긴급보육 시 조치사항(23.2%)과 연간 휴가 일수(18.4%)에 대한 사항에 근로계약 사항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계약의 경우는 육아도우미의 퇴직금 등을 포함한 급여, 휴일근로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개별계약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심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부모 7).

■ 그림 IV-2-7 ■ 민간 육아도우미와의 근로계약 내용(중복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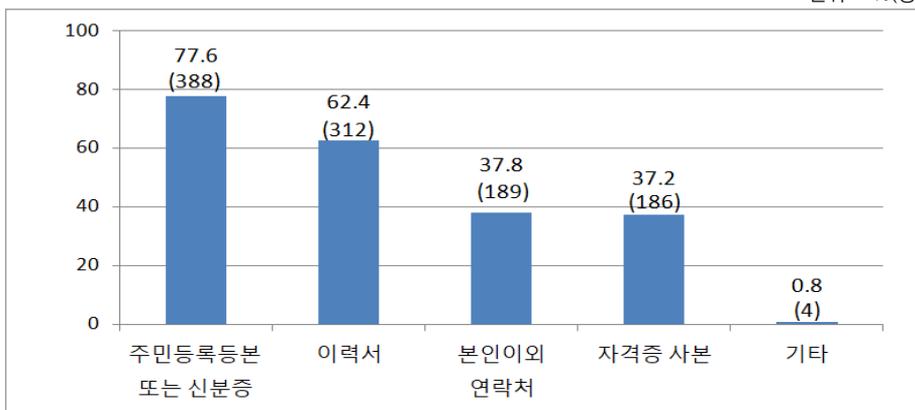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좀 확실하게 하고 싶었고, 계약서에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퇴직할 때 급여 이런거를 정확하게 하고 싶었고, 그만두거나 하게 되는 경우 양쪽에서 서로 사정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서로 노티스를 해주고 스무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근무조건도 그렇고요. 그게 미리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란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부모 7)

“급여랑 휴일이요. 공휴일은 제가 일하지 않는 날은 안오시는걸로 하고, 주 5일이니까 토, 일요일은 안오시는 걸로 정했어요.” (부모 2)

■ 그림 IV-2-8 ■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 시의 요구서류(중복응답)

단위 : %(명)



주: '기타' 응답값은 '없음' 2명, '건강검진표' 1명, '범죄사실 증명서' 1명으로 나타남.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이 과정에서 이용 부모들이 요구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본 또는 신분증, 이력서가 각각 77.6%와 62.4%였고, 이외에도 본인 이외의 연락처(37.8%), 자격증 사본(37.2%) 등도 추가적으로 요구되었다. 즉 주민등록증본을 통해 자녀 정보를 확인하거나(부모 2) 면접 시부터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부모 7).

“등본 떼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경력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건강증명서, 등본 해주세요.” (부모 6)

“등본 떼오시라고 하고, 자식분들 연락처 받았어요.” (부모 2)

“면접 볼 때는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나이, 국적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채용 시에는 보건증(보건소 건강진단서)을 요구했어요.” (부모 7)

다음으로 현재 육아도우미에게 제공되는 급여 이외의 복지후생관련 사항으로는 ‘별도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7.4%로 가장 높은 가운데, 식사 제공 17.8%, 명절보너스 16.4%, 일반 보너스 11.4%, 휴가 제공 10.0%, 교통비 6.4% 순으로 조사되었다.

■ 표 IV-2-10 ■ 현재 이용 중인 육아도우미에게 보장하는 복리후생 내용

		단위 :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없음	27.4	휴식시간 제공	2.0
식사 제공	17.8	휴일 보장	2.0
명절보너스	16.4	유연한 업무 스케줄	1.4
보너스	11.4	4대보험 보장	1.2
휴가 제공	10.0	보조금	1.2
교통비	6.4	퇴직금	0.8
간식 제공	4.8	숙식 제공	0.6
추가수당	4.8	교통편 제공	0.4
휴가비	3.8	의료복지	0.4
경조사 지원	3.4	숙박 제공	0.
근로시간 보장	3.0	육아비 지원	0.2
선물	2.0		
계(수)		100.0(50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육아도우미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리후생관련 사항으로 휴가는 명절, 생신, 어버이날 이외에도 여름휴가를 보장하고(부모 3), 퇴직금을 지급하며, 식사 제공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육아도우미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현재 제공하는 복리후생과 상관없이 급여 이외에 보장해야 할 사항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재 제공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24.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휴가 제공 12.8%, 식사 제공 11.8%, 휴식시간 제공 9.4% 순으로, 보너스 제공 등 실질 급여의 상향 조정에 못지 않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명절, 생신, 어버이날, 연휴가 좀 길다거나, 여름휴가 기간에 좀 드린다거나요. 여름에 저희가 휴가를 쓰게 되면 1~2주 정도 쉬는데, 그때 같이 쉬었어요. 쉰다고 해서 돈을 제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부모 3)

“이모님도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런 때 아이들 선물주고 그런게 있으시고 해서 저도 명절, 어버이날 챙겨드리고 하죠.” (부모 1)

“공휴일은 쉬게 해드렸는데, 안쉬게 하는 집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은 보통 주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일 년 했으면 한 달 치 드리고 보통 회사에 준해서 주는 거고. 상여금 같은 경우는 명절에 10~20만원 정도 드리는거고, 휴가는 여름휴가 5일 생각했고. 좀 후했죠. 후한 편이에요. 식사는 집에 있는거 드시거나 사드릴 때도 있어요. 5시간이라서 드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되도록 사드리려고 해요.” (부모 6)

“명절에 1년에 두 번하고, 크리스마스랑 이모님 생일 때 따로 챙겨드려요. 휴가는 우리 설 때 같이 쉬시고, 우리가 1년에 8일 정도 휴가가 있어요. 그때 같이 쉬고 법정공휴일 다 쉬세요.” (부모 7)

“애초에 계약할 때 퇴직금을 주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아직 퇴직은 하지 않으셨고..” (부모 8)

“식사는 사드리거나 이러진 않구요. 제가 요즘엔 저녁시간에 이틀 정도, 이모님이 애들 저녁 챙겨주는 시간에 있는데, 아이들 챙겨주면서 집에 있는 거 이모님 드시라고 반찬 따로 놓기는 해요. 해가지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애들 먹이면서 같이 드시게.” (부모 5)

표 IV-2-11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보장해야 하는 복리후생 내용

단위 :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없음	24.0	유연한 업무 스케줄	2.0
휴가 제공	12.8	기본적인 복리후생	0.8
식사 제공	11.8	육아도우미 안전 보장	0.8
휴식시간 제공	9.4	경조사 지원	0.6
보너스	8.0	국가의 관리	0.6
추가수당	7.6	숙식 제공	0.6
교통비	6.0	병가	0.4
근로시간 보장	6.0	보조금	0.4
명절보너스	4.2	선물	0.4
4대보험 보장	4.0	휴가비	0.4
간식 제공	3.4	고용 보장	0.2
휴일 보장	3.4	근무환경	0.2
급여 보장	3.2	숙박 제공	0.2
퇴직금	3.0	육아도우미 신원보장	0.2
가족같은 분위기	2.2	청결함	0.2
의료복지	2.2	통신비 지원	0.2
계(수)		100.0(50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3 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서비스 이용시간 및 비용 등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전반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와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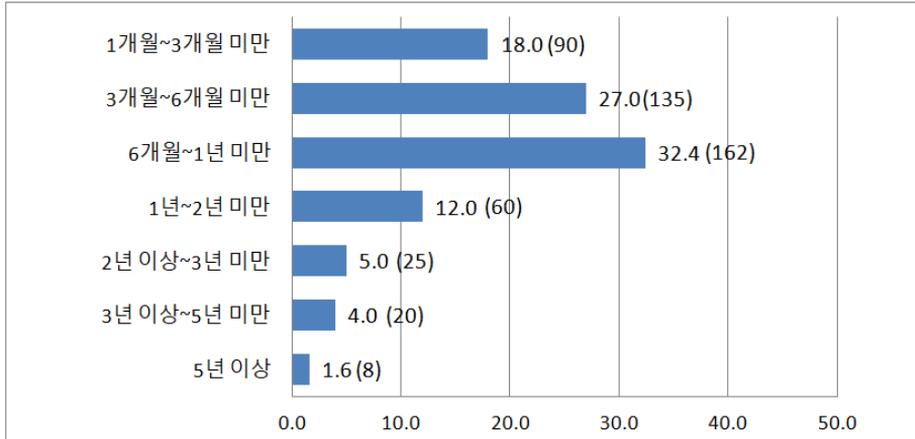
#### 가.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빈도

##### 1) 이용 기간 및 빈도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총 이용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이 27.0%로 조사되었다.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는 4.0%였다.

■ 그림 IV-3-1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기간

단위 : %(명)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표 IV-3-1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빈도

단위 : %(명)

구분	1주일에 1일 미만	1주일에 2-3일	1주일에 5일	1주일에 6-7일	계(수)
전체	9.8	40.0	35.6	14.6	100.0(500)
자녀연령					
영아	11.2	44.8	28.4	15.7	100.0(268)
유아	7.6	34.1	44.9	13.5	100.0(185)
초등자녀 이상	10.6	36.2	40.4	12.8	100.0( 4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8.7	39.4	36.7	15.3	100.0(439)
홀벌이가구	18.0	44.3	27.9	9.8	100.0( 61)
지역규모					
대도시	8.5	40.0	35.5	16.0	100.0(425)
중소도시	14.3	40.0	38.6	7.1	100.0( 70)
읍·면지역	60.0	40.0	0.0	0.0	100.0( 5)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4.3	51.4	20.0	14.3	100.0( 35)
500만원 이하	14.2	47.9	25.3	12.6	100.0(190)
700만원 이하	4.8	37.4	44.9	12.9	100.0(147)
900만원 이하	9.0	24.4	44.9	21.8	100.0( 78)
900만원 초과	6.0	34.0	44.0	16.0	100.0( 5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육아도우미의 이용 빈도는 1주일에 2~3번이 40.0%, 1주일에 5일이 35.6%로 주를 이루었으며, 1주일에 6~7일을 이용하는 경우도 14.6%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평일 기준 출근 횟수는 평균 1.22회였으며, 해당 횟수는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1.32회, 맞벌이 가구에서 1.23회로 평균 보다 많아 이들 가구에서 민간 육아도우미가 틈새보육 기능을 담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 표 IV-3-2 ▮ 민간 육아도우미 평일 출근 횟수

단위 : 회(명)

구분	평균(회)	(수)
전체	1.22	(500)
자녀연령		
영아	1.18	(268)
유아	1.25	(185)
초등자녀 이상	1.32	( 4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1.23	(439)
홀벌이가구	1.18	( 61)
지역규모		
대도시	1.22	(425)
중소도시	1.24	( 70)
읍·면지역	1.20	( 5)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11	( 35)
500만원 이하	1.20	(190)
700만원 이하	1.22	(147)
900만원 이하	1.28	( 78)
900만원 초과	1.28	( 5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2) 서비스 이용시간

평일 기준으로 민간 육아도우미의 출퇴근시각은 1회차는 약 오전 9시 18분에 출근하여 약 오후 4시 18분에 퇴근하고, 2회차는 약 오후 3시 24분에 출근하여 약 오후 6시 18분, 그리고 3회차는 약 오후 6시 18분에 출근하여 약 오후 7시 24분에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3-3 참조).

가구특성별로는 특히 자녀연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시간이 달리 나타나, 전 회차에 걸쳐 영아의 경우는 가장 이른 시각인 오전 9시 12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하는 반면, 초등학생 자녀는 오전 11시 이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 결과 평일 기준 평균 서비스 이용시간은 7시간이 넘고, 맞벌이 가구에서 평균보다 약간 길게 나타나며,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이용시간이 길어 영아 자녀는 약 8시간 선으로 나타난다(표 IV-3-4 참조).

표 IV-3-3 민간 육아도우미 평일 근무시간

단위 : 시, 분(명)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출근	퇴근	(수)	출근	퇴근	(수)	출근	퇴근	(수)
전체	9:17	15:56	(500)	15:26	18:18	(101)	17:57	19:27	(9)
자녀연령									
영아	8:47	15:56	(268)	15:15	18:16	(43)	18:54	20:36	(5)
유아	9:39	16:01	(185)	15:28	18:10	(44)	16:10	17:10	(3)
초등자녀 이상	10:37	15:39	(47)	15:56	18:47	(14)	18:30	20:30	(1)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9:16	15:57	(439)	15:32	18:21	(91)	17:49	19:08	(8)
홀벌이가구	9:21	15:51	(61)	14:39	17:48	(10)	19:00	22:00	(1)
지역규모									
대도시	9:14	16:01	(425)	15:17	18:16	(84)	17:34	19:11	(8)
중소도시	9:21	15:26	(70)	16:09	18:24	(16)	21:00	21:30	(1)
읍·면지역	11:54	16:00	(5)	17:00	19:00	(1)	-	-	-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41	16:12	(35)	15:38	17:53	(4)	-	-	-
500만원 이하	9:23	15:55	(190)	15:57	18:32	(36)	17:30	19:00	(2)
700만원 이하	9:11	16:11	(147)	15:06	18:06	(27)	18:42	20:12	(5)
900만원 이하	9:08	15:34	(78)	15:06	17:54	(20)	16:30	18:00	(2)
900만원 초과	9:02	15:38	(50)	15:15	18:45	(14)	-	-	-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3-4 민간 육아도우미 평일 총 이용시간

단위 : 시, 분(명)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합산	
	시간	(수)	시간	(수)	시간	(수)	시간	(수)
전체	6:40	(500)	2:51	(101)	1:30	(9)	7:16	(500)
자녀연령								
영아	7:09	(268)	3:01	(43)	1:42	(5)	7:40	(268)
유아	6:22	(185)	2:42	(44)	1:00	(3)	7:01	(185)
초등자녀 이상	5:02	(47)	2:51	(14)	2:00	(1)	5:56	(4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6:41	(439)	2:49	(91)	1:19	(8)	7:18	(439)
홀벌이가구	6:30	(61)	3:09	(10)	3:00	(1)	7:03	(61)
지역규모								
대도시	6:47	(425)	2:59	(84)	1:38	(8)	7:24	(425)
중소도시	6:06	(70)	2:15	(16)	0:30	(1)	6:37	(70)
읍·면지역	4:06	(5)	2:00	(1)	-	-	4:30	(5)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31	(35)	2:15	(4)	-	-	6:46	(35)
500만원 이하	6:32	(190)	2:35	(36)	1:30	(2)	7:02	(190)
700만원 이하	7:00	(147)	3:00	(27)	1:30	(5)	7:36	(147)
900만원 이하	6:26	(78)	2:48	(20)	1:30	(2)	7:12	(78)
900만원 초과	6:36	(50)	3:30	(14)	-	-	7:35	(5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민간 육아도우미의 주말 근무 실태는 매주 토요일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비율은 19.6%이고, 격주로 근무하는 경우는 13.2%로 조사되었다. 매주 근무하는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아 20.0%였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14.9%로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토요일 근무는 평일의 대체근무이거나(부모 6), 주말에 일이 있어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경우(부모 7, 8), 아이가 어려서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근무하는 경우 등으로 확인된다(부모 9).

표 IV-3-5 민간 육아도우미 주말 근무 여부

단위 : %(명)

구분	매주 근무	격주 근무	한 달에 1회 근무	거의 근무 하지 않음	전혀 근무 하지 않음	계(수)
전체	19.6	13.2	6.6	22.8	37.8	100.0(500)
자녀연령						
영아	19.4	16.4	8.6	23.1	32.5	100.0(268)
유아	21.1	8.1	3.8	24.9	42.2	100.0(185)
초등자녀 이상	14.9	14.9	6.4	12.8	51.1	100.0( 4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20.0	12.3	6.4	22.1	39.2	100.0(439)
홀벌이가구	16.4	19.7	8.2	27.9	27.9	100.0( 61)
지역규모						
대도시	20.7	13.4	5.4	22.6	37.9	100.0(425)
중소도시	14.3	11.4	12.9	25.7	35.7	100.0( 70)
읍·면지역	0.0	20.0	20.0	0.0	60.0	100.0( 5)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7.1	14.3	8.6	37.1	22.9	100.0( 35)
500만원 이하	17.9	14.7	10.5	17.9	38.9	100.0(190)
700만원 이하	19.0	10.2	4.8	22.4	43.5	100.0(147)
900만원 이하	29.5	11.5	3.8	29.5	25.6	100.0( 78)
900만원 초과	14.0	18.0	0.0	22.0	46.0	100.0( 5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가끔 빠지는는 날은 토요일에 오시게 했어요. 대체근무로 하시게 한거죠.” (부모 6)

“입주일 때는 주 6일이었어요. 빨간 날은 아빠나 제가 일이 없는 경우에는 쉬실 수 있지만 부부가 일 있으면 출근하시도록 했어요.” (부모 7)

“토·일도 저희 위주로 봐주고 그러셔서.. 일이 있으신 경우 외에는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부모 1)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입주라서 사실상 매일 근무하셨어요.” (부모 9)

다음으로 민간 육아도우미의 주말 출근 횟수는 평균 1.14회이며, 맞벌이 여부와 자녀연령 등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IV-3-6 민간 육아도우미 주말 출근 횟수

단위 : 회(명)

구분	평균(회)	(수)
전체	1.14	(197)
자녀연령		
영아	1.14	(119)
유아	1.15	( 61)
초등자녀 이상	1.12	( 1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1.14	(170)
홀벌이가구	1.19	( 27)
지역규모		
대도시	1.16	(168)
중소도시	1.04	( 27)
읍·면지역	1.00	( 2)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07	( 14)
500만원 이하	1.11	( 82)
700만원 이하	1.14	( 50)
900만원 이하	1.20	( 35)
900만원 초과	1.25	( 16)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구체적으로 주말 출퇴근시각을 살펴보면, 1회차에는 오전 10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4시 경 퇴근하고, 2회차는 약 오후 4시 42분에 출근하여 약 오후 6시 24분에 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회차를 기준으로 영아의 경우는 평균보다 이른 시각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초등자녀의 경우는 평균보다 늦은 시각에 출근하여 늦은 시각에 퇴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주말 총 이용시간은 6시간으로 평일보다 약 1시간 이상 짧은 것으로 조사된다. 가구특성별로 초등자녀의 총 이용시간이 5시간으로 가장 짧고, 홀벌이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더 길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말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은 맞벌이 가구가 돌봄 공백 해소 뿐만 아니라 홀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 완화가 주된 이용 동기임을 암시한다. 반면에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총 이용시간이 8시간에 달해, 주말 근로 시에 민간 육아도우미가 활용됨을 말해준다.

표 IV-3-7 민간 육아도우미 주말 근무시간

단위 : 시, 분(명)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출근	퇴근	(수)	출근	퇴근	(수)	출근	퇴근	(수)
전체	10:05	16:02	(170)	15:44	18:21	(27)	19:00	20:00	(1)
자녀연령									
영아	9:43	15:51	(103)	15:21	18:04	(16)	19:00	20:00	(1)
유아	10:16	16:08	( 52)	16:17	18:43	( 9)	-	-	-
초등자녀 이상	11:52	16:54	( 15)	16:30	19:00	( 2)	-	-	-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10:11	16:05	(148)	15:38	18:16	(22)	19:00	20:00	(1)
홀벌이가구	9:20	15:41	( 22)	16:12	18:42	( 5)	-	-	-
지역규모									
대도시	10:13	16:05	(142)	15:33	18:12	(26)	19:00	20:00	(1)
중소도시	9:23	15:47	( 26)	20:30	22:30	( 1)	-	-	-
읍·면지역	9:00	15:30	( 2)	-	-	-	-	-	-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0:02	16:16	( 13)	13:00	17:00	( 1)	-	-	-
500만원 이하	9:54	16:04	( 73)	15:43	18:13	( 9)	-	-	-
700만원 이하	10:20	16:16	( 44)	16:30	18:15	( 6)	19:00	20:00	(1)
900만원 이하	10:16	15:20	( 28)	15:39	18:43	( 7)	-	-	-
900만원 초과	9:50	16:15	( 12)	15:30	18:30	( 4)	-	-	-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3-8 민간 육아도우미 주말 총 이용시간

단위 : 시, 분(명)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합산	
	시간	(수)	시간	(수)	시간	(수)	시간	(수)
전체	5:57	(170)	2:37	(27)	1:00	(1)	6:02	(197)
자녀연령								
영아	6:08	(103)	2:43	(16)	1:00	(1)	6:07	(119)
유아	5:52	( 52)	2:27	( 9)	-	-	6:09	( 61)
초등자녀 이상	5:02	( 15)	2:30	( 2)	-	-	5:02	( 1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5:54	(148)	2:38	(22)	1:00	(1)	5:59	(170)
홀벌이가구	6:20	( 22)	2:30	( 5)	-	-	6:19	( 27)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합산	
	시간	(수)	시간	(수)	시간	(수)	시간	(수)
지역규모								
대도시	5:52	(142)	2:38	(26)	1:00	(1)	5:59	(168)
중소도시	6:24	( 26)	2:00	( 1)	-	-	6:17	( 27)
읍·면지역	6:30	( 2)	-	-	-	-	6:30	( 2)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14	( 13)	4:00	( 1)	-	-	8:00	( 14)
500만원 이하	6:10	( 73)	2:30	( 9)	-	-	6:06	( 82)
700만원 이하	5:56	( 44)	1:45	( 6)	1:00	(1)	5:49	( 50)
900만원 이하	5:04	( 28)	3:04	( 7)	-	-	5:14	( 35)
900만원 초과	6:25	( 12)	3:00	( 4)	-	-	6:26	( 16)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나. 서비스 이용비용 및 부담 정도

민간 육아도우미의 월 이용비용은 평균 약 109만원이며, 1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22.8%이고, 최대 4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특성별로는 초등자녀에 비해 영유아, 홀별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이용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읍면지역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약 114만원 선이었으며,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비용이 높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육아도우미가 돌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용비용이 증가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은 약 141만원, 3명 이상은 15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 지역의 공공 아이돌보미 공급 수준의 제고와 돌보는 아동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양육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한 조치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 표 IV-3-9 ▮ 민간 육아도우미 월평균 이용비용

구분	단위 : %(명), 만원					평균 (만원)	최소값 (만원)	최대값 (만원)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	계(수)			
전체	25.8	34.0	17.4	22.8	100.0(500)	109.17	1	400
자녀연령								
영아	27.6	30.6	17.9	23.9	100.0(268)	109.58	1	400
유아	21.1	37.8	17.8	23.2	100.0(185)	113.97	7	400
초등자녀 이상	34.0	38.3	12.8	14.9	100.0( 47)	87.98	10	220
F						2.768		

구분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	계(수)	평균 (만원)	최소값 (만원)	최대값 (만원)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25.5	33.7	17.3	23.5	100.0(439)	110.23	3	400
홀벌이가구	27.9	36.1	18.0	18.0	100.0( 61)	101.56	1	300
<i>t</i>						0.933		
지역규모								
대도시	23.8	32.7	18.6	24.9	100.0(425)	113.61	3	400
중소도시	35.7	41.4	11.4	11.4	100.0( 70)	86.74	1	250
읍·면지역	60.0	40.0	0.0	0.0	100.0( 5)	46.00	10	80
<i>F</i>						13.430**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2.9	31.4	11.4	14.3	100.0( 35)	86.71	10	200
500만원 이하	32.6	41.6	12.1	13.7	100.0(190)	89.65	1	300
700만원 이하	21.1	34.0	21.1	23.8	100.0(147)	110.97	10	250
900만원 이하	12.8	30.8	24.4	32.1	100.0( 78)	134.22	7	350
900만원 초과	22.0	12.0	20.0	46.0	100.0( 50)	154.72	11	400
<i>F</i>						11.245***		
돌봄 자녀수								
1명	29.1	36.0	16.3	18.7	100.0(406)	101.78	1	400
2명	11.1	26.7	22.2	40.0	100.0( 90)	140.70	10	400
3명 이상	25.0	0.0	25.0	50.0	100.0( 4)	150.00	50	200
<i>F</i>						13.434***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또한 해당 비용의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부담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이 71.8%에 달하였고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 결과에서 이용비용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가 우려되고(부모 1), 취업모의 급여수준과 비교하여 부담된다는 점도 지적되며(부모 3, 4) 또한 적정 비용은 가사서비스 여부에 따라 달리 인식되어 해당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시간당 만원 선으로 언급되었다(부모1, 7).

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비율은 35.0%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며,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V-3-11 참조).

▮ 표 IV-3-10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의 부담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적당함	부담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계(수)	평균(점)
전체	1.6	1.4	25.2	54.6	17.2	100.0(500)	3.84
자녀연령							
영아	2.6	1.1	24.3	51.9	20.1	100.0(268)	3.86
유아	0.5	1.6	23.2	59.5	15.1	100.0(185)	3.87
초등자녀 이상	0.0	2.1	38.3	51.1	8.5	100.0( 47)	3.66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0.9	1.4	25.7	54.4	17.5	100.0(439)	3.86
홀벌이가구	6.6	1.6	21.3	55.7	14.8	100.0( 61)	3.70
지역규모							
대도시	1.4	1.2	26.4	54.4	16.7	100.0(425)	3.84
중소도시	2.9	2.9	17.1	55.7	21.4	100.0( 70)	3.90
읍·면지역	0.0	0.0	40.0	60.0	0.0	100.0( 5)	3.60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7	0.0	31.4	45.7	17.1	100.0( 35)	3.69
500만원 이하	2.1	0.5	25.8	55.3	16.3	100.0(190)	3.83
700만원 이하	0.0	2.0	20.4	58.5	19.0	100.0(147)	3.95
900만원 이하	0.0	1.3	24.4	56.4	17.9	100.0( 78)	3.91
900만원 초과	4.0	4.0	34.0	44.0	14.0	100.0( 50)	3.60
돌봄 자녀수							
1명	1.5	1.5	25.6	55.9	15.5	100.0(406)	3.83
2명	2.2	1.1	23.3	50.0	23.3	100.0( 90)	3.91
3명 이상	0.0	0.0	25.0	25.0	50.0	100.0( 4)	4.25
이용빈도							
1일 미만	4.1	2.0	36.7	40.8	16.3	100.0( 49)	3.63
2-3일	1.0	1.5	28.0	58.0	11.5	100.0(200)	3.78
5일	1.7	1.1	21.3	53.9	21.9	100.0(178)	3.93
6-7일	1.4	1.4	19.2	56.2	21.9	100.0( 73)	3.96

주: 평균은 '전혀 부담되지 않음' 1점~'매우 부담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요즘에 계속 시터 비용은 오르고, 제가 첫째 낳고 4년인데 이 와중에도 많이 오르더라구요. 저는 더 올려주기에는 부담이 크고 한데.. 시간 당 만원도 저는 조금 부담이 돼서 8천원? 최저임금 정도.. 가사 일까지 도와주시고 그러면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애기가 많이 커서요. 월 150이 최대라고 생각해요.” (부모 1)

“육아만 하시는 분은 시간당 만원이면 될 것 같고요. 아이를 정말 돌보는 것하고 소소한 아이에 관련된 가사 한 두 가지만 하시는 정도..가사를 함께 한다면 시간당 만 오천원 정도..” (부모 7)

“저는 요즘 시세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적정 시세는 시간당 8천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5년 전 시세가 시간당 8천원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올랐어요. 지금도 몇 달 사이에 구해봐도 두 세달 사이에 계속해서 값이 오르는게 느껴져요.” (부모 8)

“현재 육아도우미 시세가 입주의 경우 외국인은 200, 한국분은 250정도로 들었어요. 제 월급에 비해 매우 부담스럽죠.” (부모 3)

“이모님들 입장에서 그 시간으로 보면 아이 돌보는게 옆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건 아니니까 그 금액이, 제가 그 일에 종사한다면 넉넉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텐데, 또 부모 입장에서 저는 제가 그 시간에 소득하고 이런걸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금전적인 여건 때문에 부담스러운게 사실이에요.” (부모 4)

표 IV-3-11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외 추가비용 지급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35.0	65.0	100.0(500)
자녀연령			
영아	35.4	64.6	100.0(268)
유아	34.1	65.9	100.0(185)
초등자녀이상	36.2	63.8	100.0( 4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35.5	64.5	100.0(439)
홀벌이가구	31.1	68.9	100.0( 61)
지역규모			
대도시	34.6	65.4	100.0(425)
중소도시	37.1	62.9	100.0( 70)
읍·면지역	40.0	60.0	100.0( 5)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0.0	80.0	100.0( 35)
500만원 이하	30.0	70.0	100.0(190)

구분	예	아니오	계(수)
70만원 이하	40.8	59.2	100.0(147)
90만원 이하	38.5	61.5	100.0( 78)
90만원 초과	42.0	58.0	100.0( 5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월 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경조사비, 보너스, 휴가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조사비, 명절보너스, 보너스는 평균 지급 비용이 각각 약 123,000원, 246,000원, 172,000원선이었다.

또한 교통비는 월 1회 지급하는 경우가 약 59.1%로 다수였고, 해당 비용은 평균 약 142,000원이었다. 식비는 월 1회 지급하는 비율이 62.5%였고, 해당 비용은 약 134,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비용은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구와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빈번하게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휴가비의 경우는 주로 연간 1회 지급되며, 평균 약 4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어버이날이나, 생신 등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모 1, 2).

▮ 표 IV-3-12 ▮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이외 추가 지급 비용\_경조사비/명절보너스/보너스

단위 : 만원, (명)

구분	경조사비		명절 보너스		보너스	
	평균(만원)	(수)	평균(만원)	(수)	평균(만원)	(수)
전체	12.32	(28)	24.56	(124)	17.20	(44)
자녀연령						
영아	11.58	(19)	24.92	( 66)	14.61	(33)
유아	12.50	( 4)	25.48	( 42)	30.00	( 7)
초등자녀이상	15.00	( 5)	20.63	( 16)	16.25	( 4)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12.41	(27)	24.41	(110)	16.37	(38)
홀벌이가구	10.00	( 1)	25.71	( 14)	22.50	( 6)
지역규모						
대도시	12.50	(22)	25.97	(103)	18.55	(38)
중소도시	11.67	( 6)	17.62	( 21)	12.33	( 3)
읍·면지역	-	-	-	-	5.00	( 3)

구분	경조사비		명절 보너스		보너스	
	평균(만원)	(수)	평균(만원)	(수)	평균(만원)	(수)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	-	16.67	( 3)	9.17	( 6)
500만원 이하	6.67	( 3)	19.63	( 40)	18.89	(18)
700만원 이하	12.81	(16)	19.74	( 39)	18.23	(13)
900만원 이하	16.00	( 5)	36.25	( 24)	17.50	( 2)
900만원 초과	10.00	( 4)	31.67	( 18)	18.00	( 5)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표 IV-3-13 ▮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이외 추가지급 비용과 빈도\_교통비

단위 : %(명), 만원

구분	매번	주1회	월1회	분기별 1회	계(수)	평균(만원)
전체	4.5	22.7	59.1	13.6	100.0(22)	14.18
자녀연령						
영아	7.1	14.3	64.3	14.3	100.0(14)	12.14
유아	0.0	37.5	50.0	12.5	100.0( 8)	17.75
초등자녀이상	-	-	-	-	-	-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5.0	20.0	60.0	15.0	100.0(20)	10.55
홀벌이가구	0.0	50.0	50.0	0.0	100.0( 2)	50.50
지역규모						
대도시	5.3	26.3	57.9	10.5	100.0(19)	14.32
중소도시	0.0	0.0	50.0	50.0	100.0( 2)	15.00
읍·면지역	0.0	0.0	100.0	0.0	100.0( 1)	10.00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	-	-	-	-	-
500만원 이하	0.0	12.5	75.0	12.5	100.0( 8)	10.25
700만원 이하	12.5	37.5	50.0	0.0	100.0( 8)	8.13
900만원 이하	0.0	0.0	50.0	50.0	100.0( 2)	15.00
900만원 초과	0.0	25.0	50.0	25.0	100.0( 4)	33.75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3-14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이외 추가지급 비용과 빈도\_식비

단위 : %(명), 만원

구분	주1회	월1회	분기별 1회	기타	계(수)	평균(만원)
전체	25.0	62.5	6.3	6.3	100.0(16)	13.38
자녀연령						
영아	12.5	62.5	12.5	12.5	100.0( 8)	16.25
유아	37.5	62.5	0.0	0.0	100.0( 8)	10.50
초등자녀이상	-	-	-	-	-	-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20.0	66.7	6.7	6.7	100.0(15)	14.20
홀벌이가구	100.0	0.0	0.0	0.0	100.0( 1)	1.00
지역규모						
대도시	21.4	64.3	7.1	7.1	100.0(14)	14.71
중소도시	50.0	50.0	0.0	0.0	100.0( 2)	4.00
읍·면지역	-	-	-	-	-	-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	-	-	-	-	-
500만원 이하	28.6	57.1	14.3	0.0	100.0( 7)	12.29
700만원 이하	33.3	50.0	0.0	16.7	100.0( 6)	9.67
900만원 이하	0.0	100.0	0.0	0.0	100.0( 2)	10.00
900만원 초과	0.0	100.0	0.0	0.0	100.0( 1)	50.0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3-15 민간 육아도우미 급여 이외 추가지급 비용과 빈도\_휴가비

단위 : %(명), 만원

구분	매번	분기별 1회	연간 1회	계(수)	평균(만원)
전체	4.3	34.8	60.9	100.0(23)	33.91
자녀연령					
영아	10.0	30.0	60.0	100.0(10)	27.00
유아	0.0	41.7	58.3	100.0(12)	38.33
초등자녀이상	0.0	0.0	100.0	100.0( 1)	50.00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4.5	31.8	63.6	100.0(22)	35.00
홀벌이가구	0.0	100.0	0.0	100.0( 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0.0	33.3	66.7	100.0(18)	38.89
중소도시	20.0	40.0	40.0	100.0( 5)	16.00
읍·면지역	-	-	-	-	-

구분	매번	분기별 1회	연간 1회	계(수)	평균(만원)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100.0	0.0	100.0( 1)	10.00
500만원 이하	0.0	40.0	60.0	100.0( 5)	20.00
700만원 이하	20.0	0.0	80.0	100.0( 5)	24.00
900만원 이하	0.0	50.0	50.0	100.0( 8)	50.00
900만원 초과	0.0	25.0	75.0	100.0( 4)	37.5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명절 때 10만원 정도, 설이랑 추석때, 생신 때도요.” (부모 2)

“휴가 쓸 때, 어버이날, 명절 다 현금으로 드렸어요.” (부모 1)

## 다. 서비스 장소 및 내용

### 1) 서비스 이용 장소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근무지로는 이용부모의 자택에서 돌보는 경우가 86.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초등자녀의 경우는 육아도우미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27.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도우미의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이유로는 도우미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와 거리가 가까운 경우 등으로 확인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육아도우미가 근처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 거주지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가 있고(부모 1, 4), 특히 이 경우는 시간제의 경우에서 그러한 것으로 확인된다(부모 4). 즉 종일제 보육이 아닌 틈새보육이고 어린 자녀이며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육아도우미의 거주공간이 보육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육아도우미의 집에 자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부모 5).

▮ 표 IV-3-16 ▮ 민간 육아도우미의 근무지

단위 : %(명)

구분	자택에서 돌봄	육아도우미의 집에서 돌봄	계(수)
전체	86.0	14.0	100.0(500)
자녀연령			
영아	86.6	13.4	100.0(268)
유아	88.6	11.4	100.0(185)
초등자녀이상	72.3	27.7	100.0( 47)

구분	자택에서 돌봄	육아도우미의 집에서 돌봄	계(수)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86.8	13.2	100.0(439)
홀벌이가구	80.3	19.7	100.0( 61)
지역규모			
대도시	86.1	13.9	100.0(425)
중소도시	85.7	14.3	100.0( 70)
읍·면지역	80.0	20.0	100.0( 5)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82.9	17.1	100.0( 35)
500만원 이하	85.8	14.2	100.0(190)
700만원 이하	86.4	13.6	100.0(147)
900만원 이하	87.2	12.8	100.0( 78)
900만원 초과	86.0	14.0	100.0( 5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표 IV-3-17 ▮ 자녀를 육아도우미의 집에서 돌보는 이유

구분		(수)	구분		(수)
별다른 이유 없음	(9)	시간이 없음	(2)		
도우미의 편의를 위해	(8)	안전해서	(2)		
가까운 거리	(7)	안정적인 케어	(2)		
직장문제	(7)	외부인에게 자택을 공개하기 싫어서	(2)		
편해서	(7)	더 나은 서비스 제공	(1)		
도우미 집에 여러명 아이들이 있음	(4)	더 나은 서비스 제공, 급여 문제	(1)		
상황이 어려워져서	(3)	도우미 집에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1)		
육아도우미의 집이 더 좋음	(3)	아이가 자택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서	(1)		
힘들어서	(3)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1)		
교육 목적	(2)	어린이집 대기 때문에	(1)		
마음이 놓여서	(2)	자택 평수가 작아서	(1)		
(수)		(7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원래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아이 맡아주시면서 가사일도 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특이한게 옆동이고 하다보니까 애들이 그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가사가 아니고 놀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런거 위주로..” (부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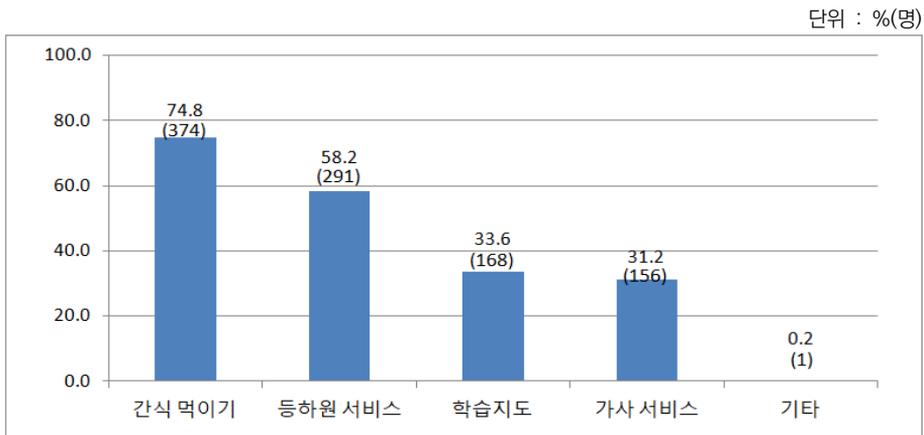
“종일제때는 저희집에 오셨고, 시간제로 했을 때는 아기 하원할 때 차량이 이모님 (아파트) 단지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리면 이모님이 식사나 간식 같은거 챙겨주시고.. 그때는 너무 적응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또 부탁을 드릴 수 있었던게, 이모님 가정환경 같은 것들이 자녀분들이 다 출가하고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분도 자상하고 그래서 엄마아빠가 메꿔주지 못한,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도 그러셨고 그래서 애가 커서는 그쪽에 보냈어요.” (부모 4)

“가정으로 보내는 거는 오픈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다는 생각은 들어요.” (부모 5)

## 2) 서비스 내용

민간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간식 먹이기와 등하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어 해당 응답률은 각각 74.8%와 58.2%이었다. 그 밖에도 학습지도 33.6%, 가사서비스 31.2%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가 이용하는 기관(어린이집 등)과 학교의 등하원서비스와는 달리, 가사서비스의 경우는 전반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부모 3에 의하면 식사 준비를 제외한 이외 가사 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부모 7은 가사도우미를 별도로 고용하여 민간 육아도우미는 자녀의 빨래와 급식제공 위주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부모 2에서와 같이 등하원서비스, 학습지도, 아이 식사 제공 등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 그림 IV-3-2 ■ 현재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중복응답)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가사일 해주셨고, 식사준비는 제가 했고, 청소, 빨래, 아이들 이런거는 다 해주셨고요.” (부모 3)

“학원버스 오는데까지 데려다주시고 태워다 보내주시고. 학원이 다 동네 부근이니까 직접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차가 오면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가기 전에 간식 챙겨주시고, 학습지 선생님 오시면 그거 준비해주시고..” (부모 2)

“어린이집이 동네 근처인데 직접 데리고 와주세요.” (부모 1)

“가사도우미는 따로 고용하고 있어요. 다만, 간단한 아기 빨래, 아이들 밥주는거 정도는 해주세요.” (부모 7)

### 라. 서비스 병행 이용 및 사유

부모를 제외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23.0%에 그쳤다. 민간 육아도우미와 병행하여 자녀를 돌보는 기관이나 인력으로는 어린이집이 31.7%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28.6%로 단독 이용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제 운영시간이 근로시간에 부합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IV-3-18 ▣ 민간 육아도우미 이외 서비스 병행 이용 기관 및 인력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중	조부모 또는 친인척	추가로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없음	유치원 이용중	초등돌봄 교실/방과후학교	지역 아동 센터	이웃 주민	기타	계(수)
전체	31.7	28.6	23.0	5.9	4.6	4.3	1.5	0.4	100.0(461)
자녀연령									
영아	39.2	30.6	24.6	0.0	0.0	4.3	1.3	0.0	100.0(232)
유아	30.2	30.8	19.8	14.8	0.0	3.3	0.5	0.5	100.0(182)
초등자녀이상	0.0	10.6	27.7	0.0	44.7	8.5	6.4	2.1	100.0( 4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32.6	27.9	23.0	6.4	4.4	3.5	1.7	0.5	100.0(405)
홀벌이가구	25.0	33.9	23.2	1.8	5.4	10.7	0.0	0.0	100.0( 56)
지역규모									
대도시	33.2	29.7	19.8	5.8	5.1	4.1	1.8	0.5	100.0(394)

구분	어린이집 이용중	조부모 또는 친인척	추가로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없음	유치원 이용중	초등돌봄 교실/방과후학교	지역 아동 센터	이웃 주민	기타	계(수)
중소도시	22.2	22.2	42.9	4.8	1.6	6.3	0.0	0.0	100.0( 63)
읍·면지역	25.0	25.0	25.0	25.0	0.0	0.0	0.0	0.0	100.0( 4)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1.4	20.7	27.6	3.4	0.0	6.9	0.0	0.0	100.0( 29)
500만원 이하	30.2	28.6	25.3	3.8	5.5	5.5	1.1	0.0	100.0(182)
700만원 이하	36.5	29.2	20.4	3.6	5.1	3.6	1.5	0.0	100.0(137)
900만원 이하	28.4	27.0	23.0	10.8	2.7	4.1	2.7	1.4	100.0( 74)
900만원 초과	20.5	35.9	17.9	15.4	5.1	0.0	2.6	2.6	100.0( 39)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또한 해당 기관의 유형으로는 민간어린이집 37.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국공립어린이집이 33.2%, 가정어린이집이 7.8%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종일제 보육 운영이 기대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영아반 위주의 가정어린이집에서도 근로 시간만큼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IV-3-19 참조).

이에 따라 기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기관의 운영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거나(49.8%), 기관에 아이를 오래두고 싶지 않아서(34.1%)로 파악된다(표 IV-3-20 참조). 이러한 현실은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부모 2와 8은 어린이집을 7시 반까지 운영하나, 그때 까지 남아있는 아이가 거의 없어 그전에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고충을 호소하였다.

표 IV-3-19 민간 육아도우미와 병행 이용 중인 기관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타	계(수)
전체	37.6	33.2	7.8	7.3	6.8	5.9	1.0	0.5	100.0(205)
자녀연령									
영아	32.8	37.9	11.2	1.7	9.5	6.0	0.9	0.0	100.0(116)
유아	45.1	25.6	3.7	14.6	3.7	4.9	1.2	1.2	100.0( 82)
초등자녀이상	28.6	42.9	0.0	14.3	0.0	14.3	0.0	0.0	100.0( 7)

구분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 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타	계(수)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38.6	33.7	7.1	7.1	6.5	5.4	1.1	0.5	100.0(184)
홀벌이가구	28.6	28.6	14.3	9.5	9.5	9.5	0.0	0.0	100.0( 21)
지역규모									
대도시	38.5	32.4	8.8	6.6	6.6	5.5	1.1	0.5	100.0(182)
중소도시	33.3	33.3	0.0	14.3	9.5	9.5	0.0	0.0	100.0( 21)
읍·면지역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2)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6.3	31.6	10.5	0.0	10.5	21.1	0.0	0.0	100.0( 19)
500만원 이하	46.4	31.9	7.2	2.9	7.2	4.3	0.0	0.0	100.0( 69)
700만원 이하	44.4	30.2	4.8	9.5	6.3	3.2	1.6	0.0	100.0( 63)
900만원 이하	9.7	48.4	16.1	16.1	6.5	3.2	0.0	0.0	100.0( 31)
900만원 초과	39.1	26.1	4.3	8.7	4.3	8.7	4.3	4.3	100.0( 23)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표 IV-3-20 ▮ 추가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운영 시간이 근로시간 보다 짧아서	기관에 아이를 오래두고 싶지 않아서	아이가 일찍 하원하고 싫어해서	사교육이 필요해서	계(수)
전체	49.8	34.1	12.2	3.9	100.0(205)
자녀연령					
영아	48.3	38.8	8.6	4.3	100.0(116)
유아	52.4	26.8	17.1	3.7	100.0( 82)
초등자녀이상	42.9	42.9	14.3	0.0	100.0( 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50.0	33.2	13.0	3.8	100.0(184)
홀벌이가구	47.6	42.9	4.8	4.8	100.0( 21)
지역규모					
대도시	51.1	32.4	12.1	4.4	100.0(182)
중소도시	38.1	47.6	14.3	0.0	100.0( 21)
읍·면지역	50.0	50.0	0.0	0.0	100.0( 2)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6.8	47.4	10.5	5.3	100.0( 19)
500만원 이하	47.8	37.7	13.0	1.4	100.0( 69)
700만원 이하	60.3	25.4	12.7	1.6	100.0( 63)

구분	운영 시간이 근로시간 보다 짧아서	기관에 아이를 오래두고 싶지 않아서	아이가 일찍 하원하고 싫어해서	사교육이 필요해서	계(수)
900만원 이하	48.4	29.0	9.7	12.9	100.0( 31)
900만원 초과	39.1	43.5	13.0	4.3	100.0( 23)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어린이집이 7시까지 봐주기는 하는데 그때까지 있는 애가 없어요. 다 5시면 집에 가는데 우리애만 남아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출근이 빠르기 때문에 누가 없으면 애를 일찍 맡겨야 하는 상황이고..”(부모 2)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픽업을 하고 이렇게 안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린이집에 그렇게 장시간 맡기는 엄마들이 없어요. 보통 5시, 4시, 3시 반 정도 되면 아이들이 가요. 아이가 혼자 남겨 되면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고.. 은근히 선생님들도 그 시간에 가기를 바라고, 다 같이 아이들이 있으면 문제 될게 없는데 다 가고 내 아이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마음이 그렇잖아요.”(부모 8)

이에 따라 기관을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기관과 병행하여 이용하는 사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장시간 보육에의 기피 현상도 존재하여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는 가정내 양육을 위해 민간 육아도우미를 추가로 이용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 표 IV-3-21 ▮ 기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이용 중단함	계속 이용함	계(수)
전체	69.3	30.7	100.0(101)
자녀연령			
영아	62.5	37.5	100.0( 56)
유아	76.2	23.8	100.0( 42)
초등자녀이상	100.0	0.0	100.0( 3)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67.0	33.0	100.0( 91)
홀벌이가구	90.0	10.0	100.0( 10)

구분	이용 중단함	계속 이용함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67.7	32.3	100.0( 93)
중소도시	85.7	14.3	100.0( 7)
읍·면지역	100.0	0.0	100.0( 1)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71.4	28.6	100.0( 7)
500만원 이하	72.7	27.3	100.0( 33)
700만원 이하	64.9	35.1	100.0( 37)
900만원 이하	60.0	40.0	100.0( 15)
900만원 초과	88.9	11.1	100.0( 9)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저는 어린이집 시간이 길다고 하면 굳이 도우미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일정하고 야근이 당연히 없지만, 저녁에 무슨 일만 안생기면 특별히 이모님 안계셔도 어린이집에서 해결되니까..” (부모 5)

“저는 연령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애가 좀 크면 또래하고 놀고 싶거나 엄마 입장에서 그 시간에 뭔가 학습적인 도움을 받는 게 적당한 시기가 된다고 하면 이모님이 정서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학원을 찾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부모 4)

“저희 애들은 다 어린이집에 다녀서 어찌보면 애를 좀 일찍 보내서 굳이 육아도우미를 안 써도 됐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새벽같이 애를 깨워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해 저서까지 혼자 어린이집에 남겨두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애들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거 생각해서..”(부모 2)

#### 마. 민간 육아도우미 공백 시 대응 방법

민간 육아도우미가 아프거나 일이 생겨서 집에 갑자기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로 친정이나 시댁 등 주변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부모가 휴가를 이용하여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갑자기 못 오시게 되는 경우 가족들 소환해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아이를 봐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저도 불안하고 아이도 불안하고.. 혹시나 안 될때를 생각하면서 그냥 지내는거 같아요.” (부모 1)

“종종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못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인근에 사는 시어머니 도움을 받았어요.” (부모 8)

“이모님이 갑자기 못 오시는 경우 친정아버지께서 휴가를 내시고 오셨어요.” (부모 7)

“갑자기 팔이 부러지셔서 못 오시겠다고 한적 있었어요. 몸살이 나서 못 오신 적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봤죠. 제 일은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아니면 시어머니나 친정에서 되는 사람 다 부르고..” (부모 6)

“갑자기 아침에 편찮으시다고. 제가 휴가를 급하게 회사에 말씀드려서 낸 적도 있고.” (부모 2)

“저는 친정이 가까이 있어서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렸어요.” (부모 3)

다만, 민간 육아도우미가 근무하지 않을 날에도 해당일의 임금을 별도로 제한하는 않고 그냥 드린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필요한 경우 주말 근무 등을 통해 빠진 만큼 채우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못 오신다고 하더라도 월급제인 경우는 제한 수가 없어요. 그냥 드리는거죠.” (부모 8)

“이모님이 아프셔서 못 오신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비용을 제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부모 3)

또한, 국가의 긴급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못미더운 측면이 있어 선뜻 맡기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에서 대체인력 준다고 하긴 하는데 엄마들은 회의적인 게..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갑자기 하루 맡기는 거라서.. 아이가 어리면 더욱 맡기기가 어렵죠.” (부모 1)

## 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의 국가 개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공적으로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및 이용 경험 및 만족도, 그리고 해당 수요 전반을 조사하였다.

우선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43.6%였고, 잘 알고 있는 경우는 6.2%에 그쳤으며,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1.4%로 조사되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였고, 해당 비율은 월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 20.0%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제도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다.

표 IV-3-22 |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름	이름만 들어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수)
전체	11.4	38.8	43.6	6.2	100.0(500)
자녀연령					
영아	11.2	38.4	44.0	6.3	100.0(268)
유아	13.0	39.5	41.6	5.9	100.0(185)
초등자녀이상	6.4	38.3	48.9	6.4	100.0( 4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11.4	38.5	43.5	6.6	100.0(439)
홀벌이가구	11.5	41.0	44.3	3.3	100.0( 61)
지역규모					
대도시	11.3	36.9	44.9	6.8	100.0(425)
중소도시	11.4	51.4	34.3	2.9	100.0( 70)
읍·면지역	20.0	20.0	60.0	0.0	100.0( 5)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0.0	48.6	31.4	0.0	100.0( 35)
500만원 이하	13.2	44.7	37.9	4.2	100.0(190)
700만원 이하	8.8	30.6	53.7	6.8	100.0(147)
900만원 이하	6.4	33.3	47.4	12.8	100.0( 78)
900만원 초과	14.0	42.0	38.0	6.0	100.0( 5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8.2%로 가장 높은 가운데, 현재 이용 중인 가구가 22.5%였고, 과거 이용한 비율은 19.3%로 조사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인 가구의 비율은 맞벌이 가구와 영아를 둔 가구에서 각각 24.5%와 27.4%로 평균에 비해 높고, 월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해당 비율은 45.5%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3-23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과거 이용	현재 이용중	이용해 본 적 없음	계(수)
전체	19.3	22.5	58.2	100.0(249)
자녀연령				
영아	20.7	27.4	51.9	100.0(135)
유아	15.9	15.9	68.2	100.0( 88)
초등자녀이상	23.1	19.2	57.7	100.0( 26)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20.5	24.5	55.0	100.0(220)
홀벌이가구	10.3	6.9	82.8	100.0( 29)
지역규모				
대도시	19.5	21.8	58.6	100.0(220)
중소도시	11.5	30.8	57.7	100.0( 26)
읍·면지역	66.7	0.0	33.3	100.0( 3)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8.2	45.5	36.4	100.0( 11)
500만원 이하	18.8	23.8	57.5	100.0( 80)
700만원 이하	18.0	19.1	62.9	100.0( 89)
900만원 이하	23.4	25.5	51.1	100.0( 47)
900만원 초과	18.2	13.6	68.2	100.0( 22)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아이돌봄서비스를 과거에 이용하였거나 현재 이용 중인 가구에 한하여 이용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만족 + 매우만족)이 55.8%였고, 5점 척도 기준으로는 평균 3.53점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는 영아를 둔 가구와 맞벌이 가구, 그리고 월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이 만족한 이유로는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점,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 등이 언급되었다. 반면에 아이돌봄서비스가 불만족하다고 경우 해당 사유로는 아이돌보미의 불친절, 전문성 부족, 대기시간이 길다는 점, 그리고 이용시간의 제약 등이 지적되었다.

그 밖에도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아이돌보미 교육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불편하고(부모 4, 5), 아이돌보미를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이

이 지정되는 방식 등이 불만족스러웠던 것으로 언급되었다(부모 6). 그러나 비용이 저렴하여 장시간 근로 시에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은 도움이 되었고(부모 6), 아이돌보미 신원이 보장되고,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만족한 점으로 꼽았다(부모 4, 5).

표 IV-3-24 |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함	불만족함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점)
전체	2.9	6.7	34.6	46.2	9.6	100.0(104)	3.53
자녀연령							
영아	1.5	4.6	32.3	50.8	10.8	100.0( 65)	3.65
유아	7.1	7.1	32.1	42.9	10.7	100.0( 28)	3.43
초등자녀 이상	0.0	18.2	54.5	27.3	0.0	100.0( 11)	3.09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3.0	7.1	33.3	46.5	10.1	100.0( 99)	3.54
홀벌이가구	0.0	0.0	60.0	40.0	0.0	100.0( 5)	3.40
지역규모							
대도시	3.3	4.4	37.4	46.2	8.8	100.0( 91)	3.53
중소도시	0.0	18.2	18.2	45.5	18.2	100.0( 11)	3.64
읍·면지역	0.0	50.0	0.0	50.0	0.0	100.0( 2)	3.00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0.0	28.6	57.1	14.3	100.0( 7)	3.86
500만원 이하	2.9	2.9	38.2	47.1	8.8	100.0( 34)	3.56
700만원 이하	0.0	15.2	42.4	36.4	6.1	100.0( 33)	3.33
900만원 이하	8.7	4.3	17.4	56.5	13.0	100.0( 23)	3.61
900만원 초과	0.0	0.0	42.9	42.9	14.3	100.0( 7)	3.71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함' 1점-'매우 만족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평일 낮 시간에, 만약 종일제를 이용한다면, 제가 필요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겹쳐서 선생님 교육이 이루어져요. 거기는 그분들이 교육요건을 충족해야지 계속 자리를 유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같은 시간에 이용할 수 없고, 또 대안방법을 모색을 거의 해주실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항상 컴플레인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부모 4)

“그 연속처럼 교육이 오전에 끝나는 교육도 있지만, 어떤 경우 1박 2일 이렇게 가는 경우는 저희가 무방비 상태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저희가 '가지 마세

요' 이럴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갑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난처했던 것 같아요.” (부모 5)

“아이돌봄미에서 안 좋았던 것은 사람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골라주는 사람이 무조건 지정해서 와야 하는데, 서로가 코드가 맞아야 하잖아요. A집에서 맞아도 B집에서 안맞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오셨던 분은 다른 집에서 싸움이 크게 있었더라구요 그것도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 한건데. 일단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풀(Pool)도 안되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겠지만, 좀 더 발전이 되면 선택할 수 있고 분야도 세분화가 되겠죠. 지금은 금액이 너무 싸요. 그분이 생계가 안 되니까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일하는 시간이 길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안하죠. 오셔서 쉬려고만 했어요. 위생상태도 엉망이었고.” (부모 6)

“민간의 경우 응급상황이 되고 할 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깐 조금 그런거에 대해 서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이돌봄미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상황대처 능력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 더 나오신거 같아요.” (부모 4)

“신원 보장 측면에서 당연히 이미 일차적인 검증을 기관에서 해주셨을거란 생각에 믿을 수 있는거 같아요. 물론 인성적인 부분은 만나봐야 아는거라 모르지만, 적어도 신원적인 부분 은요.” (부모 5)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에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이용시간의 제약이 없고 이용 시 편리한 점 이외에도, 전문적이고 경력이 많으며,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런데 이때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시간이 길어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표 IV-3-25 ■ 아이돌봄서비스에 만족했으나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수)	구분	(수)
시간 제약이 없음	(6)	안정감	(2)
편리함	(6)	가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
대기 시간이 길다	(5)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됨	(1)
맞벌이	(4)	선생님의 개인 사정으로	(1)
비용 문제	(4)	아내의 건강문제 때문에	(1)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4)	아이가 더 편하게 느껴서	(1)
믿을만함	(3)	아이를 위해	(1)
전문적임	(3)	주변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1)

구분	(수)	구분	(수)
편안함	(3)	파트타임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서	(1)
더 관심을 갖고 케어해 줄 수 있는 도우미	(2)	현재 도우미 스펙이 더 나았음	(1)
서비스가 좋음	(2)		
이용 조건에 맞지 않음	(2)		
(수)		(54)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종일제로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시간제로 이용하려면 오시던 선생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루에 3시간만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민간에서 구하게 되었죠.” (부모 5)

“처음에 오신 아이돌보미는 우리집이 아니라 다른집에서 잘려가지고 업무정지를 당하신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집까지 못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별도로 채용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기는 너무 싫었어요. 아이돌보미 분들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일에도 일하시더라고요? 그 분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와서 기회만 되면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적다 해서 비용만큼만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민간이 질적으로 더 나은거 같아요.” (부모 6)

## 4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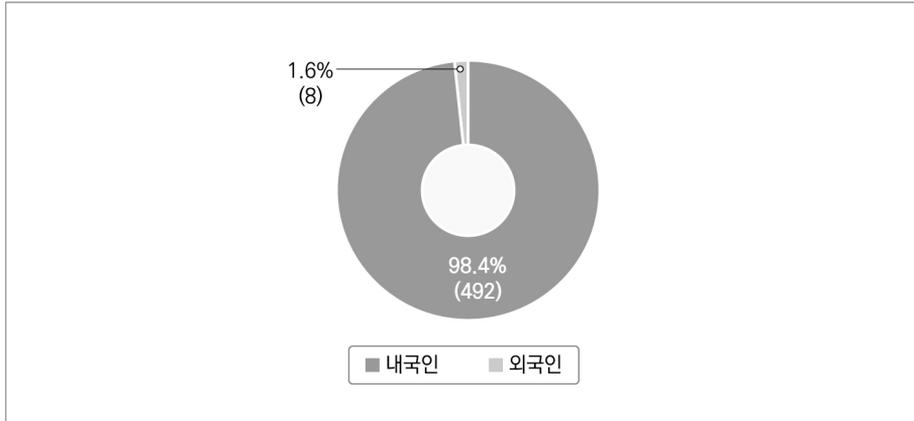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이용 만족도를 진단하고, 개선요구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앞서 육아도우미의 특성 및 경력을 살펴보았다.

### 가. 민간 육아도우미 특성

현재 이용 중인 육아도우미의 특성을 살펴보면, 외국인 비율이 1.6%에 그치며, 연령은 평균 약 49.1세이고 50대가 5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VI-4-1 참조). 또한 동일 분야의 경력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평균 경력은 6.46년이고, 5년 이하 22.8%, 3년 이하가 18.8%로 조사되었으며, 10년을 초과한 경우는 6.2%에 그쳤다(그림 VI-4-2, VI-4-3 참조). 또한 민간 육아도우미의 아이돌보미 경력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가장 높은 가운데(그림 VI-4-4 참조), 유경력자는 21.4%였고 해당 경력은 평균 약 6년으로 나타난다(그림 VI-4-5 참조).

■ 그림 IV-4-1 ■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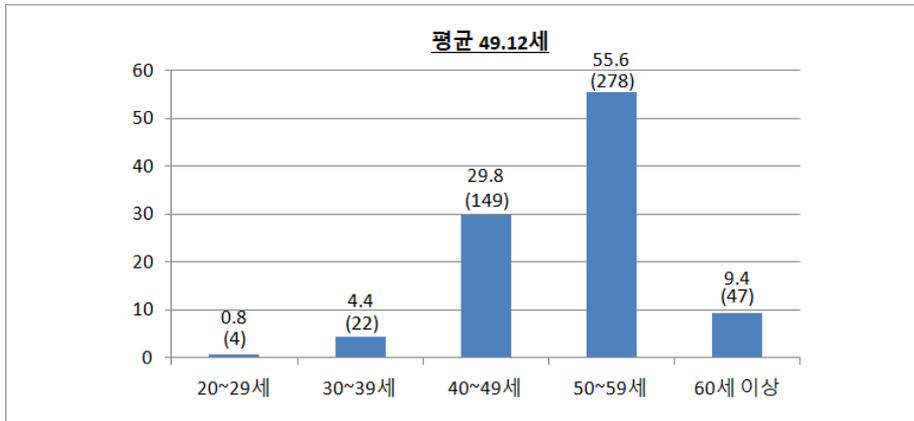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그림 IV-4-2 ■ 민간 육아도우미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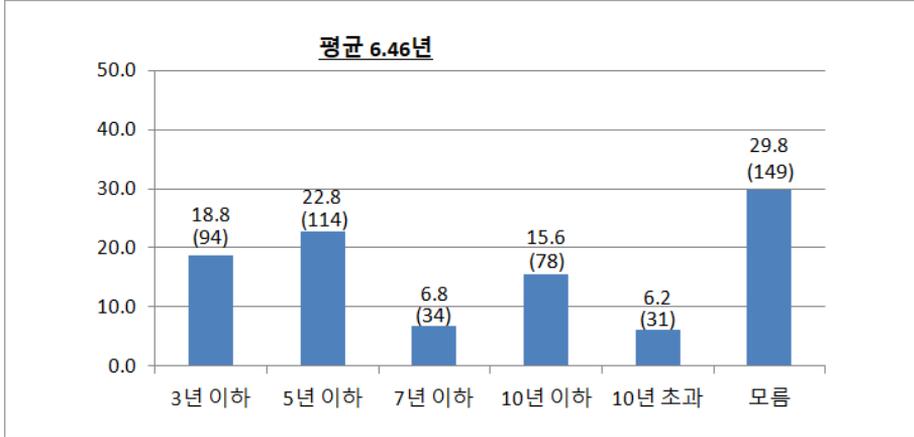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그림 IV-4-3 ■ 민간 육아도우미의 동일 분야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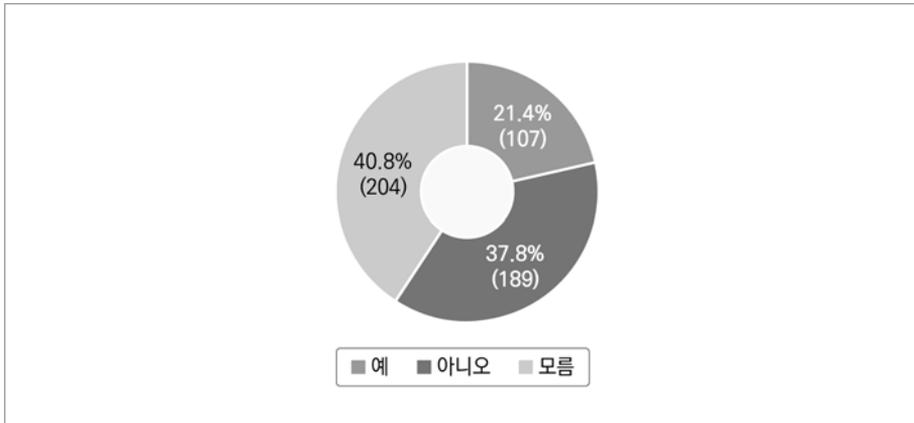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그림 IV-4-4 ■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아이돌보미 경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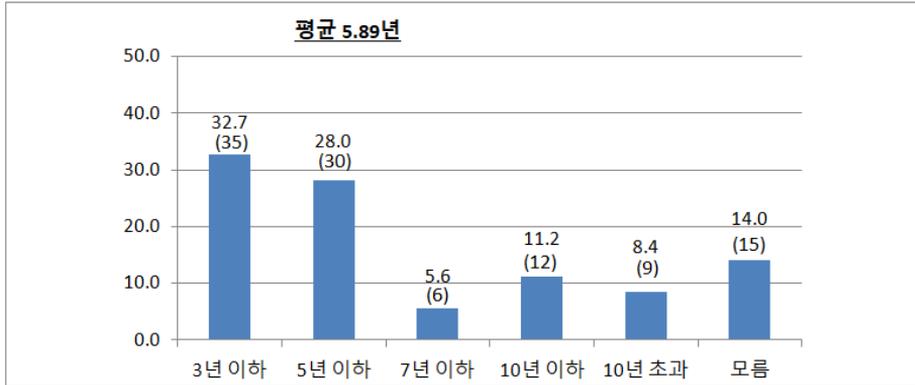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그림 IV-4-5 ■ 육아도우미의 아이돌보미 경력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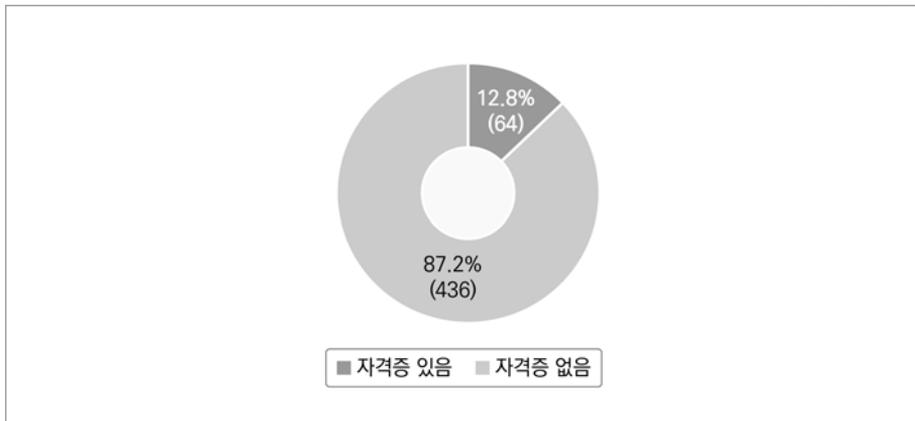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민간 육아도우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2.8%에 그치며, 해당 자격증의 종류는 보육교사가 4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VI-4-6 참조, 표 VI-4-1 참조).

■ 그림 IV-4-6 ■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의 자격증 보유 여부

단위 : %(명)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4-1 민간 육아도우미의 보유 자격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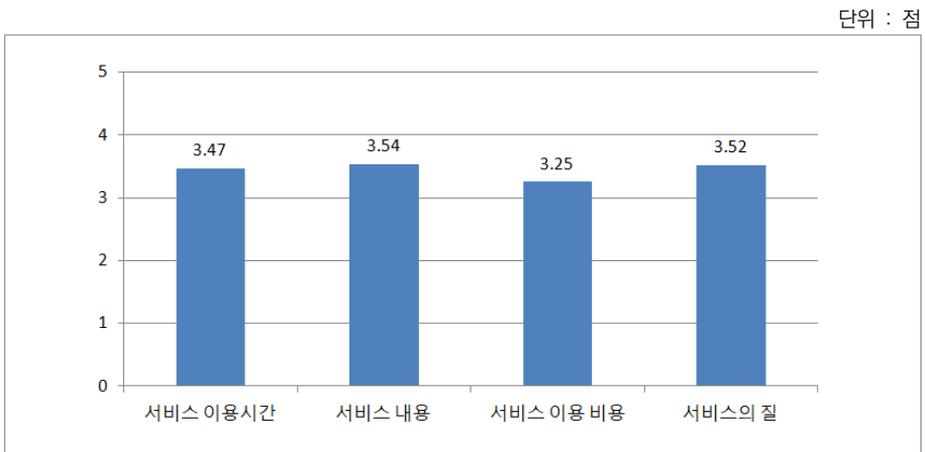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보육교사	45.9(29)	유아교육	3.1( 2)
베이비시터	26.6(17)	도우미	1.6( 1)
잘 모름	10.9( 7)	아이 지도사	1.6( 1)
사회복지사	3.1( 2)	조리사	1.6( 1)
산후도우미	3.1( 2)		
아이돌봄	3.1( 2)		
계		100.0(64)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나.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내용

민간 육아도우미의 이용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서비스 내용 3.54점, 서비스의 질 3.52점, 서비스 이용시간 3.47점 순이었으며, 서비스 이용비용이 3.2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나, 부모 8과 9가 언급한 바와 같이 비용 대비 업무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림 IV-4-7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전반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함' 1점-'매우 만족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기본적으로 아이를 예뻐하시긴 하지만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나 그런게 엄마하고 차이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불만이예요.” (부모 7)

“7점. 엄마가 해주는 수준하고 동일한 수준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 사실 돈을 지불하는게 있다보니 어느 정도 기대하는 수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 능력’ 때문에 크게 만족하지는 않아요.” (부모 8)

“아이가 어릴 경우 비용에 비해 하는 업무가 적은거 같아요. 그런데도 아이가 어리면 비용은 더 비싸죠. 또 공공돌보미에 비해 금액적 부담이 너무 커요.” (부모 9)

“저는 정말 감사드리는 분이라..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보다도 아이를 10년 이상 봐주시거라.. 서로 안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만점 드리고 싶어요.” (부모 3)

가구특성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시간은 맞벌이 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서비스 이용비용의 경우는 홑벌이 가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IV-4-2, IV-4-3, IV-4-4, IV-4-5 참조).

표 IV-4-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서비스 이용시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함	불만족함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점)
전체	1.4	3.2	46.4	45.2	3.8	100.0(500)	3.47
자녀연령							
영아	2.2	3.4	44.8	46.6	3.0	100.0(268)	3.45
유아	0.5	2.7	49.2	41.6	5.9	100.0(185)	3.50
초등자녀이상	0.0	4.3	44.7	51.1	0.0	100.0( 47)	3.47
<i>F</i>							0.283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1.1	3.0	45.8	45.8	4.3	100.0(439)	3.49
홑벌이가구	3.3	4.9	50.8	41.0	0.0	100.0( 61)	3.30
<i>t</i>							2.101*
지역규모							
대도시	1.4	2.8	46.4	45.2	4.2	100.0(425)	3.48
중소도시	1.4	4.3	48.6	44.3	1.4	100.0( 70)	3.40
읍·면지역	0.0	20.0	20.0	60.0	0.0	100.0( 5)	3.40

구분	매우 불만족함	불만족함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점)
<i>F</i>							0.429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7	0.0	62.9	31.4	0.0	100.0( 35)	3.20
500만원 이하	1.6	3.2	45.3	48.4	1.6	100.0(190)	3.45
700만원 이하	0.7	3.4	48.3	42.2	5.4	100.0(147)	3.48
900만원 이하	0.0	1.3	44.9	48.7	5.1	100.0( 78)	3.58
900만원 초과	2.0	8.0	36.0	46.0	8.0	100.0( 50)	3.50
<i>F</i>							1.896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함' 1점-'매우 만족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 표 IV-4-3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서비스 내용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함	불만족함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점)
전체	0.8	3.2	44.2	44.6	7.2	100.0(500)	3.54
자녀연령							
영아	0.7	3.7	42.2	45.1	8.2	100.0(268)	3.56
유아	1.1	2.7	46.5	43.8	5.9	100.0(185)	3.51
초등자녀이상	0.0	2.1	46.8	44.7	6.4	100.0( 47)	3.55
<i>F</i>							0.337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0.7	3.2	44.9	44.0	7.3	100.0(439)	3.54
홀벌이가구	1.6	3.3	39.3	49.2	6.6	100.0( 61)	3.56
<i>t</i>							-0.180
지역규모							
대도시	0.9	3.1	44.9	43.5	7.5	100.0(425)	3.54
중소도시	0.0	4.3	40.0	51.4	4.3	100.0( 70)	3.56
읍·면지역	0.0	0.0	40.0	40.0	20.0	100.0( 5)	3.80
<i>F</i>							0.357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9	2.9	54.3	37.1	2.9	100.0( 35)	3.34
500만원 이하	0.5	2.6	41.1	47.4	8.4	100.0(190)	3.61
700만원 이하	0.7	4.8	45.6	42.9	6.1	100.0(147)	3.49
900만원 이하	1.3	0.0	47.4	43.6	7.7	100.0( 78)	3.56

구분	매우 불만족함	불만족함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점)
900만원 초과 <i>F</i>	0.0	6.0	40.0	46.0	8.0	100.0( 50)	3.56 1.291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함' 1점-'매우 만족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표 IV-4-4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서비스 이용비용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함	불만족함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점)
전체	2.2	13.4	46.6	32.6	5.2	100.0(500)	3.25
자녀연령							
영아	3.0	13.1	43.3	35.1	5.6	100.0(268)	3.27
유아	1.1	15.1	50.3	29.2	4.3	100.0(185)	3.21
초등자녀이상 <i>F</i>	2.1	8.5	51.1	31.9	6.4	100.0( 47)	3.32 0.521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1.8	13.2	46.7	32.6	5.7	100.0(439)	3.27
홀벌이가구 <i>t</i>	4.9	14.8	45.9	32.8	1.6	100.0( 61)	3.11 1.375
지역규모							
대도시	2.1	12.5	47.1	32.2	6.1	100.0(425)	3.28
중소도시	2.9	20.0	42.9	34.3	0.0	100.0( 70)	3.09
읍·면지역 <i>F</i>	0.0	0.0	60.0	40.0	0.0	100.0( 5)	3.40 1.680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17.1	42.9	34.3	5.7	100.0( 35)	3.29
500만원 이하	2.6	11.1	45.8	35.3	5.3	100.0(190)	3.29
700만원 이하	2.7	15.6	49.7	25.9	6.1	100.0(147)	3.17
900만원 이하	2.6	14.1	43.6	35.9	3.8	100.0( 78)	3.24
900만원 초과 <i>F</i>	0.0	12.0	48.0	36.0	4.0	100.0( 50)	3.32 0.578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함' 1점-'매우 만족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4-5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_서비스의 질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함	불만족함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점)
전체	0.4	3.8	43.8	47.2	4.8	100.0(500)	3.52
자녀연령							
영아	0.4	3.4	44.8	46.3	5.2	100.0(268)	3.53
유아	0.5	3.8	42.2	49.2	4.3	100.0(185)	3.53
초등자녀 이상	0.0	6.4	44.7	44.7	4.3	100.0( 47)	3.47
<i>F</i>							0.170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0.5	3.4	44.2	46.7	5.2	100.0(439)	3.53
홀벌이가구	0.0	6.6	41.0	50.8	1.6	100.0( 61)	3.48
<i>t</i>							0.581
지역규모							
대도시	0.5	3.1	42.8	48.2	5.4	100.0(425)	3.55
중소도시	0.0	8.6	50.0	40.0	1.4	100.0( 70)	3.34
읍·면지역	0.0	0.0	40.0	60.0	0.0	100.0( 5)	3.60
<i>F</i>							2.962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0	8.6	45.7	42.9	2.9	100.0( 35)	3.40
500만원 이하	0.5	2.1	45.8	45.8	5.8	100.0(190)	3.54
700만원 이하	0.0	5.4	38.8	52.4	3.4	100.0(147)	3.54
900만원 이하	1.3	2.6	46.2	47.4	2.6	100.0( 78)	3.47
900만원 초과	0.0	4.0	46.0	40.0	10.0	100.0( 50)	3.56
<i>F</i>							0.492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함' 1점-'매우 만족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민간 육아도우미의 불만족한 내용은 과도한 비용이 주요하였으며, 그 밖에도 외부인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전문성이 결여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월가구소득 대비 민간 육아도우미의 높은 급여수준과 임금 상승에의 요구가 가장 주된 불만이었고(부모 2, 부모 7), 부모 3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양육을 둘러싼 의사소통 문제도 어려운 점으로 확인된다.

표 IV-4-6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불만족한 내용

단위 : (명)

구분	(수)	구분	(수)
금액 부담	(45)	도우미의 높은 나이대	( 2)
전문성/자질 결여	( 8)	비위생적이고 꼼꼼하지 않음	( 2)
불친절	( 5)	양육 방식의 차이	( 2)
서비스가 미흡함	( 5)	부담됨	( 1)
지각/약속 늦음	( 5)	시간 맞추기 힘들	( 1)
외부인이라 신뢰하기 어려움	( 3)		
의사소통 문제	( 3)		
(수)		(82)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비용 부담이 커요. 왜냐면 제가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드리고 나면 남는게..” (부모 2)

“작은 아이가 장난이 좀 심한데,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랑 부딪히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모님이 아니 편을 전적으로 들어주시다 보니 주변에서 엄마들한테 듣는 소리가.. 아무래도 트러블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저녁때 제가 퇴근하고 오다보면, 엄마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해주면, 저는 이제 아이를 혼내고.. 그런데 이모님이 싫어하셨어요. 나 그 만 두어야겠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부모 3)

“중국동포 분이라 그런지 한두 달 지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셨어요. 다른 집은 이렇게 한 다더라, 요즘 시세가 올랐다더라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인상을 시도하시죠.” (부모 7)

## 다. 개선 요구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용지원, 즉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세제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5점 척도 기준으로 3.84점을 나타낸다. 비용지원을 제외하면, 육아도우미 교육 실시에 대한 요구가 높아 해당 사항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2.8%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와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이 각각 3.61점과 3.57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표 IV-4-7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도움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 (수)	평균 (점)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2.2(11)	5.2(26)	34.6(173)	49.2(246)	8.8( 44)	100.0 (500)	3.57
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	1.8( 9)	6.2(31)	36.2(181)	40.8(204)	15.0( 75)	100.0 (500)	3.61
육아도우미 교육 실시	1.8( 9)	3.0(15)	32.4(162)	45.0(225)	17.8( 89)	100.0 (500)	3.74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세제지원	1.0( 5)	4.2(21)	28.0(140)	43.0(215)	23.8(119)	100.0 (500)	3.84

주: 평균은 '전혀 도움안됨' 1점-'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가구특성별로 이들 제도에 대한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구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제도가 없었으나, 직업 소개업체 인증 제도와 육아도우미 교육 실시에서 맞벌이 가구의 수요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 각 제도별 수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자격증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어, 단지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채용 시에 업무상 전문성 보다 인성 등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부모 3). 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의 경우는 범죄 경력, 신원 보장 이외에도 건강검진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며, 인증을 받은 업체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인력을 소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민간 육아도우미의 교육에 대해서는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전문성 즉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돌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4대보험료를 지급하고, 이용가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나아가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서비스 이용비용 규제 효과도 기대하였다.

【 표 IV-4-8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_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 (수)	평균 (점)
전체	2.2	5.2	34.6	49.2	8.8	100.0(500)	3.57
자녀연령							
영아	3.0	5.2	34.3	48.5	9.0	100.0(268)	3.55
유아	1.1	5.9	34.6	48.6	9.7	100.0(185)	3.60
초등자녀 이상	2.1	2.1	36.2	55.3	4.3	100.0( 47)	3.57
<i>F</i>							0.189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1.8	5.2	34.6	49.4	8.9	100.0(439)	3.58
홀벌이가구	4.9	4.9	34.4	47.5	8.2	100.0( 61)	3.49
<i>t</i>							0.824
지역규모							
대도시	2.4	4.0	35.1	50.4	8.2	100.0(425)	3.58
중소도시	1.4	11.4	32.9	41.4	12.9	100.0( 70)	3.53
읍·면지역	0.0	20.0	20.0	60.0	0.0	100.0( 5)	3.40
<i>F</i>							0.239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8.6	8.6	40.0	40.0	2.9	100.0( 35)	3.20
500만원 이하	2.1	3.7	38.4	46.8	8.9	100.0(190)	3.57
700만원 이하	2.0	4.8	30.6	53.1	9.5	100.0(147)	3.63
900만원 이하	0.0	6.4	29.5	55.1	9.0	100.0( 78)	3.67
900만원 초과	2.0	8.0	36.0	44.0	10.0	100.0( 50)	3.52
<i>F</i>							2.389

주: 평균은 '전혀 도움안됨' 1점-'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면접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게 더 강하지, 그러니까 취업할 때처럼 면접 보기 전에는 자격증이 중요하겠지만 면접보고 했을 때 결정적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 7)

“회사랑 똑같이 뽑을 때 스펙을 보고 면접 봅시다 하는거지, 그 자격증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 뽑아야지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부모 8)

“인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뭐 자격증으로 검증이 가능할까요?” (부모 1)

“자질, 인성 이런게 시험처럼 채점할 수는 없는거라.. 만약 그랬다면 현재 저희 이모님 같은 분은 힘들었겠죠.” (부모 3)

“너무 나이가 많지 않고, 자격증과 함께 주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 10)

표 IV-4-9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_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 (수)	평균 (점)
전체	1.8	6.2	36.2	40.8	15.0	100.0(500)	3.61
자녀연령							
영아	2.6	4.5	35.4	39.9	17.5	100.0(268)	3.65
유아	1.1	8.6	37.8	40.5	11.9	100.0(185)	3.54
초등자녀 이상	0.0	6.4	34.0	46.8	12.8	100.0( 47)	3.66
<i>F</i>							1.068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1.8	5.9	36.0	40.5	15.7	100.0(439)	3.62
홀벌이가구	1.6	8.2	37.7	42.6	9.8	100.0( 61)	3.51
<i>t</i>							0.966
지역규모							
대도시	1.9	5.6	36.9	40.9	14.6	100.0(425)	3.61
중소도시	1.4	10.0	30.0	41.4	17.1	100.0( 70)	3.63
읍·면지역	0.0	0.0	60.0	20.0	20.0	100.0( 5)	3.60
<i>F</i>							0.018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7	14.3	37.1	37.1	5.7	100.0( 35)	3.23
500만원 이하	1.1	5.8	35.8	41.1	16.3	100.0(190)	3.66
700만원 이하	2.0	6.8	34.7	39.5	17.0	100.0(147)	3.63
900만원 이하	1.3	2.6	37.2	44.9	14.1	100.0( 78)	3.68
900만원 초과	2.0	6.0	40.0	40.0	12.0	100.0( 50)	3.54
<i>F</i>							2.021

주: 평균은 '전혀 도움안됨' 1점-'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기본적으로 신원확인, 전과기록, 감염병 여부 정도에 대해서는 국가나 소개업체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후관리도 해주고..” (부모 7)

“업체가 신원확인, 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이런거를 체크해줬으면 좋겠고, 경력사항도 가 짜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해줬으면 좋겠고..” (부모 8)

“인증을 받는 업체라면 도우미 자격이나 필수예방접종 이런건 확실하게 확인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부모 9)

▮ 표 IV-4-10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_육아도우미 교육 실시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 (수)	평균 (점)
전체	1.8	3.0	32.4	45.0	17.8	100.0(500)	3.74
자녀연령							
영아	2.2	2.6	31.3	45.5	18.3	100.0(268)	3.75
유아	1.6	3.8	34.6	42.7	17.3	100.0(185)	3.70
초등자녀 이상	0.0	2.1	29.8	51.1	17.0	100.0( 47)	3.83
<i>F</i>							0.461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1.6	3.2	31.9	44.6	18.7	100.0(439)	3.76
홀벌이가구	3.3	1.6	36.1	47.5	11.5	100.0( 61)	3.62
<i>t</i>							1.152
지역규모							
대도시	2.1	3.1	32.2	44.7	17.9	100.0(425)	3.73
중소도시	0.0	2.9	31.4	47.1	18.6	100.0( 70)	3.81
읍·면지역	0.0	0.0	60.0	40.0	0.0	100.0( 5)	3.40
<i>F</i>							0.691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8.6	5.7	31.4	40.0	14.3	100.0( 35)	3.46
500만원 이하	0.5	2.6	34.2	44.2	18.4	100.0(190)	3.77
700만원 이하	2.7	2.7	29.3	43.5	21.8	100.0(147)	3.79
900만원 이하	0.0	3.8	32.1	47.4	16.7	100.0( 78)	3.77
900만원 초과	2.0	2.0	36.0	52.0	8.0	100.0( 50)	3.62
<i>F</i>							1.453

주: 평균은 '전혀 도움안됨' 1점-'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아기들은 자랄수록 월령이 높아지는데, 정기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월령이 된 도우미 분들은 다 같이 모여서 교육을 들어주세요’라는 것처럼요.” (부모 8)

“본인의 경험이 아닌 전문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 9)

표 IV-4-1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_육아도우미 이용비용 세제지원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도움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 (수)	평균 (점)
전체	1.0	4.2	28.0	43.0	23.8	100.0(500)	3.84
자녀연령							
영아	1.5	3.7	27.6	45.5	21.6	100.0(268)	3.82
유아	0.5	5.4	28.1	40.0	25.9	100.0(185)	3.85
초등자녀 이상	0.0	2.1	29.8	40.4	27.7	100.0( 47)	3.94
<i>F</i>							0.372
맞벌이여부							
맞벌이가구	0.9	4.6	28.0	42.1	24.4	100.0(439)	3.85
홀벌이가구	1.6	1.6	27.9	49.2	19.7	100.0( 61)	3.84
<i>t</i>							0.076
지역규모							
대도시	0.9	4.0	27.8	43.8	23.5	100.0(425)	3.85
중소도시	1.4	5.7	28.6	38.6	25.7	100.0( 70)	3.81
읍·면지역	0.0	0.0	40.0	40.0	20.0	100.0( 5)	3.80
<i>F</i>							0.056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7	5.7	34.3	40.0	14.3	100.0( 35)	3.51
500만원 이하	0.5	3.7	28.4	46.3	21.1	100.0(190)	3.84
700만원 이하	0.7	5.4	27.2	40.1	26.5	100.0(147)	3.86
900만원 이하	0.0	3.8	25.6	48.7	21.8	100.0( 78)	3.88
900만원 초과	2.0	2.0	28.0	32.0	36.0	100.0( 50)	3.98
<i>F</i>							1.644

주: 평균은 '전혀 도움안됨' 1점-'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4대보험을 육아도우미에게 해주고 우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식화가 되면 급여 상승률도 좀 컨트롤이 될 것 같아요. 이모님들이 맘맘리에 놀이터에서 만나서 얼마 받냐고 물어봐서 자기보다 높게 받으면 이모님 자존심에 불려서 얘기하거나 특수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저 집은 얼마 받는데, 나는 왜?’ 이러시면서 월급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차라리 공식화해서 시급이 이 정도가 정해져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7)

“4대보험이 되는 만큼 급여를 신고하게 해서 육아도우미들도 이게 소득으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즉, 이분들도 세금을 냈으면 좋겠어요. 4대보험 하고 실급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월급이 더 오르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나가서 벌어오는 월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도우미 분들이 다른 편의점 등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부모 8)

이상의 제도 이외에 추가적인 정부 지원요구로는 재정지원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육아도우미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그 뒤를 이었다.

■ 표 IV-4-12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의 추가 지원요구

단위 : %(명)

구분	(수)	구분	(수)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190)	도우미 자격조건 완화	( 3)
육아도우미 자질 보장	( 34)	다자녀 육아도우미 지원비용 확충	( 2)
공공 보육시설 확충	( 20)	도우미의 아동 학대시 처벌 방안 마련	( 2)
국가 육아도우미 서비스 확대	( 18)	육아도우미 홍보 확대	( 2)
정부의 추가 지원 필요	( 18)	국가 시터 등록제	( 1)
육아도우미 신원인증	( 17)	도우미 관련 앱서비스 개발	( 1)
충분한 도우미 인력 공급	( 16)	도우미 기준 보수 책정	( 1)
직장인 보육제도 지원	( 13)	무료돌봄 서비스	( 1)
근로시간 확충	( 12)	아기 교육 도우미	( 1)
육아도우미 교육 실시	( 11)	육아지원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사업	( 1)
도우미의 복리후생 보장	( 7)	육아관련 전문 기관 운영	( 1)
도우미 정기적인 건강검진	( 5)	타국적 시터 도입	( 1)
도우미 4대보험 보장	( 4)	파트타임 도우미,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	( 1)
안정적인 도우미 서비스 구축	( 4)		
육아도우미 긴급지원 서비스	( 4)		
(수)		(368)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이상의 개선 요구 이외에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자녀를 믿고 맡기기 위해 국가가 관리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별도로 없다는 의견이 19.8%로 나타난 가운데, 도우미 경력 및 신원 검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자격증 의무화와 교육 실시 요구가 그 뒤를 이었다.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개별가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원은 가장 일차적인 요구로 확인되며, 소개업체 인증을 통해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발생 시에 국가의 개입과 비용 완화에 대한 기대도 제기된다.

■ 표 IV-4-13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위해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구분	(수)	구분	(수)
도우미 경력/신원 검증	(107)	도우미 교육 관리/지원	( 16)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	( 97)	자녀의 안전장치 확보/마련	( 16)
도우미 자격증 의무화/법제화	( 54)	복리후생 지원	( 9)
도우미의 교육 관리/지원	( 40)	서비스의 질 향상	( 6)
도우미 인력 관리/공급	( 36)	CCTV 설치	( 5)
국가의 도우미 시스템 구축/관리	( 31)	도우미의 신뢰성/진실성	( 5)
도우미 이용 시간대 조절/확보	( 18)		
(수)		(360)	

자료: 이 연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도우미가 공식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암암리에 소개소에서 ‘요즘 시 세야 하는데 그게 매달 다르고 한번도 떨어져 본적도 없고 하니깐 그런거를 공식화시켜서 컨트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부동산 가격 잡듯이요.” (부모 7)

“육아도우미가 공식화된다면 육아지원센터 같은데서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지금 하시는 분들은 내 아이만 키워본 사람이잖아요. 아이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세세하게 맞춰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마치 보육교사처럼 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걸 1년에 한 두 번 정기적으로라도 교육시켜주면 좋겠어요.” (부모 8)

“외국인 육아도우미 시장을 개방해서 육아도우미들의 시장 가격이 좀 낮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쟁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처럼 도우미 상한선 같은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월급 인상하고 비교도 할 수 없고 물가상승률을 웃돌기 때문에..” (부모 6)

“개인이 알아봐서 할 때 제일 안되는 건 신원 문제잖아요. 애를 맡기니까 어떤 사람인지가 여차피 성품이야 국가가 알 수 있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신분은 확실히 보장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 2)

“교육 개선이라던가, 아동학대 같이 문제 있으면 업무정지를 시킨다든지.. 아동학대 블랙리스트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 10)

“저는 업체에서 파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CCTV를 달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안심이 되고 그 분도 각인하고 하니깐.. CCTV가 없다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신뢰관계가 없을 때는요.” (부모 9)

## 5 소결

앞서 살펴본 조사결과를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 소지는 정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에게 서비스 형평성 차원의 대체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있다. 0~5세아 보편적 보육지원의 실현과 초등 방과후 돌봄지원의 확대 기조 하에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가구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는 서비스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민간 육아도우미의 주된 이용 동기는 ‘자녀를 기관에 보내기에 너무 어리거나’, ‘자녀가 기관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였으나 대기가 너무 길어서 민간 도우미 이용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도 정부의 별도 지원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기관보육을 이용할 수 없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할 수 없는 가구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믿을 수 있는 육아도우미의 접근성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육아도우미의 구인은 주로 지인 또는 친인척으로, 믿을 수 있는 구인 채널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믿을 수 있는 육아도우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소개사이트 또는 도우미 소개업체를 통한 구인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들 사이트와 업체에서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뢰가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이 불가피한 가구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셋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정부 지원요구에서는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다.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은 월평균 약 109만원이고 최대 40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비율은 35.0%에 달하고, 교통비는 주로 매월 약 14만원, 휴가비는 약 34만원, 명절 보너스는 약 25만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의 부담 정도는 월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이용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용비용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육아도우미의 4대 보험료 지급 등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육아도우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부모들의 민감성은 높지 않아, 육아도우미에게 보장해야 할 복리후생 항목으로 4대 보험료라고 응답한 비율은 4.0%(3.0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에 따른 세제지원은 이용가구의 육아도우미의 4대 보험에 대한 보장을 전제하므로 제도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는 매우 다양하므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아 과도한 재정투자 우려를 담고 있다.

넷째,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원을 보장하는 방안은 일차적으로 추진될 만하다.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의 구인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건은 범죄기록 등을 포함한 신원보장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구인 과정에서 부모들이 육아도우미에게 요구한 서류는 주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그리고 이력서에 한정되었다. 육아도우미 면접 횟수가 최대 18회에 달하는 점은 이처럼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가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비용지원보다 육아도우미의 경력과 신원 검증을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한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다섯째,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실화 측면에서 이용시간의 제약, 이용비용, 그리고 긴 대기시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들 항목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높으나,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구에게 주된 이유로 지적되므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주요 개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돌봄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이돌봄 양성규모를 확대하며, 지원시간 한도의 경우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 V

## 소개업체 운영·관리와 육아도우미 근로실태 및 요구

1. 소개업체 운영 관리 실태 및 요구
2. 민간 육아도우미 근로 실태 및 요구
3. 소결





## V. 소개업체 운영·관리와 육아도우미 근로실태 및 요구

이 장에서는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업체의 운영·관리실태 및 요구와 육아도우미 근로 실태 및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상의 유료직업소개업체와 온라인상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의 내용과 육아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분석 결과를 다루었다.

### 1 소개업체 운영 관리 실태 및 요구

표 V-1-1 | 간담회 대상자 일반적 특성\_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번호	업체 특성		활동영역	업체 경력
1	가사·파출소개업소	국내유료직업소개소	오프라인	10년 이상
2	가사·파출소개업소	국내유료직업소개소	오프라인	10년 이상
3	가사·파출소개업소	국내유료직업소개소	오프라인	10년 이상
4	시터전문소개업소	국내유료직업소개소	온라인	3년 이하
5	시터전문소개업소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온라인	3년 이하

#### 가. 업체 운영 현황 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가사파출소개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6~7년 전만 하더라도 10건 중 5건 정도는 가사/육아도우미 의뢰가 들어왔으나, 저출산 현상과 온라인상 정보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10건 중 1건 정도 의뢰가 들어오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나마도 방과후 간식 준비 위주로 운영되며, 중국동포 중심의 입주도우미 알선 위주이고, 산후도우미나 전문적인 육아도우미의 경우 거의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6-7년 전부터는 당시 10건이 들어오면 가사도우미가 5:5 나갔는데 5건 중에서도 육아도우미가 2-3건 정도 나갔다. 근래 와서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결혼 줄고, 저출산 문제가 되다보니 이전 보다 줄어들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가사도우미가 2-3건이 들어온다.” (소개업체 1)

“근래에는 10건 중 1건 들어오는 실정이다. 육아다 하면 당연히 애들 보살피는게 주 목적인데. 주로 애들 간식-애들이 어리든, 초등학교가 되든, 오전이 아니라 방과후에 필요하다. 진짜 맞벌이들은 사용하긴 하는데 교포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고, 한국 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 50대 후반~60대 중반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형태는 가사도우미와 산후/육아도우미가 따로가 아니라 섞여서 같이 운영되고 있다.” (소개업체 2)

“요즘에는 산모와 육아도우미의 경우 인터넷 영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입니다.” (소개업체 3)

가끔 학습시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력소개업소에 등록된 육아도우미들의 경우 80-90%가 저학력이여서 사실상 알선이 어려우며, 설사 도우미 중 유아교육이나 보육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고소득층이 있는 지역으로 파견된다고 하였다.

“베이비시터 하던 분이 가사도우미로 하고, 그분들이 가서 육아도 병행한다. 또 학습지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구직자들 80-90%가 저학력이다. 근래 와서는 40대 50대 고등교육을 받고 유아교육과를 나온 분들도 계신데 비중은 0.2~0.3%이다. 그런 분들은 돌리지 못하고 강남 쪽으로 보낸다.” (소개업체 1)

“가장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육아도우미를 하려고 해도 가격이 맞지 않는다.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크다. 전문업체의 경우 자기네 정가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기준을 가사에 맞춰야 한다. 육아도우미와 같이 들어간다. 둘째 있으면 둘째도 같이 볼거냐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난다. 수입이 안되니까 패턴을 자꾸 바꾸는 것이다. (관리상 리스크도 큰거고) 우리 입장에서서는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하고 일의 강도도 아이만 보는게 아니라 집안일도 해야 하다보니 기피하는 업종이 된다.” (소개업체 2)

최근에는 산후도우미나 육아도우미의 경우 가사 파출을 종합적으로 하는 소개업체보다는 온라인이나 체인점 형식의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이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고, 교육에 있어서도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세업체의 경우 꺼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일반 소개업체 중에 산모,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 보통 만 30개월 미만은 산후로 파견하고 그 이상은 육아도우미가 되는데, 산후/육아를 같이 하는 곳은 온라인상이 많고, 체인점 형태로 하는 업체가 더 전문적으로 다룬다. 그런 업체들 사무실에 가면 산후/육아는 크지 않더라도 얘기 침대나 작은 시설이라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시설도 없다. 그런 분들을 보내려면 아이들 잘못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을 안 시키고 대충 알선을 하면 안되므로, 사업명이 같은 직업소개라 하더라도 육아/산후만 하는 업체, 나머지는 가사파출로 구분되어 있다.” (소개업체 1)

“기본 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처음 보는 아이를 돌본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육아도우미는 배제하고 있다. 저희가 교육해서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마련될 수 없다. 대부분 파출, 인력사무실은 혼자 운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 이분들 관리부터 교육까지는 역부족이다. 식당파출부는 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느 분이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육아는 다르다. 내가 기본 마인드나 생각 자체가 없으면 가서 100% 불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육아나 산후도우미는 전문적인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나온 수수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사실이지만 거의 온라인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인터넷에서 만든 홈스토리 회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개업체 2)

반면,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육아도우미 소개 전문업체들의 경우 IT서비스를 기반으로 각 업체마다의 특성을 살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며, 육아도우미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온라인 서비스인 만큼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서울, 경기지역부터 넓게는 대한민국 전체 초등자녀 이하를 둔 가정을 사업대상으로 보고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는 추세였다. 직업정보소개업체의 경우 월 약 700명에서 1천명 정도를 매칭 또는 소개 중이라고 하였으며, 등록된 도우미 인력 전체 규모는 5만 명이라고 하였다.

## 나. 인력모집 및 양성과정

종합적으로 소개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육아도우미 급여는 타 도우미(가사도우미, 식당도우미 등)에 비해 급여가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시급이 높은 만큼 기준이 까다롭고, 아이가 어릴수록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게 되고, 육아도우미를 하려는 구직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즉, 육아도우미의 임금보다도 그 업무 강도가 더 세다고 보았다.

“육아도우미 관련 정부 지원이 있다면, 기존 가지고 있는 회원을 어디든 교육을 쌓으면 보낼 수 있다. 자체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 비용적인 문제, 그분들은 당장 일을 못하면

수입에 지장이 생기고 보장을 해줄 수 없으니 교육이 어렵다.” (소개업체 2)

“어린 아이일수록 리스크가 커지는데 의뢰를 받게 되면 아이가 몇 살이고 정보를 말해준다. 일하는 분도 육아도우미 해봤는데, 연락 달라고 한다. 그러면 양쪽 다 연락을 하지 않고 둔다.” (소개업체 3)

오프라인 업체의 경우 구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학력의 고령의 여성들이라고 밝힌 반면, 온라인 업체들의 경우 20대 대학생 위주의 도우미들로 구성된 업체도 있고, 20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부터 30대 보육교사, 40~50대 자녀를 키워본 엄마 등 다양한 도우미들이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20대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30대 보육교사, 40~50대 아이 키운 엄마 등이 폭넓게 활동하고 있어서 다양한 특기와 역량을 가진 다양한 인력들이 동네에서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활동을 하고 있고, 희망시급은 8천~1만원 수준이다.”(소개업체 5)

오프라인 업체의 경우 구직자가 직접 소개업체로 찾아와서 면담을 거쳐 알선을 한다고 하였는데, 온라인 업체의 경우 특정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예컨대, 한 온라인 소개업체의 경우 자격 및 신원확인, 인·적성검사, 대면면접 및 오프라인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육아도우미(시터)를 선발하고 있었고, 온라인 직업정보 제공업체의 경우 육아도우미의 실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에 대한 온라인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적으로 하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의한 자녀양육 경험(엄마인증), 등초본인증, 학교인증, 건강인증, 인성인증 등은 선택적 사항으로 업체 고객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하여 인증해주는 업무를 처리하여 비교적 신원확인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경우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로 학과 등에 대해 서류를 받아서 신원확인을 한다. 필요하다면 자격증 사본이나 영어시험 점수를 요청하기도 한다. 대면 인터뷰할 때 생각보다 질문을 디테일하게 나눠서 한다. ‘영어 가르칠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파닉스부터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교재를 써서 어떤 연령대를 가르쳐 봤는지, 학원에서 해봤는지,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까지 수준 차이가 커서 항목별로 일일이 체크한다. 과목별로도 한글, 셈 처음 시작하는 애들, 저학년 영어/수학, 코딩, 과학, 체육, 퍼포먼스 미술, 음악 전공 선생님이어서 레슨까지는 아니지만 학교음악 시간에 수행평가 도와주시거나 등을 한다. 대면 인터뷰가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때 디테일하게 필터링 해 두어야 실제 매칭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소개업체 4)

“처음에 시터 회원이 올리는 정보는 사진, 희망시급, 희망근무지역, 나이, 성별, 아이 키워본 경험이다. 그리고 시터신청 시 얼마나 응답을 했는지(응답률), CCTV 동의여부가 있다. 본인인증은 다 필수이지만, 밑에 사항은 선택사항이다. 이 분(엄마 회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보내서 진위여부, 자녀여부 확인을 한 것이다. 등/초본, 학교인증(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인성검사, (보육교사 등)자격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이다.” (소개업체 5)

한편, 오프라인 소개업체나 온라인 소개업체 모두 범죄경력조회와 같은 신원확인에 있어서는 방법이 없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아이들의 안전과 신뢰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범죄경력조회인데, 직업 소개업소나 통신판매업 등은 아동 관련 사업의 등록/허가제가 아니어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이들과 가정, 육아도우미의 안전을 위해 범죄경력조회 권한이 반드시 해결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저희가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범죄경력 조회이다. 우리는 경찰서 등에 요청을 하지만 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경력조회 검증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여성가족부와의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 입장은 아이돌보미 법령에 해당되지도 않고 학습지 교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 조회권한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희는 아이돌보미와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 그 범주가 아니므로..” (소개업체 4)

“범죄자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무섭다. 아동성범죄나 아동학대가 걱정된다. 남자 시터도 있지만 막을 수 없다. 회원 수 중에 5%인데, 남자자녀 둔 부모 중에 남자 시터를 원하는 경우 많다. 부모님들 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모와 시터 모두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케어닷컴은 탐정법이 가능하므로 부모가 2만원 가량 결제를 추가로 하면 사적으로 뒷조사를 해준다. 운전사고이력, 범죄경력, 체류여부, 채무 등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그러나 아이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중요하다.” (소개업체 5)

온라인 소개업체의 경우 육아도우미에게 “수업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책임소재와 소득신고 여부, 계약해지 위험사항, 안전교육자료 확인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와 온라인 소개업체 간에 돌봄서비스 계약을 맺고, 온라인 소개업체와 육아도우미 간에 위탁계약서를 맺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업체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할 수 있는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근로계약은 일일이 작성된다. ‘수업위탁계약서’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실제 수업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시되어 있고, 소득신고여부, 계약해지가 어떤 경우에 이뤄지는지, 안전 교육자료 등이 한꺼번에 포함된다. 기본계약 기간은 1년이고 특별한 변경사항 없으면 갱신 되는 것으로 한다. 시스템 상으로 선생님들 상황에 따라 휴식중/활동중 조절이 되므로 거기에 맞춘다.” (소개업체 4)

## 다. 서비스 내용 및 운영관리 사항

육아도우미 소개 전문업체들의 경우 서비스 내용 다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놀이시터, 등하원시터, 학습시터, 베이비시터 등의 역할을 구분하여 각 육아도우미가 자신이 가능한 활동들을 체크하도록 하여 부모와 매칭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소개업체의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 온라인 소개업체들의 경우 철저한 리뷰를 통해 육아도우미의 평판 등을 기록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다. 예컨대, 부모는 채용했거나 인터뷰했던 육아도우미에게 후기를 남길 수 있고, 육아도우미 역시 부모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어서 서로가 자신의 평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또한 상대방에게 컴플레인이 발생한 경우 고객관리팀에서 진위를 확인하여 이슈회원을 재가입이 불가능한 탈퇴회원으로 규정하여 관리한다고 하였다. 다른 업체들에서도 이러한 상호배려가 가능한 문화를 정착하여 육아도우미와 부모 간에 동등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후관리를 하는 이유는 걸러낸다기 보다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 방문일지는 부모님이 안계신 상황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이 궁금해 하니 기본적으로 아이와 어떤 일을 했는지 리포트 하는 부분이 절반 정도이고, 활동시 예상과 달리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제공받은 정보와 달랐던 점, 특히 상황 등을 리포트 받는다. 아이의 반응, 부모님 만족도, ‘이런 선생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더 좋은 케미가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케이스를 최대한 많이 수집한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다음 단계 개발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의 후기는 전부 받고, 그런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각하는 교사, 숙제를 다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 부모 등등. 부모님의 악성 민원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 달라,’ ‘개선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있다. 그래서 매칭의 문제인지, 선생님의 문제인지, 부모나 아이의 개인적 사정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소개업체 4)

“부모는 채용했거나 인터뷰를 했던 시터에게 후기를 남길 수 있고, 시터도 부모에게 후기를 남길 수 있어서 서로가 자신의 평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구조이다. 상대방에게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고객관리팀에서 진위를 확인한 후, 이슈회원을 재가입이 불가능한 탈퇴 회원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소개업체 5)

## 라.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

오프라인 소개업체들의 경우 종사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계약을 통해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는데,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소개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육아도우미 제도가 표준화되어 있다면 수요도 늘고 알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재는 일방적으로 소개업체에 문제를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꺼려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사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표준화해서 보급할 것인가이다. 기본적인 사항은 다 들어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부분에 계약을 받다보니까 그것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실무적인 것을 가미할 것인가이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상담이다. 상담 중에서도 어떻게 문서를 활용할 것인가이다. 실제로 대다수가 구인구직자 계약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계약을 통해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고 문제의 소지를 줄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제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만들어 놓았는데 보급이 안 되고 있다.” (소개업체 1)

“사용자 측면에서 가장 민원 발생하는 것은 인성 측면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기본도 안 되고 일 안하고 아이 잘 안보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것의 문제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도난 문제이다. 이것은 소개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용직으로 소개하면 면접을 하면서 파악을 하지만 그것으로 파악을 하기 어렵다.” (소개업체 3)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사근로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소개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해줘야 하는 의견은 좋지만, 퇴직금, 연차수당, 복리후생 등의 문제 때문에 법이 통과되어도 현장에 안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육아도우미의 경우 한달 내내 풀로 일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일할 수도 없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았다.

“하루에 8시간 근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론과 실체가 따로 놀듯이 법안의 근로기준을 지킬 사람이 없다. 따로 신고하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법안이 발의되어도 보편화되면 시간이 걸린다.” (소개업체 2)

“여성 시민단체(우렁각시, 여성가정협회 등)에서 법안 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금액차이가 확 난다. 퇴직금, 연차수

당, 복리후생 주면 법이 통과되어도 실제 정착되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소개업체 1)

“연차휴가, 퇴직금 같은 기본적 사항은 일반 음식점은 거의 정착화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슈가 되어서이다. 그런데 과연 가사도우미는 개인인데 숨어있는 것을 어떻게 찾아서 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가서 계약을 쓰려고 할 때, ‘골아프다 안해’ 이러면 끝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준다면 그게 되겠지만 말이다.” (소개업체 3)

“저희도 내후년 쯤에는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생각한다. 부모 중에도 4대 보험 내고 세금내고 편안하게 카드결제해서 지출증빙 연말정산 혜택 받는 것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저희한테 매달 100만원씩 결제하고 90만원이 시터한테 가면, 저희가 10만원으로 시터들 세금 처리 해주고 운영하겠지만 그것이 주력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정말 장기적인 문제라고 예상한다. 부모님들은 인터뷰할 때는 가격 상관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를 때에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 키우는 가정은 생활비 줄이는 것에 관심이 많다.” (소개업체 5)

오프라인 소개업체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이 상용화되어 있고, 소개업체의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온라인상 구인 구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구직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 시스템 활용도가 높지 않아 결국엔 소개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소개업체는 저학력, 고령자, 여성중심, 이주노동자 등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구인 구직자와의 접근성이 편해서 상담과 관리가 좀 더 용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저희 민간업체가 자연스럽게 주변에 접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와서 상담하기도 편하고 지금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활용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와서 구하는 구직자도 많기 때문이다.” (소개업체 1)

“민간하고 공공의 차이점은 수익성이 낮아하므로 간절하고 적극성이 있다. 두 번째로 접근성 측면에서 누구라도 올 수 있고 여성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저학력, 고령자,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다. 구직자도 간절함, 절실함이 있다. 셋째로 이들이 정서적으로 감정노동자이며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하다 보니 삶, 생활, 경제에 대한 욕구가 높다. 비록 연령은 높지만.” (소개업체 2)

민간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반드시 업체가 갖춰야 할 요건으

로는 기본교육 실시여부, 도우미 채용 시 스크리닝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본교육과 스크리닝을 했는지 정도는 있어야 한다. 제도화되면 국가에 등록하든, 업체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도우미를 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 업체들이 자체 시스템이 있어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정도의 정보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희 업체도 부모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선생님들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춘다. 예를 들어 대방동 인력소개소는 홈페이지도 없을뿐더러 시터 명단을 알 수도 없고, 시터넷 홈페이지에 구인광고 올리면 전화는 100통이 오는데 그분들이 보내시는 도우미 정보에 대해 제가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라도 갖추도록 해서 내가 부모 인증을 하거나 고용 의사가 있을 때 접근해 볼 수 있는 권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모두 지원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통합해서 한 군데서 갖고 있기 어려울 것 같다.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다못해 신분증, 자격증 등으로 자발적인 스크리닝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교육 꼭 하고, 실외/실내활동 어떻게 하고, 24개월이하 영아에게 먹이면 안 되는 음식 등은 알고 와야 한다. 저희 업체도 부모님처럼 사전에 상의되지 않은 음식은 못 먹도록 되어 있다. 영유아 돌봄은 다른 기준이 많으므로 세분화된 교육을 하는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개업체 4)

“정부에서 DB에 도움을 준다면, 저희 서비스에서는 활동비가 미지급 되었거나 시터가 아이를 도난한 사건도 가끔씩 있다. 시터가 당일취소했거나 하는 경고가 쌓이면 재가입할 수 없는 수준의 탈퇴가 된다. 이 pool을 만드는 것은 부모들이 안전한 시터를 쓰고, 시터들도 안전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DB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를 선별한다면 좋을 것 같다.” (소개업체 5)

한편, 민간 소개업체에 대한 인증 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소 자체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은 유인수단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도우미 채용 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는 것과 활용할 수 있는 유희공간 제공 등을 요청하였다. 4세 이상의 유아들의 경우 육아도우미를 통해 외부에서 활동하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어도 대관부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육아도우미에 대한 집합교육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원하였다.

“우리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직업소개소 자체가 면세사업이므로 세제혜택도 소용없다.” (소개업체 2)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필터링에 대한 수월성,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시스템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희 같은 업체들이 저렴한 대관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반포4동주민센터 강의실을 쓰도록 해주는 것이다. 가끔 공간을 운영하는 게 없는지 문의가 들어온다. 방학 때 기관이 2주 쉬는데, 기관가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몇 십~몇 백 만원의 영어캠프를 보내는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보내는 것이다. 지자체의 공간사용 승인, 대관비 관련 등 절차상 혜택이 주어져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는 기본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할텐데, 얼마나 다양한 시간제 교사가 있는지 그 커리큘럼을 파악해서 알려주었으면 한다. 저희 업체는 5-13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필수교육에 영유아 대상 기저귀 갈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활동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1-2시간 듣기가 어렵다. 서비스 대상 연령층의 폭이 커지는 만큼 필수교육 내용이 세분화 되어야 한다.” (소개업체 4)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센티브로는) 범죄경력조사이다. 이것은 부모와 시터, 그리고 업체에게도 좋고, 국가적으로 모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터 교육은 필요한데 (공간비용, 강연비용, 운영비용 등) 여력이 안되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에 빈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만 해도 좋다. 왜냐하면 전국 대상이므로 전국의 강연장이 필요한 것이다. 업체에서도 항상 오프라인 교육을 할지 말지가 고민인데, 내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 중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받은 시터들은 프로필 정보에 별지를 달아 이수한 사람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안전한 방법으로 구상하였다. 저희 업체는 시터가 10만명이 되면(현재 5만명) 1천명 정도씩 모이는 대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고민했었다. 국가 전달체계를 공간적, 강사 측면에서 연동해서 이용한다면 더 안전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가 필수교육을 정하면, 커리큘럼을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의 인성 함양 이야기를 할 것인지, 신생아 배냇저고리 방법을 이야기 할 것인지 굉장히 다양하다.” (소개업체 5)

그 밖에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에 대해서 인력관리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격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적극적으로 (자격검증을 위해)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었으면 한다.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이러한 서비스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시간제 서비스라서 다룰 수 있는데, 전일제/입주로 시터 시장까지 생각하면 (소비자로서 하는 말인데) 인력관리(레퍼런스 관리)도 잘 해주었으면 한다. 급여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 제 주변에도 270만원씩 주고 아주머니 쓰시는데, 본인 월급 300만원인 실정이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을 수는 없다. 부모님들한테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급여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보편적인 전일제 사무노동자의 평균치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시터 인력시장, 특히 등록하지 않은 인력시장은 부르는 게 값인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고 추적(트랙킹)하는 시스템만 잘 도입되어도 나아질 문제라고 본다. 세금내고 4대보험 들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적정급여 수준과 안전하게 트랙킹

된 기록을 검증해서 채용할 수 있다면 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면접만 보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하다못해 과외 선생님 시장도 자기 이력에 대한 주장을 검증할 수 없어서 아는 사람 통해 소개받는 것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나가는 돈도 많아지는 것이라 본다.” (소개업체 4)

정부 아이돌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많은 부모들이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직업소개업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에서 사실상 모든 아이들의 돌봄을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취약계층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일반 아동들에 대한 돌봄은 민간 서비스가 잘 해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2배로 22년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신문기사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의 384명중 1명이 쓸 수 있는 서비스라고 나와 있었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 충족될 수 없는 수요이다. 우리나라 아이돌봄서비스 시장이 극초기이고 성숙도가 낮아서 국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엄마들이 배울 수 있고 교육을 해주는 것이 우리 업체한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소개업체 5)

## 2 민간 육아도우미 근로 실태 및 요구

표 V-2-1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_민간 육아도우미

번호	성별	연령	근로형태	돌봄아동 특성	근무시간	급여수준
1	여	56세	전일제	12세 초등5 10세 초등3 8세 초등1	14시30분-21시	월 230만원
2	여	55세	시간제	24개월 어린이집	14시-19시30분	월 100만원
3	여	47세	전일제	8세 초등학생 3세 어린이집	8시30분-19시	월 220만원
4	여	54세	시간제	7세 유치원 4세 어린이집	16시-20시	월 100만원
5	남	62세	시간제	5세 유치원 2세 어린이집	15시30분-19시	월 100만원

## 가. 육아도우미 구직 배경 및 과정

육아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퇴직 후 소일거리로 시작한 경우, 가사도우미 일을 하다가 육아도우미 일을 하게 된 경우 등 배경이 다양하였다.

“취미라기보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이 나이 먹고 할 수 있는게 마트 캐셔 등이 쉽지 않았고 또 특별했던 게 외국에서 좀 살다 왔어요. 그래서 한국생활의 공백이 있고, 서울 사람이 아니고 지방 출신이고 친구들도 연결고리들이 놓치다보니 보니 막막했어요. 그때 할 만한 일을 찾기도 시작하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순전히 도움 없이 사이트에서 찾았어요.” (육아도우미 1)

“저는 얘기를 좋아하고 원래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보니까 대학교에서 시간강사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애를 키웠으니까요.” (육아도우미 2)

“지금 다니는 곳도 가사도우미로 하던 집인데, 중간에 말씀을 해주셔서 육아도우미로 할 생각이 없냐고 하셔서 생각하다가 하게 된거죠.” (육아도우미 3)

“저도 적적하고 다른 일을 하기가 좀 그래서 경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시간적이라든가 애들 보는 것을 하게 된거죠.” (육아도우미 5)

인터넷 소개 사이트를 통해 구직한 경우도 있었고,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진 구인 광고를 보고 구직한 경우, 동네 주민의 추천으로 아이를 돌보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으로 단디헬퍼요. 딸이 ‘엄마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의견을 얘기하고 딸이 서치를 해서 권해 가지고 했어요.” (육아도우미 2)

“첫 애가 100일 때 오전에 파트타임 시간제 구한다고 아파트 게시판(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구인광고가 붙은걸 봤고, 그래서 집사람이 보고 그걸 연락을 해서 연결이 되었죠. 집사람이 보다가 애가 좀 커서 본격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집사람은 시간이 안되니까 내가 하게 된거죠.” (육아도우미 5)

인터넷 소개 사이트를 통해 구직한 경우에는 가입 시 3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소개업체의 경우에는 일을 구할 때까지 소개비로 한 달에 3만 5천원 정도 냈다고 하였다.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회원 등록할 때 2만5천원인가를 낸 것 같아요.” (육아도우미 2)

“한 달에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랐었어요. 서로 불만 있을 때 해소 해주고, 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싶으면 연락해서 일을 소개해주는 장

점이 있죠. 일을 구하고 나서는 별 필요는 없어요.” (육아도우미 3)

육아도우미 일을 구할 때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처음 소개받은 곳을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으며, 한 곳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양식이 보급되지 않아서 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몇몇 직업정보제공업체에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부모 위주로 양식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도우미도 있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만 하거든요. 하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지금 민간 업체라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에서 너무 도우미들에게 불리하게끔 계약서를 작성해 놔요. 예를 들어 엄마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근로 계약서’로 들어가고요, 업체에서는 엄마들한테 ‘도우미 계약서’라고 따로 또 있더라고요. 그게 터무니 없는게, ‘도우미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따로 만들어서 그거로 대응하더라고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면,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를 내미는 수가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나라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면 그걸 기초로 해서 엄마가 ‘업무를 더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텐데, 그게 없어요.” (육아도우미 2)

대부분 구두로 급여와 휴일, 업무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지켜지지 않더라도 구두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하였다.

“계약서 같은건 없었어요. 구두로 맨 처음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명절 이런거 다 쓴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맥 상황이 변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전에는 12시부터 9시까지였는데, 그게 아이들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도 사실 그렇잖아요. 칼퇴근이 안 되는 것처럼, 부모가 늦으면 어쩔 수 없고, 미안한데 뭐 오늘 회식 있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면 택시비도 주고 그러는데 자꾸 가다보면 내가 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육아도우미 1)

“저번에 애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는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애가 병원에 있으니까 일단 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으로 출근을 시켜가지고, 물론 병원이라는게 애들만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들어갈 때 피 뽐고 간염 없는지, 폐결핵 있는지 검사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일주일동안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계속 출퇴근을 하라고 하니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이라는데가 조금 위험하잖아요. 황당한 엄마여서 그만둔 집이에요.” (육아도우미 2)

지인 소개로 구하는 경우 외에는 면접 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에 대한 신원확인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원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내역이나 가족 연

락처 등을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요구하는 거는 등본, 저에 대한 연락처, 보건소에서 3개월 이내에 간염이라든가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육아도우미 1)

“주로 건강상태, 성격상태, 등본(누구와 살고 있는가),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건강진단서까지 서류 3가지는 기본으로 가져 오라고 해요.” (육아도우미 2)

“주민등록등본, 보건증, 그 정도요.” (육아도우미 3)

## 나. 육아도우미 근로 실태 및 애로사항

근로범위는 돌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달랐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고, 유아의 경우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등을 하거나 단순하게 케어하는 일을 하였다.

“큰아이 데려다주고 시간이 엇갈리고 둘째 오고 가고, 또 오면 숙제 체크해서 숙제 안 된 거는 해야 하고... 지금은 옛날식의 가정교사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기저귀 갈고 젖병 뭐 먹이고 아이들 케어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게 필요한 아이들이 아니니까요, 여전히 먹이고 씻기는 이런 것들은 하죠.” (육아도우미 1)

“시간이 별로 안되니까 들어와서 손씻기고, 간식주고, 책보여주고,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하고. 지금은 애들이 피아노 갖다오고 뭐 하면 그럴 시간이 없었지만, 예전에는 애들이 어리면 그랬어요.” (육아도우미 4)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죠. 두 아이 다 고집이 세요. 처음에는 구민회관, 놀이시설, 트니 트니 울동 가르치는 곳, 여기저기 발레도 배우러 다니고 했어요. 문화센터요. 근데 잘 안돼요. 애들이. 주로 애들하고 밖에서 놀이터, 공원가서 놀아주고, 둘째의 경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기차, 전철, 엄마 아빠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주는 거요. 처음에는 학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고 그거보다는 두루두루 시야를 넓히는게 좋겠다 해서 데리고 다녀요.” (육아도우미 5)

한편, 가사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좀 더 받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하원 도우미 역할은 모두 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퇴근 시간과 하원 시간 사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육아도우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사 일은 해드리죠. 다 하는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장시간 있고, 애들을 보면서 있

는거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생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육아도우미 3)

“어린이집 다녀오면 4시부터 어린이집 차에서 받아서 씻기고 먹이고 밤 9시 몇 분까지 저녁밥 먹이고 해요.” (육아도우미 4)

“애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부터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놀다가 엄마가 일 끝나고 집에 데려가고 있어요. 첫째 같은 유치원에 10시에 가서 3시 반 정도에 와요. 둘째는 이번에 옮기면서 같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요. 걸어서 데리고 다니는데, 등원은 엄마가 시키고 하원은 제가 하고요.” (육아도우미 5)

휴가의 경우 별도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었고, 부모가 휴가를 낼 때 같이 쉬는 경우가 많았다. 종일제로 일하는 경우, 평일에 업무를 보기 어렵지만 아이들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휴가를 받거나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번 일주일 휴가를 가요. 길게는 7, 8일 정도 휴가를 가는데 그러면 저는 그냥 쉬는 거죠. 이분들이 안가면 절 두지는 않아요.” (육아도우미 1)

“애기들 방학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방학 때는 엄마들도 연차를 거기에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쉬었어요.” (육아도우미 2)

“공휴일은 무조건 쉬고, 일요일, 개인적인 사생활 일 있을 때나, 제가 필요할 때 이런 조건으로요.” (육아도우미 3)

별도의 상여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절의 경우에는 선물이나 현금을 받는다고 답하였다.

“명절이 추석과 설 두 번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있죠. 그 외에는 별도 없죠. 명절도 마주치지 않으면 없어요,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육아도우미 1)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요. 보통 현금을 주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명절 외에 다른건 전혀 없었어요.” (육아도우미 2)

“휴가에도 30만원 기준으로 주셔요. 휴가 때, 명절 때, 추석이랑 설 이렇게 30만원이요.” (육아도우미 3)

“엄마가 자꾸 마음의 인사를 해요. 명절 때라든지, 보너스는 아니고 집에 선물도 자주 가져다주고, 명절 때 휴가때 어디 갈 때 봉투도 주고요. 그런건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좀 그렇고요.” (육아도우미 5)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휴일이나 갑자기 쉬게 되는 경우 별도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 고용관계 불안정에 따른 불안감, 돌보는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변화되는 관계에 대한 상실감 및 역할(업무)의 어려움, 남자도우미에 대한 불편한 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5학년 아이가 이미 이모가 아닌 거예요, 엄마한테 얼마 받아야가 된거죠. 그런데 진짜 그게 뼈아파요. 자존심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힘들어요. 3학년까지면 좋을 것 같아요. 4학년부터는 공부도 너무 어려워지고요, 집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가야하니까요.” (육아도우미 1)

“갑자기 못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하루 수당으로 결제하는 데서는 빠지죠. 안 주는거죠. 급하게 못나가게 되면 미리 전에 얘기를 하죠. 엄마가 휴가를 쓰든지 하도록 해야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날수로 계산하는 엄마는 빠른거고, 월급으로 하게 되면 ‘이모님이 하루 쉬는건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시간제로 일할때는 그쪽 사정 때문에 빠지더라도 돈을 안 주더라구요.” (육아도우미 2)

“엄마가 육아휴직 쓰니까 이모가 필요 없어진거라 그만두는건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만두라 그러면 그래야하니까 비애감이 들것 같아요.” (육아도우미 3)

“예전에 현관문 앞에 가있는데도 ‘이모님 죄송해요 어디 가야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교통비도 없이 그냥 집에 와야 했어요.” (육아도우미 4)

“처음 이 일 시작할 때 걱정됐죠. 처음 애들을 보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남자가 애들을 케어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 돌보는 할아버지로 제가 좀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이잖아요. 물론 친손자 잠깐 보는 것은 있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많이 보죠. 외국 같은데서는 있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은 아니고, 제가 정식으로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애들이 이빠서 하는거예요. 아직 손자 손녀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4년 하다보니 감회는 많이 있어요.” (육아도우미 5)

## 다. 육아도우미 근로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육아도우미의 경우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간당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저는 만5천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젊은 애들도 7천얼마대 시급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단디헬퍼 사이트에서 시간당 7~8천원 이런거는 아예 아줌마들이 안가요. 이게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육아도우미 2)

“하루에(8시간 기준) 10만원 정도는 쳐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육아도우미 3)

“만2천원 정도 시간당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많으면 좋지만.” (육아도우미 4)

육아도우미들은 대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컸는데, 자녀를 키워본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문화나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현재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은 비용이 높아서 받기가 어렵다고 하였고, 무료로 해준다면 당연히 들어볼 생각이 있다고 하였다.

“제가 본 어떤 이모님은 어디에 소속 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인터파크에서 하는 가사도우미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항상 정장차림으로 출퇴근해라, 이렇게 도우미라고 해서 옛날 식모처럼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고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면 거기에서 일정 페이를 받고 또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런 것처럼 교육을 받고 뒷배경이 있다면 담당하겠죠. 저도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할거 같아요.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육아도우미 1)

“‘한살림’이라는 곳은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를 내더라고요. 그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20-30만원이에요.” (육아도우미 2)

“당연히 교육이 있어야 해요. 저도 처음에 애들이 열났을 때 많이 당황했었는데요,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무조건 옷을 벗기고, 애들이 싫다 하더라도 찬물로 닦아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자식 키울 때는 아빠들이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육아도우미 5)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들 심리나 발달과정, 응급처치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애들 아팠을 때 응급상황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게 애들 심리라든가 발달과정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나름대로 찾아보긴 하는데, 단편적인 것이고, 연령별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생각을 캐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육아도우미 5)

국가가 육아도우미 인력에 대해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크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으며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특히, 요즘 같이 험한 세상에서는 육아도우미 등록제 시행을 통해 부모-육아도우미 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가 있었으며, 육아도우미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신원조회 같은거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하죠. 나라에서 빨리 조속히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육아도우미 2)

“신원확인이라 건강도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생각은 못했는데, 확실하게 건강검진하고, 범죄이력조회하고.. 제가 애를 맡긴다고 생각하면 이게 최소한인 것 같아요. 다르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거잖아요. 최소한으로 그건 검증이 되어야 엄마들이랑 신뢰관계가 형성될 것 같아요.” (육아도우미 4)

“요즘처럼 세상이 험한 경우, 그 부분들은 엄마아빠들이 아이를 맡길 때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하거든요. 그거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육아도우미 5)

그 밖에도 보험이나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도를 제도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소득이 일정치 않고, 건강보험의 경우 자녀에게 등록되어 있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대보험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현실적으로 관계 있는게 의료보험(건강보험)이잖아요. 아이들이 근무하면 아이(자녀) 이름에 부모가 올라가서 그럴 필요는 못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두려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퇴직금 같은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200만원 정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하다못해 산후조리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하는 교육 받고자 하면 조금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 구해놓고 일을 그만두면 연결이 바로 되지만,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이라도 좀 쉬고 싶는데 퇴직금 같은 거라도 있으면 정말 돈에 의지하고 좀 쉽겠죠. 저는 오래 있다 보니까 주면 감사하겠지만, 제가 요구할 수는 없죠.” (육아도우미 1)

“전 어차피 딸 하나 키우고, 집도 없고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육아도우미 2)

“세제지원을 해준다는게 어려운 문제네요. 받는 쪽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저는 딸 아이한테 건강보험 되고 있거든요.” (육아도우미 4)

“국가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 육아 때문인 이유가 크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서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데, 왜 육아분야에는 신경을 안쓸까요? 이 아파트 보면, 애들 돌보는 사람들 나이 든 분들 많아요. 그분들 보면 정식 계약서도 없고, 정식 교육도 안받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아이를 가진 엄마아빠가 다 못할 때는 국가에서 도움을 - 연금이나 세제지원을 해서 어차피 쓰는 예산이라면, 제도화 시켜서 그것이 일자리 만들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육아도우미 5)

한편, 공공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급여 부분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최저임금 수준이기도 하고, 4대보험은 큰 유인수단이 아니라서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들어보기는 했는데 지원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이트에 올라오는게 더 많고, 정확하고, 페이도 더 많고, 그리고 사모님들이 3개월 이후에는 만오천원씩 올려주고 했었으니까요. 제가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 가다보면, 등하원 할 때 자연스럽게 아이돌보미 분들 보면 나이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분들에게 소일거리 하나로 권해가지고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이 많으면 이 일을 못할 것 같고요, 엄마들 반응이 세 분 다 나라에서 연락 와가지고 해봤는데, 별로였다 했어요.” (육아도우미 2)

“일할 생각은 없어요. 거기가 더 조건이 안 좋은데, 제가 왜 나라에서 하는걸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나라에서 간단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정확하게 하고, 지금 민간인이 하는 수준까지 올려준다면 모르겠어요. 민간인 하는 수준보다 더 된다면 그쪽으로 가겠죠. 저는 사모님한테 받는 돈의 반은 통장에 넣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나라에서 많이 알게 되면 제가 앞으로 60세 이상이 될텐데, 좀 곤란해져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요. 보험료도 많이 나온단든지. 지금은 수입 잡히는게 전혀 없으니까요. 개인적인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임금’으로 들어오는건 아니거든요. 이게 나라에서 안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되겠네요.” (육아도우미 3)

### 3 소결

이상 살펴본 소개업체 간담회 및 육아도우미 면담 결과를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은 과거에 비해 좀 더 역할이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아이가 있으면 같이 돌보는 형태거나 입주형태의 고소득층에 한정된 서비스였다면, 오늘날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보편적 보육복지가 실현되면서 특정 시간(하원시간부터 퇴근 전)에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원하거나 학습시터, 놀이시터 등 시간제 서비스를 원하는 중상층 가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오프라인 소개업체에서는 구직자나 구인자가 원하는 곳으로 알선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최근에는 구인-구직자 양방향의 원해야 배치가 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소개업체 등을 통해 양쪽

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주거나 상호간의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쌍방 간의 정보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육아도우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무엇보다 도우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50~60대 위주여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함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대학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고, 비교적 투명한 신원확인 절차 등을 통해 돌봄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정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공급 경로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소기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고, 육아도우미 입장에서는 실질급여가 줄어들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소기업체와 육아도우미, 그리고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VI

## 결론 및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2.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방안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기본 방향

2017년을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공 아이돌보미는 약 2만명, 민간 분야 가사 및 육아도우미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허민숙, 2018: 1-2), 사실상 대부분의 가정은 아무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만으로는 이와 같은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도 어렵다.

정부의 공공 아이돌봄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민간 영역의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공공서비스를 원하지만 이용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차원에서 대체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수급 현황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육아도우미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앞서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시간의 제약, 전문성 부족, 긴 대기시간과 맞춤형 서비스가 어렵다는 점 등이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구에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아이돌봄서비스는 보편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0~5세 보편적 보육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관보육이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관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워면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가정이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국가는 믿을 수 있는 육아도우미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공적 영역의 아이돌보미와 민간 영역의 육아도우미의 가장 큰 차이는

일정 자격요건과 교육이수, 관리 여부일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은 공적 영역의 아이돌보미에 한하여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동법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결격사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민간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동안 민간 육아도우미 영역은 가정 내의 사적영역에 속한 비공식부문으로 간주되어 개입하지 않았으며, 정부에서는 공적인 아이돌봄서비스 확장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공급자인 (민간)육아도우미와 수요자인 가정(부모)간의 관계에 있어, 공급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일방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이 불합리하게 확장되어 온 측면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 개입의 당위성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국내외 민간 육아도우미 관련 정책과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민간 육아도우미의 시스템 체계를 인력모집(신원확인 등)과 양성(교육), 운영관리(사후관리) 등의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부모와 소개업체 입장에서는 인력관리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개인에 대한 신원확인은 민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사례와 법무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DB구축 방안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및 육아도우미 수는 약 2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입주 도우미 중 상당수가 중국동포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sup>102)</sup>,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해 가정에서 안심하고 육아를 맡길 수 있도록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과 신원정보 조회 서비스<sup>103)</sup> 등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보장과 세금공제를 가장 원

102) 조선일보(2018. 8. 22일자 기사), 조선족 육아도우미 "최저임금 올랐는데 내 월급은 안 올라"… 맞벌이 부모 '철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021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0212.html)(2018. 10. 20. 인출).

103) 육아도우미 정보조회는 외국인 육아도우미를 채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① 육아도우미 고용가능 체류자격 소지 여부, ②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합법체류자인지 여부, ③ 국내에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④ 주요 질병대상자 여부, ⑤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hikorea.go.kr/pt/MypgBabySitterPageR\\_kr.pt](https://www.hikorea.go.kr/pt/MypgBabySitterPageR_kr.pt)(2018. 10. 20. 인출) 참조.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육아도우미 입장에서는 교육과 배상책임 보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용주인 부모와 민간 육아도우미 간에 계약관계를 맺어 부모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고용관계 유지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육아도우미 입장에서는 근로자성 지위 인정과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는 방안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2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방안

### 가.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 보장

#### 1) 범죄경력 등 신원확인을 위한 DB 구축

##### 가) 1안: 정부차원의 DB 구축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부모를 대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 시 고려한 요건을 조사한 결과, 육아도우미의 범죄 경력 등의 신원보장과 육아도우미 경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조사결과에서 이용부모 중 약 85% 이상이 지인의 소개(산후도우미 소개 포함)로 육아도우미를 구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신원 확인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려는 요구가 높다 보니 소개업체나 구인광고를 통한 구인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용부모 면담 과정에서도 국가의 신원확인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범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범죄경력 우려도 있었는데, 현행 법상 범죄경력조회신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각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조차 권한이 없어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육아도우미 본인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표 VI-2-1 |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전력 확인 의뢰 가능 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li> <li>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li> <li>3. 학원, 교습소</li> <li>4.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li> <li>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li> <li>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아동학대전력만 조회</li> <li>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li> <li>8.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li> <li>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같은 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학대만 조회</li> <li>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 업무 종사자만)</li> <li>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li> <li>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료인만)</li> </ol>
---

자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https://minwon.police.go.kr/#guideMinwon/info/MW-081>(2018. 10. 20. 인출).

현행법상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를 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원의 경우에도 아동학대전력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보는 육아도우미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미비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에 아동학대이력과 성범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아이돌봄 지원법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육아도우미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기관에서는 취업중인 직원과 취업 희망자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각 경찰서에서는 각 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의 공동 전산망을 통해 제공받고, 각 기관은 인터넷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범죄경력 조회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sup>104)</sup> 이

처럼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한다면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이력조회는 인터넷 상으로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므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여 육아도우미를 채용하기 원하는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한편, 현재 법무부에서는 2013년부터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의 양육관련 문화와 실무 지식을 교육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정보를 육아도우미 홈페이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자(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분 불확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데, 제공하는 정보는 체류자격, 질병정보, 육아도우미 교육이수 여부 등이다. 이러한 확인에 대해 법무부는 한국이민재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한국이민재단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희망자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sup>105)</sup>를 받고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 육아도우미 관리체계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관리체계를 비교하면, 아이돌보미의 경우 양성단계부터 배치, 비용, 사후관리까지 전적으로 정부와 각 지역 센터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경우 교육과 신원정보 확인까지는 국가가 개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구인 구직 단계부터는 인터넷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수준이어서 민간사업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해외 민간영역의 육아도우미 제도와 유사한데, 영국의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의 Ofsted(교육기준청)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하는 경우 비용을 내고 등록하도록 하여 부모가 자신의 신원조회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범죄경력과 응급처치 과정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주인 부모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Ofsted에 등록된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된 육아도우미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등록된 육아도우미 입장에서는 급여 연체 및 부당대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104) 뉴시스(2018. 11. 21일자 기사), 권익위 “아동 시설 취업자 대상, 성범죄 이력 조회 간소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1\\_0000479517&clI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1_0000479517&clID=10301&pID=10300)(2018. 11. 22. 인출).

105) 이는 방문취업(H-2) 자격자 검사 내용에 준하고 있는데,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신장, 체중, 흉위, 혈압, 시력, 청력, 결핵, 매독, 간염, 정신질환, 마약검사 등을 실시한 검진결과이다.

그 밖에 호주의 경우에도 육아도우미로 일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원조회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 가정보육모의 경우에도 PMI(모성 및 아동보건서비스)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가정보육모를 찾는 부모는 홈페이지나 PMI에 연락하여 가정보육모의 명단을 받아 본인이 직접 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처럼 기관에서 신원확인배치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육아도우미를 찾는 부모들이 해당 육아도우미의 기본 신원정보와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도우미 면담 과정에서도 국가에 자신의 신원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나 거부감을 갖는 경우는 없었으며, 오히려 현재 개인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보호받는 직종이 되어 좋을 것 같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원하는 육아도우미에 한해서 등록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와 육아도우미 모두에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등록을 원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경우 DB구축을 산하기관인 한국이민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각 지자체에 서류확인배와 민간 육아도우미 등록 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2안: 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를 통한 DB 구축

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아도우미 인력에 대한 DB구축이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들은 육아도우미에 대해 제한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 정보를 개인이 확인하는 것도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자녀를 맡기는 경우 도우미에 대한 신원확인에 대한 요구는 1순위로 가장 크다.

현재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육아도우미와 부모 간 매칭을 해주는 신생 소개업체들의 경우 육아도우미에 대한 기본교육과 스크리닝을 거쳐 육아도우미를 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개업체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DB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단, 부모 본인의 인증도 필요),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정부에서 소개업체를 인증해주고, 인증 받은 업체에 대해 일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경우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업체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여 DB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인증제도가 소개업체의 난립을 가져오거나 시장이 더 혼잡해질 우려도 있으므로 육아도우미에 대해 기본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우미를 보유하고 있어 정보제공이 가능한 곳 등 특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인센티브의 내용 역시 육아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연령별)커리큘럼 제공 및 장소 제공(공공기관 빈 장소제공 내지 임차료 지원)과 같은 교육사업 지원과 업체 홍보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인할 수 있는 제공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민간 육아도우미 결격사유 시스템 구축

민간 육아도우미의 자격과 관련해서 해외의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증(국가공인 자격)을 요하지는 않으며, 다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특정 교육이수여부와 질병여부, 범죄경력 등을 검토하여 인증을 하는 정도이다. 이는 육아도우미가 사실상 자영업자에 가깝고,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결과에서는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 시 공인자격증 소지 여부를 고려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으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도움 되는 정부지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은 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 도입이나 육아도우미 교육실시,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세제지원 등에 비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정도(8.8%, 평균 3.57/5점)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대부분 자격증 소지 여부가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데 유인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영유아를 돌보는데 있어서 전문정보보다는 인성(인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소개업체 면담 및 부모 면담 결과에 따르면, 육아나 가사도우미로 파견되는 인력이 중·고졸 학력이 많고, 친인척이 육아도우미를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 국가자격증을 도입하는 것은 여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육교사와 같은 국가자격의 경우 최소 1~2년 이

상(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치는데, 육아도우미 역시 이만큼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자격은 1)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항), 2) 보육교사(영유아교육법 제21조제2항), 3) 유치원 교사(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4) 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5)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 등인데, 민간에도 이러한 자격을 적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아이돌봄 지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에서도 육아도우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민간 영역인 만큼 공적인 아이돌보미 만큼의 자격 제한을 두기 보다는 타 업종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데, 최소한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동학대 이력과 성범죄 이력 등 특정 범죄 경력이 확정된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육아도우미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표 VI-2-2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정신질환자</li> <li>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li> <li>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li>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li> <li>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li> <li>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li> </ol>
--

자료: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교육지원

지인이나 친인척의 소개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찾는 경우 특별한 교육경험이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모입장이나 도우미 입장에서 모두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민간에서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자격기본법상의 민간자격증으로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체 등에서 자격증 발급과 함께 일정 비용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에 실시한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도우미의 경우 직무관련 교육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 평균 14만 9천원으로 조사된 바 있어 직업훈련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5). 기존에 YMCA와 같은 사회단체에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며,<sup>106)</sup>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들도 교육시간(최소 8시간에서 최대 40시간)과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소개업체나 직업정보제공업체에서는 전문강사진 부족과 강의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전문적인 교육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전문 강사진 파견과 강의장소를 지원하여 육아도우미들이 전문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과정 개발 시에는 일률적인 과정보다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육아도우미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아이돌보미의 경우 80시간의 교육 이수와 10시간 이상의 실습 후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상 교육 이수 시 이를 국가가 확인하여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질 관리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6) 2014년까지 실시했던 교육은 60시간 교육과 2일 실습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사와 공간대여,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25명 기준에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함(2018. 10.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 다. 고용주와 육아도우미 간 고용관계 시스템 구축

프랑스와 영국, 호주,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육아도우미와 부모(가정)의 관계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관계에 따라 권리·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이는 민간영역인 만큼 국가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제 업무는 부모(가정)와 육아도우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3 기관이 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공정노동기준을 따르게 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의 각 지위에 따른 보장을 하고 있다. 통상 근로계약서에는 아이를 돌보는 장소, 근무시간,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일 및 고용기간, 임금 등이 포함되며, 추후 가정과 육아도우미 간에 분쟁 발생 시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육아 등의 가사노동 서비스업이 사회적·시장적 영역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동관계법은 가사노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에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중개기관의 합리적 관계규율에 대한 제도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서비스제공기관(민간 소개업체)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가사서비스 공급구조를 “이용자-서비스제공기관-가사근로자”의 삼자관계로 개편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는 가사근로자, 즉 정부의 가사서비스 공급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이 남는다.

현재 OECD국가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가사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사회보장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데, 앞서 살펴본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독일 등에서는 이미 육아도우미에

대해 노동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육아도우미와 이용자(가정) 간에 직접적인 고용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가정보육모의 경우 이용자(부모)가 가정보육모 고용사실을 정부기관인 PMI에 등록하여 고용관계를 공식화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가정에 대한 근로감독 후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sup>107)</sup>

이처럼 우리의 경우도 이용자와 육아도우미 간에 근로계약 관계를 명확히 한다면, 육아도우미 입장에서는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관계 구축에 앞서 우선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고용관계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4대 보험 지원과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 문제가 연결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및 4대 보험 지원

육아도우미와 이용자(가정) 간에 직접적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고,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면, 육아도우미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공적 부문의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도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육아도우미가 원하는 경우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107) 본 보고서 제3장 제2절 가. 프랑스 참조.

했을 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주고 있다.<sup>108)</sup>

미국의 경우 육아도우미에게 1년에 2,100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실업수당 등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월 450유로 이상, 스위스의 경우 연 750스위스프랑 이상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보장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일정 소득까지는 4대보험 가입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되, 전업으로 육아도우미 일을 하는 등 수입이 일정 소득 이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다만, 두루누리 사업을 참고하여 이용자인 부모와 육아도우미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인 부모가 사업주 지위에 놓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sup>109)</sup> 물론, 이 경우에는 육아도우미 역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고, 부모는 그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친척 명의를 통한 탈세나 역진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 손해배상 등 책임보험 가입 시스템 마련

직업안정법에서는 유료직업소개소에 한하여 직업소개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 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이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소는 보증보험이나 고용서비스협회에 공제 등을 가입하여 손해배상보험 가입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고용자와 육아도우미 간 당사자들끼리 직접 해결이 어려운 경우 중간 업체에서 먼저 선조치를 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8) 이상의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asp>(2018. 10. 27. 인출)를 요약·정리한 것임.

109) 실제 YMCA 아가야사업의 경우 가정육아교사를 이용하는 부모(가정)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18. 10.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그러나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이 가입하기에 어렵고, 설사 가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높아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그 필요성은 육아도우미나 부모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육아도우미의 경우 민간보험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10)</sup>

육아도우미의 경우 어린 아이를 돌보는 만큼, 육아도우미의 실수 및 과실로 물질적·신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이를 개인책임으로 떠맡기기 보다는 개인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모와 육아도우미 간의 불필요한 책임공방이나 소송 등을 피하게 함으로써, 민간 육아도우미로서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고 부모와의 신뢰구축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10)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 육아도우미의 38.8%가 민간보험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6).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p.5.

## 참고문헌

〈문헌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17).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443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2017. 12. 28, 정부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2017. 6. 16,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2017. 9. 11,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강일규·김기홍·변숙영·김덕기(2008).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현황 및 관리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2017년 제2차 민간자격관리자 연수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6).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국민권익위원회(2013a). 국민권익위,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 보도자료(2013. 5. 15).

국민권익위원회(2013b).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의결서(2013. 5. 6).

김소영·장혜경·김영란·선보영·조윤주(2013). 민간 베이비시터 운영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문희·신나리·이정원·이세원(2007). 한국 베이비시터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3. 12. 4, 이이재의원 대표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8. 9,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원종학·전병힐(2008). 아돌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 장혜경·김영란·김필숙(2008). 돌봄노동 분야별 제도화 방안연구(I) -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총괄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혜경·김영란·서문희·김용희(2008).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윤경·장혜진·민정원·배윤진·송신영(2014).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 허민숙(2018).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 관리를 위한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1454,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Australia Government(2018a). In Home Care National Guidelines.
- Australia Government(2018b). In Home Care Handbook.
- Child Protection Systems Royal Commission(2016). The life they deserve: Child Protection Systems Royal Commission report. Adelaide: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 ECDA(2017). Guide for Parents with Children in Child Care Centres.
- Garvis, S., Pendergast, D., & Kanasa, H.(2013).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Australia: An insight into parent perceptions posted online.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7(3), 103-119.
- Mariana, Chan & Suelin, Hung(2015). Report of Study on Child Care Services for Low Income Families in Hong Kong, the 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
- Stadt Zürich Sozialdepartement(2014). Kinderbetreuung - Alternativen zur Kita. Anleitungen zum Engagement für Eltern und Interessierte. Sozialdepartement der Stadt Zürich.
-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2017). Guidebook for the Employment of Domestic Helpers from Abroad. Immigration Department.

〈홈페이지〉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https://minwon.police.go.kr/#guideMinwon/info/MW-081>(2018. 10. 20.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http://www.law.go.kr)(2018. 2. 28. 인출).

국제내니협회 홈페이지, <https://nanny.org>(2018. 5. 20. 인출).

국제내니협회 홈페이지, A Nanny for Your Family, <http://nanny.org/resources/families/a-nanny-for-your-family/#what>(2018. 5. 20. 인출).

국제노동기구 홈페이지, “Hong Kong’s Hidden Shame” <http://apmigration.ilo.org/news/hong-kongs-hidden-shame>(2018. 10. 20. 인출).

뉴스시스(2018. 11. 21일자 기사), 권익위 “아동 시설 취업자 대상, 성범죄 이력 조회 간소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1\\_0000479517&cI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1_0000479517&cID=10301&pID=10300)(2018. 11. 22. 인출).

다솜홈서비스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http://www.dasomhappy.com/curri/curri\\_02.php?eq=0](http://www.dasomhappy.com/curri/curri_02.php?eq=0)(2018. 6. 14. 인출).

독일 vexcash 홈페이지, <https://www.vexcash.com/blog/tagesmutter-kosten/>(2018. 6. 15. 인출).

독일 바덴-뷔템베르크 주 Hallobabysitter 홈페이지, <https://www.hallobabysitter.de/blog/babysitterkurse/baden-wuerttemberg>(2018. 6. 15. 인출).

독일 양육시설 안내 홈페이지, <http://www.kita.de/wissen/private-kinderbetreuung-gesucht/>(2018. 6. 15. 인출).

독일 타게스무터 홈페이지, <https://www.tagesmutter.com/tagesmuetter-ratgeber/>(2018. 6. 15. 인출).

독일 함부르크 민간육아도우미 알림 홈페이지, [https://www.erstekinderbetreuung.de/babysitter-jobs/Hamburg?affiliateid=&gclid=EAIaIQobChMI3d2M3pjp2wIVSAwrCh3jGwkzEAAYASAAEgLM0vD\\_BwE](https://www.erstekinderbetreuung.de/babysitter-jobs/Hamburg?affiliateid=&gclid=EAIaIQobChMI3d2M3pjp2wIVSAwrCh3jGwkzEAAYASAAEgLM0vD_BwE)(2018. 6. 15. 인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asp>(2018. 10. 27. 인출).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

- lf-employed/hiring-household-employees(2018. 5. 20. 인출).
- 미국 비즈니스 정보 업체 홈페이지, Payscale.com(2018. 5. 20. 인출).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민간자격검색, <https://pqj.or.kr/inf/qul/infQulList.do>(2018. 6. 14. 인출).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민간자격등록제도, <https://pqj.or.kr/int/intRegSysView.do>(2018. 6. 14. 인출).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pqj.or.kr>, 민간자격소개-민간자격센터(2018. 6. 14. 인출).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j.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행복한타임(2018. 6. 21. 인출).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j.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주식회사한국자격중앙협회(2018. 6. 21. 인출).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j.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사단법인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2018. 6. 21. 인출).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j.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한국모자복지전문인협회(2018. 6. 21. 인출).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j.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한국여성교육개발원(2018. 6. 21. 인출).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j.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한국자격개발원(2018. 6. 21. 인출).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j.or.kr>, 자격정보-민간자격검색-베이비시터-(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2018. 6. 21. 인출).
- 부모마음 홈페이지, <http://www.bumomaum.co.kr>(2018. 6. 20. 인출).
- 서울 한살림 30주년 기념대화마당 “한살림 돌봄 새롭게 삶의 자립을 꿈꾸다” 발표자료, <http://seoul.hansalim.or.kr/files/2017/08/2.-%ED%95%9C%EC%82%B4%EB%A6%BC-%EB%8F%8C%EB%B4%84.pdf>(2018. 6. 20. 인출).
- 서울YMCA아가야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eoulAgaya>(2018. 6. 15. 인출).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강좌안내, <https://seocho.seoulwomanup.or.kr/seocho>

- o/edu/selectPageListEduProgram.do(2018. 6. 20. 인출).
-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과정, [http://www.vocationplus.com/board/bbs/board.php?bo\\_table=program](http://www.vocationplus.com/board/bbs/board.php?bo_table=program)(2018. 6. 20. 인출).
- 스위스 “양육아동의 수용에 관한 규정”,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770243/201706200000/211.222.338.pdf>(2018. 7. 25. 인출).
- 스위스 아동양육 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reut24.ch/seiten/infos/definition\\_babysitter\\_nanny\\_kinderfrau\\_tagesmutter.html#details](http://www.betreut24.ch/seiten/infos/definition_babysitter_nanny_kinderfrau_tagesmutter.html#details)(2018. 7. 13. 인출).
- 스위스 아동양육 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reut24.ch/seiten/infos/Gesetzliche\\_Bestimmungen\\_zur\\_Ausbildung\\_eines\\_\\_Babysitters,\\_einer\\_Nanny\\_und\\_Tagesmutter.html#details](http://www.betreut24.ch/seiten/infos/Gesetzliche_Bestimmungen_zur_Ausbildung_eines__Babysitters,_einer_Nanny_und_Tagesmutter.html#details)(2018. 7. 13. 인출).
- 스위스 아동양육 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reut24.ch/seiten/infos/Gesetzliche\\_Richtlinien\\_\(Melde-\\_und\\_Bewilligungspflicht\)\\_fur\\_den\\_Babysitter,\\_die\\_Nanny\\_und\\_Tagesmutter.html#details](http://www.betreut24.ch/seiten/infos/Gesetzliche_Richtlinien_(Melde-_und_Bewilligungspflicht)_fur_den_Babysitter,_die_Nanny_und_Tagesmutter.html#details)(2018. 7. 15. 인출).
- 스위스 아동양육 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betreut24.ch/seiten/infos/Versicherungen\\_des\\_Babysitter,\\_der\\_Nanny\\_und\\_Tagesmutter.html#details](http://www.betreut24.ch/seiten/infos/Versicherungen_des_Babysitter,_der_Nanny_und_Tagesmutter.html#details)(2018. 7. 15. 인출).
- 스코틀랜드 보육서비스 정보 홈페이지, <http://www.careinspectorate.com>(2018. 9. 20. 인출).
- 시터넷 홈페이지, <https://www.sitternet.co.kr/main/>(2018. 6. 20. 인출).
- 싱가포르 Child Care Link 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home/services.jsp>(2018. 10. 4. 인출).
-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eligibility-and-requirements>(2018. 10. 2. 인출).
-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eligibility-and-requirements/employer-requirements>(2018. 10. 20. 인출).
-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 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eligibility-and-requirements/insurance-requirements(2018. 10. 3. 인출).
-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eligibility-and-requirements/six-monthly-medical-examination>(2018. 10. 20. 인출).
- 싱가포르 유아교육진흥원(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 홈페이지, <https://www.ecda.gov.sg>(2018. 10. 4. 인출).
- 싱가포르 정부 One-Stop 포털, <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home/services.jsp>(2018. 10. 2. 인출).
- 아누리 홈페이지, <https://www.anoori.co.kr/>(2018. 6. 20. 인출).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2018. 6. 23. 인출).
- 영국 EYFS, <https://www.foundationyears.org.uk/wp-content/uploads/2012/07/Overall-Reforms-to-the-2012-EYFS-Framework.pdf>(2018. 9. 20. 인출).
- 영국 가정보육교사 홈페이지, <https://childmindinguk.com>(2018. 9. 20. 인출).
- 영국 보육정보 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co.uk/find/Babysitters>(2018. 9. 20. 인출).
- 영국 입법정보 홈페이지,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2/939/made?view=plain>(2018. 9. 20. 인출).
- 영국 정부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gov.uk/business-finance-support/childcare-business-grants-england>(2018. 9. 20. 인출).
- 영국 정부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gov.uk/early-years-foundation-stage>(2018. 9. 20. 인출).
- 영국 정부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sted>(2018. 9. 20. 인출).
- 영국 정부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register-as-a-childminder-quick-guide#check-if-you-need-to-register>(2018. 9. 20. 인출).
- 요양보호사복지협회, 베이비시터, [https://motherandbaby.tnaru.com/web/board/board\\_list\\_profileread?tbl=product&bcode=6&buff=2](https://motherandbaby.tnaru.com/web/board/board_list_profileread?tbl=product&bcode=6&buff=2)(2018.

6. 14. 인출).

웨일즈 보육서비스 정보 홈페이지, <https://careinspectorate.wales>(2018. 9. 20. 인출).

조선일보(2018. 1. 23일자 기사), “한국 임금의 30%…동남아 육아도우미 '수입' 하면 어떨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3/201801230030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3/2018012300309.html)(2018. 3. 4. 인출).

조선일보(2018. 8. 22일자 기사), 조선족 육아도우미 "최저임금 올랐는데 내 월급은 안 올라"... 맞벌이 부모 '철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021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0212.html)(2018. 10. 20. 인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육아도우미 제도 정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520>(2018. 2. 28. 인출).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전국 직업/성별 취업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2&vw\\_cd=MT\\_ZTITLE&list\\_id=B19\\_EQ13\\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_m\\_id=&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2&vw_cd=MT_ZTITLE&list_id=B19_EQ13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_m_id=&conn_path=MT_ZTITLE)(2018. 4. 9. 인출)

프랑스 사회연대 및 보건부 홈페이지,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etudes-et-statistiques/open-data/aide-et-action-sociale/la-protection-maternelle-et-infantile-pmi/article/la-protection-maternelle-et-infantile-pmi>(2018. 9. 20. 인출).

프랑스 육아도우미 보수지급관리 홈페이지, <https://pajewebinfo/cms/sites/pajewebinfo/accueil/employeur-dassistante-maternelle/je-me-separe-de-mon-assistante-m/les-differents-cas-de-rupture.html>(2018. 9. 20. 인출).

프랑스 육아행정 홈페이지, <http://www.mon-enfant.fr/web/guest/modes-garde/assistantes-maternelles>(2018. 9. 20. 인출).

프랑스 육아행정 홈페이지, <http://www.mon-enfant.fr/web/guest/modes-garde/maisons-assmat>(2018. 9. 20. 인출).

프랑스 행정정보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812>(2018. 9. 20. 인출).

프랑스 행정정보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841>(2018. 9. 20. 인출).

- 프랑스 행정정보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842>(2018. 9. 20. 인출).
- 프랑스 행정정보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38>(2018. 9. 20. 인출).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hikorea.go.kr/pt/MypgBabySitterPageR\\_kr.pt](https://www.hikorea.go.kr/pt/MypgBabySitterPageR_kr.pt)(2018. 10. 20. 인출).
- 한국YMCA 아가야 홈페이지, <http://www.blog.ymcaagaya.kr>(2018. 6. 15. 인출).
-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http://www.vocation.or.kr> (2018. 6. 14. 인출).
-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http://www.kisfbs.com>(2018. 6. 18. 인출).
- 한국자격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qda.or.kr/CQ/babysitter/regulation.html>(2018. 6. 18. 인출).
- 한국자격중앙협회 홈페이지, <http://www.kqca.co.kr/edu08/index.php>(2018. 6. 18. 인출).
- 한국자격증정보원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http://koci.co.kr/base/m3/smenu2/menu13.php#regist>(2018. 6. 14. 인출).
- 한국자격총연합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http://www.kqu.or.kr/pc/html/sub3\\_menu\\_1\\_2.php](http://www.kqu.or.kr/pc/html/sub3_menu_1_2.php)(2018. 6. 14. 인출).
- 한국장학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edu.net/>(2018. 6. 18. 인출).
- 한국직업사전, 한국표준직업분류, 육아도우미, <http://www.work.go.kr/constJobCarpa/srch/jobDic/j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Code=4219&jobSeq=6>(2018. 6. 20. 인출).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http://www.work.go.kr/constJobCarpa/srch/jobInfoSrch/work.do?jobNm=11222>(2018. 6. 20. 인출).
- 한살림 서울 홈페이지, [http://seoul.hansalim.or.kr/?page\\_id=48224](http://seoul.hansalim.or.kr/?page_id=48224), <http://seoul.hansalim.or.kr/?p=51982>(2018. 6. 20. 인출).
- 행복한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베이비시터, <http://www.happytime.or.kr/>(2018. 6. 14. 인출).

- 호주 legalvision 홈페이지, 4 Legal Tips for Hiring a Nanny, <https://legalvision.com.au/4-legal-tips-for-hiring-a-nanny>(2018. 9. 9. 인출).
- 호주 교육훈련부 홈페이지, <https://docs.education.gov.au/documents/home-care-national-guidelines>(2018. 9. 9. 인출).
- 호주 교육훈련부 홈페이지, <https://www.education.gov.au/in-home-care>(2018. 10. 20. 인출).
- 호주 교육훈련부 홈페이지, In Home Care Handbook, <https://docs.education.gov.au/documents/home-care-handbook>(2018. 9. 10. 인출).
- 호주 교육훈련부 홈페이지, In Home Care National Guidelines, <https://docs.education.gov.au/node/47766>(2018. 9. 10. 인출).
- 호주 내니협회 홈페이지, <http://www.australiannannyassociation.org.au/nanny-pilot-programme-give-me-a-break>(2018. 9. 10. 인출).
- 호주 내니협회 홈페이지, <http://www.australiannannyassociation.org.au/resources/minimum-standards-nanny/>(2018. 9. 13. 인출).
- 호주 내니협회 홈페이지, <http://www.australiannannyassociation.org.au/working-with-children-check>(2018. 9. 9. 인출).
- 호주 아동 교육 및 보육 관리국 홈페이지, <https://www.acecqa.gov.au>(2018. 9. 11. 인출).
- 호주정부 가족연구소 홈페이지, Part B: State and territory requirements, <https://aifs.gov.au/cfca/publications/pre-employment-screening-working-children-checks-and-police-checks/part-b-state-and>(2018. 10. 20. 인출).
- 호주정부 가족연구소 홈페이지, Pre-employment screening: Working With Children Checks and Police Checks, <https://aifs.gov.au/cfca/publications/pre-employment-screening-working-children-checks-and-police-checks/export>(2018. 9. 13. 인출).
- 호주정부 공정노동 ombudsman 홈페이지, <https://www.fairwork.gov.au>(2018. 9. 9. 인출).
- 호주정부 공정노동 ombudsman 홈페이지, <https://www.fairwork.gov.au/employee-entitlements/national-employment-standards>(2018. 9. 9. 인출).

- 홍콩 노동국 홈페이지, Foreign Domestic Helpers, [https://www.fdh.labour.gov.hk/en/general\\_policy.html](https://www.fdh.labour.gov.hk/en/general_policy.html)(2018. 9. 9. 인출).
- 홍콩 이민국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발급 홈페이지, [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foreign\\_domestic\\_helpers.html](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foreign_domestic_helpers.html)(2018. 9. 9. 인출).
- 홍콩정부(GovHK) 홈페이지, Hiring Local Domestic Helpers, <https://www.gov.hk/en/residents/employment/recruitment/localdomestichelper.htm>(2018. 9. 24. 인출).
- A Campaign for Hong Kong's Domestic Workers 홈페이지, <http://hkhelperscampaign.com/en/>(2018. 9. 9. 인출).
- Care.com 홈페이지, Do You Need Nanny Insurance?, <https://www.care.com/homepay/do-you-need-nanny-insurance-1303180328>(2018. 5. 20. 인출).
- Care.com 홈페이지, Nanny Taxes 101, <https://www.care.com/homepay/nanny-tax-guide>(2018. 5. 20. 인출).
- Care.com 홈페이지, nanny taxes, <https://www.care.com/homepay/the-top-3-benefits-of-reporting-nanny-taxes-1209170030>(2018. 10. 20. 인출).
- CNN, "Hong Kong's maids are often treated like slaves", 2016. 3. 15일자, <https://money.cnn.com/2016/03/15/news/hong-kong-forced-labor-maids/index.html>(2018. 9. 15. 인출).
- Loire Atlantique 데파르트망의 공인 육아도우미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s://assmat.loire-atlantique.fr/jcms/assistante-maternelle/l-agrement/la-procedure-de-suspension-ou-de-retrait/la-suspension-et-le-retrait-d-agrement-fr-p1\\_75940](https://assmat.loire-atlantique.fr/jcms/assistante-maternelle/l-agrement/la-procedure-de-suspension-ou-de-retrait/la-suspension-et-le-retrait-d-agrement-fr-p1_75940)(2018. 9. 20. 인출).
- Selbständige Tagesmutter.ch, Tagesmutter ohne Verein 홈페이지, <https://www.selbständige-tagesmutter.ch/definition-tagesmutter>(2018. 7. 15. 인출).
- Selbständige Tagesmutter.ch, Tagesmutter ohne Verein 홈페이지, <https://www.selbständige-tagesmutter.ch/gesetzliche-richtlinien-der-tagesmutter>(2018. 7. 15. 인출).

South China Morning Post, “Hong Kong ‘should learn from Singapore’ on childcare, minister says”, 2018. 3. 18일자, <https://www.scmp.com/news/hong-kong/community/article/2137725/hong-kong-should-learn-singapore-childcare-minister-says>(2018. 10. 1. 인출).

South China Morning Post, “Why foreign domestic helpers in Hong Kong must live in their employers’ home”, 2018. 2. 14일자, <https://www.scmp.com/news/hong-kong/community/article/2133377/why-hong-kong-wants-foreign-domestic-helpers-live-their>(2018. 10. 1. 인출).

Study.com 홈페이지, “How to Become a Nanny: Career Guide”, [https://study.com/articles/How\\_to\\_Become\\_a\\_Nanny\\_Career\\_Guide.html](https://study.com/articles/How_to_Become_a_Nanny_Career_Guide.html) (2018. 5. 20. 인출).

---

## Abstract

### A Study on the Status of Using Private Babysitters and Plans for their Management

Ahreum Kim·Hae-mi Yoo·Ji-yeon Yun

As two-paycheck couples and working mothers increase today, gaps in childcare are being created, the problem that cannot be resolved only through educational institutions (e.g. kindergartens, childcare centers).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family child-rearing through the child care(Idolbom) project, a public service. But in reality the social demand is not being satisfied through the provision of the service focusing on the vulnerable. To dat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ivate babysitter services have several limitations concerning wages, qualification, service management, etc. due to the absence of the government's management and supervision.

Hence this study reviewed facts (e.g.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policies relating to private babysitters) and obtained opinions of parents who had used a private babysitter service before through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In addition, it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ose who were acting as babysitters in Korea to analyze the Korean private babysitter system, the status of the use of that system, and the demand for it. Through these, specific measures concern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on the employment and provision of private

babysitter services and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the services were introduced.

Keyword: Babysitter, Nanny, Childcare service

## 부 록

- 부록 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부록 2. 사례조사 질문지(도우미용)
- 부록 3. 사례조사 질문지(부모용)
- 부록 4.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질문지



## 부록 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 아 정 책 연 구 소

<응답자 확인 사항>

1. 귀하는 현재 영유아 자녀 또는 초등자녀가 1명 이상 있습니까?  
 ① 예      ⇨ 문 2번으로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2. 귀하는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공공 아이돌보미 제외)를 1개월 이상 이용 중입니까?  
 ① 예(1개월 이상 이용 중임)      ⇨ 문 3번으로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3. 현재 귀하가 이용중인 민간 육아도우미는 몇 명입니까?  
 ① 자녀 1명에 민간 육아도우미 1명  
 ② 자녀 1명에 민간 육아도우미 2명 이상 ⇨3-1) 육아도우미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③ 자녀 2명에 민간 육아도우미 1명  
 ④ 자녀 2명에 민간 육아도우미 2명 이상 ⇨3-2) 육아도우미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⑤ 자녀 3명 이상에 민간 육아도우미 1명  
 ⑥ 자녀 3명 이상에 민간 육아도우미 2명 이상 ⇨3-3) 육아도우미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 ※ 이하 질문에는 민간 육아도우미가 돌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가 2명 이상일 경우, 이용시간이 가장 긴 육아도우미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I.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 및 구인 과정**

4. 4-1.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가 돌보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4-2.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가 돌보는 자녀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 민간 도우미가 돌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매 자녀마다 각각 표기합니다.  
 ※ 자녀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만 0세로 표기하고 개월 수를 추가로 표기합니다.

4-1. 육아도우미가 돌보는 자녀 수	4-2. 자녀 연령 (2명 이상인 경우는 어린자녀부터 표기함) ※ 12개월 미만은 0세로 표기하고 개월수 표기	
<input type="checkbox"/> ① 1명	만 (    )세	(    )개월 ※12개월 미만만 응답
<input type="checkbox"/> ② 2명	만 (    )세	(    )개월 ※12개월 미만만 응답
	만 (    )세	(    )개월 ※12개월 미만만 응답
<input type="checkbox"/> ③ 3명 이상	만 (    )세	(    )개월 ※12개월 미만만 응답
	만 (    )세	(    )개월 ※12개월 미만만 응답
	만 (    )세	(    )개월 ※12개월 미만만 응답



- 6-1. 소개사이트(정보제공) 또는 소개업체에는 알선 또는 중개 비용(또는 회비)으로 얼마를 지불하셨습니다?  
 ※ 각 소개/중개료의 지불방식에 따라 해당 비용을 표기해 주십시오.  
 ※ 소개/중개료가 무료인 경우는 해당 란에 0원으로 표기합니다.

6-1-1. 소개/중개료 지불 빈도	6-1-2. 이용료
<input type="checkbox"/> ① 회당(1회 소개/중개시 마다 지급함)	(                      )만원
<input type="checkbox"/> ② 연간 회비(1년 회비를 일괄 지불함)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구체적으로:                      )	

- 6-2. 귀하께서 이용한 소개업체에서 제공한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보(신원 보장관련 서류 등)와 근로계약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공받은 정보와 계약 조건(비용 제외)을 각각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세부내용
문 6-2. 육아도우미에 대해 제공받은 정보(신원 등)	
문 6-2-1. 근로계약 조건 (예)육아만 전담, 가사지원 포함 등	

- 6-3.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를 소개사이트(정보제공) 또는 소개업체를 통해 구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불만족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문 6-3-1번으로  
 ② 아니오                ⇨ 문 7번으로

6-3-1. (문 6-3번 ①에 응답자)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대로 모두 적어주십시오.

- 6-4. 귀하께서 이용한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사이트나 소개업체가 불만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6-4-1번으로  
 ② 아니오                ⇨ 문 7번으로

6-4-1. (문 6-4번 ①에 응답자) 귀하의 불만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주었습니까?

7.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를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 중요도 순으로 1, 2순위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

<보 기>	
① 신원 보장(범죄 경력 등)	② 육아도우미 경력
③ 학력 수준	④ 건강 상태(질병 여부 등)
⑤ 연령	⑥ 공인자격증(교사, 아이돌보미 등) 여부
⑦ 서비스 제공 내용(학습지도 여부 등)	⑧ 서비스 이용시간
⑨ 기타(구체적으로:                      )	

8.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와 맺은 근로계약에 포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 ① 주당 근로시간(출퇴근시간)
- ② 급여(월/주당)(서비스 이용비용)
- ③ 서비스 제공 내용(등하원 지도, 숙제 봐주기, 식사/간식 제공, 가사서비스 등)
- ④ 연간 휴가 일수
- ⑤ 긴급보육 시(육아도우미 개인 사정으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 조치 사항(사전통보 등)
- ⑥ 기타(구체적으로: )

9.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를 면접하거나 또는 채용할 시에 요구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요구한 서류를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② 이력서
- ③ 자격증 사본
- ④ 본인 이외 연락처(육아도우미 자녀의 전화번호 등)
- ⑤ 기타(구체적으로: )

10. 귀하는 현재의 민간 육아도우미를 채용하기 위해 육아도우미 면접을 모두 몇 회 보셨습니까?  
(현재의 육아도우미는 몇 번째 면담 끝에 채용하셨습니까?)

총 (            ) 번

10-1 지금까지 이용해 본 민간 육아도우미 중 면접횟수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총 몇 번입니까?

최대 총 (            ) 번

11. 현재 이용 중인 육아도우미의 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복리후생 관련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12. 귀하께서 현재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도우미에게 급여 이외에 보장해야 할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II.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13.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를 지금까지 총 얼마 동안 이용하셨습니까?

- ① 1개월~3개월 미만
- ② 3개월~6개월 미만
- ③ 6개월~1년 미만
- ④ 1년~2년 미만
- ⑤ 2년 이상~3년 미만
- ⑥ 3년 이상~5년 미만
- ⑦ 5년 이상



19. 부모를 제외하고, 민간 육아도우미가 돌보는 자녀를 함께(추가로) 돌보는 기관 또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어린이집 이용 중 ☞ 문 19-1번으로
- ② 유치원 이용 중 ☞ 문 19-1번으로
- ③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
- ④ 지역아동센터
- ⑤ 조부모 또는 친인척
- ⑥ 이웃 주민
- ⑦ 기타(추가로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구체적으로: \_\_\_\_\_ )
- ⑧ 추가로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음

19-1. (문 19에서 ①어린이집 또는 ②유치원 응답자)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④ 민간어린이집
- ⑤ 가정어린이집  ⑥ 협동어린이집
- ⑦ 직장어린이집  ⑧ (국)공립유치원
- ⑨ 사립유치원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9-2.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인데도 추가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이용 중인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서 ☞ 문 19-2-1번으로
- ② 기관에 아이를 오래두고 싶지 않아서
- ③ 아이가 기관에서 일찍 하원하고 싶어해서
- ④ 사교육이 필요해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9-2-1. 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근로시간만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면,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지 않을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이용 중단함
- ② 계속 이용함 ☞ 문 19-2-1-1번으로

19-2-1-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근로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데도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0.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 ① 자택에서 돌봄
- ② 육아도우미의 집에서 돌봄 ☞ 문 20-1번으로
- ③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0-1. 귀하의 자녀를 자택에서 돌보지 않고, 육아도우미의 집에서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현재 이용 중인 육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무엇입니까?

-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내용을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 ① 등하원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으로 이동 시 동반)
  - ② 학습지도(숙제 봐주기 등)
  - ③ 간식(또는 식사 등) 먹이기
  - ④ 가사서비스(청소 등)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2. 22-1) 귀하는 정부(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22-2) (문 22-1 ③~④응답자) 아이돌보미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22-3) (문 22-2 ①~②응답자) 서비스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각 응답마다 해당번호를 표기합니다.

문 22-1)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문 22-2) 이용 경험	문 22-3) 이용 만족도
① 전혀 모름 ☞ 문 23번으로	① 과거 이용 ☞ 문 22-3으로	① 매우 불만족함 ☞ 문 22-2-1
② 이름만 들어봄 ☞ 문 23번으로	② 현재 이용 중 ☞ 문 22-3으로	② 불만족함 ☞ 문 22-2-1
③ 대충알고 있음	③ 이용해본 적 없음	③ 보통
④ 잘 알고 있음		④ 만족하는 편임 ☞ 문 22-2-2
		⑤ 매우 만족함 ☞ 문 22-2-2

- 22-4)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족 또는 불만족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문23으로)

- 22-5)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족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문22-6으로)

- 22-6) 귀하께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만족하셨는데,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Ⅲ.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23.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① 내국인(대한민국)  
 ② 외국인(국가명: )

24.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 만 연령으로 응답하고, 정확한 연령은 모르는 경우는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연령대를 표기해 주십시오. (예시: 50대인 경우는 50으로 표기함)

만 ( ) 세

25.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동일 분야(육아도우미)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 년  모름

26.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의 동일 분야 경력 중에서 (공공)아이돌보미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까?

- ① 예 ☞ 문 26-1번으로  
 ② 아니오  
 ③ 모름





## 부록 2. 사례조사 질문지(도우미용)

- 심층인터뷰 취지 및 목적: 민간 육아도우미 근로실태 및 요구 파악, 정책방안 모색
- 심층인터뷰 진행 방식: 주요 질문사항/응답 방식/소요 시간(약 1시간 반)
- ※ 개인정보 협조 요청

### 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자 특성

#### 1) 일반 특성

- 성별, 연령, 경력(육아도우미 횟수, 아동연령), 부업여부
- 돌봄아동 연령, 근로형태(입주/미입주/시간제) 및 기간 등

#### 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가구 특성

- 자녀: 총 자녀수, 자녀 연령, 기관 이용 등 타서비스 병행 여부
- 가구 특성: 맞벌이 여부/취업 시 근로형태, 노동시간

### 2. 육아도우미 구직 과정

#### 1) 육아도우미를 하게 된 이유와 어떠한 경로로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 육아도우미 일을 하게 된 계기/ 직전 직업 등
- 인터넷/지인/업체 등 소개 경로

#### 2) 육아도우미 일을 구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근로유형, 특정조건 유무와 이유

#### 3)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약조건(휴일, 사고시 대처 등) 명시 여부
-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 여부

#### 4) 기타

- 면접 및 신원확인(범죄자경력, 건강상태) 여부 등

### 3. 육아도우미 근로 실태 및 애로사항

- 1) 근로 범위 및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근로범위(가사일 여부) 및 근로시간(출근일수 및 출퇴근시간)
  - 근로유형(입주/시간제)과 이유

---

- 2) 현재 급여는 얼마입니까?
  - 현재 급여 및 적정수준에 대한 의견

---

- 3) 별도의 복리후생제도가 있습니까?
  - 복리후생제도 관련 현황(공휴일휴무, 휴가, 건강검진, 상여금, 퇴직금 등)
  - 식사 제공여부, 계약서 명시 여부 등

---

- 4) 근로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양육방법, 가사일 등 애로사항 및 해결방법
  - 갈등 발생 여부 및 문제 발생 시 처리방법
  - 급한 용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임금에서 비용 제하는지 여부

---

- 6) 기타
  - 아이를 돌보는 집에서 별도의 가사도우미 유무, cctv 설치 여부 등

### 4. 육아도우미 근로 만족도 및 개선요구

- 1) 육아도우미로 일하는 것에 대해 만족/불만족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육아도우미 근로 만족 여부(1~10점) 및 이유
  - 적정 비용(시장가격)에 대한 의견

---

- 2) 아이돌보미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공공 아이돌보미 인지 여부 및 근로의향 여부

---

- 3) 그 밖에 국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육아도우미 등록제(신원보증 및 인력관리)에 대한 의견
  - 4대보험 지원에 대한 의견
  - 교육/비용지원/ 4대보험 지원 등 선호도

<b>&lt;육아도우미용&gt;</b>			
<p>심층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육아지원정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일련번호: 사례조사_민간 육아도우미</p>			
<b>성별 / 연령</b>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 만 (        ) 세	
<b>맞벌이 여부</b>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외벌이 <input type="checkbox"/>	
<b>최종 학력</b>	고졸 미만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b>국적</b>			
<b>육아도우미 총 경력기간</b>	(        )년 (        )개월		
<b>관련 자격증 /교육 이수 여부 (교사자격증 등)</b>			
<b>현재 육아도우미 근로형태</b>	가구특성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외벌이 <input type="checkbox"/>	
	입주여부	입주 <input type="checkbox"/> 미입주 <input type="checkbox"/>	
	기간	(        )년 (        )개월	
	빈도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반일제 <input type="checkbox"/> 부정기적 <input type="checkbox"/> 주(    )회 / 월(    )회 / 기타 (        )	
	시간	시작 시각 (    시    분 ) 종료 시각 (    시    분 )	
	급여	월 (        )만원/ 기타 (        )	
	휴일 여부	월 (        )일	
	돌봄아동 연령		재원/재학 현황 (해당자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1	(        )세	
	2	(        )세	
3	(        )세		

### 부록 3. 사례조사 질문지(부모용)

- 심층인터뷰 취지 및 목적: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현황 및 요구 파악, 정책방안 모색
- 심층인터뷰 진행 방식: 주요 질문사항/응답 방식/소요 시간(약 1시간 반)
  - ※ 개인정보 협조 요청

#### 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자 특성

##### 1) 자녀 및 가구 특성

- 자녀: 총 자녀수, 자녀 연령, 기관 이용 등 타서비스 병행 여부
- 가구 특성: 맞벌이 여부/취업 시 근로형태, 노동시간

##### 2) 이용 민간 육아도우미 특성

- 성별, 연령, 내국인/외국인, 입주/미입주 여부, 이용 기간 등

#### 2. 육아도우미 구인 과정

##### 1) 육아도우미를 구하게 된 이유와 어떠한 경로로 육아도우미를 구하셨습니까?

- 육아도우미 이용 목적
- 인터넷/지인 등 육아도우미 소개 경로

##### 2) 육아도우미 채용 시 고려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외국인/내국인/연령/자격 등

##### 3)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면접여부/ 신원확인 범위(범죄자경력, 건강상태) 및 방법

##### 4) 기타

- 채용시 애로사항 및 해당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약조건(휴일, 사고시 대처 등) 명시 여부, 블랙리스트 확인 여부 등

### 3.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 1) 육아도우미의 근로 범위 및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근로범위(가사일 여부) 및 근로시간(도우미 출근일수 및 출퇴근시간)
- 2) 현재 비용은 얼마입니까?  
- 현재 비용 및 부담 정도
- 3) 별도의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까?  
- 복리후생제도 관련 현황(공휴일휴무, 휴가, 건강검진, 상여금, 퇴직금 등)
- 4) 육아도우미 이용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양육방법에 대한 갈등, 임금인상 요청 여부 등
- 5) 육아도우미가 갑자기 나오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긴급돌봄 공백 시 대처방법 및 임금에서 비용 제하는지 여부
- 6) 기타  
- 현재까지 이용 명 수, 육아도우미 근로 장소, 육아도우미 수 및 별도의 가사도우미 유무, cctv 설치 여부 등

### 4.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 및 개선요구

- 1) 육아도우미 이용에 만족/불만족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 여부(1~10점) 및 이유  
- 적정 비용(시장가격)에 대한 의견
- 2) 육아도우미가 꼭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성, 특정 자격 선호도  
- 교육/ 놀이/ 가사 등 역할에 대한 선호도
- 3) 소개업체를 통해 육아도우미를 소개 받은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가 있었습니까?  
- 이용과정 중 불만사항 처리여부  
- 사후관리방법 및 채용시 지원요구 사항
- 4)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아이돌보미(공공서비스) 이용경험 및 미이용 사유, 개선점  
- 육아도우미 등록제(신원보증 및 인력관리)에 대한 의견 등  
-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에 대한 의견  
- 채용시 기본요건과 사후관리 필요사항 및 방법(설문조사 등)



## 부록 4.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질문지

□ 주요 안건: 민간 육아도우미 소개업체 운영관리 현황 및 요구 파악

□ 세부 안건

— 업체 소개 및 운영 현황

- 1) 설립년도, 소개업무 시작년도, 인력(등록 도우미) 규모, 외국인 등록 여부, 온오프라인 운영 여부, 사업 규모(육아도우미 월평균 소개 건수 등), 연혁(육아도우미 사업 비중의 변화 등)
- 2) 주요 사업 대상 및 내용: 공급자/수요자 특성, 사업내용
- 3) 수익구조: 수수료 수준 등
- 4) 조직도 및 인력 배치

— 인력 모집/양성과정(교육) 및 사후관리 현황

- 1) 도우미 모집 및 선발: 모집 경로, 자격요건(연령, 범죄 경력 조회, 자격증 소지 등)
- 2) 양성교육 운영 및 세부내용: 사전교육 운영 여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재교육 여부 및 세부 내용(운영 횟수 등), 교육비용 수준(자부담 수준), 교육 운영주체(강사풀 등 연계내용)

— 서비스 내용 및 운영관리 사항

- 1) 육아도우미 제공 서비스의 범위 및 세부 내용: 학습지도 등
- 2) 육아도우미 비중 및 사업 특성(사업확장 계획 포함)
- 3) 운영관리 사항: 계약조건(보험가입, 수수료, 재교육 등), 사후관리(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 제공 시 도우미 준수사항, 인력풀 관리(재교육 등))

—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및 지원요구

- 1) 소개업체 운영상 애로점 및 요구: 육아도우미 사업 전망 포함
- 2) 육아도우미 관련 정부지원 연계 등에 관한 의견: 교육훈련 연계, 민간사업자 등록제 운영 등
- 3) 정부 아이돌봄지원사업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87 952688

ISBN 979-11-87952-68-8